2020

법무 연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1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법무행정비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인권옹호·범죄예방·교정 및 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아 서른 세 번째 법무연감을 발간합니다.

지난 한 해 법무부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고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수사권개혁 관련 법률을 구체화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하고,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 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 방식을 제도화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고,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 3% 의결권 제한규정 정비 등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화상상담을 도입하는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문답·사례 중심의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e-book 등으로 지속 개발·배포하여 디지털 범죄 예방에 앞장섰습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추진된 교정시설 대체복무제를 2020년 10월부터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전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차단, 91개국 무사증입국 정지, 사증 발급 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법무연감이 지난 한 해 법무행정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법무정책에 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법무부장관

2020 법무행정일지

1월

- 1. 3. •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 1. 7. • 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접견
- 1.13. • 장관, 제49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참석
- 1.16. • 전국 보호기관장 영상회의
  • 장관, 형사공판부 검사 및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격려 오찬 간담회
- 1.21. • 주한미국대사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 1.22. •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심사장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설맞이 사회복지시설(안양의 집) 방문
- 1.23. • 장관, 청사근로자 격려 오찬간담회
- 1.24. • 장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 참석
- 1.25. • 장관,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정책현장 방문
- 1.29. •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1.31. • 검찰업무수행 유공자 포상식
  • 장관, 권력기관 개혁 추진 계획 언론 브리핑

2월

2. 3.
- 신임검사 임관식
- 장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간담회 개최

2. 4.
- 신임 장관정책보좌관 임명장 전수식
- 중국 방문 외국인 등 입국제한 및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시행

2. 6.
-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 개소식
- 차관, 1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조찬간담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 마련

2. 7.
- 장관,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2.10.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 위촉장 수여식 및 준비단 현판식 참석

2.11.
- 장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단 간담회
- 행정직·보호직·교정직 임명장 전수식

2.12.
- 주한 중국대사 예방

2.14.
- 2019년도 '우수공무원' 포상식

2.17.
- 장관,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 장관, 전주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차관, 거창법조타운 사업 관련 거창군수 접견

2.19.
- 장관, 코로나19 대응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특별입국절차 정책현장 방문

2.24.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개청식

2.25.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식
-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 운영 개시
-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상황' 메뉴 신설

2.28.
- 3.1절 기념 가석방 실시

2020 법무행정일지

3월

- 3. 2.
  - 차관, 김천소년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3. 9.
  - 장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장 면담
  - 장관, 대구교도소·대구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차관, 안양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등 시행
- 3.11.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시행
- 3.12.
  - 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정책현장 방문
- 3.18.
  - 장관, 4·15 총선 대비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참석
  - 2020년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 3.1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예방
- 3.20.
  - 장관, 2020 성범죄백서 관련 정책홍보영상 촬영
  - 2020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발간 및 배포
- 3.23.
  - 장관, 청주여자교도소·청주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정책현장 방문
  - 법무·검찰위원회,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 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권고
- 3.24.
  - 장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관련 브리핑
- 3.25.
  - 디지털 성폭력 대응 TF 구성
- 3.27.
  - 차관, 총리 주재 N번방 사건 관련 주요현안 보고
- 3.30.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추가 신규위원 위촉식
- 3.31.
  - 차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4월

- 4. 1.
  - 신임검사 임관식
  - 장관,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라디오) 인터뷰
- 4. 2.
  - 법무부·행안부 장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 4. 3.
  - 장관,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장관, 제주지방검찰청·제주교도소·제주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해외입국자 입국정보 확인 콜센터' 설치·운영
- 4. 7.
  - 차관, 국립법무병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4. 9.
  - 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 간담회 개최
- 4.10.
  - 장관, 총리 주재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관계장관회의 참석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4.13.
  - 장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접견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남용 개선' 권고안 발표
- 4.16.
  - 장관,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 방문
- 4.17.
  - 대한변호사협회장 예방
  - 난민위원회 개최
- 4.23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 장관,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 4.24.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 4.27.
  - 제61대 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임식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식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소년범죄 사건처리 관행 및 소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 4.28.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 4.29.
  - 장관, 한겨레신문 인터뷰
  - 법무부 감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 202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시행

2020 법무행정일지

5월

- 5. 1.
  - 제62대 고기영 법무부차관 취임식
- 5. 6.
  - 범죄예방정책국 '유튜브 채널' 개설
- 5. 7.
  - 장관, 제1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 5.11.
  - 신임검사 임관식
- 5.13.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식
  -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포상 전수식
- 5.15.
  - 장관, 신임검사 대상 강화
- 5.18.
  - 장관,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장관, 광주고등·지방검찰청·광주교도소·광주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장관, 국립5.18민주묘지 방문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 제도 개혁' 권고안 발표
- 5.20.
  - '세계인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 5.22.
  - 장관, 세종시장 면담
- 5.25.
  - 장관,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 5.26.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장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뷰
  - 차관, 싱가포르대사 접견
  - 차관,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 5.27.
  - 장관, 한겨레신문 1만호 기념식 참석
- 5.29.
  -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디오) 인터뷰

6월

- 6. 1.
  - 장관,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녹화
  - 장관, 코로나19 관련 국제 웹세미나 개회사 영상 촬영
  -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제도 시행
- 6. 2.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 개청식
- 6. 3.
  - 법원행정처 판사 초청 '전자보석'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책·기술공유('K-방역') 국제 웹세미나 개최
- 6. 4.
  - 장관, 제2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 전국 외국인 보호시설 기관장 영상회의
- 6. 6.
  - 장관,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6. 8.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국금지 제도의 관행 및 남용 개선' 권고안 발표
- 6. 9.
  - 차관,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참석
- 6.10.
  - 차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 6.11.
  -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위촉식
- 6.12.
  - 난민위원회 개최
- 6.15.
  - 장관,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참석
- 6.16.
  -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발족
- 6.17.
  - 장관, 주한유럽연합(EU)회원국 대사 회의 참석
- 6.19.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 6.22.
  - 장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 6.23.
  - 장관, 검찰개혁 관련 영남일보 인터뷰
- 6.24.
  -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 제1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개최
- 6.25.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 참석
  - 장관, 6.25전쟁 제70주년 행사 참석
- 6.26.
  - 장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
  -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 6.30.
  -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식

2020 법무행정일지

7월

- 7. 1.
  -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 7. 2.
  -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 7. 3.
  -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연구 세미나 개최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여성계 대표 간담회 개최
- 7. 8.
  - 차관,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참석
  - 차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10주년 행사 참석
- 7. 9.
  -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 제3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개최
- 7.10.
  - 청렴 라이브(LIVE) 콘서트 개최
  - 차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참석
- 7.13.
  - 신임 법무실장·교정본부장·감찰관 임명장 전수식
- 7.14.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및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현실화' 권고안 발표
- 7.17.
  - 장관,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 참석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참석
- 7.20.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대국민 영상 메시지 촬영
- 7.22.
  -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 7.23.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예방
  -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
  -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 7.27.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안 발표
- 7.28.
  - 제2회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7.29.
  - 공익법무관 임용식

8월

- 8. 3. • 신임검사 임관식
- 8. 5. •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 시행
- 8. 7. • 난민위원회 개최
- 8.12. • 제3회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 권고안 발표
- 8.14. • 차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
- 8.15. • 장관,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8.19. • '국제분쟁대응과' 현판식
  • 법무부–국립중앙도서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년원 독서활동 지원' 업무 협약식
- 8.21. • 장관,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8.28. • 차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8.31. • 법무부-KSD나눔재단,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

2020 법무행정일지

9월

- 9. 2.
  - 신임 인권국장 임명장 전수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 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9. 4.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
  - 난민위원회 개최
- 9. 7.
  - 차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접견
- 9. 9.
  -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서울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 9.10.
  - 장관,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축하영상 메시지 촬영
- 9.11.
  - 법무부–주한중국대사관–한중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9.14.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개선' 권고안 발표
- 9.15.
  - 제2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 개최
- 9.16.
  -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 9.17.
  -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식
- 9.18.
  - 차관, 안산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 9.21.
  - 장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참석 및 언론 브리핑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권고안 발표
- 9.24
  - 특별공로자 안광훈 신부 국적증서 수여식
  - 장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안양의 집) 방문
  - 차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평화의 집) 방문
- 9.25.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식
  - 차관, 개천절 집회 관련 관계차관회의 참석
  -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
- 9.28.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안 발표
- 9.29.
  - 2020년 수해 이재민 돕기 의연금 모금·기탁

10월

- 10. 5.
  - 한국법학원장 예방
- 10. 7.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공포
  -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 10. 8.
  - 장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10.12.
  - 2020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 10.14.
  -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 기관장 영상회의
- 10.15.
  -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 10.16.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식
  - 난민위원회 개최
- 10.20.
  - 장관, '한국법률가대회' 축하 영상 촬영
- 10.21.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10.22.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 10.26.
  - 2020년도 법무부 종합감사
  - '대체복무제' 시행 및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
  - 재49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 10.28.
  -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 가석방 실시
  - 장관,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사 영상 촬영
  - 2020년 청렴 워크숍 개최
- 10.29.
  -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 제주 4·3사건 단체들과 간담회 개최
- 10.30.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 차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 '국민과 함께 더 청렴한 법무부를 위한' 법무부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웹툰, UCC) 공모전 개최

2020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3.
  -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 임명장 전수식
- 11. 4.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 11. 5.
  -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대한상사중재원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행사 개최
- 11. 6.
  - 장관, 외투나눔 대축제 출범식 참석
  - 난민위원회 개최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 권고안 발표
  -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개최
- 11.10.
  - 제4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 11.12.
  -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대사 예방
- 11.13.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 2020년 제8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 11.18.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 11.19.
  - 법무부 제16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 11.20.
  -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법무부–독일재단 합동 간담회 개최
- 11.24.
  -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위촉식
- 11.25.
  - 장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관련 라디오 광고 녹음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 11.27.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 전수식

12월

12. 2.
- 제62대 고기영 법무부차관 이임식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 방안' 관련 선진법제포럼 개최

12. 3.
- 제63대 이용구 법무부차관 취임

12. 4.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포럼 개최

12.10.
- 법무부-경찰청 본부 간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

12.16.
- 장관, 법무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언론 브리핑
- 차관, 공정경제 3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난민위원회 개최
-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식

12.18.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12.20.
-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긴급 점검

12.22.
- 국제법무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임명장 전수식

12.23.
- 차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석
- 차관, 재외동포 화상간담회 참석

12.24.
- 2020년 성탄절 기념 가석방 실시

12.28.
- 법무부 송무심의관실 출범식
- 장관, 전자감독 관련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정책현장 방문
-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12.29.
- 장관, 2021년 신년 사면 관련 언론 브리핑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12.30.
-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안 발표

12.31.
- 송무심의관·행정소송과장 임명장 전수식
- 2021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 범죄피해 극복 및 자원봉사 유공 표창장 수여식 개최
- 장관, 인천구치소·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 차관, 교정시설 코로나19 관련 e-브리핑
- 차관, 서울남부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2020년 구금·보호시설 인권보호 우수기관 포상

2020년 법무부가 만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2020년 법무부는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0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0. 01.

1월 3일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1월 3일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식

1월 3일
법무부장관 본부 순시

1월 16일 형사공판부 검사 및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격려 오찬간담회

1월 16일 형사공판부 검사 및 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격려 오찬간담회

1월 22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심사장 방문

1월 22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방문

1월 25일
서울구치소 방문

1월 25일
서울소년원 방문

1월 29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1월 31일
검찰업무수행 유공자 포상식

1월 31일 권력기관 개혁 추진 관련 언론 브리핑

2020. 02.

2월 3일
신임검사 임관식

2월 4일
신임 장관정책보좌관
임명장 전수식

2월 6일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 개소식

2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법조기자단 간담회

2월 12일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예방

2월 14일
우수공무원 포상

2월 17일
전주소년원 방문

2월 17일 전주소년원 방문

2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

2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

2월 19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심사장 방문

2020. 03.

3월 9일
대구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3월 9일 대구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3월 12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방문

3월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면담

3월 23일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3월 23일 청주소년원 방문

3월 23일 청주소년원 방문

3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관련 언론 브리핑

3월 30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2020. 04.

4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4월 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4월 2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대표 간담회

4월 3일 제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4월 3일
제주지방검찰청 방문

4월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4월 9일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 간담회

4월 13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면담

4월 16일 안산 단원고 4.16 기억교실 방문

4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4월 23일 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4월 23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

4월 27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식

4월 27일 제61대 김오수 법무부차관 이임식

4월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4월 29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2020. 05.

5월 7일 제1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5월 11일 신임검사 임관식

5월 13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5월 13일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정부포상 전수식

5월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강화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

5월 18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 방문

5월 18일 광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5월 18일 광주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5월 21일 교정직 임명장 전수식 및 보직 신고

5월 22일 이춘희 세종시장 면담

5월 25일
제주 4.3 평화재단
기금 기탁식

5월 26일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5월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뷰

2020. 06.

6월 1일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6월 2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 개청식

6월 2일
교정본부 보호장비 시연회

6월 4일 제2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6월 11일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

6월 11일
주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 간담회

6월 23일 영남일보 인터뷰

6월 24일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6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공청회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식

2020. 07.

7월 1일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7월 3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여성계 대표 간담회 개최

7월 3일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연구 세미나 개최

7월 9일
제3회 인권 교육 간부 세미나

7월 10일 법무부 청렴 라이브 콘서트

7월 13일
신임 법무실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임명장 전수식

7월 13일 보호직 임명장 전수식

7월 29일 공익법무관 임용식

2020. 08.

8월 3일 신임검사 임관식

8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월 19일
국제분쟁대응과 현판식

8월 19일
소년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8월 21일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0. 09.

9월 2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9월 2일
신임 인권국장 임명장 전수식

9월 2일
전출 검사 보직 신고

9월 4일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현판식

9월 10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9월 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9월 24일 특별공로자 안광훈 신부 국적증서 수여식

9월 25일 교정직 임명장 전수 및 보직 변경 신고

9월 25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

9월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식

9월 2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
위원회 감사패 수여식

2020. 10.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방문

10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 방문

10월 15일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10월 28일 교정작품전시회

10월 28일
제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0월 29일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

2020. 11.

11월 3일
법무심의관 임명장 전수식

11월 6일
제3회 외투나눔 대축제 출범식

11월 19일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11월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11월 24일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위촉식

11월 25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11월 27일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2020. 12.

12월 2일
제62대 고기영 법무부차관 이임식

12월 16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

12월 22일 여성아동인권과장 임명장 전수식

12월 28일 법무부 송무전담조직 출범 기념 행사

12월 29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12월 29일 신년 특별사면 언론 브리핑

12월 30일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식

12월 31일 송무심의관 임명장 전수식

12월 31일 범죄피해 극복 및 자원봉사 유공 표창장 수여식

12월 31일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점검

12월 31일 종무식

2020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62
제2절 기구·인원 69
제3절 예산·시설 88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100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100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102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7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10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13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15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7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22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4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9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6
1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38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41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54
1. 기관장 소통 강화 154
2. 언론매체와 원활한 소통 157
3. 가짜뉴스 대응 159
4. 디지털소통 강화 160
5. 국민 참여 홍보 163
6. 부처 협업 홍보 165
7. 홍보 교육 167
8.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167

제3절 법무업무 168

1.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법제 정비 168
2.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정비 17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개정 추진 172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74
5. 화상공증제도 활성화 178
6.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79
7.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82
8. 국제법무 역량 참여 186
9. 국제법무 역량 강화 187
10.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193
1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202
12. 법무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 법적 지원 204
1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05
14.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209
1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12
1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14
17.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216
18.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217
19. 전자어음제도 운영 219
20. 전자증권제도 시행 221
21. 중재산업 활성화 222
2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23
23.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 225
24.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26
25. 선진법제포럼 개최 227
2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구축 228
27.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230
28.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31

제4절 검찰업무 236

1. 검찰 역량의 강화 236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40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45
4. 국민의 권익 보호 256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59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81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82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83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285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286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288
12.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293
1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294
14. 법무·검찰 비공개 내규 공개 전환 296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97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98

제5절 범죄예방업무 299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299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308
3. 감호제도 개선 314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19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22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30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35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40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44

제6절 감찰·감사업무 352

1. 감찰업무 352
2. 감사업무 354

제7절 인권업무 357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57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62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71
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384
5.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86
6.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390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393

제8절 교정업무 394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394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399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05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11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16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416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426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37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43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448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56
7.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462
8.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65

제10절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473
1.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운영 473
2. 진행상황 474
3. 주요지시 475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477
1.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477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운영 480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484
제2절 법률 485
제3절 대통령령 512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35

제4장 국회업무 555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64
제2절 검찰업무 통계 578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599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35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37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59

자 료

제1절 직제 678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08
제3절 장관 연설문 724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767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784
제6절 인사 835
제7절 국외훈련·출장 836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37
제9절 상훈 842
제10절 위원회 현황 855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861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권호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국정전략별로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524개 실천과제를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 설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 출범 4년차인 2020년에는 '포용', '혁신', '공정' 관점에서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0년도 국정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❶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❶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❶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❶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❷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❷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❷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❷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❷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❹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❹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❹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❺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❺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00대 국정과제 (524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2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9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6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 실천과제)

| 표 1-2 | 2020년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과제 (주관 4개, 협조 5개)	주관 (협조)	실천과제 (16개)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권익위 문체부)	1.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법무부	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5.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인권위	1. 국민 인권 보호 강화 2.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경찰청	1.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조)	경찰청 (법무부)	8.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협조)	금융위 (법무부)	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협조)	공정위 (법무부)	1.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협조)	공정위 (법무부)	4. 집단소송제 등 도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협조)	여가부 (법무부)	5.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 법무행정의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요

법무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13개 성과목표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등 59개의 관리과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2020년도 우리 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및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20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2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실형선고율 제고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검찰총장의 구체적 출석 의무화 방안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 •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①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 주요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각 청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지속적 단속
		②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하에 신속·엄정하게 수사
		③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제도 정착	• 국가송무지휘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 확보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포털 구현
		④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 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집중 송환 추진 및 국외도피사범 조기 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출국금지 강화 등 •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등
		⑤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본부 및 소속 ·산하공공기관 감찰·감사를 강화하고 법무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정책감사 강화
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집중적 단속
		②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 및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공익법인의 총괄 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마련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방지 및 국민의 감시·감독제도 마련	•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 대응으로 국고손실 환수 노력 •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 활동 저해사범 집중 단속 • 역외범죄 합동단속 협의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협력 강화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 및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강화 • 첨단산업보호 전문검사 TF를 중심으로 수사(단속) 인력 등 전문성 강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Ⅲ.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제도적 안정화 및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인터넷 회선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수용환경개선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이동법률 상담차량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 One-Stop으로 법률서비스 운영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적합한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확대 배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실시
		③ 상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주택임대차법 개정 및 상가임대차위원회 신설·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등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기간만료채권 양수 및 변제요구행위 제한의 채권추심법 개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⑤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확대·개선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마련 및 집단소송제 전 분야에 도입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아동음란물범죄의 처리기준 강화,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 처리기준 정비 등
		②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 중대·조직적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집중 • 마약류 수요감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③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 강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및 전자감독범죄예방팀 확대 • 맞춤형 심리치료 실시 및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②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및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강화를 위한 단속·사범·보호인력 증원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제고
		④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생활 속에서 법과 질서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기본권과 의무,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존중 및 사회참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구성 및 시행체계 마련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3.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엄마의 목소리' 제도 시행 및 기존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신축·리모델링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교도작업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회의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설 및 시범실시
		③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가석방 업무지침」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필요적 가석방신청, 당월가석방신청, 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근거 신설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고위험군 특정범죄 수용자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운영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원격의료 확대 운영 및 감염병 예방의료 활동 강화
		⑥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소규모 생활실 추가 조성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유휴병동 운영 및 병동4부제 근무를 위한 간호인력 증원 추진 및 피감호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환경 제공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실시
		⑨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 출소자 채용약정 희망업체 지속 발굴 및 직영 직업훈련의 다각화 추진
Ⅴ.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근거 신설 및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조치시행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방한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지능형 바이오정보 고속 검색시스템 구축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시책 및 내·외국인 상호이해 제고 등 사회통합정책 추진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 설계 및 추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실시 및 국민정체성 함양교육 실시
		⑦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난민법령 등 개정·난민 제도 정비 및 난민심사 역량·전문성 강화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투자분쟁대응(ISDS)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한 법률지원 내실화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불법사찰 관련 법령 개선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공증 관련 법령 개정 및 전자공증시스템 개선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
		⑥ 국민권익 향상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	• 변호사제도 개선 및 마을변호사의 민생 밀착형 역할 강화
	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SNS채널을 통한 소통, 영상콘텐츠 제작 등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활성화 및 수용(출소)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④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직업체험, 보라미준법교실 운영 등 교정정책 홍보
		⑤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미담사례 및 규제개혁 홍보강화,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4.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통신재난대비 법무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법무사이버 안전센터 이전 및 정보보호 인력 통합 운영
		②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 법무부 코로나19 총괄 대응 및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 수립·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등

나.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0.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10관 52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강력범죄자 데이터분석 기반의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관장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 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에는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

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이 신설(2020 8. 27. 차관 직속 임시조직)되어 감염병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협업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코로나19 대응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기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정책 기획관
비상 안전 기획관
법무 심의관
송무 심의관
교정 정책단
보안 정책단
출입국 정책단
국적·통합 정책단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범죄예방 데이터담당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2. 인원

난민심의 인력, 국제분쟁대응 인력, 인권조사 인력, 대체복무제 운영 인력, 국가송무 수행 인력 등 55명을 증원하여 2020. 12. 31. 현재 본부 정원 752명, 현원 743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52	2	25	721	4
현원	743	2	32	705	4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0.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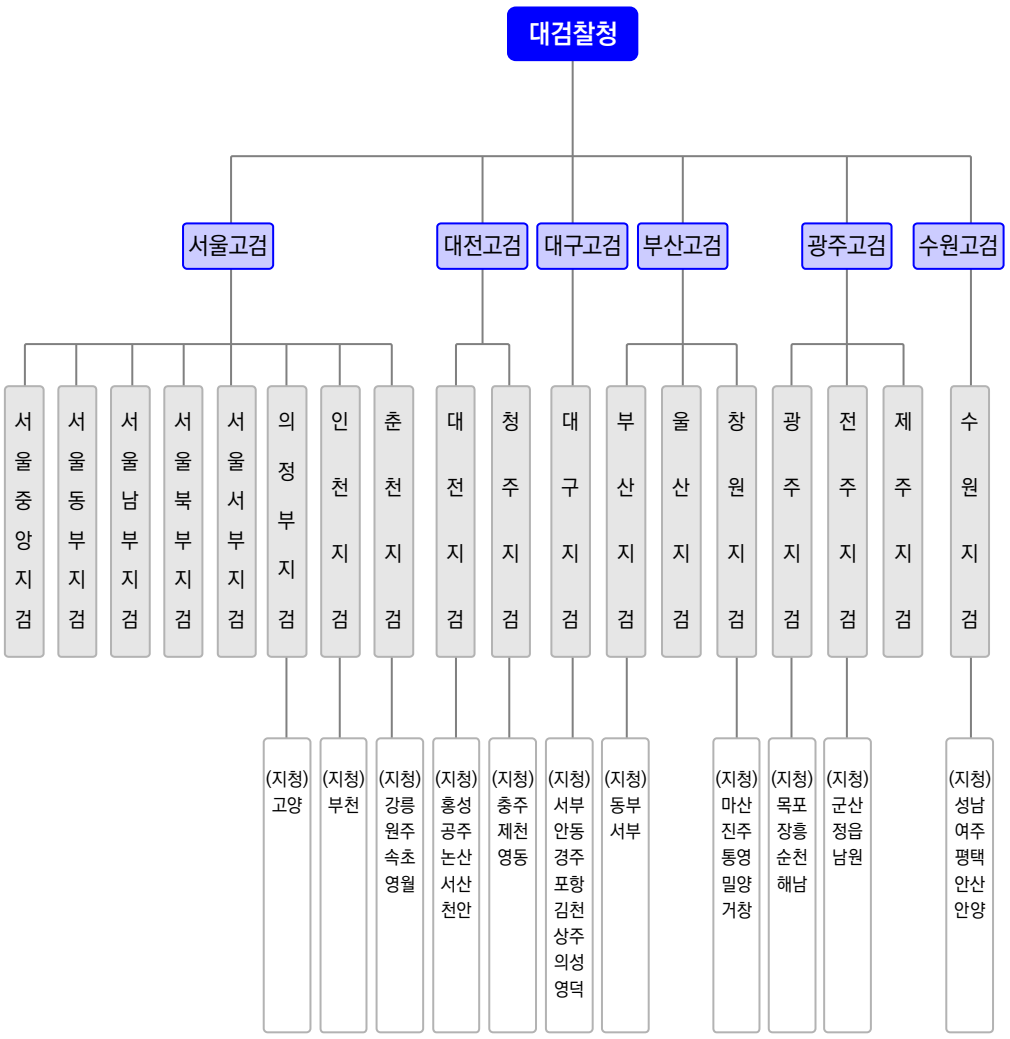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774	2,292	8,482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120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7
대검검사급	31	26
검사	2,253	2,086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482	8,476
고위공무원단	26	22
검찰부이사관	17	15
검찰수사서기관	182	165
임기제서기관	1	1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455	428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6	5
검찰주사	1,464	1,451
검찰주사보	1,857	1,873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4
검찰서기	1,095	1,096
검찰서기보	859	869
마약수사직	294	271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37	226
시설·공업직	92	88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5	267
방호직	158	158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53	1,441
연구직	70	63
전문경력관	5	5
별정직	0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0.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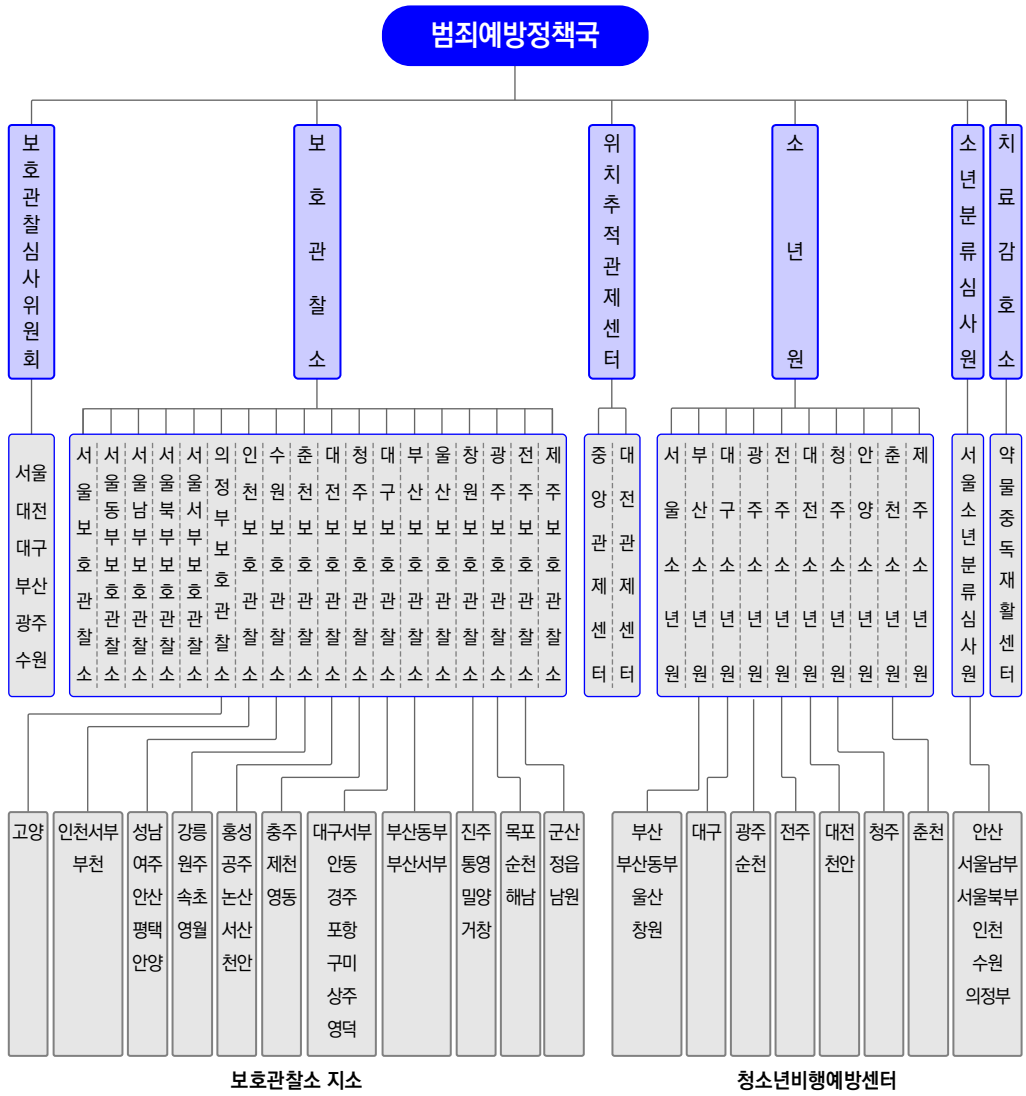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767	1,760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9	29
서기관(임기제)	4	4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6
보호사무관	190	189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290	277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388	394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4	4
운전주사보	0	2
보호서기	391	388
보호서기또는전산서기	1	1
공업서기	4	5
운전서기	2	17
보호서기보	366	359
보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1	2
운전서기보	61	44
방호서기보	15	16
관리운영직군	4	12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74	959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6
기술서기관	9	8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9
보호사무관	46	44
의무사무관	13	8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8	104
공업주사	3	3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3	2
보호주사보	192	190
공업주사보	3	4
의료기술주사보	1	0
간호주사보	12	13
보호서기	193	193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4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72	172
공업서기보	11	11
식품위생서기보	4	4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2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6	56
방호서기보	19	19
관리운영직군	14	16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21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1	1

| 표 1-14 |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43	416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6	9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의무사무관	2	1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4	4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5
약무주사	2	1
간호주사	24	23
간호조무주사	2	2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4
의료기술주사	1	1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3
간호주사보	56	49
간호조무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1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1	1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직 급	정 원	현 원
기 계 운 영 주 사 보	1	1
보 호 서 기	4	5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 업 서 기	2	3
간 호 서 기	58	49
의 료 기 술 서 기	3	3
간 호 조 무 서 기	16	16
전 기 운 영 서 기	1	1
기 계 운 영 서 기	2	2
보 호 서 기 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0
식 품 위 생 서 기 보	1	1
시 설 서 기 보	1	1
공 업 서 기 보	1	0
운 전 서 기 보	3	3
간 호 조 무 서 기 보	133	132
조 리 서 기 보	17	17
방 호 서 기 보	12	12
관 리 운 영 직 군	4	6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4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특수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2

3. 교정기관

2020.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7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338명이며, 2020. 12. 31. 현재 15,918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338	15,918	15	9	116	64	367	1527	1958	5727	6431	4	120
교정	15,232	14,854	15	5	57	33	325	1424	1782	5554	6037		
의무	117	91		4	59	29	25						
약무	16	13					13	3					
간호	113	110					1	23	38	51			
의료기술	35	35						15	14	6			
식품위생	73	72						12	29	18	14		
행정	0	0											
시설	71	67				2	2	29	22	11	5		
전산	11	11					1	2	5	3			
공업	203	208						16	57	63	67		
방송통신	4	2						3		1			
운전	267	267							5	4	258		
보건	1	1								1			
관리운영	71	73							6	15	50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9											10
전문경력관(나군)	110	101											110

4. 출입국기관

2020.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551명이며, 현원은 2,516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 청, 13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4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551	2,516
고 위 공 무 원	3	2
부 이 사 관	3	2
서 기 관	26	2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11	97
출 입 국 관 리 주 사	418	411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686	702
출 입 국 관 리 서 기	681	676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508	495
전 산 직	44	41
의 무 직	3	3
간 호 직	3	2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5	60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0	173
검 사	14	28
고 위 공 무 원	6	3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7	7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19	26
행정주사·교감 등	26	29
행정주사보·교위 등	22	38
검찰서기·교사 등	26	40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10	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0.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2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가. 개 요

2020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수용자 등 처우개선 및 대체복무 도입,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0.5% 증액된 1조 7,506억 5,000만 원, 세출이 0.3% 증액된 3조 9,350억 5,9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입·세출이 1,035억 4,3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예산	세 입	1,741,180	1,741,180	1,750,650	9,470	0.5
	세 출	3,923,198	3,923,198	3,935,059	11,861	0.3
기금	수 입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지 출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614,363	1,614,363	1,623,473	9,110	0.6
세 출	3,796,381	3,796,381	3,807,882	11,501	0.3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세 입	126,817	126,817	127,177	360	0.3
세 출	126,817	126,817	127,177	360	0.3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수 입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지 출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나. 일반회계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0.6% 증액된 1조 6,235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0.3% 증액된 3조 8,079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356조 5,686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5%, 세출이 1.1%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8,079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9%인 2조 5,865억 원, 교정활동이 9.5%인 3,636억 원, 검찰활동이 8.4%인 3,207억 원, 법무활동이 4.4%인 1,689억 원이며, 기타 인권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9.8%인 3,681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3,796,381	3,796,381	3,807,882	11,501	0.3
인 건 비	2,311,606	2,311,606	2,369,292	57,686	2.5
기 본 경 비	146,200	146,200	150,352	4,152	2.8
사업 비	1,256,135	1,256,135	1,205,798	△50,337	△4.0
기금전출금	82,440	82,440	82,440	-	-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256,135	1,256,135	1,205,798	△50,337	△4.0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2,879	2,879	2,086	△793	△27.5
• 국가배상금지급	300,000	300,000	150,000	△150,000	△50.0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395	395	395	-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096	1,096	1,205	109	9.9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161	161	177	16	9.9
• 기업환경지수개선	298	298	298	-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3,017	3,017	4,750	1,733	57.4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041	1,041	968	△73	△7.0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3,459	3,459	3,391	△68	△2.0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714	714	740	26	3.6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925	925	933	8	0.9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3,199	3,199	3,316	117	3.7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504	504	642	138	27.4
• 법률구조	54,761	54,761	53,619	△1,142	△2.1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	4,418	4,418	4,549	131	3.0
• 인권교육	219	219	-	△219	순감
• 아동인권증진	171	171	193	22	12.9
• 국제인권역량강화및국제인권DB구축	133	133	156	23	17.3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257	257	203	△54	△21.0
• 이민정책개발지원	411	411	406	△5	△1.2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796	1,796	2,274	478	26.6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42,061	42,061	39,754	△2,307	△5.5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4,190	4,190	4,467	277	6.6
•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13,792	13,792	순증
• 외국인보호관리	14,474	14,474	15,174	700	4.8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7	12,337	12,800	463	3.8
• 외국인체류질서확립	8,700	8,700	8,902	202	2.3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7,388	7,388	10,231	2,843	38.5
• 검찰청시설운영	65,695	65,695	69,071	3,376	5.1
• 검찰국외훈련및국제형사협력지원	6,413	6,413	7,291	878	13.7

사 업 명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6,905	6,905	7,541	636	9.2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743	743	2,696	1,953	262.9
• 형사사법증거검증체계고도화및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R&D)	-	-	1,375	1,375	순증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0,585	30,585	30,386	△199	△0.7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2,439	12,439	12,538	99	0.8
• 검찰수사지원	26,794	26,794	27,180	386	1.4
• 수사일반	86,059	86,059	87,028	969	1.1
• 공공수사	5,264	5,264	5,625	361	6.9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191	13,191	12,924	△267	△2.0
• 마약수사	4,474	4,474	4,923	449	10.0
• 성범죄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단속	3,306	3,306	3,005	△301	△9.1
• 민관유착비리등사회공정성저해사범단속	7,741	7,741	7,403	△338	△4.4
• 공소유지	1,867	1,867	1,989	122	6.5
•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481	1,481	2,197	716	48.3
• 형사보상	33,213	33,213	37,313	4,100	12.3
• 형사법정비	438	438	258	△180	△41.1
• 교도소행정지원	30,178	30,178	40,005	9,827	32.6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65,915	65,915	70,396	4,481	6.8
• 대체복무시설 개선 및 운영	-	-	25,926	25,926	순증
•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205,740	205,740	220,216	14,476	7.0
• 교정교화	7,675	7,675	7,072	△603	△7.9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7,545	7,545	8,021	476	6.3
• 소년원생수용	18,807	18,807	20,983	2,176	11.6
• 청소년비행예방	5,057	5,057	6,060	1,003	19.8
• 갱생보호활동	29,110	29,110	33,009	3,899	13.4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7,432	7,432	7,622	190	2.6
• 보호관찰활동	11,689	11,689	12,005	316	2.7
• 특정범죄관리	17,500	17,500	18,687	1,187	6.8
• 법질서준수및법교육활동	6,079	6,079	4,691	△1,388	△22.8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4,375	4,375	4,192	△183	△4.2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413	1,413	1,422	9	0.6
• 법무연수원수입대체경비	460	460	460	-	-

사 업 명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 신임검사양성및교육지원	941	941	894	△47	△5.0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13	613	613	-	-
• 국민불편해소를위한민원정책피드백	122	122	120	△2	△1.6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5,557	5,557	7,309	1,752	31.5
• 정보기획지원	36	36	33	△3	△8.3
• 양성평등정책 지원	100	100	189	89	89.0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8	48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0,595	30,595	38,859	8,264	27.0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1,036	1,036	844	△192	△18.5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10,024	10,024	9,238	△786	△7.8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9,260	9,260	8,302	△958	△10.3
• 법무시설 행정지원	2,697	2,697	2,035	△662	△24.5
• 특별감찰활동	519	519	383	△136	△26.2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계	추경		증△감 (B-A)	%
	3,796,381	3,796,381	3,807,882	11,501	0.3
• 법무활동	317,688	317,688	168,901	△148,787	△46.8
• 인권활동	59,959	59,959	58,720	△1,239	△2.1
• 출입국관리	91,357	91,357	107,800	16,443	18.0
• 검찰활동	306,608	306,608	320,743	14,135	4.6
• 교정활동	309,508	309,508	363,615	54,107	17.5
• 범죄예방활동	103,219	103,219	111,078	7,859	7.6
• 특별감찰관활동	1,682	1,682	1,142	△540	△32.1
• 법무교육훈련	7,189	7,189	6,968	△221	△3.1
• 행정지원	2,516,731	2,516,731	2,586,475	69,744	2.8
• 기금전출금	82,440	82,440	82,440	-	-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71억 7,7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748억 9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98억 4,9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5,8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0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1억 6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6,800만 원, 교도작업 549억 3,100만 원, 직업훈련 54억 2,600만 원, 시설보완 96억 1,9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66억 3,3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예산		2020예산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6,817	126,817	127,177	360	△2.4
교도작업수입	74,809	74,809	74,809	-	0.0
잡 수 입	338	338	358	20	5.9
전년도이월금	7,268	7,268	-	△7,268	순감
전년도세계잉여금	-	-	9,849	9,849	순증
기금예탁원금회수	42,000	42,000	40,000	△2,000	△4.8
기금예탁이자수입	2,402	2,402	2,161	△241	△10.0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9 예산		2020 예산 (B)	2019 대비		내 역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26,817	126,817	127,177	360	0.3		
기본경비	568	568	568	-	-	• 운영비 등	568
교도작업	53,517	53,517	54,931	1,414	2.6	• 작업재료비 • 보 전 금 • 일반수용비 등	25,051 23,124 6,756
직업훈련	5,426	5,426	5,426	-	-	• 훈련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740 1,105 2,581
시설보완	10,930	10,930	9.619	△1,311	△12.0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8,166 1,453
예비비	-	-	-	-	-	• 예비비 사업 폐지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56,376	56,376	56,633	257	0.5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0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35억 4,300만 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15억 5,6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71억 7,2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824억 4,000만 원,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396억 9,5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88억 8,5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225억 7,800만 원, 운영비 5,200만 원, 여유자금 22억 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 기금		2020 기금 (B)	2019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기 타 재 산 수 입	426	426	426	-	-
변 상 금	1,281	1,281	1,556	275	21.5
기타경상이전수입	1,949	1,949	1,949	-	-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15,006	15,006	7,172	△7,834	△52.2
일 반 회 계 전 입 금	82,440	82,440	82,440	-	-
예 수 금	-	-	10,000	10,000	순증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9 기금		2020 기금 (B)	2019 대비		내 역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01,102	101,102	103,543	2,441	2.4	
법 무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35,237	35,237	39,695	4,458	12.6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6개 사업
여 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37,855	37,855	38,885	1,030	2.7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 건 복 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22,500	22,500	22,578	78	0.3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운 영 비	51	51	52	1	2.0	
여 유 자 금	5,459	5,459	2,203	△3,256	△59.6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최상현

가. 개 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5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0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6개 등 총 268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2020년 법무시설(전주지검 등 4개 기관)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에서 90.16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0년 준공사업은 대구교도소 이전 신축,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인천지검 부천지청 증축,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수원보호관찰소 증축, 대전소년원 별관 리모델링, 포항보호관찰소 증축, 경북북부3교도소 수용동 증축,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신축 총 10개 사업으로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법무부 기록관 신축,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총 6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거창구치소 신축,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총 3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890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468억 원(24.8%), 보호시설에 83억 원(4.4%), 교정시설에 788억 원(41.7%), 출입국관리시설에 545억 원(28.8%), 기타 시설에 6억 원(0.3%)을 집행하였다.

2020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20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사기간
		부지	건물		
준공 (10)	대구교도소 신축	285,418	60,760	1,800	'16. 11월 ~ '20. 10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11,570	9,917	599	'17. 12월 ~ '20. 2월
	강원북부교도소 신축	140,956	19,465	660	'16. 7월 ~ '20.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증축	19,999	6,200	137	'17. 12월 ~ '20. 1월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18,759	4,347	88	'18. 3월 ~ '20. 2월
	수원보호관찰소 증축	3,496	1,067	24	'19. 8월 ~ '20. 7월
	대전소년원 별관 리모델링	12,018	5,183	81	'19. 9월 ~ '20. 8월
	포항보호관찰소 증축	1,323	1,132	14	'19. 12월 ~ '20. 6월
	경북북부3교도소 수용동 증축	-	2,972	95	'19. 12월 ~ '20. 12월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신축	1,873	1,341	38	'19. 9월 ~ '20. 12월
신규 (6)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18,000	17,455	827	'20. 6월 ~ '22. 5월
	법무부 기록관 신축	7,048	18,031	463	'20. 12월 ~ '23. 6월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	11,244	6,876	165	'20. 12월 ~ '23. 1월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303,393	13,857	428	'20. 12월 ~ '23. 10월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4,455	2,700	59	'20. 11월 ~ '22. 3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11,213	3,768	86	'20. 12월 ~ '21. 12월
계속 (3)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18,946	7,492	187	'19. 12월 ~ '22. 3월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11,091	6,612	213	'19. 12월 ~ '22. 5월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836	'15. 11월 ~ '22. 10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교정업무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0절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준석

가. 추진배경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 외에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국·본부장 7개 중 6개 직위에 모두 검사를 보임하는 등 주요 직위에 직제 상으로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여 왔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주요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1년 내지 2년의 짧은 인사 주기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검찰 외에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선정되었고, 그 세부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포함되었다.

’17. 8월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여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한인섭)에서는 제1차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 8월부터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주요 실·국·본부장 모두 외부 인사 또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 추진경과

’17.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69%인 42개 직위를 비(非)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 하였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3차 권고안(’18. 6월)을 수용하여 ’18. 12월에는 검찰국 2개 과장 직위에도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직제 개정에 따라 2017년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 4개 직위, 2018년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 등 23개 직위, 2019년

감찰관, 국가송무과장 등 10개 직위, 2020년 법무실 2개 직위 등 주요 보직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20.12.31. 기준으로 4개 실·국·본부장, 2개 국장급, 9개 과장급, 24개 평검사 등 총 39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용하였다.

| 표 2-1 | 법무부 검사 보임직위의 비(非)검사 보임 내역

구 분	소속(직위)	직 급	임용일	비 고
실·국·본부장 (4개)	법무실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8. 22.	외부 전문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9. 04.	외부 전문가
	인권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7. 09. 29.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정책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8. 04. 02.	내부 공무원
국장급(2개)	법무심의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8. 10. 01.	외부 전문가
	감찰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9. 04. 29.	외부 전문가
과장급(9개)	인권정책과장	부이사관	'17. 11. 16.	내부 공무원
	보호정책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여성아동인권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국제법무과장	부이사관	'18. 04. 09.	외부 전문가
	상사법무과장	부이사관	'18. 07. 23.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장	부이사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장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장	서기관	'18. 09. 03.	외부 전문가
	국가송무과장	서기관	'19. 08.19.	외부 전문가
평검사(24개)	법무심의관실 5개 직위	서기관 2, 행정사무관 3	'19. 03. 11.	외부 전문가
	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5. 13.	외부 전문가
	국가소송과 2개 직위	행정사무관 2	'19. 08. 06.	외부 전문가
	국제법무과 3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2	'20. 03. 16.	외부 전문가
	통일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2. 11.	외부 전문가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 1개 직위	행정사무관	'18. 02. 05.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2. 05.	내부 공무원
	상사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8. 26.	외부 전문가
	보호정책과 2개 직위	서기관, 보호사무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기획조정실 1개 직위	서기관	'19. 02. 11.	내부 공무원
	법조인력과 2개 직위	서기관 2	'20. 02. 25.	내부 공무원

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시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준석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사회적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따른 법무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2020. 3월 각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책임관인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전체를 점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성과를 제고 하고자 다양한 추진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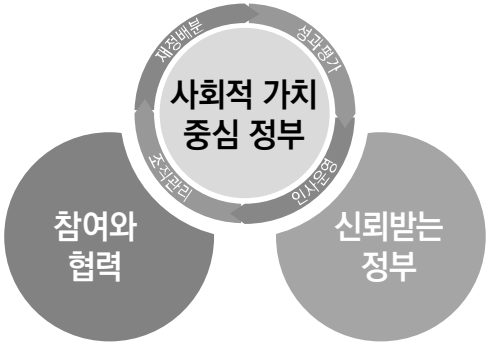

정부혁신 3대 전략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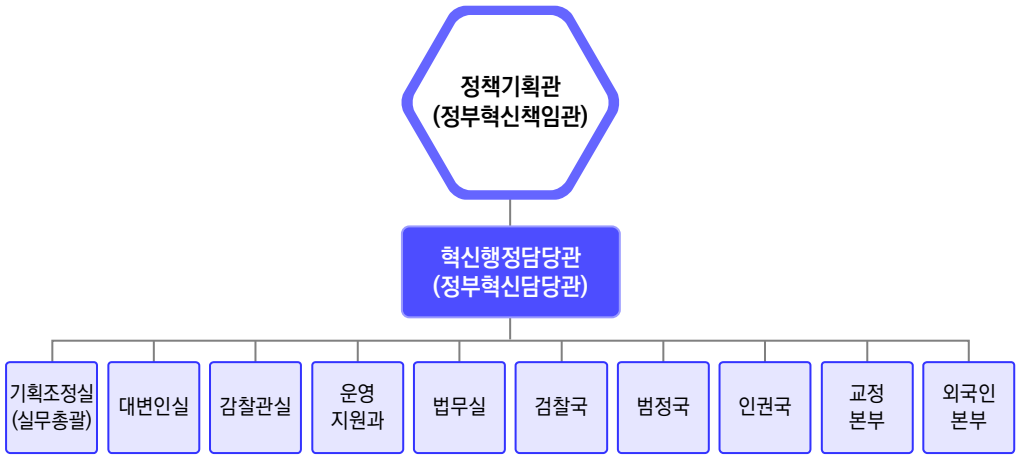

나. 주요 혁신 성과

1) '디지털 법교육 교재(디지털 소통로)' 발간

'N번방 사건', '다크웹' 등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짐에따라 '디지털 법교육 교재(디지털 소통로)'를 발간하여 전국 청소년문화의집 등 기관(583개)에 1,600여부를 배포하였고, 전자책 및 강의안을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초중고교에 188회, 9,306명 대상 출장 강연을 실시하는 등 법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 그림 2-3 | 디지털 법교육 교재

제 도	내 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디지털 소통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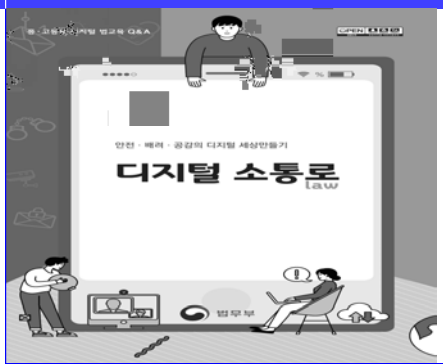	
	디지털소통로(law)	강의안

2) '전자보석제도' 시행

'20. 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보석제도의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손목형시계'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전자보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 8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되어 피고인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보장 및 교정기관 과밀수용 완화를 통해 국가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4 | 전자보석제도

제 도	내 용	
전자보석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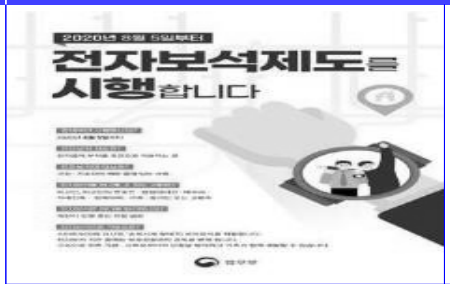	
	포스터	손목시계형 전자장치(예시)

3)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기존의 비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매년 약 260여만장(약 22억 원)의 비자 스티커 인쇄비용이 소요되며 약 53명 이상의 행정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및 행정자원 낭비가 초래되었으나, 온라인으로 발급한 '비자발급확인서'를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 비자발급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청인의 편의증진 효과를 거두었다.

| 그림 2-5 |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제 도	내 용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기존 : 여권 부착】	【개선 : 온라인 발급】

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 정보 등 신속한 공유 시스템' 구축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부터 해외입국자의 출입국 기록 및 국내 체류정보를 수집하도록 개편하였고, 이를 방역기관 등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 그림 2-6 | 출입국 정보 신속 공유 시스템

제 도	내 용
출입국 정보 신속 공유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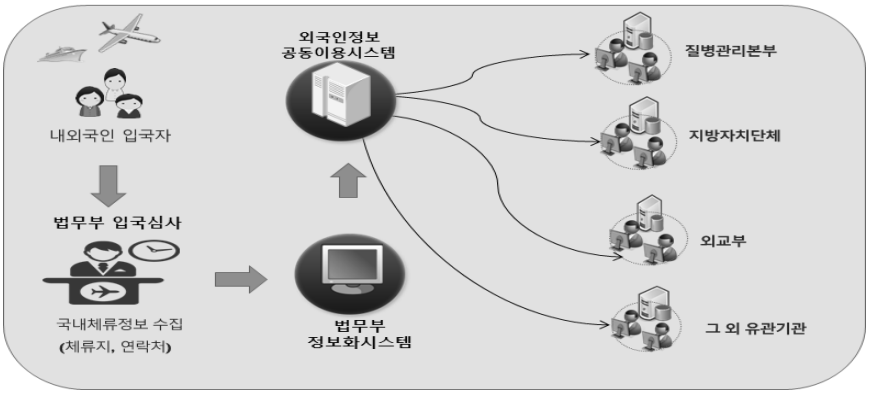

5)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개선

그 동안 교도소 면회를 위해 민원인은 직접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으나, 법무부는 기존 스마트접견에 접견용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자가 전년 대비 305% 대폭 증가하였고, 더불어 민원인의 교통비용(122억 7천만원)과 이동시간(108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 그림 2-7 |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제 도	내 용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개선	

6) 협업을 통한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

법무부는 법률복지 소외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운영('13.~) 중에 있었으나, 마을 주민이 법률문제 발생 시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2020. 7. 31.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임기2년)하고,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하였다.

| 그림 2-8 | 마을변호사

제 도	내 용
마을변호사 제도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준석

가. 추진배경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행정은 장려, 소극행정은 타파"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2020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대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규정에 얽매여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 표 2-2 | 기부금품 접수 관련 '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 건

-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교정기관 마스크 생산 관련, 기업이 교정기관에 기탁하는 지역주민 판매용 면 마스크에 삽입되는 정전기 필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 131조의'기부금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긴급 요청

☞ 관련 법령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부족 현상 등을 고려, 형집행법 제131조의 '기부금품'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필터를 기부 받아 지역 주민을 위한 면마스크 제작으로 마스크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 기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 표 2-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시스템 구축이 관련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여부

-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이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인 '비상재해 등에 준하는 경우'인지 여부

☞ 보건당국의 필요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외국인 대상 각종 신고·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은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인 '비상재해 등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위원회 결론에 따라 신속한 수의계약 및 시스템 구축으로 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기회를 확대*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 '19년, 12명 → '20년, 21명(적극행정공무원), '19년, 3명 → '20년, 21명(인센티브 부여)

| 표 2-4 | 2020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8개 사례)

구분	순위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19. 하반기 경진 대회	최우수상	외국인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	체류관리과
		거창법조타운 신축관련 적극행정 이행 실적	시설담당관실
	우수상	QR 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외국인정책과
		교정작품 쇼핑몰 구축	직업훈련과
	장려상	비행(非行)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	전주소년원
		수형자 신용회복 지원	안양교도소
'20. 상반기 경진 대회	최우수상	기관별 맞춤형 정보(통계)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	서울(출)외국인청, 이민정보과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 도주·잠적 해결 방안	울산(출)외국인사무소
	우수상	전국 읍·면·동 마을변호사 담당공무원 1,507명 지정	법무과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위치추적(중앙)
	장려상	외부 장애인단체와 협력 통한 지적장애 수형자 가석방 시행	군산교도소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사고 예방	홍성교도소
소·확·행 공무원	범죄예방 정책국	소방신호 연동 자동개폐 소화전 개발	치료감호소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대구(보)경주지소
	교정본부	민원 ARS 개선으로 민원인 편의 향상 도모	동부구치소
		화상접견실 환경개선으로 장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제주교도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지원센터 입주민 교육 학습권 보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인니선원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다	부산(출)외국인청

| 그림 2-9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20. 12.)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 사항 신설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②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개정('20. 8.)하여 감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면책 심의회 신설로 적극행정 면책 사건 처리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5) 적극행정 문화 확산

① 적극행정 체감 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등을 공유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하고, 기관장의 적극행정 우수현장 방문·격려('20. 2.), 적극행정 당부 서신 발송('20. 9.) 등 기관 차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② 적극행정 저변 확대

소속기관 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 홍보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자체 동영상·카드뉴스 배포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법무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 그림 2-10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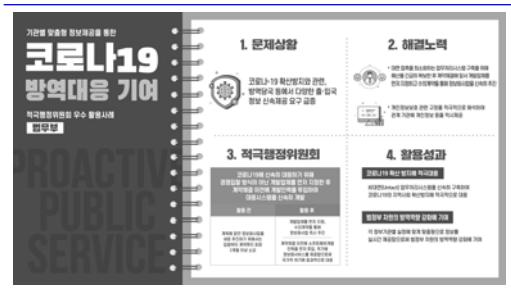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준석

가. 추진배경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0년 변화관리 교육과정은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6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3,500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표 2-5 | 2020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6개 과정, 3,500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솔루션 역량강화[1]	솔루션 6팀	50	7~11월	2회
		② 독서증진	전 직원	1,000	5~10월	6회
조직문화향상 (활성화)		③ 정부정책소통	소속기관	829	7~11월	40회
직무 역량 강화	교육	④ 전화외국어	전 직원	240	5~10월	3회
	워크숍	⑤ 청렴업무	업무 담당자	180	10월	
	연구모임	⑥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5팀)[2]	1,201	11월	
합계		6개 과정		3,500		

2)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①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20년 1,273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재해 재난(코로나19 등) 시 관제센터 업무연속성 확보' 등 총 216건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안자의 소속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 유도를 통한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②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0. 4월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개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국정보 등 실시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4건과 '회사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 제도 도입',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 등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1) 업무현장의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 과제별 팀을 구성한 후 팀원 간 토론과 협업, 문제해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Solution을 찾는 행정개선 기법

2)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1,201명)
- 바른급식사랑방 : 414명, 전자감독 : 666명, 임상심리 심리치료 : 12명, 미평여자학교 심리상담 : 9명, 심리치료 연구회 : 100명

| 표 2-6 |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법무공통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편의성 개선	최우수	형사사법시스템운영단
2		회사·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우수	상사법무과
3	범죄예방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법교육 교재(Q&A) 발간	최우수	보호정책과
4		수강명령 집행 종료 후에도 가정폭력·알코올 치료 계속 실시	우수	대전보호관찰소
5		소년원 상습규율 위반자의 성행개선 극대화를 위한 심리속행 제도 운영		광주소년원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ONE-STOP 원호 시스템〉 시행		청주보호관찰소
7		보호관찰 신고전용 프로그램 개발		보호관찰과
8	교정	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수	분류심사과
9		출정현황 자동프로그램을 활용한 출정행정업무 혁신	우수	의정부교도소
10		활동성 근무화 구매방식 개선을 통한 고품질 근무화 보급		서울구치소
11		원외처방전 발급을 통한 차입의약품 제도 개선		대전교도소
12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정행정 정책 해외 홍보 강화		사회복귀과
13	출입국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정보 등 실시간 정보공유	최우수	이민정보과
14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시스템 도입	우수	체류관리과
15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및 기관 간 협업조치		출입국심사과
16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국적신고 처리시스템 구축		국적과
17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이민조사과

| 그림 2-11 | '2020년 법무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방문, 정부정책 소통교육', '육아시간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활용', '연가사용 활성화로 쉼표 있는 삶 추구',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사무관 양상준

가.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민원서비스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6,965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4.6%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7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0. 1. 1. ~ 2020.12.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건수	36,965	27,603	9,125	237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마다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

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지역사회단체·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개선 가능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표 2-8 | 국민불편 주요 개선사례

연번	발굴경로	개선사항
1	국민신문고	법무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개편
2	국민신문고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3	국민신문고	출입국사범 범칙금에 대해서도 카드납부 추가
4	현장방문	체류지변경 신청서 문구 개정

3)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0년 접수된 총 639건의 국민제안 중 '보호관찰대상자 이행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등 28건을 채택, 16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결과 법무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추가 연장'과 '보호관찰대상자 이행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제안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제안을 추진·정책에 반영한 직원은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4)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0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80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반민원에서는 신청편리성(8.89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신속정확성(8.23점)이 가장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8.1점으로 전년도 대비 0.9점 상승하였으며, 단계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3.3점,

응대단계 89.4점, 종료단계 83.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민원·정책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사무관 양상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년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국민·기업과 함께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법무 분야 각종 법령 개정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불편사항 개선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 투명·효율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상가임차인 보호, 「전자문서법」개정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 확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불편·부담 해소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한글 성명 병기 등록외국인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전문 인력 외국인등록 전 근무처 변경 신고 허용, 농어촌 일손부족해결을 위한 농어촌 계절근로자 고용인원 일부확대 등을 통해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3)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 개선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시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 온라인 송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 신고제 정착,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지원 강화, 교정민원 안내 채팅 봇 개발,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 등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소속대학 관계자의 체류허가 단체접수 확대 및 온라인 접수 추진,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선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마련,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 출국 신고 허용,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신청 온라인 신청제 도입, 국적 신청 방문 예약제 시범 시행,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 체류지변경 및 여권변경 모바일신고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 자격 인정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을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코로나19 대응 등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권호연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12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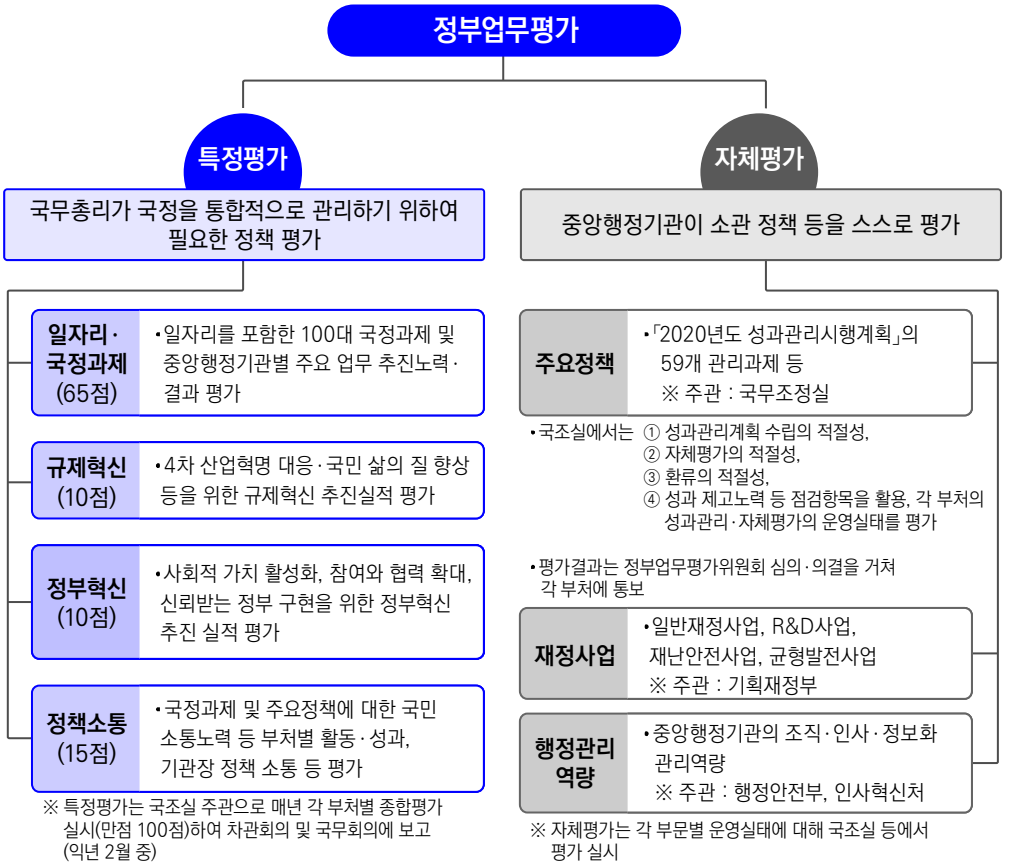

1)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20년도 평가부문 등을 확정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주관과제)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 • 최○○ 추징금 63억 원 전액 추징 완료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장치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0. 5월) 및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2020. 11월) 개정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지역토착형 비리, 금융비리 등 중대 부패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공익법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연 ※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관련「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20. 3월) •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 상승 및 심리적 지원 확대 ※ 제주 스마일센터 신설(2020. 10월)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인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 조속 마련 추진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수사권 개혁을 위한「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20. 2월) 및「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13개 하위법령 제·개정 • 검찰개혁 추진 -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기능 재편 ※ 2020. 1월 및 9월 직제 개정으로 27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 -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 등 검찰인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 대검찰청 감찰3과 신설(2020. 3월) ※「검사징계법」 개정(2020. 10월)	
(주요정책과제) 47.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난에도 불구, 비대면상담 도입을 통한 취업성과 제고 - 6,605명 참여, 수료자 2,288명 중 1,905명 취업(취업률 83.3%) •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포함, 채용유인기제 마련(2020. 1월) • 취업지원직 실무자들의 업무의욕 제고 및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직원 복무 우대조치」시행(2020. 2월) •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확대를 통해 출소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 '20년 일자리 우수기업 8개 선정, 189명 취업('09. 12.부터 누적 50개 업체 선정, 누적 1,153명 취업)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갱생보호사업 관련 개별 법률 마련 필요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9건 중 8건 완료 • 총 7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중 8건 개선·1건 폐지 •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제도 개선 등 과제를 자체 발굴 하여 40여건 개선 •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관련 정·부 기관장 현장행보 실적 14건, 대언론 소통 총 155건 등	•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일자리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국민의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공통자율과제 6개 분야 16개 과제) – 국민체감도 : 디지털 법교육 교재 발간, 전자보석제도 시행, 비자스티커 폐지, 교정시설 스마트 접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 추진	•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국민 체감 정책 발굴 필요 •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노력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언론 홍보) 장관 언론 인터뷰 및 브리핑을 적극 실시하고 브리핑 시 최초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병행하여 국민 관심 확보 • (국민 의견 반영) '온라인 의견 수렴, 장관과의 간담회, 현장점검'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취합된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사례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54년 만에 외국인 등록증 영문표기 개정)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법팟(팟캐스트), 브이로그, 웹 예능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국민 친화적 콘텐츠 개발로 온라인 소통 강화 – 2020년 법무부 유튜브 구독자 14,645명 증가 – 2020년 유튜브 총 조회수 약 810만회 (지난 3년 평균 대비 194% 증가)	• 외신 홍보 부족 – 국내외 현안 발생·외신 관심 부족 등으로 다양한 외신 홍보를 추진하지 못함 •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인지도 조사 부족 –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하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개 전략목표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 회복' 등 13개의 성과목표 및 5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수립된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정책 환류 및 소통', '평가역량 제고 노력도'의 5개 평가항목과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7%), 다소우수 8개(14%), 보통 17개(29%), 다소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3개(5%)로 나타났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법률상담 감소를 감안, 취약계층이 PC·모바일을 통해 주거지 내에서도 쉽게 실시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 및 확대하였다.

또한 단기사증 무효화 및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의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출입국 환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이방인 등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3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2020. 1. 29.)〉

〈제5회 자체평가위원회(2020. 7. 30.)〉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2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4개(20%), 보통 15개(65%), 미흡 4개(15%)로 3단계 등급화 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 분야에서는 업무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참여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해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법무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 분야에서는 법무부 훈령 반영 등을 통해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유지하였으나 교정시설 등 특수환경에 근무하는 공안직 업무 특성상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별도 지정 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5단계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및 사이버 안전 수준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20년 법무부는 주요정책 부문에서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환류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로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 행정관리역량 부문에서는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 '우수사례의 탁월성', '환류의 적절성' 등 전 항목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무부(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373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896개 부서 및 2만 3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4 | 성과관리와 BSC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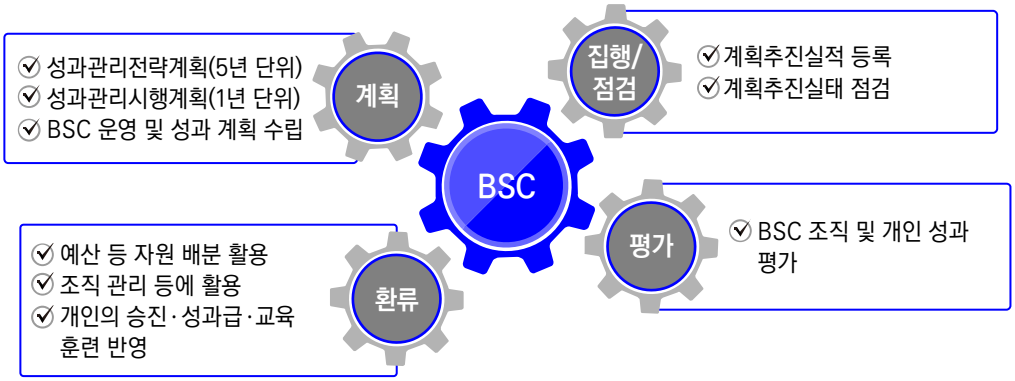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0. 12월말 기준, 총 28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18건으로 12건을 이행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 10건 중 5건은 이행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18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17.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종 료
2	2017. 7월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	종 료
3	2017. 8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	종 료
4	2017. 8월	국적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종 료
5	2017. 8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종 료
6	2017. 8월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종 료
7	2018. 1월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	종 료
8	2018. 2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종 료
9	2018. 2월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종 료
10	2018. 4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 상향	추 진 중
11	2018. 4월	범죄수익 환수 방안 마련	종 료
12	2018.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종 료
13	2019. 5월	정부·공공기관 부과금 연체가산금 등의 법정이자율에 대한 형평성 검토	추 진 중
14	2019. 12월	형집행법 제71조제1항 신설로 인한 취사 등 작업 사용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	종 료
15	2020. 2월	ISDS 대응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	추 진 중
16	2020. 4월	ISD 전담팀 위상 및 처우개선	추 진 중
17	2020. 7월	ISDS 대응	추 진 중
18	2020. 10월	학대 아동 보호제도 개선	추 진 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10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17.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추 진 중
2	2017. 10월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 (문체부)	종 료
3	2018. 3월	금융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금융위,중기부)	추 진 중
4	2018. 3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후속대책 마련 (국조실)	종 료
5	2018. 4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반부패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금융위)	종 료
6	2018. 4월	장애인 대책 점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복지부,고용부,문체부)	추 진 중
7	2018. 5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명확한 통계 확인 및 홍보 (교육부)	종 료
8	2019. 4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과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적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농식품부)	종 료
9	2019. 12월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브랜드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문체부)	추 진 중
10	2020. 12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문체부)	추 진 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을지태극연습 실시

2020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열병식 당시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대북정책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협상방향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 능력 시험, 핵 능력 과시 및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 소규모 도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코로나19 국면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훈련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비상대비태세 훈련(2020.10.28.~10.30.)을 진행하며 각 실국본부와의 정확한 소통과 원활환 협조를 통해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한편,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을 연 3회 실시하여 비상대비시스템 및 위성통신망 등 주요 통신

망을 점검하고 사용법을 숙달하였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법무부 비상대비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 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 그림 2-15 | 2020년 비상대비 훈련

중앙통제단 메시지 토의

위성통신망 설치 훈련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와 업무수행간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 등 법무부 충무계획을 개정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특히,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4차 산업기술 발달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의 법무시행계획 상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기관 자체 방호계획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방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관 총 51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연 2회 충무계획 시행태세 및 방호실태를 점검하여 점검대상 소속기관의 충무계획 미비점을 보완하고, 총기관리 등 방호실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개청 기관을 통합방위본부와 협의하여 즉시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함을 통해 법무부 방호태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평상시에도 법무부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기존 교정시설 재난에 한정되어 있던 재난 대응매뉴얼을 폐지하고 법무시설 전체를 포함하는 대응매뉴얼을 수립하는 동시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망라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2021.1.8.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승인됨에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당 소속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 소속기관은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 할 예정이다. 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법무시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지침으로 앞으로 안전한국훈련, 재난 점검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2) 안전대진단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30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안전 관련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과 핵심시설 위주 225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전 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진단을 실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 표준안전점검표를 각 기관에 맞게 현행화한 후 진단 시 사용하여 기존 대진단 대비 세밀하고 종합적인 점검이 가능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용동 지반침하 및 보 균열여부 점검, 구조체 균열 확인, 건축마감 확인, 옥상 방수 점검 등으로 재난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 그림 2-16 | 법무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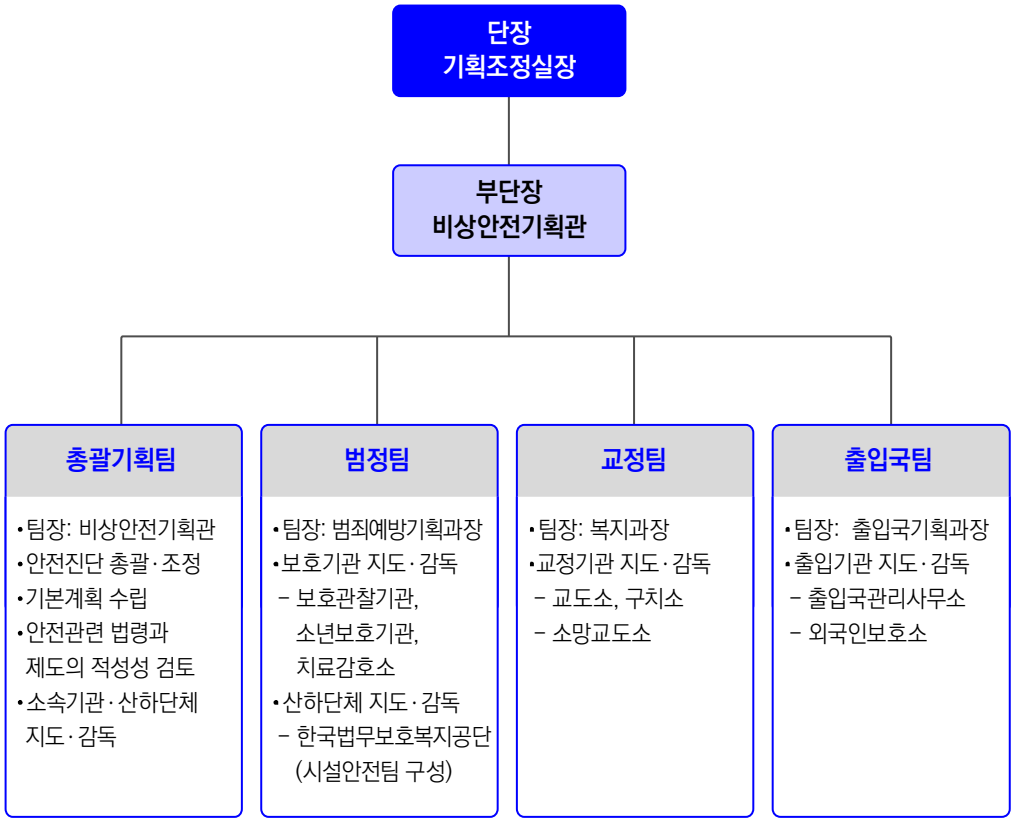

3) 동절기·하절기 재난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점검 실시

법무부 소속기관 재난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는 매년 하절기, 동절기 재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계절별 재난관리지침(20.7.11)을 시행한 이후 최근 5년간 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던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난 대비 지침 이행 실태와 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주요 점검사항으로 추가 지정하여 방역 취약기관 점검을 병행하였다. 총 40개 기관을(대면 17, 비대면 23)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조치, 재난 대응 매뉴얼, 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재난별 매뉴얼이 분산되어 비상 시 즉각 대응에 한계가 보였으며 화재대피도가 부착되어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었다. 점검 후 즉시 현장 시정과 추후 보완조치를 통해 각 기관의 취약요인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림 2-17 | 2020년 코로나19 방역점검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방문 점검

서울구치소 접견실 점검

4) 일일재난안전결산 제도 마련·실시

매월 소속기관 별 자체점검을 통해 평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무부 자체 일일 재난안전결산 점검제도를 2020. 1월부터 시행하였다. 매월 시의적절한 점검 테마를 정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반 시설물 및 장비 점검, 매뉴얼 등 각종계획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6월 중점점검테마는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장비 점검'이었으며 침수 우려 지역 물자확보, 산사태 및 붕괴 대비 점검 등을 실시하여 7월말 ~ 8월초의 호우 시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운영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본부 및 소속기관 방역관리 지침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의 본부 유입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및 복무 상의 방역관련 조치사항을 담은 「본부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 본부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차등에 따른 소속기관 업무 운영 범위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소속기관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재개안」을 수립하고 전 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인의 내부출입과 수용자의 외부출입을 최소화하는 등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소속기관 방역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생활방역팀을 구성,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 회의를 6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회의를 통해 「소속기관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재개안」, 「수용시설별 확진자 발생 시 대응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외부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역 정책 마련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관별 방역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생활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매주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기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생활방역팀 회의를 통해 기관별 방역물품 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일선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본부와 소속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안정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국민안전·법률복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김종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무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까지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현황 등 총 87종의 공공데이터[3]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0년에는 총 23종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였다. 법률사각지대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마을변호사

3) 공공데이터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컴퓨터파일, 데이터베이스(DB)등의 전자적 형태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

배정 현황」 데이터,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사건의 접수현황」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분쟁 국가별·업종별 법률지원현황」 통계는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의 국제법률지원에 대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한 사례이다.

특히, 2020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수요자 실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한 「법질서 동화 콘텐츠」 동영상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용자 대상을 맞는 개방한 비정형데이터로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해 개방하였다.

그 외 「공증실적 및 지정공증인정보」,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용어관리」 등의 법무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산하기관의 한국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을 돕고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보호의뢰 접수 및 구직자테이블 정보」 데이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상담 사무실안내 및 법률구조 사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

| 표 2-9 | 2020년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개방 데이터 수	주요 개방 내용
23종	• (인권침해사건 DB) 사건 단서별, 월별·분야별 신고접수현황 • (전자공증 DB) 지정공증인, 집행증서, 공증실적 등 • (생활법률지식서비스 DB) 만족도 조사, 용어관리 등 • (중소기업지원단 DB) 국제사건 국가별 통계, 업종별 통계 • (한국보호복지공단) 보호의뢰 접수, 구직자테이블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사무실안내, 법률구조 사례 • (마을변호사 제도)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 (비정형 데이터) 법질서 동화콘텐츠

3) 발전방향

2021년에도 국민 안전분야 및 사회현안 관련 통계 등 국민의 수요와 이용가치가 높은 법무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 개선, 오류신고 창구 상시운영, 데이터 관리 직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 정보화직원 대상 빅데이터 분석 활용사례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서종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하는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친화형 콘텐츠 개발, 신속·정확한 법무정책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대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중심으로 열린장관실 홈페이지를 개선(2020. 5. 11.)하였으며, 정부24에 정책정보를 연계·제공하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국민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관련 우리 부 대응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상황', '코로나19 종합정보' 등 메뉴 신설(2020. 3. 25.)하고,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화상면회 예약' 시스템을 개선(2020. 11. 26.)하였다.

아울러, 법무부 소식지를 단순 제공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법무정책 현장 소식, 채용정보, 공지사항, 통계자료 등 다양한 법무콘텐츠 중 국민이 받아보기를 원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선별하여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중앙부처 최초로 개설(2020. 12. 1.)하였다.

| 그림 2-18 | 법무부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메인

| 그림 2-19 | 법무부 고객 맞춤형 서비스 메인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원활하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점검·보완(2회)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 공인 인증 기관(웹와치)에서 발급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도 갱신(2020. 3. 5.)하였다.

3) 발전방향

2021년도에도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변호인 접견 등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대국민 신뢰도 및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고품질 법무지식 생산·활용으로 법무행정 역량 제고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서종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수범사례 등의 법무지식[4]을 등록·활용·보완하는 고품질의 법무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0. 3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 시 매월 셋째 주 '지식등록 주간' 운영을 통해 마일리지 점수(5점) 추가 적립 혜택을 부여하고, 조회·추천·댓글 등 수동적 지식활동에 의한 마일리지 획득 점수를 반기 8점(기존 10점)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지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법무지식 등록건수 143.2%(2,335건 → 5,678건), 지식등록자 수 44.5%(1,156명 → 1,670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식검증자로 지정된 실·국·본부 직원(60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검증기간이 7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되었고, 검증의견 작성 비율이 30.6%에서 31.9%로 상승하는 등 신속·공정한 지식검증 체계를 구축하였다.

분기별(3월, 6월, 9월)로 선정하는 우수지식인의 경우 25명('19년도)에서 20명으로 수상자를 줄이는 대신 2개 등급으로 구분한 포상금 차등화(A등급 20만원, B등급 10만원)를 도입·실시

4)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하였으며, 2020. 12월에는 연간 우수 기관(1곳) 및 직원(4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식활동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0. 7. ~ 8월 '법무지식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개인부문은 '전자여권 위·변조 검사를 위한 공개키 저장소 구축', 단체부문은 '정신질환수용자의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한 「정신과 응급 진료 시스템」 구축·운영' 지식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포상(개인부문 7명, 단체부문 4팀, 포상금 220만 원)하는 등 지식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5개(전자감독 등) 동아리에 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경진대회에 우리 부 3개의 학습동아리(바른급식사랑방, 임상심리심리치료, 미평여자학교 심리상담)가 선정되어 250만원을 지원받는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지금까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2021년에는 법무 지식활동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안들을 수립·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무 직원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원활한 소통, 정당한 평가 및 보상 등 기본을 준수하는 한편 지식사회에 적합한 명품 법무지식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업무 연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무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정혜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보통신망은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업무망, 인터넷망, 대외연계망 등 다양한 정보통신 회선을 연결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정보화 업무로 인해 네트워크 트래픽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빠르게 변화하는 법무행정 업무환경에 대비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품질 법무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현재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까지 포함된 회선 대역폭 증가와 생존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전송장비 개선, 회선 다중화 등의 법무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0년 사업을 통해 통신재난 발생에도 법무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정성 및 생존성 강화를 위해 회선사업자를 이원화하여 문제 발생 시 다른 회선사업자의 회선을 통해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구축하였고, 기관별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역폭에서 최소 3배~10배까지 증속하여 트래픽 사용률을 개선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 환경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노후된 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최신 전송기술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실시간 통신상황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시켰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업무망, 인터넷망, 백업망 등 영역별로 나누어진 각 전용회선에 대한 특성을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하여 최적의 전송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관 신설 및 이전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효율적·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운영기반에 대해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고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국가융합망[5]으로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부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마. 정보보호 인력 통합으로 보안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이용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킹기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형 해킹 시도 증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무행정정보는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관찰처분, 외국인 관리, 출입국심사 등 치안 유지 및 국경관리 핵심시설로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수 있어 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정보 유출 등의 보안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2011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를 서울특별시 목동에 신설하였으며, 2020. 11월 정부과천청사로 확장 이전하여 통합정보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서울특별시 목동에 위치한 법무사이버안전센터를 정부과천청사로 확장 이전하여 보안관제팀 공무원 6명, 위탁운영팀원 16명 및 358대의 사이버위협 대응장비를 이동하였다. 또한, 정보화

5)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정보통신망과 48개 정부 부처별로 구축·운영하는 개별통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하는 형태

담당관실 정보보안팀 공무원 6명 및 보안장비 71대를 법무사이버안전센터로 이동하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보안관제 등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기 대응 및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의 해킹기술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위협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등 205개 기관에 대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통해 6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사이버 보안강화 및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 및 차단하고 있다. 또한,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25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52개 홈페이지 및 549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였으며, 24시간 365일 철저한 보안 관제를 통해 홈페이지 해킹 시도 탐지 및 차단,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차단, 유해 IP·사이트 등록·차단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 및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매월 1회 보안 뉴스·동향 등 다양한 보안자료를 담은 보안 소식지를 제작하여 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는 매일 1회 보안 관련 주요 뉴스·핫이슈 등의 보안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최신 보안 동향 전파 및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일반 직원, 정보보안담당자, 정보화 부서, 용역업체 직원별 맞춤형 정보보안 교육(6회)을 진행하고 있다.

3) 발전방향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법무부 통합 정보보호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이버위협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강정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법무부·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 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0년에는 경찰과 사학연금공단 연금 대상자 정보 연계를 추진하는 등 공동 정보 활용 기관과 항목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공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이중화 테스트('20. 2.), DB 인덱스 재구축('20.4.), 장애모의훈련('20.5.), 백업·복구테스트('20.6.), 시스템 Health Check('20.8.~9.), 서비스 수준진단(SLA, 매월)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 간 406종의 정보를 하루 210만 건 상당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6,782만 건, 사건정보 등 누적 유통 약 63억 3,200만 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 처리와 관련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 사업인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용 변호사 사건조회 서비스 시행,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을 이용한 비밀번호 변경 방법 개선, '나의사건 등록' 기능 개선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썼다.

| 표 2-10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0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20. 12.)
포털 접속	5,619만 건	2억 9,557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86만 건	276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1,427만 건	7,584만 건
벌과금 조회	233만 건	1,782만 건
민원서비스	8만 건	53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원민정

현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10년 구축으로부터 11년이 경과된 노후 시스템으로, 눈부신 정보통신기술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노후하였다는 일선의 의견이 있어 왔고,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2018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은 '18년 BPR/ISP사업을 시작으로 '20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총 구축비 1,938억 원이 투입되어 '21년부터 '24년까지 구축 후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으로, '20. 8. 입법예고, '21. 1.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예정이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3대전략 14개 과제로 구성되며, 구축이 완성되어 새롭게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신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스템 구축 후 10년간 총 3조 3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종이기반 수사 및 소송자료 작성·유통을 탈피하여 전자화된 형태의 수사 및 소송자료를 작성·유통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민들에게 편리한 형사사법환경이 구축되어 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0 | 사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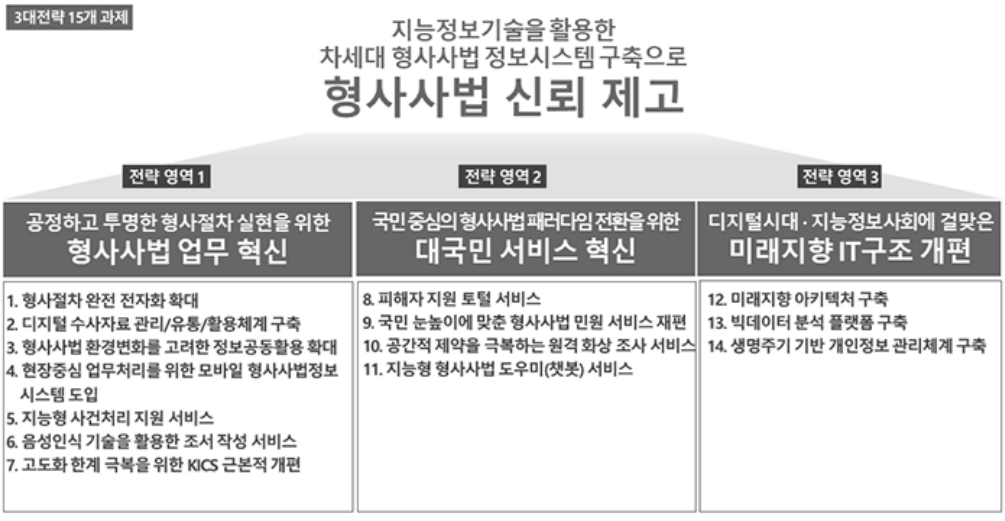

1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9.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전문경력관 2명을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사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19. 12월에 처음으로 수립하고 2020년도에 추진하였다.

기본계획은 교육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법무시설 개선 등 정책·제도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등 크게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합교육, 소속기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등 3가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혼합형(사이버교육+실시간 특강) 온라인 교육' 으로 시의 적절하게 전환하여 3개 과정, 7회, 610명(관리자 2회, 239명/일반직원 2회, 256명/양성평등정책 담당자 3회, 1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속기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였으며 46회, 1,779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의 경우 승진자 및 신규자 과정 등에 양성평등 과목을 편성하여 30회, 1,585명을 교육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부 간부 및 직원 101명 대상으로 젠더기반 폭력 등에 관한 인권교육, 성교육 및 가족친화교육 등 소규모 대면교육을 시범적으로 3회 실시하였다.

| 그림 2-21 | 양성평등교육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본부 간부 인권교육

한편, 영상, 캠페인 문구, 카드뉴스 및 한컷뉴스 등 다양한 성인지 콘텐츠 23건을 제작하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양성평등의 날'에 전 직원에게 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법무샘에 게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음성 파일을 '양성평등의 날'에 8회 송출하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성인지 메일을 전 직원에게 1회 발송하여 기관장의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천명하였다.

2) 정책·제도 분야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20. 4월 발족하고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낙태죄 및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는 임시회를 2회 개최하여 낙태죄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국방부와 협업하여 연예 병사가 출연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 홍보를 시도하였고, 여성계 및 아동·청소년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추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 그림 2-22 | 낙태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 대응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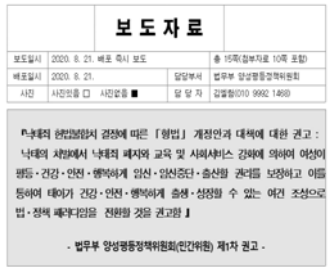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8. 21. 배포 즉시 보도		총 15쪽(첨부자료 10쪽 포함)
배포일시	2020. 8. 21.	담당부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담 당 자	김별참(010 9992 1468)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 낙태의 처벌에서 낙태죄 폐지와 교육 및 사회서비스 강화에 의하여 여성의 행복·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등이 태어나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함」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 제1차 권고 -

낙태죄 입법방향 권고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

한편, 개선사항 발굴 및 실태조사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였다. 법무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개 기관에 대해서 남녀 휴게실 마련, 여자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 5천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아이디어 6건을 포상하였다. 특히, 법무부 소속 공무원 1,29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사관리, 일·가정 양립, 성인지 감수성 등 4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제언을 2021년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매뉴얼 발간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충처리시스템 강화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전 소속기관에 발간·배부('20.1.)하여 성희롱·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 훈령)'을 개정·시행('20.5.)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취소 절차 등을 정비하였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에 5건의 성희롱 고충사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및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징계의뢰 등 절차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다.

| 그림 2-23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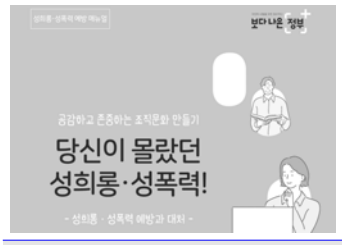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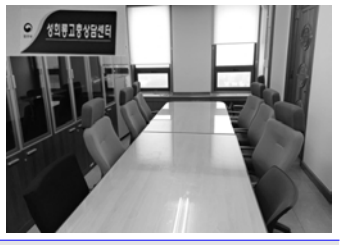

성희롱고충상담센터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해 법무부 직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발족 등 제도적 확충을 통해 부내 양성평등업무 전담조직으로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20년 업무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과 법무부 양성평등 수준진단 결과 등을 「'21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할 것이며,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상징적인 양성평등정책을 넘어 장기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2020년, 법무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 운영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무·검찰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일선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759개 과정, 6,789회, 279,247명(집합교육 133개 과정, 199회, 8,013명/사이버교육 626개 과정, 6,590회, 271,23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원 기준 전년 대비 34.9% 증가(집합교육 3,841명 감소, 사이버교육 75,970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간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집합교육의 경우는 연초 계획 대비 달성률은 약 63%인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중단, 진천본원 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제공 등으로 교육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수 과정의 사이버교육 전환에 따라 사이버 교육계획 달성률은 약 206%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집합교육이 필수적인 일부 과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사이버교육 전환 및 실시간 화상교육 도입 등 탄력적인 교육운영으로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집합교육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지는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인 사이버교육 시스템 확충, 질 높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집합교육에 준하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권의식이 투철한 법무·검찰 공무원 양성을 위해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였다. 단계별·타겟형 교육과정 내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직렬 및 직급별로 인권의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교육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숙지토록 하여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법무부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 회의를 통해 검사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방안을 논의, 추진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간감독자 인권의식 향상' 과정을 신설하였고,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대상자별 올바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법무·검찰 구성원 개개인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인권의식 내재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집행 전반에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무관행을 확립하여 법질서 확립과 인권존중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최인영

1) 저년차 검사 교육과정 개편

가) 추진배경

교육 대상자가 유사한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및 전담별 타겟형 교육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중복되어 교육 참석이 일선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2020년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및 타겟형 과정을 개편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에 발맞춰 타겟형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형사부, 공판송무부 관련 교육을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필수/선택)에 통합하고 교육 주관을 대검찰청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을 필수과정(강력, 여성·아동, 공판 등)과 선택과정(서민다중피해범죄, 조세·관세, 특허·지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대상, 기간, 과목을 세분화하는 등 교육체계를 개편하였다.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필수)에서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토론수업 및 인문학 등 소양과목도 편성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2020. 5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38명의 저년차 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여 저년차 검사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간을 선택하여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및 타겟형 과정을 개편하여 한 번의 교육 참석으로 기존 2개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청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선택)을 신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교육주관이 대검찰청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장기적·체계적 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경제범죄 심화과정' 신설 및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에 따른 교육 강화

가) 추진배경

2020년 '경제범죄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형사부 검사에게 실질적 부담이 되는 복잡한 경제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나) 추진내용

형사부 검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설된 '경제범죄 심화과정'은 5~10년차 검사 중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필수),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등에 '개정 형사법령의 이해' 과목을 편성하여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새로운 검찰 업무 시스템에 관한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경제범죄 심화과정'을 도입하여 복잡한 경제 사건 및 민생사건의 수사 역량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으며, 2021년에는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선택 과정(경제범죄 심화)을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3) 검사 대상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가) 추진배경

인권의식 체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법무·검찰 구성원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법 집행 전반에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업무관행을 확립하여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법무행정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2020년 검사 단계별·타겟형 교육과정 내 인권 및 양성평등 교과목을 확대하여 연간 9개 과정, 11회, 435명을 대상으로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압수수색, 체포구금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는데, 검사 단계별 교육과정 전반에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숙지토록 하여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 관련 감찰사례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인권 현안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외부강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인권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을 실시하였다.

2020. 8월 법무부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여 '신임검사 교육',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임검사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의 이해', '인권과 소수자 보호' 등 강의뿐만 아니라 인권·양성평등 사례에 대한 토론 등 참여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차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개 및 우리 사회의 인권', '양성평등'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검사 대상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에는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의 논의를 반영하여 법무연수원 자체적으로 검사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사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통일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실무 중심 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강화

1)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심규식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부터 법무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육 폐지에 대비하고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임검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결정문 작성방법 등 사법연수원 과정을 3~4월에 집중 교육하는 입교준비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총 132명을 대상으로 2020. 5월부터 2021. 1월까지 4쿼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경력 신임검사 37명은 2020. 9월 2쿼터까지 5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9기 및 변호사시험 6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95명은 2020. 10월부터 11월까지 3쿼터 일선 청 실무수습까지 종료하였고, 이후 2020. 12월부터 2021. 1월까지 4쿼터 과정을 거쳐 수료할 예정이다.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형 실습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직무교육 분야에서는 사건 처리의 기본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 중심의 기록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증대하였다.

사기 등 민생범죄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여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등 민사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에서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간병살인, 혐오표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인권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롤플레잉 조사실습'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쟁점 파악능력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신임검사가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통해 공소 유지 능력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디지털 증거물의 추출 과정 등 참관을 통해 일선청에서 필요한 수사지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인문학 토론 등 소양교육과 멘토-멘티 방식으로 직무교육과 생활 상담 전반을 밀착 지도하는 1:1 튜터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공감·소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문학 강의의 영역을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고, 사회 저명인사 등 우수한 강사풀을 마련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교육 과정 운영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김해경

가)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집합교육 운영 시 거리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역지침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언택트 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검찰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 과정 등 승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할 교육과정의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시작 전에 모든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건강상태, 해외방문 이력, 감염 위험 장소 방문 여부 등을 사전 문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교육 진행시에는 진행요원 외에 별도로 방역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매 수업 시간 전 교육생 발열 체크, 손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강의실 환기 및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검찰직 대상 '민원사무 실무', '영장실무' 과정에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다. 화상 교육 프로그램인 웹엑스를 선정하고, 직렬별로 실시간 화상교육 전용 강의실을 마련하여 최신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 등을 구비하였으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생들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등 원활한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발전방향

향후 신규자 교육 등 필수교육과 강의 중심형 교육 과정에 실시간 화상교육을 폭넓게 활용하는 등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실무』 교재 발간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교사 강인석

가) 추진배경

교정공무원으로서 수용자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의 단순 암기보다는 직무와 연계된 실무능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신규 교육생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실무』 교재를 발간하여 활용하였다.

나) 추진내용

2020년 신규교정직 7급(30명), 9급(246명) 교육생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실무』 교재 사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정실무』를 기본교재로 채택함으로써 법무연수원 교육과 현장 업무와의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교정실무』 교재는 보안, 출정, 직업훈련, 사회복귀 등 분야별 업무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신규직원의 현장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용 후 실제 교정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 교정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실무』 교재를 통해 일선 교정현장에서의 업무를 분야별·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신규 교정직 공무원의 실무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하고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통해 임용 후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정연수부 교수진들의 교안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재제작에 사용되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정직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에 따라 2021년도 6급 이하 승진시험이 『교정실무』에서 출제될 예정으로 신규 교육생에게 승진시험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향후 매년 개정작업을 통해 최신법령과 행정규칙, 판례와 실무상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교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 그림 2-24 | 교정실무 교재 발간

권별	상세 내용	권별	상세 내용
	보안, 출정, 수용기록, 의료 등 4개 분야		총무, 직업훈련, 사회복귀, 복지, 접견영치,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 7개 분야

4) '교정호신술' 교안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김충호

가) 추진배경

교정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 직무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교정호신술 교안을 개발하여 일선기관 기동순찰팀(CRPT) 등 수용관리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전국 교정기관별 자체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추진내용

일선기관 무도직원 및 기동순찰팀(CRPT)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교정호신술' 교안을 개발하여 2020. 7월에 발행하였고, '교정호신술' 직무교육 과정을 신규 편성하여 교정직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2020. 9월과 11월에 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69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교정호신술과 연계하여 법무연수원 본원 직원 중 희망자 27명을 대상으로 2020. 10월 호신술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발생 시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상황별 위기 대처법 및 호신술 기본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표준화된 교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선기관 수용관리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제고와 함께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용자에게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경우 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수용자 인권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유관 기관 및 법무부 타직렬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교육 대상, 과목 등을 다양화하고 교육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오순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표 2-11 | 2020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이문한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이종혁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신지선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위 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 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우	
위 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정민	
위 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형관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에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 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주제 4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0년 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 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 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12 | 2020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진 외국 법무·검찰 교육제도 비교 연구	논정법치문화연구소 이완규
2	2020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 미림미디어랩
3	신임검사 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형사증거법 이론과 판례 연구]	충남대학교 이창원 교수
4	신임검사 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재산범죄와 관련된 쟁점과 법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창온 교수

마. 법무한류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신은진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교·경제 협력 공간 확대'라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연수과정을 확대하여 왔고, 해당 국가의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법무행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 주요 성과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운영하여 위촉대상국을 확대하고, 전담 교수를 지명하여 대검찰청 및 법무부 연수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선진 법·제도들이 자국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0. 11. 9. 제14대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우즈베키스탄 대검 소속 검사 아이마토브 엘베크를, 11. 23. 제15대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베트남 하노이 검찰대학 부총장 응웬 둑 하잉을 각각 위촉하였다. 위촉된 비상임 연구위원들은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자국의 사법제도를 강의하는 한편,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이하 'NDFC'라 한다) 및 범죄수사과, 수원지검의 증거분석실 등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도들을 경험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황철규 연구위원이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회장 자격으로 2020. 2월 미얀마 및 캄보디아 검찰총장을 예방하고, 2020. 10월 CIS(독립국가연합) 10개국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과 각국 검찰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검사협회가 추진하는 국제형사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 그림 2-25 | 2020년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 및 활동

제15대 응웬 둑 하잉(Nguyen Duc Hanh) 베트남 검사 위촉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연수

3)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1) 추진배경

진천본원은 넓은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교육생 의견수렴을 거친 일관되고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용인분원은 1988년 준공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 배관 부식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2019. 9월 황철규 연구위원의 국제검사협회 회장 취임 이후 각 대륙별 검사그룹의 전문교육, 국제회의 등이 가능한 '국제검사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20. 2월 배용찬 기획부장(代)을 팀장으로 하여 '법무연수원 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법연둘레길 정비, 테마정원 조성, 함박천 수변공간 조성, 체력단련실 확장 등을 추진하였다.

법연둘레길은 2017. 11월 조성된 5.2km의 비포장 산책로로, 기존에는 산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교육생 이용이 미흡하였다. 이에 2020. 5월 칼라 콘크리트 포장, 마사토 등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정비하였으며, 본관 및 행복관 주변에는 팬지, 사철장미, 칸나, 베고니아, 메리골드 등 여러 종류의 꽃을 식재하여 테마정원을 조성하였다.

산책로 주변에는 정자쉼터, 파라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푸르른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함박천 주변의 잡풀을 베고, 수정연못에 비단잉어, 붕어를 풀어놓는 등 친수공간 조성 및 조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30명 정도 수용 가능하던 240㎡ 면적의 체련단련실을 100㎡ 확장하고,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림 2-26 |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법연둘레길 정비

테마정원 조성

용인분원은 2020. 4월부터 7월까지 본관 3층의 노후화된 도서실 공간을 계단식 방사형 구조로 설계하여 150명 수용 가능한 신임검사 통합강의실을 신설하였고, 10월부터 11월까지 강의실 화장실과 생활관 41개실을 리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지원하고, 집중도 및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교육 효과 제고를 도모하였다.

| 그림 2-27 |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신임검사 통합강의실(정의마루) 신설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교육생 숙소 시안

3) 향후 계획

진천본원 생활관은 천장형 온풍난방 시스템으로, 겨울철 바닥이 차고 실내습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불충분한 난방, 건조한 공기로 교육생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설문조사 시 불편을 호소하는 교육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절기 교육생의 건강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사업으로는 본관, 소강당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 및 교육장, 회의실, 생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1. 3월부터 2022.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통해 노후화된 용인분원 시설 개선을 지속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 기관장 소통 강화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방송 출연 및 인터뷰(8회)

법무부장관은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MBC〈뉴스데스크〉(6.1.), 제주 KBS(4.2.)에 출연하였고, tbs〈김어준의 뉴스공장〉(2.19.), KBS1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4.1.), CBS〈김현정의 뉴스쇼〉(5.29.), 한겨레 신문(5.1.), 형사정책연구원(5.26.), 영남일보(6.23.)와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 대책 △디지털 성범죄 엄중 대처 △검찰개혁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법무부의 핵심적 정책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유의미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차관 또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8.21.)에 출연하여 △코로나19 방역 저해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엄정 대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였다.

| 그림 2-28 | 법무부장관 방송출연 및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한겨레신문

영남일보

MBC 뉴스데스크

나. 언론 브리핑(9회)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관이 직접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관련 브리핑(3.24.)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관련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4.2.)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8.21.)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9.21.) △검찰총장 감찰결과 발표(11.24.)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12.16.)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12.29.) 등 총 7회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차관 역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합동 브리핑(8.28.) △교정기관 코로나19 집단감염현황 및 대책 브리핑(12.31.)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였다.

| 그림 2-29 |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관련 브리핑(3.24.)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8.21.)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합동 브리핑(9.21.)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관련 합동 담화문 발표(4.2.)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12.16.)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12.29.)

다. 기자 간담회

언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기자 간담회'를 총 2회 진행하였다. 장관 주재로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 개소식 및 간담회(2.6.) 및 법조출입기자 간담회(2.11.)를 개최하였다.

라. 언론 기고

주요 법무정책 홍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및 차관 명의의 언론 기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중앙일보, 4.23.) △"안심밴드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한국일보, 4.15.) 등의 기고문을 통해 법무정책의 내용와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그림 2-30 | 법무부장·차관 언론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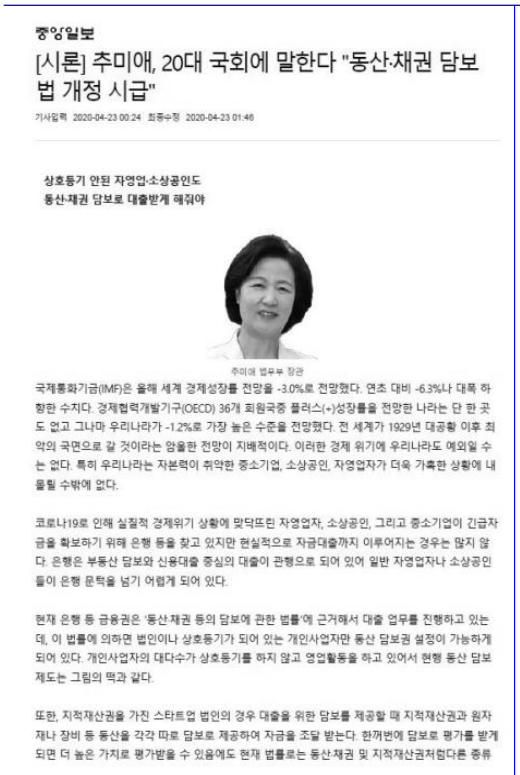

중앙일보

[시론] 추미애, 20대 국회에 말한다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 시급"

기사입력 2020-04-23 00:24 최종수정 2020-04-23 01:46

상호등기 안된 자영업·소상공인도
동산·채권 담보로 대출받게 해줘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전망했다. 연초 대비 -6.3%나 대폭 하향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중 플러스(+)성장률을 전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1.2%로 가장 높은 수준을 전망했다. 전 세계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욱 가혹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 경제위기 상황에 맞닥뜨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긴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등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대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은행은 부동산 담보와 신용대출 중심의 대출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법인이나 상호등기가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만 동산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의 대다수가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행 동산 담보제도는 그림의 떡과 같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할 때 지적재산권과 원자재나 장비 등 동산을 각각 따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 받는다. 한꺼번에 담보로 평가를 받게 되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법률로는 동산·채권 및 지적재산권처럼다른 종류

(중앙일보, 4.23.)

한국일보

2020년 04월 15일 수요일 A25면 오피니언

기고

'안심 밴드'가 인권침해가 아닌 이유

김오수 법무부 차관

코로나19의 확산이 작년부터 상당히 완만해지는 추세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생활방역이 가능한 수준인 30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반가운 신호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세계 주목의 결과가 감염병으로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여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할 수는 없다. 해외 유입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자가격리 위반자는 그제서 격정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가격리 위반자만 2000명에 달한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행자는 막을 수 없었다.

우리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밴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다만 모든 자가격리 대상이아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착용시키기로 하였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심 밴드' 착용이 실질적으로 전자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언론,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안심 밴드'는 손목에 차는 전자장치라는 점에서 기존 전자감독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전자감독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성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죄자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도입된 전자감독 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살인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7대 강력사범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서 전자감독을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형사사법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신 구금을 최소화하는 인권 친화적 수단으로 전자감독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전자감독 제도가 인권침해적제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만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에게 전자감독을 실시하지않을 경우 그들이 다시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영원히 가두어두는 것이다.

전자감독이 갖는 자유침해적 측면에 주목하여 우리도 외국처럼 각종 인신구금을 줄이기 위해 전자감독을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8월부터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전자 보석'과 가석방 출소자에 대한 전자감독도 본격실시될 예정이다.

우리 방역당국이 도입하는 '안심 밴드'는 휴대전화와 연동하여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보조수단이다. 따라서 이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게 부착하여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현행 전자감독과 성격이 다르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가급적 보장하면서 발전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방역과 행정인력의 소모를 줄이는 '안심 밴드'를 적극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일보, 4.15.)

2. 언론매체와 원활한 소통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국민-법무부-언론 간 소통의 공간「의정관」개소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법무부 대변인실의 분실 '의정관'을 개소(2.6.)하였다.

의정관에서는 각 실·국·본부장이 2020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11회의 브리핑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법무실 법무실장, 3.17.) △무비자 입국 중단 및 단기사증 효력 정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4.9.)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장, 4.28.)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체복무제' 구현(교정본부 교정본부장, 5.21.)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8.13.)가 있다.

또한 법무부의 각 직렬별(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 전문성이 강한 업무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국·본부 업무 현황을 주제로 '브라운백 스터디'를 기획하였다. 브라운백 스터디는 각 담당과장 및 실무자들과 기자들이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답하는 형식으로 △난민정책 및 난민심사제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장, 7.16.) △보호관찰제도 및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제도(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장, 9.23.) △수용자 심리치료 프로그램(교정본부 심리치료과장, 11.4.) △가석방제도 및 분류심사제도(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11.18.) 등을 주제로 총 1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 그림 2-31 | 의정관 브리핑 및 브라운백 스터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관련 브리핑(법무실장, 3.17.) (사진=연합뉴스)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으로 바뀐다」 관련 브리핑(기획조정실장, 8.13.)

브라운백 스터디(난민정책과, 7.16.)

브라운백 스터디(심리치료과, 11.4.)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실질적인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 정책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 940건에 응대하였고, 보도자료 408건을 배포하여 법무 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왜곡 보도·비판 보도에 대해 93건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상세히 전달하였다.

3. 가짜뉴스 대응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가짜뉴스 대응

법무부는 대변인실 및 각 실·국·본부별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법무부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보도 당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이를 인용하여 기사화하였다. 또한 카드뉴스를 제작, 법무부 홈페이지 및 법무부 SNS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정 외국인 연예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홍보대사가 아닌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원일 뿐임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였고 해당 언론사에 정식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등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언론사에서 법무부의 설명을 기사화 하였으며, 해당 언론사가 기사 문구를 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팩트체크 카드뉴스 제작

피의자 해외도피 시 국내 소재불명에 의한 지명수배 처리 절차에 대한 오해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였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정확한 설명을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 법무부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하였고,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

| 그림 2-32 | 팩트체크 카드뉴스

4. 디지털소통 강화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화

2020년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온라인 콘텐츠가 한 단계 도약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딱딱할 수 있는 법무 정책을 법무부 내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홍보하는 '브이로그' 시리즈는 조회수, 댓글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의정관에서 진행된 주요 브리핑 중 핵심 내용을 요약. 임팩트 있게 구성한 '서초동 203호' 시리즈는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그림 2-33 | 법TV '브이로그'

| 그림 2-34 | 법TV '서초동 203호'

또한 영상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스토리텔링 중심의 카드뉴스·웹툰 등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풀어낸 웹툰 시리즈 '법무부스토리'를 통해 법무부 실·국·본부별로 운영 중인 정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그림 2-35 | 카드뉴스 – 법뉴스

| 그림 2-36 | 웹툰

나. 팟캐스트 법팟 개설

유튜브, 네이버TV 등 영상콘텐츠 기반의 채널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 트렌드에 역설적으로 순수 오디오 매체인 팟캐스트 콘텐츠 이용 수요가 증가하였다. 세계 팟캐스트 시장이 연평균 24.6%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6년에는 418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2020, 리서치앤마켓츠 조사). 이는 쏟아지는 영상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가 팟빵 등 오디오 콘텐츠 인프라까지 이용범위를 대폭 확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법무 정책 주요 수요층인 3040세대의 팟캐스트 이용 비중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더불어 대국민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2020. 6. 5. '정통 법캐스트, 법팟' 채널을 개설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디지털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상법 개정」을 소재로 한 5가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

더불어, 법팟 오디오 파일을 재정리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것 1·2편(2020. 6월)」,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1·2편(2020. 7월), 「디지털 금융범죄 대처법 1·2편(2020. 7월), 「유튜버가 꼭 알아야 할 디지털 저작권 1·2편(2020. 8월)」, 「재벌개혁의 시작, 상법 개정안 1·2편(2020. 8월)」 등으로 재편집 후, 법무부tv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 그림 2-37 | 팟캐스트 법팟 채널 화면

다. 법TV 라이브 진행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정책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행사를 비대면행사로 전환하고,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TV」를 비대면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020. 3. 31. 「범죄예방정책국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전 워크숍」을 법무부TV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였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2~3개월간 진행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라이브로 진행한 것은 부처 최초의 일이었다. 이후 2020. 11. 25.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2020. 12. 1.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를

법무부TV 라이브로 진행하였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020. 12. 16.)」을 부처 최초로 법무부 TV를 통해 라이브 중계 하였고,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2020. 12. 29)」,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2020. 12. 31.)을 생중계 하는 등 법무부TV 라이브 방송 및 중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갔다.

| 그림 2-38 | 법무부 TV 라이브 주요장면

5. 국민 참여 홍보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운영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총 12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은, 2020년에 초·중·고·대·일반성인부 총 50명이 선발되어 12개월 간 주요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였다.

법무부 블로그기자는 법무현장 취재, 법무정책을 소재로 한 기획기사(카드뉴스)제작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법무현장 취재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블로그기자가 12개월 간 생산한 기사는 총 558건으로 법무부 대표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과 기자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게재 되었다.

나. 2020 웹툰 공모전 개최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2020 웹툰 공모전'을 개최했다. 국선변호인제도, 교정시설 님비현상 극복,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사전에 소재를 제공, 참여자가 원하는 소재를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했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모전 개최를 알리는 영상콘텐츠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 그림 2-39 | '2020 웹툰 공모전' 홍보 포스터 및 홍보영상

2020.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73편의 웹툰이 접수됐고 17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법무부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에 게시하여 홍보콘텐츠로 활용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예빈 등 수상자 17명은 향후 법무부 정책 홍보를 위한 웹툰 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 그림 2-40 | '2020 웹툰 공모전' 주요 수상작품

다. 대국민 쌍방향 소통 콘텐츠 제작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법TV는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 콘텐츠, '국민의 콜센타'를 기획·제작하였다. MC박슬기·래퍼 슬리피가 출연하여 실시간 화상채팅 방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과 연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을 시도했다.

| 그림 2-41 | 법TV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의 콜센타'

6. 부처 협업 홍보

●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교육부 협업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기획국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홈페이지 '법사랑 사이버랜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공식 SNS채널에 홍보하고 콘텐츠 확산을 위해 교육부 SNS 채널에도 공유하였다.

| 그림 2-42 | 교육부 협업 콘텐츠

나. 국토교통부 협업 홍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에 개정법의 취지와 목적, 효과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제작·게시 단계에서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보다 쉽게 소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Q&A 카드뉴스'를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 임대료상한, 전월세전환 편으로 나누는 등 심층 콘텐츠를 제작하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SNS에 게시 및 KTV 송출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쌍방향 온라인 소통' 방식을 활용한 웹예능 '박슬기·슬리피의 국민의 콜센타'를 기획·제작하여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대표 10명을 차례로 연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과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였다. 특히 담당부서 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하여 국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그림 2-43 | 국토교통부 협업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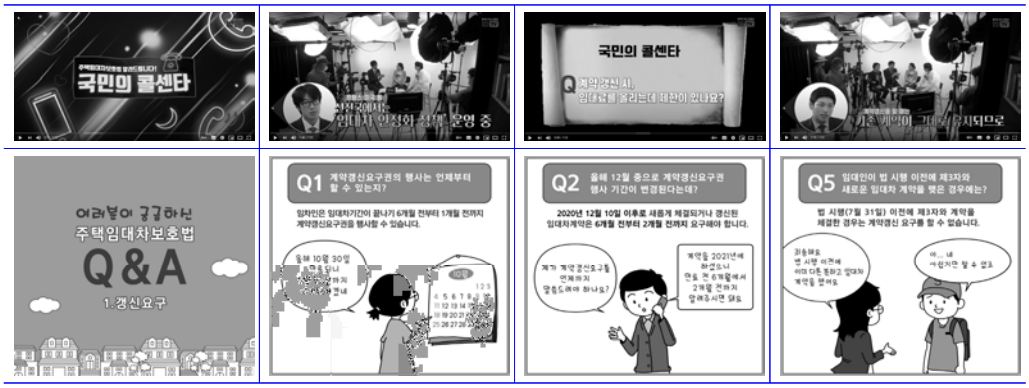

7. 홍보 교육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법무부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3회에 걸친 홍보 교육을 진행하였다. 1차(5.29.)는 '보도자료 및 기고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6.26.)는 '홍보 트렌드 및 정책 홍보 방안', 3차(7.15.)는 '위기관리 실행전략·언론의 오보·왜곡 보도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밀도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8.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법무부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주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꾸준하게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차관주재로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장관정책보좌관, 실·국·본부 주무과장(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총 49회 개최하여 법무부 전반의 정책 홍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상법 개정 △디지털 성범죄 방지 공익광고 △휴가철 성범죄 예방 캠페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지역 스마일센터 △유튜버 '허팝' 채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마을변호사 제도 등 주요 법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제3절 법무업무

1.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임성택

가. 추진배경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 법제 개선 요구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었다. 법무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구체적인 안에 대해 연구하고,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 및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 제도 도입을 주도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정의 절차·효력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들을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업무를 부동산 시장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법무부는 주택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하였다.

우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통지기간의 종기를 기존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였다('20. 6. 9. 주임법 개정). 이를 통해 임대인·임차인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거주지 및 임차인을 찾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종료 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도를 도입하였다('20. 7. 31. 주임법 개정).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적어도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갱신 시에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증액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에 허위의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산정률을 기존 '기준금리+연3.5%'에서 '기준금리+연2%'로 하향조정('20. 9. 29. 주임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주거문제에 대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 임대차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개선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당사자들이 원활하게 해결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국민들이 임대차분쟁 발생 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설치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 7. 31. 주임법 개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개 지역본부와 한국부동산원의 6개 지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체화하였다.

한편, 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기존의 조정 각하 사유에서 피신청인의 무응답을 삭제하였으며, 조정성립을 위하여 수락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로 연장하였다('20. 6. 9. 주임법 개정).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일련의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였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였는바,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증진은 물론 임대인·임차인 간에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형성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에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분쟁 상황에 대한 연구 수행,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신설된 제도들이 주택시장 및 국민들의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안정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정비

●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홍정

가. 추진배경

2020년도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제약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우선적으로 임대료 부담의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주요 업무를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정책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추진하였다.

한편 '19. 4. 17. 출범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가임대차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 지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소비지출 위축, 영업제한 등의 어려운 상황을 겪는 상가임차인들의 영업 보호를 위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20. 9. 29. 상임법 개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차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거절, 계약 해지 등의 요건이 되는 차임 연체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였다.

또한 영업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고, 임대인들이 큰 폭의 차임 감액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액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의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상가건물 임대차제도 운영 관련 법제 개선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20. 7. 31. 상임법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련하였다('20. 10. 20. 상임법 시행령 개정).

한편, 국민들이 임대차분쟁 발생 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설치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 7. 31. 상임법 개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개 지역본부와 한국부동산원의 6개 지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구체화하였다('20. 10. 20. 상임법 시행령 개정).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임대차법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상가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법무과 서기관 윤성훈

가. 추진배경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조계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법치주의 보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18. 10.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 존재한다고 답변
  ② '19.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의뢰인 95.1%(매우많음 56.7%, 약간있음 38.4%), 변호사 77.8% (매우많음 13.2%, 약간있음 64.6%)가 존재한다고 답변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19. 11. 8. 개최된 제5차 반부패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였고, T/F 회의에서 변호사의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 단계까지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개입될 수 있는 모든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20. 3. 17. 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관련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학계·법원·검찰·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0. 5.부터 '20. 10.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① 개정안 내용의 타당성, ② 체계·자구·형식의 정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위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 11. 30. 이를 입법예고하였다.

다.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내용('20. 11. 30.)

| 표 2-13 |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table>
<tr><td>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관련</td><td>•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기간을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 퇴직 시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연장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rowspan="3">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처리 사건 퇴직 후 1년 수임제한 (1-1)</td><td>재산공개대상자* : 3 - 3</td></tr>
<tr><td>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 - 2</td></tr>
<tr><td>그 외 : 1 - 1</td></tr>
</table>
* 1급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공수처장·차장 등
**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 재산공개대상자의 수임제한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므로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 역시 3년으로 연장</td></tr>
<tr><td>몰래변론 및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 제재 강화</td><td>• 몰래변론 처벌 강화 및 과태료 규정 신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rowspan="2">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td><td>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설</td></tr>
</table>
•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 처벌 강화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td></tr>
<tr><td>법조브로커 퇴출방안</td><td>•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 정의규정 신설 통해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여부를 명확히 함
•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및 과태료 신설
- 연고선전 금지 대상을 기존 재판·수사 공무원에서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기관 근무자까지 확대
• 사무직원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 신설
•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규정 보완
• 재판·수사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개·알선행위 처벌강화</td></tr>
<tr><td>법조윤리협의회 기능강화 및 징계기준 마련</td><td>•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 의무 부과</td></tr>
</table>

라.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①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기관 근무자에 대한 연고 선전 금지 확대,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이 조성되며, ③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 법무과 행정사무관 설기석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한편, 법무부는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2020.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나. 제도의 의의

1)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마을주민이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통해 마을변호사 정보 및 현장상담 가능 여부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 표 2-14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성과

구 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후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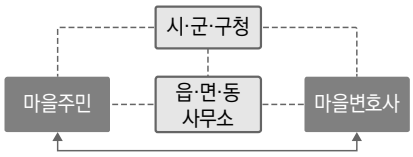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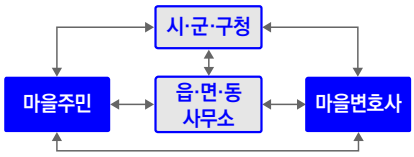
마을주민	- 마을변호사 정보 알기 어려움 - 주로 전화·이메일 등 유선상담만 가능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음 - 현장상담 기회 확대
마을변호사	- 제도를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음 - 마을에 찾아가 현장상담 하고 싶어도 마을의 협조가 부족	- 지역 단위의 적극적 제도 안내·홍보로 변호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 - 상담 장소 마련되어 마을변호사 희망 시 정기적인 현장상담 가능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3)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했고, 그 결과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19. 8월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14개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였으며, 2020. 4월에는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다.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2013. 6월 250개 읍·면에서 415명의 제1기 마을변호사로 제도를 출범하였으나, 배정지역 및 마을변호사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20.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49명의 제5기 마을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 표 2-15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 6월~'14. 6월)	제2기 ('14. 6월~'16. 6월)	제3기 ('16. 6월~'18. 6월)	제4기 ('18. 6월~'20. 6.)	제5기 ('20. 7월~'22.7월)
배정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49명

| 표 2-16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담건수	232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제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9,589건에 달하며, 마을변호사가 상담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5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변호사를 위한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44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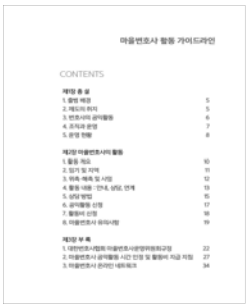

마을변호사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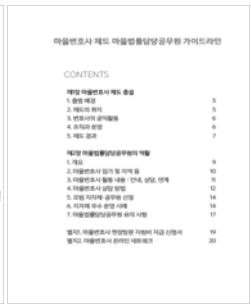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다양한 홍보컨텐츠 제작·배포 및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활용한 포스터, 달력, 우수상담사례집, 활동물품 등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버스 광고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제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mojmabyun) 외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는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3) 마을변호사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매년 12월 마을변호사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마을변호사·공무원·지자체를 표창하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범 마을변호사를 표창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림 2-45 |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

마을변호사 7주년 기념 간담회

4) 2020년 성과

국민의 제도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행안부와 적극 협력하여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행안부 주관 '2020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되고,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그림 2-46 |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우수상담사례집

마을변호사 달력

마을변호사 버스 광고

5. 화상공증제도 활성화

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윤정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 6월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의 공증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졌다.

코로나19로 대면공증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화상공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2020년 화상공증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약 9배에 달하는 1,78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화상공증을 이용할 경우 국민 편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공증사무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용, 시간 등의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화상공증 이용시 필요한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6.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양수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는 양자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중재제기 합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ISDS는 국가마다 다른 법 체제와 정책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3,319개 투자협정 중 대부분이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BIT 89건, FTA 17건 중 독일, 튀니지,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BIT를 제외한 모든 BIT와 FTA에 ISDS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ISDS 중재 제기 당시부터 ISDS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론스타는 2012. 11. 21.「한·벨기에 BIT」 위반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에 참여함은 물론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다.[6] 론스타 사건은 2016. 6. 2. ~ 3.최종변론이후 2020. 3. 6.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6) 관계부처 TF(37회), 분쟁대응단(38회) 등 총 75회의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박 준비서면 2회(총 1,464면), 전문가증인 진술서 17회, 증인진술서 38회, 증거 593건 제출)

사임하여 2020. 6. 23. 신규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가 선정되었고 2020. 10. 14. ~ 15. 양일간의 질의응답세션 이후 현재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판정 선고와 관련된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는 「한·중 BIT」 위반을 근거로 1건[7]의 ISDS 중재가 제기되었으며, 「한·미 FTA」 위반을 근거로 2건[8]의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되었다. 법무부는 위 각 사건의 중재의향서 및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청구의 근거가 된 처분을 담당하였던 처분청 및 기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구축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ISDS의 효과적 대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 2020. 8. 5.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979호) 개정, 시행}, 대형 로펌에서 국제중재업무를 담당한 변호사, 외교부 출신으로 국제중재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변호사 자격자 15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이 ISDS 대응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왔다. 향후 론스타 사건의 판정 선고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제기된 중재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7) 2020. 7. 18. 중국투자자 ISDS 중재 제기
8) 2020. 1. 2. 미국투자자 ISDS 중재의향서 접수, 2020. 2. 4. 원주 투자자 중재의향서 접수

나.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양수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ISDS 사건들이 접수 및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다수 유치함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ISDS 예방을 위해 투자유치 MOU 작성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S 대응방안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9. 10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114회에 걸쳐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ISDS 제도 소개, 발생 경위 및 사례 검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의 ISDS 예방 교육은 당초 10회로 계획,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다수, 다중 행사 및 회의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 등 비대면 진행 방식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ISDS 예방교육을 재개하여, 국제 소송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SDS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SDS 교육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 공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ICSID 중재제도 연구」, 「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 등 ISDS 예방 및 대응 관련 서적을 발간·개정할 예정이며, 해외투자유치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를 섭외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공공기관의 ISDS 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사법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 등 통상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10회, OECD 경쟁위원회 2회,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1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전문가그룹 회의 1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일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0년 한-중(11회), 한-러(3회), 한-EU(1회), 한-호주(2회), 한-메르코수르(2회), 한-우즈벡(2회), 한-캄보디아(1회) 등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 및 개정을 위한 서비스·투자분과 협상에 참석하고, 한-UAE(1회), 한-멕시코(1회), 한-쿠웨이트(1회) 등 양자간투자협정(BIT) 개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 표 2-17 | 2020년도 법률자문 현황(12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1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2	2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3	4. 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4	5. 8.	한-이스라엘 FTA 협정문 국문본 검토의견	산업부	김아주 전문위원
5	6.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예지 사무관
6	6. 24.	OECD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 권고안에 대한 의견	공정위	오흥세 검사
7	9. 1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8	9. 2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9	11.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임세영 전문위원
10	11. 3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행동규범 초안에 대한 한국 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11	12. 1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항소체제와 집행문제 및 ISDS 중재판정부 선정에 대한 한국 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12	12. 28.	RCEP 법률서비스 양허안 합의문안 검토의견	산업부	임세영 전문위원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상, 국제거래 등 다양한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적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와 BIT 체결 및 기체결 조약에 기초한 분쟁 상황의 예방 및 대응 등 국제법적 쟁점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 국제법무과 검찰사무관 김진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 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체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법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간 법무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홍콩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라오스 중재법제 정비를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함께 서울 및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중재법 및 관련 집행법제 개선을 위한 국제세미나와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라오스의 분쟁해결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0. 1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여 몽골 형사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실무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몽골 측은 자국의 형사법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의 법제를 적극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지원을 희망하였다.

2020. 11월에는 3, 4일 양일간 제9회 ADR 컨퍼런스 스페셜 세션을 UNCITRAL 아·태 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UNCITRAL

에서 제정된 국제상거래규범을 전파하고 관련 실무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고려,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국제상거래 규범의 조화로운 발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 코로나 이후 국제사회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2020. 12월에는 최근 5년간 ODA 사업 성과를 정리하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5개년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2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캄보디아 중재·조정법제 정비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2020.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그림 2-47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몽골 형사법제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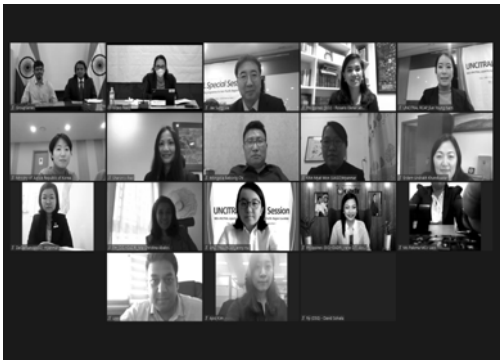

제9회 ADR 컨퍼런스 UNCITRAL 스페셜 세션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의 법제 정비 지원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법무교류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사업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편의를 더하고 주요 개도국 법제의 현대화로 현지인들의 인권 및 법률 복지 향상을 꾀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와 국제공동체 정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중재법, 조정법, 형사법, 지식재산권법 등)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주요 지원요청국의 법제 개선을 통하여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외교적 방향과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와 국격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하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1. 1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1개국 중 63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1. 1월 현재 총 65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상호 수락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협약상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는 부부 일방이 아동을 국외로 무단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 도입을 연구하여 2020. 8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8. 국제법무 역량 참여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법제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사법 분야의 국제통일규범 성안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바, 2020년에는 총 10회의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HCCH 관할권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법제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적 글로벌 통일규범 마련 작업에 일조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였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IDR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SAF 기간 중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2020. 11. 3. ~ 4.)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중재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국제적 석학·실무가들과 국제중재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 회의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법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2. 2월 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거래규범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 국내 법체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뿐만 아니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통일규범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9.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하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EU를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3단계 개방은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0. 12월 현재 자격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202명이고, 외국로펌은 36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199명(미국법자문사 147명, 영국법자문사 34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9명, 중국법자문사 6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8개(미국로펌 21개, 영국 로펌 4개, 중국 로펌 2개, 호주 로펌 1개)이다.

2016 ~ 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등 향후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률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020년에는 그간의 법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꾸준히 살펴 우리나라의 법제를 개선하고, 심사업무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높여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말소 규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정적인 법률시장 개방 제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하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 2019년 45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턴을 파견하지 않음).

특히,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제6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하반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인 단기(2 ~ 4주) 인턴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제6기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인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으로 연기).

2) 평가 및 발전방향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은 O.K.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O.K. 아카데미 수강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의 과목과 강사진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턴 파견 기관을 확보하고, 파견 인턴 정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진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243명)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84건을 기록하였다.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 1월에는 자문을 접수, 제공하는 홈페이지(9988law.com)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11월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홍보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를 시행하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최우선으로 자문을 제공

하고, 2020. 4월부터 별도로 유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20. 9월에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한-중미 FTA 법률설명회”를,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전문가 양성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12월에는 KOTRA에서 발간하는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에 “무역사기의 예방과 대처”를 주제로 교육 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중소기업을 위한 준법경영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기로 2020. 1월 양해각서를 체결, 2021년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48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한-중미 FTA 관련 법률설명회

법무부-KOTRA 무역사기 설명 동영상

한편, 2010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25종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20. 11월에는 우수 자문사례를 선별하여 『법률자문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문 수요의 폭증에도 기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추가 위촉, 관련 예산 증액 등 제반 행정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며,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기업의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스타트업 등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지원을 위해 ① 실무상 쉽게 참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준법경영 가이드북」 발간을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② 국내·외 법률설명회 내 ‘해외투자에 따른 준법경영 길라잡이’ 세션 삽입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③ 세계은행 청렴국과 ‘준법경영 교육 플랫폼 구축(Promoting Corporate Integrity Compliance via an Integrity Compliance Training Platform)’ 추진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진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해오고 있는 바, 매 권호마다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법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제1호부터 2020. 12월 현재 통권 제149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통상법 및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다룸으로써 국제법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기획논단을 신설하여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및 코로나19가 국제거래규범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다.

| 그림 2-49 | 통상법률 통권 제1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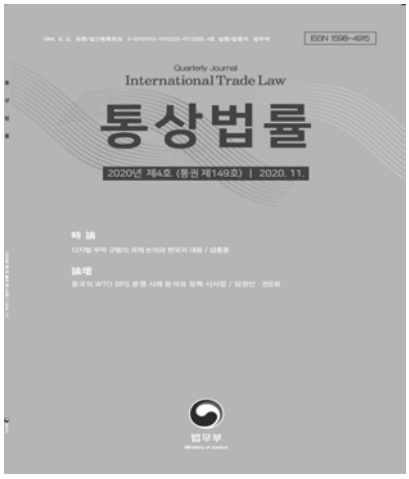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창간한 이래로 2020년 통권 34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법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코너를 통해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관련 법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간행물로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준법경영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안내서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법률은 학술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법무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문저널은 편집 노트, 법무부 소관 개정 법령의 소개를 추가하는 등 개편을 통해 국내외 독자에게 법무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충실히 홍보하고 전달할 계획이다.

마.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2020년 정기회의는 코로나-19 확산 고려하여 2021년으로 연기).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는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ISDS, 법률시장 개방, ODA 등 급박하고 다변화하는 국제법무 현안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법무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자문위원 구성, 충실한 위원회 준비, 자문 내용의 업무 반영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0.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가.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1) 추진배경

국가는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인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각 행정청의 장이 수행하는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통·통신 인프라로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법무부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산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1970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국가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지휘하는 권한을 전국 검찰청에 분산 위임하여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축된 국가송무체계는, 50년의 세월이 흐른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은 그 규모가 점점 거대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을 가지거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소관 검찰청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의 소송지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1970년도와는 달리 현대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과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하였고 전자소송도 활성화되어, 송무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필요성도 감소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분산 위임되었던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함으로써,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성과

국가송무체계는 급작스러운 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업무수행 인력과 조직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 1단계에서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고,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끝에, 2020. 12. 28.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주요내용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행정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소송은 기존과 같이 검찰에서 수행 및 지휘하되, 소송 지휘 중 법령에 따라 상급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라 승인권자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나뉘어있던 과거와 달리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법무부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하던 1개 과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검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들을 법무부로 옮겨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1개 과였던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였고,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신설하여 2개 과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4) 평가 및 향후 계획

국가송무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소송 지휘의 통일성·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의 송무 전담 인력을 통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20. 12. 28.부터 성공적으로 출범한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가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검찰에서 수행 중인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까지 법무부로 이관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2단계 추진은 관련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 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시행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김창형

1) 추진배경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관련 배상소송의 경우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소송의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17. 11월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21. 1월 현재까지 총 30차례 상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사건 5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였다.

3)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2018. 1월부터 재심 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의 시행을 위해서 과거사 사건의 패소원인 및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배상책임의 성부 및 적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상소기준 정비

2018. 1월 최근 3년간 주요 패소사례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 소책자를 발간,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 과거사 국가배상 판례의 위자료 금액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적정 위자료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주요 패소사례 및 위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소권 적정행사 업무처리 지침」(상소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각 소송수행청 담당자들에게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고 있다.

5) 중요사건 관리 강화

2017. 11월부터 일선청 실정에 맞도록 중요사건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소송개시 단계부터 소송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시보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휘청의 소송지휘권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8. 2월부터 법무부에서 직접 취합·정리한 전국 중요사건 목록을 토대로 해당사건의 소송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1. 1월 현재 전국 고·지검이 관리하는 전국 중요사건 수는 약 1,100여 건(행정소송 포함)으로 법무부에서 취합·관리하고 있다.

6) 추진성과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상소율이 감소하였고('16년 항소율 44.4%, 상고율 42.3% → '20년 항소율 27.9%, 상고율 23.5%), 현재까지

상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그림 2-50 | 상소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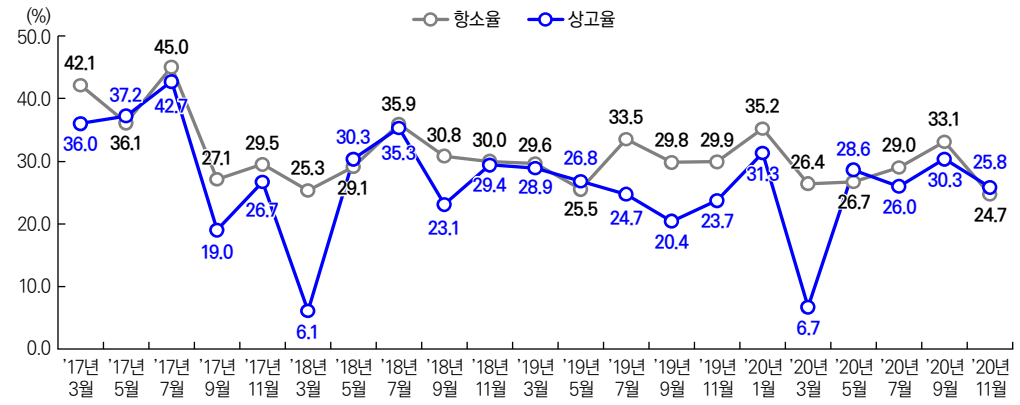

7) 향후 계획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선청과의 피드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상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송무 교육 출강, 송무지도점검, 소송총괄관 회의 및 송무 담당 법무관 워크숍 등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 관련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 상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다. 송무업무 실적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김창형

1) 국가소송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p 증가, 2018년 1.4%p 감소, 2019년 0.4%p 증가, 2020년 0.9%p 증가 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2〉와 같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고, 2019년 패소율은 2018년 대비 0.5%p 증가한 10.3%를 기록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3)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7,265건을 접수하여 그 중 1,095건을 인용하고, 2,537건을 기각하는 등 총 3,843건을 처리하였다.

라. 소송수행 역량 제고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김창형

1)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지속적 추진

국가의 중요 정책·재정과 직결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고액화·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를 시행하여 부당한 국가패소 방지에 기여하였다. 국가소송 직접 수행률은 2017년 45.5%, 2018년 50.2%, 2019년 33.1%(공익법무관은 전년 대비 31% 감소), 2020년 26.5%(공익법무관은 전년 대비 42% 감소)이다.

2) 송무지도점검 실시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춘천지검(5월), 전주지검(6월), 광주고검(6월), 제주지검(9월), 서울고검(11월) 총 5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검대상 고·지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3)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20. 12. 22.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온라인 영상회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국가송무의 최신 동향과 과제, 소송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국고손실 환수송무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행정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62명, 관리업무 유공자 39명 등 총 101명에 대하여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5)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20년 수임사건은 1,765건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고, 평균 승소율은 72.3%로 전년 대비 2.3%p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단의 전문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마.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서려

1) 개요

기존에는 환수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5. 9. 22. 출범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51 |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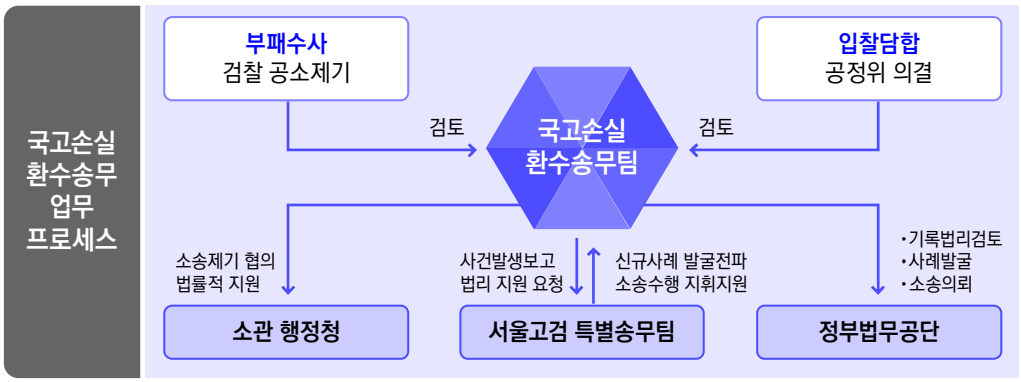

2) 환수 실적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 상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의결서 및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20년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지원 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선제적으로 입찰담합 관련 판결문 및 형사판결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입찰담합 9건, 부패·비리 32건 등에 대해 소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20년 일본인 명의 토지 환수 사건, 입찰담합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국유지 무단처분 사건, 군 부식비 횡령사건 등에서 합계 10억 6,856만원을 환수하였다.

3) 향후 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사례 발굴을 위해 소관부처, 관계기관 및 서울고검 특별송무팀과 상시적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송무체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바.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구성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서려

1) 개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 방역 방해 등을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등 엄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소송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으나, 법무부는 손해배상청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정한 소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 현황

법무부는 2020. 4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뉴얼을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2020. 12월 개정판을 추가 배포하였다. 2020.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소권 행사에 있어서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20. 10월 1차 정기회의, 2020. 12월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및 협의체 구성원들은 위 정기회의에서 통일되고 적정한 소 제기 기준 마련, 입증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3) 향후 계획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적정하고 통일된 소권이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편적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제반 증거 등을 취합하여 소 제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소송의 지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등 손해배상청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국가소송과 검찰사무관 김연천

1) 개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등과 같이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월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고, 2013. 1월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 구축 및 전 소송수행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그림 2-52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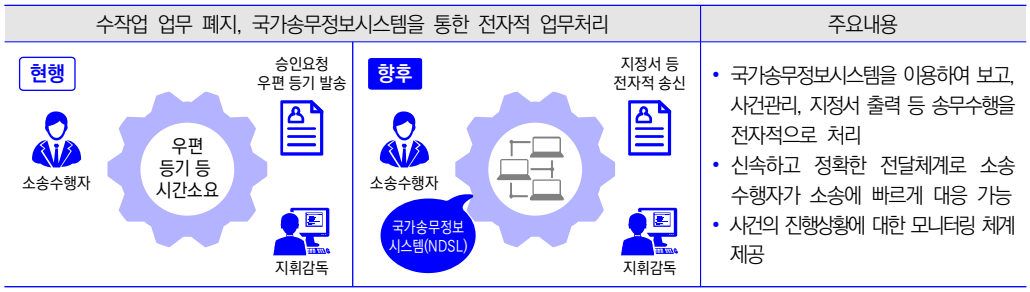

2) 추진 내용

2011.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12.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였다.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였고, 2016년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 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2018 ~ 2019년 소송사무보고서·판결사건 소송지휘의 전자적 보고 기능, 각종 소송사무보고의 내부결재 및 발송기능 등을 구현함으로써 소송수행청·지휘청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종 보고문건 작성 후 내부결재와 동시에 해당 청에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2020년 국가배상금 임의변제 지급관리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소송 등에 의한 이중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패소 사건의 신속한 최고를 통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여 지연이자를 절감하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 사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대국민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1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행정소송과 행정사무관 신재우

가. 개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의 주무부처로서 급변하는 행정소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 12. 28.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소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소송지휘를 통하여 각 행정청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지휘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행정법 검토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송무업무 실적

1) 행정소송

2020년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5.7% 증가, 패소율은 0.8%p 감소하였다.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으나, 2020년 패소율은 2019년 대비 0.8%p 감소한 9.6%를 기록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다. 헌법재판 업무

● 행정소송과 행정사무관 김종균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헌법재판 직접 수행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위헌소원(2019헌바495)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자체의견 제출은 총 39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20년에는 총 20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8건, 각하 1건, 위헌 7건, 헌법불합치 4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상속순위 조항) 위헌제청(2020. 2. 27. 2018헌가11) : 합헌
- 「공직선거법」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탁금의 반환 조항) 위헌제청(2020. 9. 24. 2017헌가18) : 헌법불합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수재 등의 죄) 위헌제청(2020. 10. 29. 2018헌가15) : 합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조항) 위헌제청(2020. 12. 23. 2019헌가8) : 위헌

4)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20년에는 총 3,216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79건, 각하 2,509건, 위헌 등 70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조항) 위헌확인(2020. 6. 25. 2019헌마192) : 기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조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20. 8. 28. 2018헌마927) : 헌법불합치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징계의 종류 중 영창부분) 위헌소원(2020. 9. 24. 2017헌바157) : 위헌
-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 조항) 위헌확인(2020. 11. 26. 2018헌마733) : 기각

12. 법무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 법적 지원

통일법무과 서기관 한경태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회 산하 법무지원 소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범정부적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향후 남북관계 발전 상황을 3단계로 분류하여 법무부 관련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내용

법무부는 2018. 7월부터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산하 법무지원 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총 9차례의 법무지원 소위원회, 8차례의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2020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남북 접경지역 개발', '남북 개별관광' 등을

주제로 연구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방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결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법적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경협 재개단계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신속 가동방안, 남북경협 확대 단계에서 「남북법률제도위원회」 구성 방안,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단계에서 남북상주대표부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1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가. 남북 교류협력 법제 연구 심화

● 통일법무과 주무관 박보경

1) 추진배경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

2020. 4월부터 11월까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남북 법률분야 교류협력,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법제, 북한법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총 80여 건 검토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과 관련한 법령 정비에 기여하였다.

한편, 2010.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학술지인 계간 『통일과 법률』을 2020. 2월 제41호부터 11월 제44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연구의 법적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및 『통일과 법률』 발간, 남북관계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관련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그림 2-53 | 통일법 연구결과서 발간

통일과 법률 학술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19년 연례보고서

나. 남북관계 발전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유재륜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9기를 웨비나(Web Seminar)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20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

2020. 10 ~ 11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협업 하에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9기 과정을 개설하여, 법학자, 변호사, 경제학자 등 관련 전문가 6명이 북한의 투자법제, 가족법제 및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38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이로써 2014년 1기부터 2020년 9기까지 진행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의 총 수료생의 407명에 이르게 되었다.

2020. 12월 '2020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주제로 14편의 논문들이 접수되었으며,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좌 개설,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그림 2-54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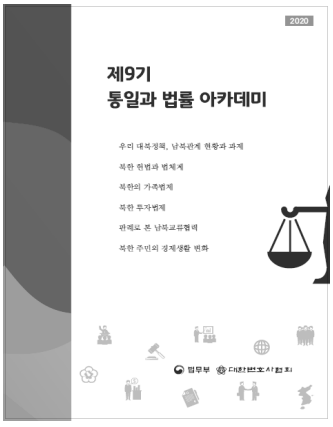

제9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자료집

법률신문

법무부

법무부·대한변협, '제9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모집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 선착순 60명, 온라인 강의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 입력 : 2020-10-15 오후 3:51:10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9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수강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주 1회 총 6강이다.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제9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언론보도

| 그림 2-55 |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공모전 개최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포스터

법률신문

법무부

법무부, 2020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12월 1~20일' 원고 접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 입력 : 2020-10-26 오후 2:11:05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민이다.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남북한 법률통합의 실질적 준비를 위한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 주민 사이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등이다. 원고는 12월 1~20일 접수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언론보도

다. 국내외 남북관계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

통일법무과 서기관 한경태, 행정사무관 김태희

1) 추진배경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독일통일 30년을 맞아 동·서독 간 정치·경제·사법 등 각 분야의 통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

첫째, 국내적 차원에서는 2020. 10 ~ 11월 간 사법 및 공법 분야 등 분야를 망라하는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하고, 남북관계의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탈북 전 북한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 전문가 간담회'에 초청하여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법무 업무의 내실을 기하였다.

둘째, 국제적 차원에서 2020. 9 ~ 10월에는 한국에 소재하는 4대 독일재단의 한국사무소(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스 자이델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일법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2020. 11. 20.에는 '독일통일 30주년 기념 법무부-독일재단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독일통일 30년에 따른 동서독의 경제·사회적 통합 상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통일법무 수행을 위한 법무부와 독일재단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06년부터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에 참가하여 유럽의 법률가, 법학자, 관료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舊)동구권 국가의 체제전환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행 등을 진행하여 왔다. 2020. 12월에는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및 통일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평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남북관계 법률전문가 및 통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통일법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여 남북관계가 법제도적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림 2-56 | 통일법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통일법제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간담회 개최

| 그림 2-57 | 법무부-독일재단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독일재단 합동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법무부-독일 재단들 '독일 통일 성과·과제' 간담회 열어

송고시간 | 2020-11-22 14:45

송진원 기자

법무부-독일재단 합동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성국 법무실장(가운데)이 20일 법무부에서 열린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법무부-독일재단 합동간담회」에서 독일 재단 관계자들과 독일 통일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11.2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

법무부-독일재단 합동간담회 개최 언론보도

14.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태희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나. 추진내용

1)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법무부는 2020. 7. 2. 대한변호사협회 및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하였다.

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로부터 1:1 맞춤형·통합 법률지원을 제공받게 되었다.

| 표 2-18 | 지원변호인제도 내용

▣ **단계별 상담**
- 1차 상담(일상생활)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 2차 상담(법률관계) : 지원변호인

▣ **통합 밀착 지원**
- 일상생활 변화를 파악하여 **법률문제 선제적 발견**
- 법률관계 상담 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필요 서류 작성·제출 등 후속절차 지원,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의 법률 및 행정조치 지원

전문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원변호인과 공유한다. 지원변호인은 정례적인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멘토 역할에 주력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재단 등 기존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수도권 11개 하나센터(서울 4개, 인천 1개, 경기 6개) 별로 각 1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2)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상담·법률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교육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의 중요성', '민사·가사 관계에서의 권리구제' 및 '조심해야 하는 범죄유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상담 및 통일법제 DB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상시 제공하였다. 2020. 3월에는 신규 상담내용을 반영하여 『202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다. 주요성과 및 평가

지원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하여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상시적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교육, 유선·온라인 법률상담, 『202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 그림 2-58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업무협약식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언론보도

| 그림 2-59 |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법률상담 및 법률상담 사례집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법률상담 홈페이지

202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1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경제민주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개정을 위하여 2017. 10월 ~ 2018. 12월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차례에 걸친 회의 후에 마련된 상법특별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무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 8. 31.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 12. 9.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해 12. 29. 개정 상법이 공포·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법무부에서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는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감사위원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이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개정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현하여 기업의 투명경영·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로 주주의 주주권이 강화되고 기업 실무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안정된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나라', '투자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할 계획이다.

나. 상법 시행령 개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회사의 임원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2019. 4월),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간담회(2019. 6월),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간담회(2019. 8월) 등을 통해 유관 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 1. 29. 개정되었다.

2) 추진내용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자투표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사전 별도 통지하도록 하여 전자투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도 마련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공고 시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또한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을 통하여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감사 등 임원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법무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1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도산)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019. 10.까지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법무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각 분야에서 순위가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 및 국내 법률전문가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여 기업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같은 법제 개선 현황을 세계은행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내년에 발표될 국가별 순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9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29위

| 표 2-20 | 2020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국 가	싱가포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17위	21위	34위	50위

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0. 12. 4.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0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세계 각국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60 |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17.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現 178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2020. 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도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산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25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011건의 전화·인터넷 법률상담을 처리하고, 7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분쟁 상황에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단행본, 9988법률지원단 절차 안내 리플렛, 『법률분쟁 상황에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소책자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발간하고, 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우수지원 사례로는 납품 업체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신청기업에 대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이행 청구에 관한 지원을 통해 납품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기여한 바 있다.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2015. 8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히 판교테크노벨리 등 법률지원 수요 증가가 집중되는 지역에 스타트업 관련 기업법무에 능통한 자문 변호사 37명을 추가 위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지원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경영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간 동업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18.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을 계기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개별 피해구제의 한계와 위법행위 억지력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정보처리의 산업구조에서 위법행위 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피해 구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시간·비용상 등의 한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지적된다. 아울러 피해가 적절히 회복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윤추구 위해 위법행위를 감수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도 문제된다. 법무부는 다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예방하고자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 위해 위법행위를 감수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노력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국정과제).

법무부는 2020. 6. 제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운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 9. 28.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 확대도입하고 실효성 확보 위해 증거개시제·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과,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대비 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후 2020. 12. 1. 현장·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였다.

| 그림 2-61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입법 추진 현황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 방송 보도(9. 23. KBS)

현장·온라인 공청회(12. 1.)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은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전 방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19.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사무관 윤화섭

가. 전자어음제도 개괄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을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전자어음제도는 2009. 11. 9. 및 2014. 4. 6.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홍보를 통해 도입 10여 년이 넘는 2019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 발행 건수 중 84.9%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약속어음의 최장만기를 단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6. 5.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개정 법률에 따라 20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021. 5. 30.부터는 최장만기가 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나. 2020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0년도에 전자어음은 143만 건(전년대비 8.98% 감소), 894조 원(전년 대비 79.5% 증가)이 발행되었고, 같은 기간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에서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5.6%(전년대비 0.7%p 증가) 금액 기준 60.9%(전년대비 18%p 증가)의 추이를 보였다. 참고로 종이어음은 24만건(전년대비 13.7% 감소), 595조 원(전년대비 9.9% 감소)이었다. 약속어음 전체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자어음의 활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의 경우에는 특히 기업공개시 금융조달 수단으로 전자어음이 활발히 쓰여 그 발행금액이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자어음이 금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기업 간 결제 과정에서도 전자어음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림 2-62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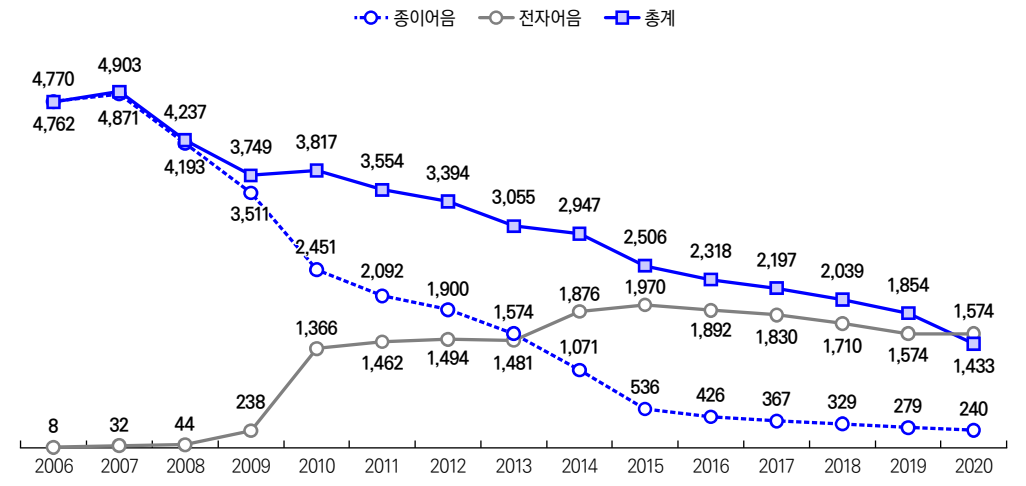

| 그림 2-63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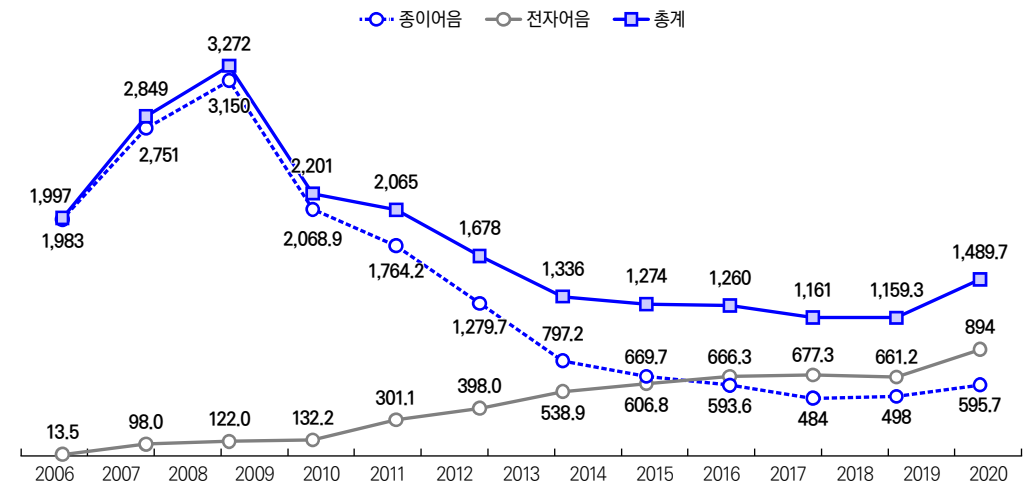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의 종이어음 대체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 3. 22.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을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등 실물 없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였다.

2020. 9. 16. 전면 시행 후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안정적으로 실현하였다.

■ '19. 9. 제도 도입 후 1년 간 성과('20. 9. 기준,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① 전자등록 자산 총 5,101조원 달성(시행 당시 대비 321조원 증가)
② 전자증권 이용 발행회사(상장사 등) 총 2,588개사
③ 상장주식 실물주권 발행률 감소(2.3억주 감소; 발행주식총수대비 0.68% ➜ 0.41%)
④ 비상장회사 이용 증가(337개사; 전체 비상장회사수 대비 4.0% ➜ 8.4%)
⑤ IPO 및 주주총회 등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약 50억원)
⑥ 실물주권 발행 절감액 약 130억원 절감

| 그림 2-64 | 전자증권제도 홍보 내용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차명주식 및 탈세 방지 등 권리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회사 및 증권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ICT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공동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 그림 2-65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추정(출처 : '14.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비용절감 요인

구 분	주요 비용절감 요인
운용비용	•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 실물 입출고 •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위험비용	• 실물증권의 도난, 위변조
기회비용	•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앞으로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1.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서기관 강혜정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

| 표 2-21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 국내중재 활성화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는 현재 중재사건 심리장소, 중재 교육 및 각종 행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화상회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중재교육원 내 온라인 교육과정(e-learning)을 개설하여 효율적인 중재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19년) 이후 2년 연속으로 400건 이상의 중재 접수건수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사무관 이경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온라인 포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에 2020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지원, 환경보호, 생활 SOC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총 32개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 11. 14.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9. 12. 6.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그림 2-66 | 공익신탁 홍보 관련

| 그림 2-67 | 2020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공익신탁제도는 보다 간이한 절차로 보다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공익신탁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탁 제도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결국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확대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하여, 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 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2020. 5. 21. 제21회 차관회의와 2020. 5. 26. 제26회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6호로 공포 및 시행되었다.

나. 추진 내용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데, 그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5년간('14. 4. ~ '19. 4.) 서울

기준 전체 회생 사건의 약 48%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간이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이 신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4.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이경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0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89호는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19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와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의 허용기준-강원랜드사건을 소재로-』 등 논문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90호에는 송종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Cross-Border M&A의 법적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적 합병을 중심으로-』 논문 외 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91호는 송옥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상법상 주주총회 의사정종수의 개선방안』논문을 비롯하여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92호는 고형석(선문대 법과대학) 교수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기고를 포함하여 4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68 | 선진상사법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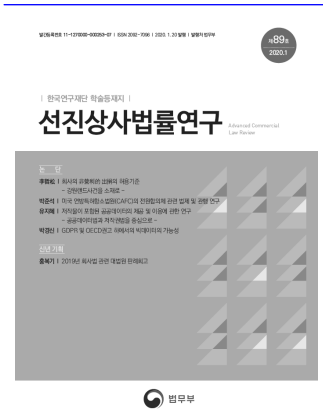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9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1호

25.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0. 12. 2.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이영경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주제발표, 김상훈 대표변호사(법무

법인 가온), 김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상수 회계사(법무법인 지평)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69 | 2020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법무실장 축사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2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제4차 산업 시대의 ICT 환경 전환에 따라 기존 종이서면 및 대면거래 활동을 대체하여 전자서면 및 비대면 거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문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기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종이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한정적 열거로 이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혼란이 존재함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활용가능성의 기반을 개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17. 2.부터 공동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고 '17. 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의 효력을 강화하여 서면 보관부담이 대체될 수 있도록 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6. 9. 법률 제17353호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공포 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문서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ICT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및 전자적 법률행위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문서 법제도 개선으로 인해 전자문서 서비스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2.1조원 규조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약 1.1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공동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비대면 거래 및 전자적 거래활동 증가에 맞추어 혁신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관한 법 제도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 표 2-22 |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예상 규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21	'22	'23	누적합계
전자문서 생성·획득, 변환업 (전자화작업, 전자서식 등)	800	1,600	3,203	5,603
전자문서 관리업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업콘텐츠관리 등)	1,263	2,484	4,890	8,637
전자문서 교환업 (모바일 고지, 전자증명서, 처방전 등)	984	1,928	3,776	6,688
합 계	3,047	6,012	11,869	20,928

※ 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500명 이상)으로 하고 서비스 적용 확대비율을 순차적으로 최소 적용하여 시장 창출규모 산정

| 표 2-23 | 〈전자문서 보관 대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 예상 규모(출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21	'22	'23	누적합계
보관 대상문서	절감량(억장)	9.97	15.74	21.51	47.22
	비용절감(억원)	1,196.4	1,888.8	2,581.2	5,666.4
유통 대상문서	절감량(억장)	8.75	13.12	17.5	39.37
	비용절감(억원)	975.6	1,463.3	1,951.2	4,390.1

※ 총 절감비용(1.1조원) = [보관절감 문서량(52억장)×보관단가(120원)] + [유통절감 문서량(43억장)×물류단가(200원 또는 75원)]

※ 보관 단가 : 종이원가 + 인쇄(출력)비 + 복사비 + 보관운영비를 산정·도출

※ 물류 단가 : 공공/금융분야(12.7억장)의 경우 일반 우편료(200원) 적용
유통/의료분야(31억장)의 경우 인쇄 발급비용(75원) 적용

27.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상사법무과 행정주사 박성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기존 연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2020. 11. 16. 여당 및 금융위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 12. 30. 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1. 상반기 국무회의를 거쳐, 2021. 7.경 금융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과 동반하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나. 추진 내용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혼란 방지·시장안정과 조속한 인하 효과 달성과의 조화를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위해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동반 개정되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2020. 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 추산).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정 최고금리를 고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8.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 양동규

가.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 11.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전국 9개 시험장(서울 4,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에서 2020. 1. 7. 부터 1. 11.까지 시행되었고 3,592명이 출원하여 3,316명이 응시하였다.

양질의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고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온 이전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제9회 변호사시험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시행되었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0년도에도 채점위원별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를 위해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의 채점기준표 작성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외에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2차 정답확정회의 끝에 형사법 선택형에서 '정답없음'의 답안정정 사례가 1건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2020. 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20년도 제19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24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응시자 대비 합격률(%)	**87.2**	**75.2**	**67.6**	**61.1**	**55.2**	**51.4**	**49.4**	**50.8**	**53.3**

| 그림 2-70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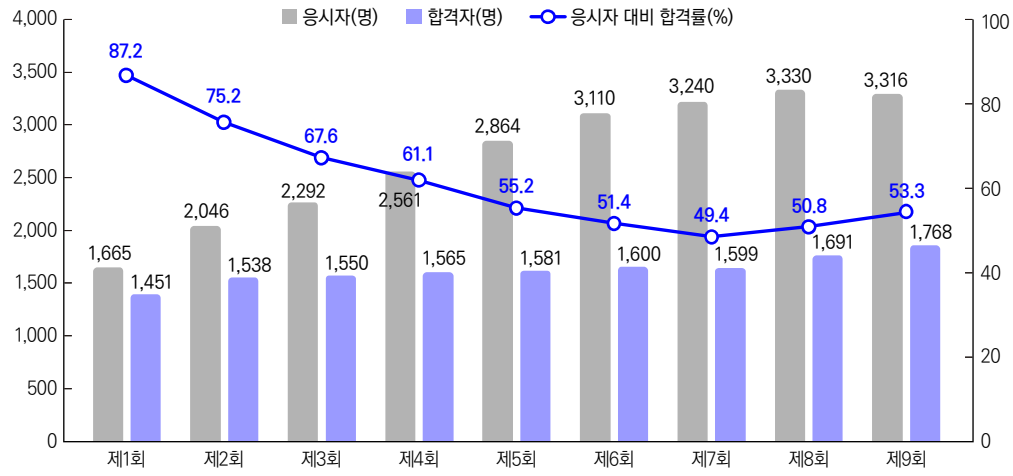

| 표 2-25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1	1,954	1,949	1,993	1,931	1,877	1,814	1,574	**16,888**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5	1,717	1,683	1,718	1,663	1,587	1,399	1,167	**14,343**
누적 합격률 (%)	91.23	88.47	87.87	86.35	86.20	86.12	84.54	77.12	74.14	**84.93**

| 그림 2-7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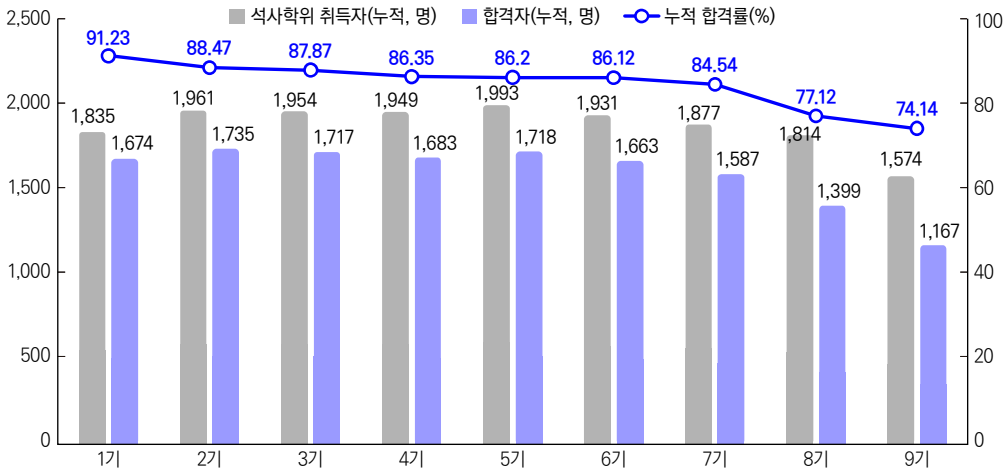

나.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은 2020. 8. 1. 전국 9개 시험장(서울 4,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판례 위주의 출제를 통하여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변호사윤리, 법관윤리, 검사윤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2,167명이 출원하여 2,129명이 응시(응시율 98.2%)하고, 1,981명(합격률 93.05%)이 합격하였다.

※ 2019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 2,160명 응시, 2,053명 합격(합격률 95.05%)

| 표 2-26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 그림 2-72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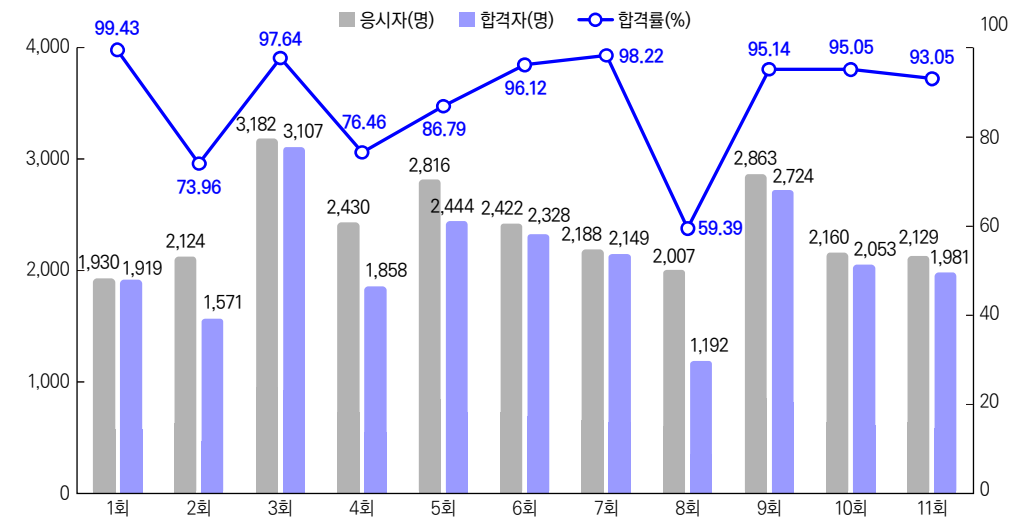

다. 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되는 시점에서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2019.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 2020. 3.까지 제9차에 걸쳐 절대점수제 도입, 적정 변호사 수 연구결과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여 단일한 결론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기존 합격자 결정인자들에 더해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및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데에는 의견 수렴하였고, 이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반영하였다.

또한,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에 대하여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 10. 16.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온라인·야간로스쿨 도입 관련 국회 토론회, 대한변협의 법전원 평가위원회,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 법전원협의회 간담회 등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 관련 논의의 장에 참석하여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제도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에 시험을 실시하던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외에 전주까지 시험장 1곳을 확대하여 지방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8월 1일 실시한 법조윤리시험에서는 '사전준비', '시험당일', '시험종료 후' 등 단계별로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오상연

가. 검사 인사제도 개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 및 시행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우대하여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였다.

- 2020. 2. 20.「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시행
- 2020. 8. 27.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검사 인사 실시
- 2020. 11. 17.「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0. 2. 20.「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을 개정·시행하여 복무평정 방법에 근무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사례)를 추가하여 검사의 국민에 대한 친절·배려의 자세를 강화하였다.

2020. 8. 27. 하반기 검사 인사 시 인권·민생·법치를 위하여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형사부장·인권감독관, 능력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전문검사 등을 적극 발탁하고,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은 출신 지역·학교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2020. 9. 3.자로 단행하였다.

20. 11. 17.「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을 개정·시행하여 의정부지검·안산지청에 대한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을 완화하여 공개된 규범에 따른 검사 인사를 통해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인사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대신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대검찰청의 지휘체계 개편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검찰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검찰 내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경과

2020. 1.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2. 4. 공포(2021. 1. 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90호)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이 제정되는 등 수사권 개혁 법령이 마련되었다.

또한, 검찰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소송에 대한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내용으로 2020.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07호)이 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등을 형사·공판부로 전환(대통령령 제30359호, 대통령령 제30987호)하고, 검찰청 내 소송사무 수행인력을 법무부로 이체(대통령령 제30912호)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지적재산권 침해 등 특허관련 범죄수사 인력 등의 증원 및 대검찰청에 국제협력담당관과 감찰3과를 신설(대통령령 제30565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각각 개정·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20. 1.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총무부·공공수사제3부·반부패수사제3부·반부패수사제4부·외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형사부 및 공판부 등으로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의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개편하는 한편, 그동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등 특허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인 수사공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3과를 신설하며,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7급 정원 2명을 연구사 정원 2명으로 전환하였다.

2020. 8.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명을 법무부로 이체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 정원 6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정원 3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며,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2020. 9.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1개 정책관, 2개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을 각각 폐지하는 대신, 체계적인 형사정책의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되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도 개편(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반부패·강력부 5개과 체제를 3개과로 통폐합, 형사3·4과 신설, 공판2과 신설, 형사정책담당관 신설 등)

하는 등 검찰 조직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인력과 특허 수사 전문인력, 검사 보조인력 등이 증원됨에 따라 인권보호 및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검찰에 위임하여 수행해 오던 행정소송 등 소송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함으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청의 이원적 구조로 수행되던 국가송무 지휘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송무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검찰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1) 여성아동 피해자 전용조사실 설치 및 구치감 환경개선 예산 신설

최근 5년간 n번방사건, 미투사건 발생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사범 증가율은 각 51.6% 및 1,641.6%로 관련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여성·아동전용조사실 설치는 같은 5년 동안 2개실 증가(3.4%)에 불과하였고, 설치 후 관련 예산 부족으로 유지관리도 미흡한 상태였다. 이에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역량 강화를 위해, 성폭력 등 관련사건이 연평균 2,000건을 상회하는 청(10개청)에 여성·아동전용조사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구치감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수용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2) 검찰 구성원 근무환경 개선

검찰청 기록보존창고는 방대한 양의 사건기록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기록을 보존·폐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 발생으로 근무 직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전국 검찰청 기록보존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해 기록 보존창고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사건처분 결과에 대한 항의로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근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민원인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응하고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민원실 칸막이 설치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다.

3) 검찰시설 및 환경 개선

법무부는 전국 노후 검찰청 시설 및 청사 협소화로 인한 업무공간 부족문제 등 해결을 위해 서울검찰청사 증축 및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는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2020. 4월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

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 5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 10월부터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정비 및 강화를 위한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를 운영중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0. 3월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회의, '20. 6월, 10월 여성·아동 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 6월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20. 11월 검찰청 전직원 대상 여성범죄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통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10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전문검사, 고경력 검사가 직접 출연하여 범행수법, 피해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다양화하였고, 전국 청에서 학생·시민·지자체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P2P 등 사기 수법에 대한 강연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범죄예방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 10월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8.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841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 등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5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9]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7〉과 같다.

| 표 2-27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 연 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재청구	구속취소	영장청구	항고
2015년	728	1,525	566	607	88	10	247	-
2016년	850	1,766	531	667	106	5	409	48
2017년	956	2,086	557	971	66	5	390	70
2018년	1,078	2,324	618	1,180	277	1	277	94
2019년	1,082	2,324	587	1,341	26	1	167	110
2020년	376	701	186	420	19	0	33	26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경제 질서 저해 사범 등 금융·증권비리, 조세포탈 비리,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월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작년(28위)보다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하며 2011~2013년까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2019년 기준 180개국 중 39위(OECD 36개국 중 27위)에 그치고 있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0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421명을 기소(74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148억 8천 4백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유발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2020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28〉 내지 〈표 2-29〉와 같다.

| 표 2-28 | 2020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 유 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15(6)	0(0)
건축	10(2)	1(0)
토지	0(0)	0(0)
공사	25(8)	1(0)
보건·환경	1(0)	0(0)
교통	0(0)	0(0)
소방	0(0)	0(0)
노동	1(0)	0(0)
수사	2(1)	1(0)
세무	11(0)	0(0)
교육	15(12)	4(4)
병무	0(0)	0(0)
금융	208(0)	30(0)
법조주변	22(4)	3(0)
납품	23(4)	3(0)
사이비언론	0(0)	0(0)
기타	96(27)	22(4)
합계	429(64)	65(8)

( )는 공무원

| 표 2-29 | 2020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1(0)	4(0)	0(0)	0(0)	5(0)
4급 이하	27(8)	33(3)	6(0)	38(4)	104(15)
합 계	28(8)	37(3)	6(0)	38(4)	109(15)

( ) 구속인원

2)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1/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20. 3월) 건의 실적 - 기간제 교사 임용시 결격사유 점검 개선(교육부) • 2/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20. 6월) 건의 실적 - 조세범 처벌법 상 공소시효 특례규정 개정(기획재정부) - 신문법상 신문편집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문화체육관광부) • 3/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20. 9월) 건의 실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국토교통부) • 4/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20. 12월) 건의 실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신설(기획재정부) - 공익법인법상 사업내용이 공익 법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기부금품법상 일련의 제한규정 중 최소한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외 사용행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금지·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행정안전부) [2020. 12. 31. 기준 7건]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월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19. 10월 ~ '20. 12월 기간 동안 음주운전사범 총 132,103명 중 40,132명을 구공판하여 전년 동기 대비 구공판율이 51.29% 증가하였다.

| 표 2-30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18. 10월 ~ '19. 12월	148,609명	26,525(615)명	17.84(0.41)%
'19. 10월 ~ '20. 12월	132,103명	40,132(453)명	30.37(0.34)%

한편, 2019. 9월 충남 아산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제기 및 대통령 지시로 일명 '민식이법' 법안이 발의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교통사고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에 맞추어 2020. 3. 16. 대검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처리 강화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건 엄정 대응

2020.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고, 국내외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은 2020. 2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수사참고 자료」 및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하면서 엄단 지시하였고, 2020. 3월~9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에 2차에 걸쳐 검사, 수사관 및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 8월 코로나19 재확산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 주관으로 방역당국 등 담당자 핫라인 구축 및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8. 25.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시행 2020. 4. 5.] 내용을 반영하고 방역저해 사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3)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

법무·검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2020. 7. 의료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속·간이하게 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각 청에서 관련 의료자문을 활성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5대 폭력 특별단속

진화하는 조직폭력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3세대 조직폭력배의 활동영역인 '합법 위장 기업·금융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일선 강력범죄형사부에 수사지휘 및 지원, 조폭 연계 기업·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2020. 10월 제10차 유엔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화되는 조직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파악, 형사 사법 공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다가오는 협약 이행점검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전통적인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수원 '남문파·북문파', 평택 '청하위생파', 구미 '효성이파' 등에 대해 범죄단체활동 등으로 기소하였다. 범죄단체 등 기소 현황은 〈표 2-31〉과 같다.

| 표 2-31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구속구공판 인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소	239(103)	237(82)	332(94)	363(87)	278(119)	278(107)	345(91)	178(43)

2)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월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월에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월부터 2017. 12월까지 대검찰청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를, 일선 지검 및 지청에 합동수사부, 전담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합동수사본부가 종료된 이후에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속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0.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2-32〉와 같다.

| 표 2-32 | 2020년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구 분 / 사범별	단속인원	구속인원
계	120,561	1,973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6,778	479
취 업 사 기 사 범	723	9
기업형 조직폭력사범	69,166	1,275
유통질서 교란사범	3,630	10
사 행 성 도 박 사 범	2,443	115
교육 관련 불법행위 사범	486	1
국민건강 위해사범	12,752	80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4,583	4

3) 서민다중피해범죄 엄정 대처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추적·회복을 위해 계좌추적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수사관을 일선 수사에 지원하는 등 사건 수사는 물론 서민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는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만 수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국세청과 협업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범죄로도 수사를 전개하여 과세처분 및 환수절차를 통한 세금징수, 세금 미납 시 경제적 활동의 제약, 조세포탈로 인한 고액 벌금 미납 시 장기간 환형유치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박탈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고 사행성 게임장 등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다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고, 온라인 사행범죄 수사실무 작성 TF를 구성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 온라인 인터넷 사행범죄에 대한 수사실무를 일선 청에 배포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범죄수익 철저 환수로 도박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였고, 청소년 등 도박금액이 크지 않고 형법상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전과자 양산방지 및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다.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은 〈표 2-33〉과 같다.

| 표 2-33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도박 등	39,774	43,212	33,153	29,031	27,462	26,239	28,119	20,582	17,441	18.568	19,243
게임산업법	20,278	17,614	12,811	11,003	9,682	11,771	12,403	10,233	7,837	7.580	6,226
국민체육진흥법	30	369	815	1,391	4,032	4,742	15,467	8,342	4,757	7.658	7,889
사행행위규제법	6,714	5,214	3,738	2,559	2,082	1,815	1,321	757	493	473	359
한국마사회법	1,359	1,555	1,057	859	1,122	1,049	1,266	906	1,127	1.210	852
합 계	68,155	67,964	51,574	44,843	44,380	45,616	58,576	40,820	31,655	35.489	34,569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요청에 부응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는 차원에서 '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중소·벤처기업 권리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과 특허청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전문인력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MOU에 따라 '18년부터 특허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국 청의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8. 12월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특허정보제공 업무협약' 체결하여 '선행기술조사의뢰' 및 'KIWEE 검색서비스'를 활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 보호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진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식재산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 발달에 따라 첨단·지능화하는 지재권 침해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발달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2-34〉와 같다.

| 표 2-34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0	8,192 (192)	29,644 (12)	123 (0)	41,655 (1,242)	2,240 (0)	81,854 (1,446)
2011	6,293 (188)	37,082 (8)	38 (0)	38,106 (1,137)	1,447 (1)	82,966 (1,334)
2012	6,003 (106)	46,707 (1)	15 (0)	29,550 (845)	1,726 (1)	84,001 (953)
2013	6,316 (106)	37,182 (4)	3 (0)	25,068 (641)	1,827 (0)	70,396 (751)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 )은 구속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① 집행실적

2020년 세입예산액은 1조 5,510억 9천 8백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82.36%인 1조 2,275억 1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0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2조 818억 1천 1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14.99% 증가되었다.

2020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8〉과 같다.

②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0.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6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2-35〉와 같다.

| 표 2-35 | 2020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제주지검	원주지청	해남지청	장흥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목표집행률 달성도(10%) + 세입예산액 달성도(1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405명 중 79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06명 중 606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2,209명 중 230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0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9,226명 중 18.0%에 해당하는 5,260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20년에 모두 2,354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을 편성하여 14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준수 여부 및 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소환 시 인권 개선방안 등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일선청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조치인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등 신청 단계에서 적정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출국금지 관련 인권 개선 표준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출국금지 업무의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20. 5월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출국금지(정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에 관하여 사전에 그 요청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0년 피고인 보상은 1,912건에 358억 6,481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454건에 57억 8,621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14건에 2억 5,591만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6〉과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7〉과 같다.

| 표 2-36 | 2020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1,912	351	1,561	2,454	4,366
금액	35,864,818	10,799,572	25,065,246	5,786,217	41,651,035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7 | 2020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14	14	·	14	·	14
금액	255,913	255,913	·	255,913	·	255,913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윤석환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으며,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

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 검찰청법, 형소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하였고,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으로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법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에서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래로 2009. 2월(문서감정, 국내 최초), 2017.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 통과, 2019. 12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갱신 및 인정범위 확대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2020.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2014. 2월경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성인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업무를 개선, 수사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 5월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음질 특성 분석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장비 총 1,052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 12월부터는 급증하는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존속살해, 사이비종교집단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비하여 임상심리평가를 도입, 피의자들의 정신감정, 싸이코패스 판별, 범죄관련 성격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2020. 11월부터는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 11월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월에는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월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월에는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 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0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48,435점(전년 대비 38.5% 증가), DNA감식 32,102점(전년 대비 10.5% 감소), 심리분석 2,810명(전국), 문서감정 7,282점, 음성분석 3,199점, 영상분석 4,337점, 멀티미디어복원 2,132점으로 2019년 대비 15.0%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0.2.1을 운용 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 최종 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0년도에는 1,948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6,735건의 증거분석(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8,683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화성연쇄살인범이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범인을 특정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18년 전 거제시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피의자의 별건 범죄로 DNA정보가 수형인 등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속 기소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고발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권역별로 복약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증언을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24시간 이내 살인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긴급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기존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에 2021년부터 수행하게 될 2단계 연구에는 기존 연구사업 외에 국외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메트암페타민 원료제조법 특이 불순물 확인 고도화 연구', 가상화폐 사용흔적(artifact) 연구를 통한 가상화폐 획득 플랫폼 개발 및 사이버 공개정보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연구'를 확대하여 수행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발전을 통해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기존의 조서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수사과정 전반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25.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 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월에는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월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0. 12. 31.까지 전국 65개청에 총 890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38〉과 같다.

| 표 2-38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0년)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계	998	21	70	758	77	72

※ 전국 수사검사(986명, 2020. 12. 31. 현재) 대비 90% 설치

※ 설치 누계는 998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90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0. 12. 31.기준 197,934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84,957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으며,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385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운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2월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ISFG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19. 3월~12월 DNA 분야 자체시험연구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NGS)에 대한 유효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최신기법을 감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 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 6.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R&D 및 과학수사 기법 신규 콘텐츠 발굴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였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 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102%, 감정건수 약 450%, 감정장비 약 20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19년부터 국가디지텔포렌식센터 증축 후보지 선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대검 내 공원 공간을 증축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고, 2020. 5월부터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2020. 12. 2.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설계비 약 14억, 총 사업비 약 325억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하3층·지상 6층(건물연면적 12,455제곱미터) 규모의 증축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월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수원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 증거 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6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여 6개 고검 및 6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접수실에서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2018. 11. 1. 개정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 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9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화재, DNA, 법화학, 모바일, 컴퓨터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37개청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5년내에 전국 66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약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보관소(1인 20GB)를 구축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으로 확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도입사업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2010년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검찰 메신저 시스템 또한 2013년에 새롭게 구축하여 검찰의 소통문화를 강화하였다. 검찰 메일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일용량을 증설(3GB)하였고, 모바일에서도 접근 가능한 검찰 모바일 메일시스템도 2016년 오픈하였다.

또한, 2018년 『경조사 알림 등 지침』 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혼례 및 상례를 게시할 수 있는 퇴직자 경조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성추행·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창구로 작성자가 익명으로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볼 수 있는 '#WeTogether'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2019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 신규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의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수원고검 개청과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조직 폐지 및 신설 등 관련 정보를 수정하였으며,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e-PROS 고도화 사업 추진하여 통합검색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 등록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방침 등에 따른 검찰청 직제개편 관련 정보 및 검찰 주요활동 정보를 현행화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 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 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9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0년에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2021. 1. 1.부터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완수사요구 사건부 등 7개 신규 사건부를 신설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개정 서식을 반영하여 검찰 수사·결정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 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시행 2019. 12. 3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5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인터넷 자료저장방지, DB 및 서버 접근제어,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공격 차단,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업무용 PC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알면 편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인트라넷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노후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교체하고, SSL 복호화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직원들의 보안의식 고취 및 활성화 방안으로 해킹메일 신고 우수 직원을 선별하여 e-PROS에 공지하고 격려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8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브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허브 전문인력 채용, 초청교육 시행,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확보,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태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사이버수사역량을 국제적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수사과는 급증하는 중국발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조 지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에 따른 장기·영구미제 심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기별 「한·중 수사협의체 회의」에 참석, 지속적인 사이버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주한 미 FBI 사이버협력관과 매월 협력회의 실시 등 사이버범죄정보 교환 및 공조현안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주요 보안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 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의 정보 중 국내 위협정보를 선별하고, 정규화 등을 통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을 개발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20. 12월까지 총 50,695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서민 피해범죄 가상화폐의 진정성 및 가치 확인 방법 연구', '지능형 악성코드 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아키텍쳐 설계 연구', '가상화폐취급업소 거래패턴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연구', '사이버범죄수사를 위한 도메인 추적기술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R&D에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정보 추적기술, 4년)를 발굴하고 직접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 개발에 노력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수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수사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6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월),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월)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월),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월),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월),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월),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월),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월), 암페타민 검출 방법(2019. 6월), ADB-푸비나카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쿠밀 페가클론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DNA-DB운영 및 DNA감정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2018. 8월에는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월)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가. 추진배경

2020년 법무·검찰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2020년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외에서는 우리 선원에 대한 해적의 납치사건(3건, 무사 석방)이 발생하였고, 2020. 11. 반프랑스 정서에 편승한 주한프랑스 대사관 테러 협박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테러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테러 예방을 위해 구속 기소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수사

北 보위국원으로부터 지령 수수 후 관련 정보 등을 탐지·전달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북한이탈주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려고 한 인민군 장교 출신 탈북민 1명을 구속 기소 하였다. 신중한 입건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 남용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하여 32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5명을 기소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 확보 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장기 내사 사건을 점검하여 입건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은 종결하도록 지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건 위주로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내사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총 48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였고, 2020년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도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가. 추진배경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선거 및 선거운동 참여 연령(만 19세 ⇒ 만 18세)'이 변경된 새로운 선거제도에서의 첫 선거였고, 대립적 정치 환경에서 정부에 대한 찬·반 집회, SNS 등 사이버공간 내 정치활동이 과열화되어, 불법·탈법 행위 기승 등 선거 분위기의 혼탁이 우려되었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이에 검찰은 2020. 2. 10.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전국 청에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3대 중점 단속대상(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비롯한 선거범죄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은 9.5%(3,176명 → 2,874명), 구속인원은 68.4%(114명 → 36명) 감소하였고,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 39.2% → 892명, 31.0%)과 금품선거사범(649명, 20.4% → 481명, 16.7%)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 1.4%→131명, 4.6%)과 선거폭력·방해사범(111명, 3.5%→244명, 8.5%)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대립적 정치 환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 하에서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제20대 27명→제21대 50명)하거나 연설을 방해(제20대 9명→제21대 75명)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이 급증하였는데,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원칙적 구속수사, 사건실체 철저 규명' 등의 엄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하였다.

또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 선고된 판례분석 등을 반영한 수사실무 자료를 개정하고, 재판 진행 중인 선거사건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 하는 등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선거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 그림 2-73 | 국회의원선거 사범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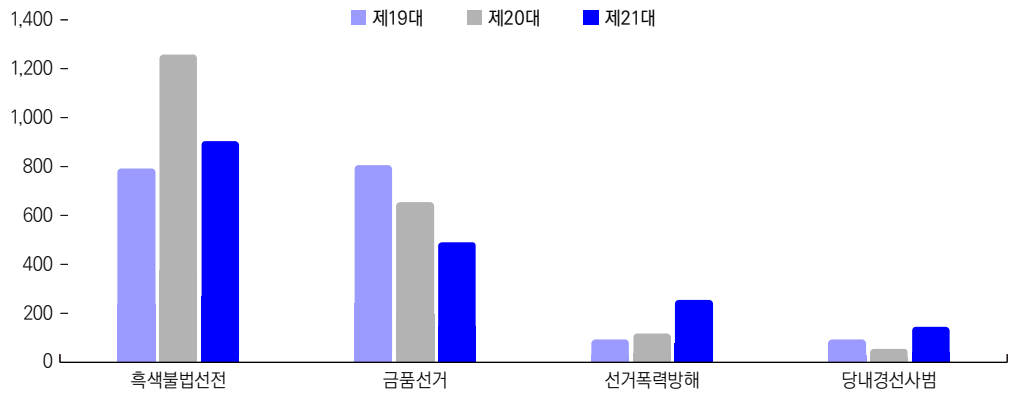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0년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도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

한국서부발전 수급업체 근로자(故김용균) 사망 사건 관련, 유족 등 고소·고발인들을 직접 수차례 면담하여 피해사실을 경청하고, 도급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사고의 근본원인 및 책임자를 규명하였으며,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 등을 기소하여 엄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지엠(주) 대표이사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대상 사업이 아닌 자동차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받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천지검·창원지검·군산지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각 공장 현장검증 및 본사 압수수색 등 정밀한 수사를 통해 핵심물증과 진술을 확보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

포스코 사업장의 정문 게이트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하고 코로나19로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포항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 외 노조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엄단하였다.

다. 노동사건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노력

일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리 및 수사 노하우를 체계화한 벌칙해설서 등을 발간하였고, 노동법 전문검사 커뮤니티 개최를 지원하는 등 노동업무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운영하여 노동사건 수사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동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 그림 2-74 | 노동법 전문검사 커뮤니티,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회의 개최

〈 노동법 전문검사 커뮤니티 〉

〈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회의〉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가. 추진배경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추이

노동·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권리 주장과 상반된 의견 표출 심화 등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고, 8·15 광화문 집회 등 일부 불법집회가 있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회금지제한 등의 이유로 대규모 집회·시위에서의 불법폭력집회·시위는 다소 감소하였다.

| 표 2-39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출처 : 경찰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요 집회·시위(건)	11,061	10,438	9,613	13,864	12,465
집회신고(건)	83,421	68,905	81,358	129,642	138,636
현행범 체포(명)	616	270	112	342	256
입건자(명)	3,425	1,440	602	1,515	1,488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 표 2-40 | 2020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휴전선 철책을 통한 월북시도(탈출미수) 사건	서울중앙지검
	• 北 보위국원의 지령을 받은 정보 탐지·전달(간첩) 사건	수원지검
	•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단체 자금지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 권리당원, 지역단체 회원 등 개인정보유출 및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사건	대전지검, 청주지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폭력·방해사건(244명 입건, 14명 구속)	서울동부지검 등
	• '개표소 보관 중인 잔여 투표용지 유출' 사건	의정부지검
	• 선거캠프의 조직적 기부행위 사건(4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 경쟁후보 2명에 대한 허위고소 유도 후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인천지검
노동·집단사범	• 한국서부발전 수급업체 근로자(故김용균) 사망 사건	서산지청
	•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건	인천지검, 창원지검, 군산지청
	• 8·15 광화문 불법 집회 사건	서울중앙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임하나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어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80개국(발효 77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7개국(발효 74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4개국(발효 72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법 제정 이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1 | 범죄인 송환 현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수	45명	48명	55명	74명	70명	85명	60명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중 외국에 총 420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202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2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요청	181	236	220	240	320	375	420
외국 요청	80	111	137	160	195	235	202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0년에는 심사대상자 14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7명, 국외이송 신청자 7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3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4	12명	5명
2015	11명	1명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2018	2명	6명
2019	6명	3명
2020	1명	0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 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54%에 이르고 있다.

한편,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397건,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이다.

| 표 2-44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 등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이에 대한 공여행위,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 9. 2.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 가결되어 2019. 4. 23.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 그림 2-75 | 국제협력성과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대사 방문(2020. 11.)

12.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추진배경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공수처 출범 업무를 지원하였다.

나. 추진경과

공수처법이 2020. 1. 14. 제정, 2020. 7. 15. 시행되었고, 2020. 12. 15. 신속한 공수처 출범 및 공수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 차례 개정되었다.

2020. 2. 10.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법무부 인력을 파견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등 지원을 거쳐, 2021. 1. 21.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추진배경

2019. 4. 11.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결정가능기간 중에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입법시한 2020. 12. 31.).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형법」 정부안을 마련하였고, 2020. 10. 7.부터 2020. 11. 16.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0. 11. 25.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기존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하면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결정 가능기간을 임신 24주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요건을 차등 규정하였다.

즉,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낙태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존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14. 법무·검찰 비공개 내규 공개 전환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가. 추진배경

2020. 6.~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법무·검찰의 비공개 내규가 지나치게 많다는 사회 각계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무·검찰 비공개 내규의 공개 전환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0. 6.부터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79개와 법무부 검찰국 내규 6개의 공개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였고, 2020. 6. 24.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검훈령), 7. 28.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각각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2020. 10. 7. 대검찰청 내규 총 31개를 공개 전환하였다. 나아가 법무부 검찰국 내규도 10. 21. 공개 전환 2개, 일부 공개 전환 1개를 완료하고, 11. 3. 2개 규정은 폐지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일반적인 시설 운영 및 업무처리에 대한 절차 관련 규정이나 조직 구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 공개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전환하고, 다만 수사·사건처리 기준, 형집행 등 사법집행에 대한 실체적 규정은 공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20. 6.~11.까지 대검찰청 내규 총 31개, 법무부 검찰국 내규 총 3개를 각각 공개 전환(일부 공개 전환 포함)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법무·검찰의 전향적인 비공개 내규 공개를 통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가. 추진배경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가정폭력 관련 제도개선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20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9. 11. 의원입법 형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20대 국회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으나, 2020. 9. 2. 다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2020. 9.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10. 20. 공포되었으며, 2021. 1. 21.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였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법률 적용 대상 범죄 범위 확대, 임시조치 유형 추가,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등 다양한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조치 개정을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가. 추진배경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국정과제로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스토킹 등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이 채택되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17. 8.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법원, 경찰청, 대한변협, 여성단체(한국 여성의 전화)가 참여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2018. 2. 14. 관계부처(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8. 5. 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던 중 관계부처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020. 11. 27. 재입법예고를 하였고, 2020. 12. 30.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정부안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안은 스토킹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출동 사법경찰관리가 취하는 현장 응급조치, 경찰서장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발하는 예방응급조치,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하는 잠정조치 등 새로운 보호절차를 마련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에 제출한 법률이 제정되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정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8.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45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49,127	49,401	49,335	49,048	48,729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포항, 부산서부 등 총 7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41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0. 12. 기준 전국 37개 기관에서 총 409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행 5단계로 운영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등급 체계를 간소화하여 복잡성을 해소하는 한편, 보호관찰 개시 초기에 집중되는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 점검 위주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20. 8월부터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가 종전 4대 강력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재범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9. 3월부터 6개월 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중점 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억제 효과성에 따라, 보호관찰 개시 초기 약물검사를 기존보다 최대 3배로 강화하는 한편,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1:1상담 지원 및 집중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2020. 6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주취·정신질환 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46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범률	7.2	7.6	7.9	7.6	7.4	7.6	7.9	7.8	7.2	7.2	7.3

| 그림 2-76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평균 재범률 7.54%보다 0.28% 낮은 7.26%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확대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 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47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판결전 조사	3,597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25,038
법원 결정 전 조사	4,234	6,398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64,830
검사 결정 전 조사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44,075
청구전 조사	304	1,376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21595
소급청구 전 조사	-	2,251	7,772	354	247	192	119	79	86	39	52	37	11228
환경조사	2,009	1,738	1,581	1,715	1,701	1,594	1,561	1,555	1,920	1,496	1,442	1,356	19,668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 1월 한강 시신훼손 사건, 15년 친딸 성폭행 사건, 무의도 시신 유기 사건,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 등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0. 8.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보석 결정전조사가 시행되는 등 향후에도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제도 영역 확대와 함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 2020년까지 863명의 조사관을 양성하였다. 2019년부터는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의 체계적 육성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시행, 조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조사업무를 전담한 직원 중 20명이 전문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였다. 향후 전문조사관은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조사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정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9만6천 명, 총 89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48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건수	54,427	47,658	45,842	46,179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 표 2-49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연인원	105,895	110,243	115,536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859,082

| 표 2-50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건수	2,127	2,249	2,964	2,992	1,974	1,667	1,626	15,599
연인원	22,846	22,569	26,522	26,338	16,591	13,855	13,849	142,570

| 표 2-51 | 사회봉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봉사	접수	37,085	38,153	41,435	44,386	42,249	40,279	41,943
	실시	43,293	45,549	48,395	53,231	51,224	49,788	51,448
벌금대체	접수	6,758	8,554	8,530	8,282	7,624	7,413	9,097
	실시	7,765	10,032	9,892	9,819	9,062	8,709	10,561
계	접수	43,843	46,707	49,965	52,668	49,873	47,692	51,040
	실시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2020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15,797,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78,015명 등 연인원 총 93,812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 4월에는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나눔농장'(시흥시 소재)인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하여 대상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회 및 언론에서 사회봉사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을 내실화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통해 대상자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그림 2-77 | 사회봉사 집행현장

일손부족 농가지원 사회봉사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교체) 사회봉사

태풍피해 농가지원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2-52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수강명령	30,281	33,513	38,857	45,459	41,884	42,408	50,357	282,759
이수명령	4,602	5,571	5,073	6,290	7,999	7,808	8,225	45,568
기소유예 등	16,268	19,155	36,889	27,564	20,897	19,173	16,139	156,085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담당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법무연수원 사내강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57명의 전문분야 강사를 양성하였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20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해서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78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심성개선 소집단 수강프로그램

마.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신혜진

범죄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여 격려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0. 7. 1.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전수식에는 추미애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YTN 상무 등 41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의 범죄예방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선진 범죄예방을 위한 미래를 다짐하였다.

추미애 장관은 기념사에서 “전국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협조, 보호직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청주소년원 이재환 소년보호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 포항보호관찰소 전상중 보호관찰위원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태산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박성환 계장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5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강신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 2. 25. 시행) 개정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심사

위원회에서 분리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2020. 7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상안빌딩 7층)에 신설되어 2020. 8. 2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경기도 관내 소년 가석방, 임시퇴원 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보호관찰 임시해제,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 전자감독 및 성충동 약물치료자 임시해제와 그 취소, 성충동 약물치료 일시 중단 및 재개 등을 심사·결정하고 성인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가. 전자감독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홍재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 '10년 살인, '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 8. 5.부터는 같은 해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정해 적용되었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20. 12월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 아동 성범죄자 사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된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우선, '19. 4월부터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실시 중인 1:1 전자감독을 인력사정의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확대('19년 8명 지정, '20년 25명 지정)하였고, '21년 1:1 전자감독 전담인력 41명을 확보하였다.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관찰관과 무도실무관으로 각 1명으로 구성, 24시간 교대 당직체제)을 기존 전국 50개팀에서 56개팀으로 확대('20. 2.)하고 야간시간대 미귀가자 및 심야시간대 외출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귀가지도를 강화하였다.

’19. 4월부터 활용 중인 지자체 CCTV(대전, 광주, 서울 마포구) 활용은 강원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안산시·부천시 등으로 확대하였고 서울 역시 서초·성동·은평구 등 6개 자치구를 추가 연계하였다. ’21년 중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연계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 2월에는 기존 범죄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한정해 가해자(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현행 전자발찌 크기의 2/3 수준인 ‘2020년형 전자장치’를 개발·보급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표 2-53 | 연도말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재원	151	127	393	932	1,032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4,052

※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26.8배 증가

2) 평가 및 발전방향

1:1 전자감독 확대 및 야간시간대 지도감독 강화 등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19년 1.7%에서 ’20년 1.27%로 전년 대비 0.43%p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1 전자감독대상자 33명 중 재범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1:1 전자감독제도가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새로 도입된 ‘전자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기존의 보석제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화하고 인신구속 등 신체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형사 절차상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1. 6월부터는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기존에 경찰의 전자감독 업무 이해도 부족 등으로 전자감독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전자감독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54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성폭력 실시사건	205	591	465	685	874	1,747	2,370	2,650	2,894	3,046	3,270	3,239	3,239
재범자	1	0	3	15	21	30	48	53	58	66	83	55	41
재범률 (%)	0.49	0.00	0.65	2.19	2.40	1.72	2.03	2.00	2.00	2.17	2.53	1.70	1.27

나.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치료처우과 서기관 김택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0.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73건으로, 이중 27건(검사 청구 61건, 기각 33건, 미결 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46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0. 12월까지 총 49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23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0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2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33명이다. 현재 전국 18개 종합병원이 성충동 약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 26건을 집행하고 있다.

| 표 2-55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현재원	1	3	7	8	14	17	22	39	33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49명을 집행하였으나 2020년까지 재범한 사람은 없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79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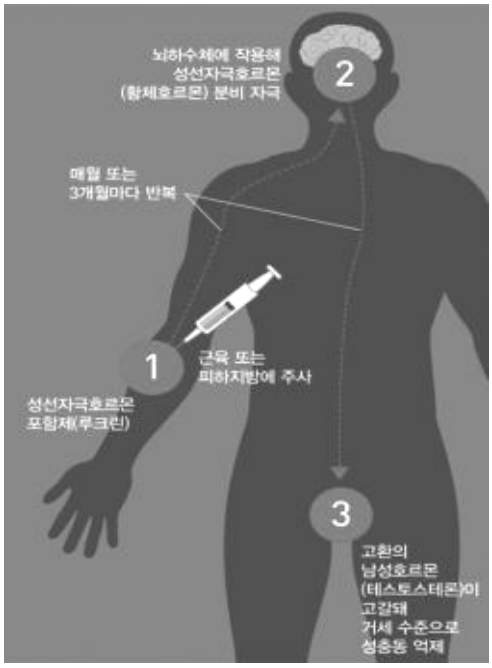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정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주체를 각각 일원화하고 등록 대상 성범죄를 확대하였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년 말 기준 총 94,160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11년 대비 337배 증가) 중이고, 그 중 7,077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6,790명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었다.

| 표 2-56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건수	279	2,337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2) 평가 및 발전방향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 관리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신상정보 관계기관 공동매뉴얼'을 제작하여 여성가족부·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내 제도 홍보물 설치 및 KTV(한국정책방송), 전국 지하철 및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영상을 상시 송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하는 등록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는 지하철, 찜질방, 버스, 공중화장실 등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다시 선택하는 등 범죄유형과 범행시간도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여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홍보분야에서는 전국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과 게시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성범죄 데이터는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된다.(*「2020 성범죄백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앞으로는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고,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신상등록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국민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0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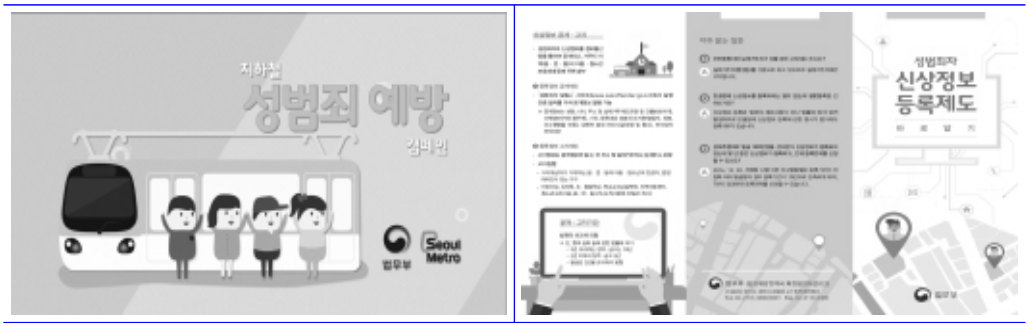

3. 감호제도 개선

가. 치료감호소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와 수용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집중치료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소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서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위한 사업비(총 492억 원)를 확보하여 2019.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0. 9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2020.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3) 향후 추진계획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과 같은 1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수용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20. 12월 현재 의사 정원 20명 중 11.5명(충원율 57.5%)이 근무하며 1인당 환자 120명을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 2월 민간스카웃 제도를 활용한 치료감호소장 임용으로 치료감호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의사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수당가산금 신설과 해외학회 참가 지원, 법정신의학 연구소 설립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치료감호소의 위상 강화로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 결과, 2019년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각 1명 배정, 2020년도 정신과 전공의 2명 확보, 퇴직의사 3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의사채용 안정을 위한 의사 직급 상향 및 연봉인상, 수당 신설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후 관사 리모델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며, 의협신문 등에 채용 홍보도 강화하여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0. 12. 31. 현재 15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81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57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집행인원	45	31	24	18	20	22	31	17	31	30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58〉 같이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옷걸이 조립, 마스크 포장, 자동차 핸들 커버 제작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58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	-	-	1	-	1	-	2	-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	-	-	-	-	-	-	-	-	-
고졸자격	-	-	-	1	-	1	-	2	-	-

| 그림 2-82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0, 표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6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의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15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적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연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정신질환범죄자 관리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강화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입원 등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였고, 치료명령 대상자의 치료약 복용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복약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회 주사로 1~3개월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전국 5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의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감호소 간호인력 증원을 통해 유휴병동 1개 동을 재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였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소년원생들을 집중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대전에 의료소년원을 신설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치료처우과 보호사무관 임합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 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서울대병원, 중앙대 병원 등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59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집행유예	5	415	446	584	473
선고유예	0	7	5	6	0
기소유예	11	184	121	160	99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61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편영근

1) 추진배경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 수용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를 위한 근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의무과장 11명, 정신과 전문의 1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도 26명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관찰을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의료만족도를 증진하고자 간호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3)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정신질환자 의료재활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소년원에 의료전담인력 8명(간호사 4, 약사 1, 특수교사 2, 작업치료사 1)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재활 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직급 상향, 정신건강 간호사를 증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전에 의료소년원을 신설하여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소년원생들을 집중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천안·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반기리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6개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최초 개청하였고, 2020. 9월 천안과 의정부지역에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추가 신설하여 현재는 전국 18개 지역에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 및 초기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희망찬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그림 2-83 | 천안·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2) 추진내용 및 성과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에 전용면적 625.95㎡(189.7평),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전용면적 613.18㎡(185.8평)으로 시설을 조성하였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는 13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으로 반을 편성하여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및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생들은 (학교)폭력예방, 절도비행예방, 사이버범죄예방 및 인터넷·약물중독예방 등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모의법정, 진로지도, 장애체험, 문화예술교육 등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법원 소년부 판사는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과 체험중심 인성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데,

그 제도가 '상담조사'이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조사관과 1:1 면담, 각종 심리검사 등을 하며,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소년부판사에게 전달되며, 이는 법원 심리와 소년의 처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초·중·고교 등 일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공무원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지속적인 청소년꿈키움센터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의 편차 해소 및 교육생의 대기기간 축소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전국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앞으로 각 지역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4 | 천안·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환경

나. 개시초기 재범집중 현상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호관찰 개시 3개월 이전의 재범률이 보호관찰 전기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그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대책은 개시 3개월 이전에 보호관찰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재범방지 정책에 집중해 왔다.

그렇다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이내의 재범률은 왜 높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보호관찰 개시 초기 재범 원인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개시 초기 재범현황 분석을 위해 2019년 4분기에 개시된 3,306명을 2020. 6월까지 추적하였다. 추적분석 결과, 3,306명 중 273명(8.25%)이 3개월이내 재범하였으며, 161명(4.68%)이 추가 3개월이내 재범하여 총 434명(13.1%)이 6개월이내 재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3,306명의 범죄전력을 전수조사한 바, 3,306명 중 20.9%인 691명이 보호관찰 개시 전에 재비행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보호관찰 개시 이후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통해 초기 재범 증가 원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간 보호관찰 개시 초기 재범 증가원인은 보호관찰 개시 초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밀도있게 시행되지 못하여 재범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이번 분석을 통해 보호관찰 개시 전 이미 높은 비행행동이 보호관찰 개시 후 점진적으로 억제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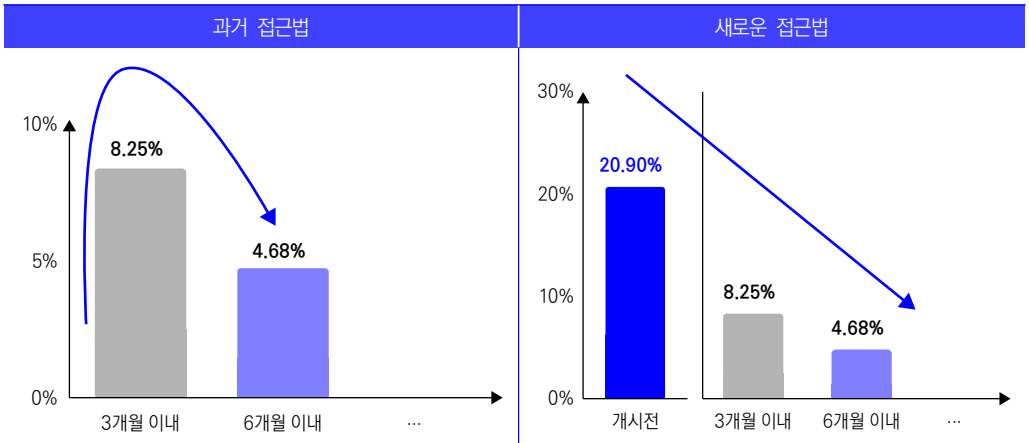

또한, 보호관찰 개시전 여죄행동은 보호관찰 분류등급 분포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발생하였으나 보호관찰 개시 이후 중·저위험군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에 순응하며 재범률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고, 고위험군은 보호관찰 개시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동이 지속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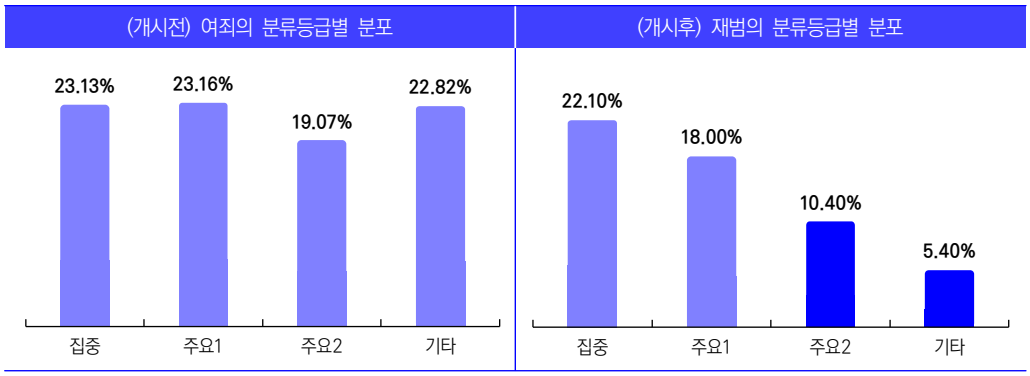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개시 6개월 이후 재범률이 극적으로 감소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8. 2월에서 4월 사이 개시한 3,794명을 2020. 6월까지 보호관찰 전기간에 걸쳐 추적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중장기 재범추이를 분석한 바, 3,794명 중 개시 초기 6개월 내 51.9%가 재범하는 등 개시 초기 재범 집중 후 재범률이 급감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으나, 재범 등으로 인한 조기 종결사건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기간별 미종료 사건수만을 모수로 하여 재범률을 산정한 결과 재범위험은 보호관찰 전기간에 걸쳐 비교적 균등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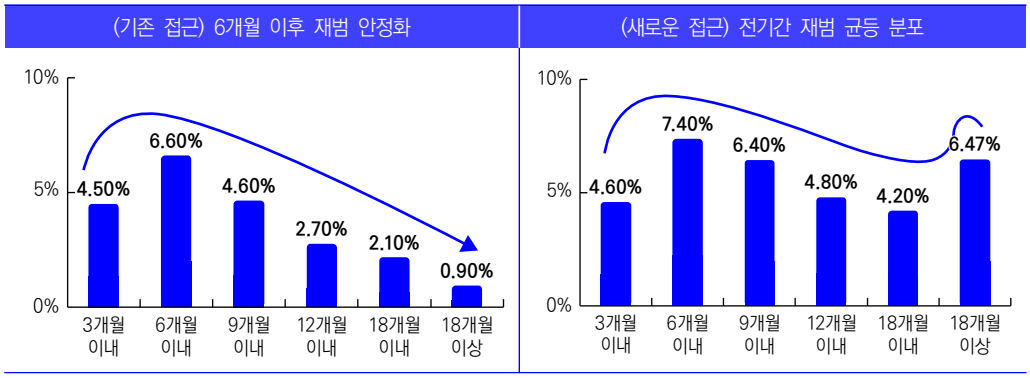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호관찰 초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재범위험성에 따른 차별화이다. 보호관찰 초기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중·고위험군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위험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개발과 분류등급 방식의 개선이다. 중·고위험군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재정비 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중·고위험군은 보호관찰 전기간에 걸쳐 재범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처럼 기간 경과에 따른 분류등급 하향을 지양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고위험군 전담 직원제의 부활이다. 보호관찰 개시 이후에도 재범행동이 억제되지 않는 재범고위험 집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기존 '고위험군 전담 직원제'를 보다 강화된 형태로 부활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넷째, 재판전 보호관찰의 도입이다. 보호관찰 이전 여죄 전력자의 경우 보호관찰 개시 이후에도 비행행동이 감소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 보호관찰 이전인 재판단계부터 보호관찰을 개시하여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재범 분석을 통해 그간 보호관찰 개시 초기 3개월 이내 재범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재범 발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2021년에는 보호관찰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재검증하는 등 분류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며, 소년법 개정을 통해 '재판전 보호관찰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는 등 보호관찰 제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제도 도입

●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0. 3월 인천에서는 여중생이 동급생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연이어 10대들이 서울에서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운전하다 대전에서 오토바이배달을 하던 대학생과 부딪혀 사망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계속되는 10대들의 강력범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 급기야 국민청원이 등재되기에 이르렀고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도 10대들의 심야시간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야간외출제한명령 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하였다.

| 표 2-60 | 외출제한명령 재범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년 평균 재범률	10.6%	11.7%	12.3%	12.8%	12.3%	12.8%	13.5%
외출제한명령 재범률	7.9%	9.3%	8.4%	8.4%	8.6%	8.2%	8.9%

2020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은 13.5%를 보이는 반면, 외출제한명령 부과자의 재범률은 8.9%로 대략 4.6% 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은 확연해 보였다. 다만, 외출제한명령을 강화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행 외출제한명령은 음성감독 방식으로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에서 자택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감독자의 음성을 확인하여 재택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심야시간대 전화를 활용한 방식으로 외출여부를 점검하다보니 피감독자는 물론 가족들의 수면권에 상당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 또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였다. 이러한 외출제한명령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면서도 효과적인 감독방식을 모색하던 중, 2020. 2월 발족한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외출제한명령 감독의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감독'을 제안하였다.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감독은 기존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이 기계식 음성에 의한 감독 위주의 방식에서 전문상담사가 야간시간대 자택으로 전화를 하여 5 ~ 10분 가량 상담을 하는 동시에 외출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통해 야간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낮추는 한편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재범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콜코칭과 함께 월 중 심층상담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감독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등 9개 기관의 200여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시범 실시를 운영하였다. 시범실시에 참여한 200여명의 외출제한명령 피감독자 중 66.2%는 외출제한명령 기간이 3개월 이내였으며 참여 기간동안 2.6회의 심층면담과 26.4회의 콜코칭 상담을 받았다. 시범실시 결과, 2020년 외출제한명령 비참여자의 음성감독 위반율은 평균 7.29%인데 비해, 콜코칭 참여 대상자의 위반율은 6.39%로 12.3%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 참가자의 상당수가 콜코칭 상담 이후 심야에 외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소하였으며 학업과 진로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매우 유익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은 기존 음성감독 방식의 외출제한명령 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통제 중심의 외출제한방식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병행하여 외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단절시키는 한편 비행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외출제한명령 감독시스템은 IT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재보다 훨씬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상담사의 콜코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인성을 보완하여 실시한다면 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의 심도 있는 효과성 검증과 함께 외출제한명령 제도와의 연계발전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라.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강화

● 소년범죄예방팀 박상문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월 「보호소년법」에 근거하여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설립된 이후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2001. 5월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경기(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월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 안양(여자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1,500만 원과 2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기·경기여자·부산·광주·대구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였다. 2014년과 2016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과 12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경기여자·부산·대전자립생활관을 증·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는 2008 ~ 2019년 최근 12년간 총 1,853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 12월에는 남자 위기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를 복권기금 57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에 대지면적 9,989㎡(약 3천 평) 건축연면적 3,289㎡(약 1천 평) 규모의 YES센터를 신축하였다. 2019. 2월에는 기존 'YES센터'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동차정비, 용접, 골프매니지먼트,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5개 과정, 학생 60명, 직원 20명,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00%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전문 직업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8. 12월에는 여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설립을 위해 복권기금 28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안산에 대지면적 261㎡, 건물면적 615.56㎡ 규모의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2019. 2월 안산센터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한 T/F를 구축·운영하여 2개 교육과정(뷰티, 스킨케어) 개설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0년 운영비 예산 2억 4천만 원 및 인력 5명(정원 23명, 시간강사 2명)을 확보하였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0. 3. 5. 개청, 2020. 4. 13. 뷰티학과(네일과 메이크업, 정원 20명) 과정을 개강하여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대비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 7월에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별관에 '상상드림카페'를 설립하여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취업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 11. 24.에는 삼성증권·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설치 운영비 2억8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조직 및 인력(직원 정원 75명),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협회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2020. 4. 20. 종전의 추천제에서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협회 인사의 공정성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조직·인력·예산·사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관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여자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본관에 '공유주방'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비행예방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교육·수용 전담제' 확대 등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

● 소년보호과 사무관 최윤경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왔다. 최근 인력충원을 통해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증원된 감호전담인력(2020년 42명, 2019년 34명, 2018년 38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 2020년 대구, 대전, 춘천 3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 그림 2-85 | 교육·수용 전담제 언론보도

세계일보

소년원 교육·수용 업무 분리...교정교육 효과 거둬

기사입력 2019-09-09 11:28

소년원의 교육·수용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개편하자 교정교육 효과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근무체계를 정착시켜 교정교육 전문성을 높여 재비행 방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수용 전담제는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 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업무체계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소년원 교육과 교대 근무 인력 40명을 증원해 근무체계개편을 시작했다. 또따라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며 소년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나는 가운데 주간 교육과 야간 수용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이 정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우선 도입해 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14% 증가했다.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도 증원 인력 47명을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방침이

법무부 보다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19. 9. 9.(월)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담당자장	소년보호과장 김용훈 02)2110-3346	할 당 자	보호사무관 김태섭 02)2110-3344

소년원 교정교육이 더욱 충실해집니다.

-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 실시 -

□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원 교사입니다.

□ 비행청소년을 교화하는 일이란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함에도 그동안 소년원은 **언론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함

□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하여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0년 소년원 교육과정은 〈표 2-61〉과 같다.

| 표 2-61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0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 에너지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8호(男) 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8호 9호 10호	• 8호(女)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8호(제주지역 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제주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소년원생의 선호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을 위해 광주소년원에 에너지설비, 춘천소년원에 그래픽디자인·디저트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 소년보호과 사무관 최윤경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 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 ~ 15인 규모의 대형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소규모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중 6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대전)의 시설 소규모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1년에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 그림 2-86 | 소년원 시설 소규모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수도권 2개 소년원(서울·안양소년원)의 생활실 리모델링,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을 통해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기관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그림 2-87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소규모화 사업과 함께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소규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개편

소년보호과 서기관 이헌구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선호도와 취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 직업훈련 직종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 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건축환경설비, 서비스마케팅, 가발전문 등 5개 직종을 폐지하고, 에너지설비,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등 3개 직종을 신설·운영하였다.

2020년에 신설된 3개 직종 중 에너지설비는 지역사회에 특화된 융합과정으로 태양광 등 신생·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실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래픽디자인과 디저트 과정은 소년원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업도 가능한 과정이다.

| 그림 2-88 | 소년원 직업훈련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생들의 직업훈련 직종 선호도와 최근 취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년원생이 배우고 싶어하는 직종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개편·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이 소년원생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등 재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동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인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운영 및 광주·전주솔로몬로파크 추가 건립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4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2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 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직후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및 전자책자(e-book)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다.

| 표 2-63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디지털 소통로 중·고등용('20.)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19.12.)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디지털 소통로 초등용('20.4.)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소책자('20.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 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후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일회성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64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희망재단, 청소년교육전략2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등 민간기관 14개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한 74개 소속 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법문화진흥센터는 총 88개이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에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였다.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법연수관(2008. 1월 개관)과 법체험관(2009. 3월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와 차별화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충청권(대전 로파크), 영남권(부산 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광주 솔로몬로파크가 2020년

착공, 2022년에 준공 및 개관 예정이며, 전주 솔로몬로파크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89 |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 솔로몬로파크

부산 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에 법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심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청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의 법문화진흥센터를 발굴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였다.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시설 법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법과인권 체험 동아리 지원 사업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재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소통로' 교재를 발간하는 등 법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인프라 확대에 힘썼다.

2021년에는 변화·확대된 법교육의 시대적 역할과 중요성을 입법 목적에 반영하고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체험교육 확대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며, 시민법교육, 학생자치법교육 등을 사회 변화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매년 40만명 이상의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는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 또한 2022년 완공될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솔로몬로파크 등 전국 4개 솔로몬로파크 시대를 앞두고 솔로몬로파크 별 특색을 살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법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동훈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약 2천 7백 명 이상의 시민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 광주 남구 등 5개소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감소와 부처 간 협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

사업 300) 선정 경남 남해군 등 3개소와 법무부 갈등지역 경기 성남 등 2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도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감소와 부처 간 협업 효과 극대화 및 범죄예방-지역재생 협업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남 순천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선정 경남 통영시 등 3개소와 법무부 갈등지역 부산 서부 등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무부 갈등지역에는 작은 셉테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20년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 35개 팀, 160명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디지털 보안관, 피해예방,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의 주제로 228회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고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 807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20년에는 국가지정 전염병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에 지장이 생겨 부산시 부산진구, 전남 완도군 등 12곳에서 지역당 평균 8회, 90명(총 80회, 1,079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민친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성남보호관찰소와 지역여건이 열악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지역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법교육·법질서 실천운동, 작은 셉테드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 갈등조정에 도움을 주었다.

| 그림 2-90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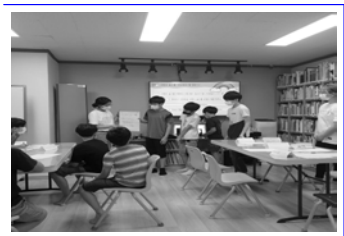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2)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 활동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제목 :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와 유튜브 광고(조회수 약 374만 회, 2021. 1. 21. 현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국 약 115개 전광판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였다.

| 표 2-65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1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 제작 3,000회 이상 송출(SBS TV, CMB 등 전국 케이블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 스마트폰용 앱 출시('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한국인의 법과 생활'), '나의 LQ테스트' 서비스 제공 및 카툰북(법아! 카툰과 놀자) 발간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의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한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를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 TV, 채널 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세상에 정당한 폭력은 없습니다')하여 수도권 1~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승강장, 대합실) 및 유튜브, 전국 약 115개 전광판 국가광고 송출

| 그림 2-91 | 2020년 홍보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

유튜브 광고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 법질서 실천운동은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활동을 최소화하고 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캠페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대면으로 배포하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전환하였고,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팟캐스트, SNS 캠페인 등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펼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산업 재생사업 선정지역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선정지역 및 법무부의 갈등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각종 법교육 실시 및 필요한 각종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 제고 등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감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2020년 법질서 홍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광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영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출소자 34,114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국 지부(소) 단위로 확대하였고, 2020년까지 갱생보호대상자 63,686명에게 98,190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갱생보호대상자 가족 1,562명에게 132회에 걸쳐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10]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10) 허그(HUG) 후원의 날 : 갱생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부(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 그림 2-92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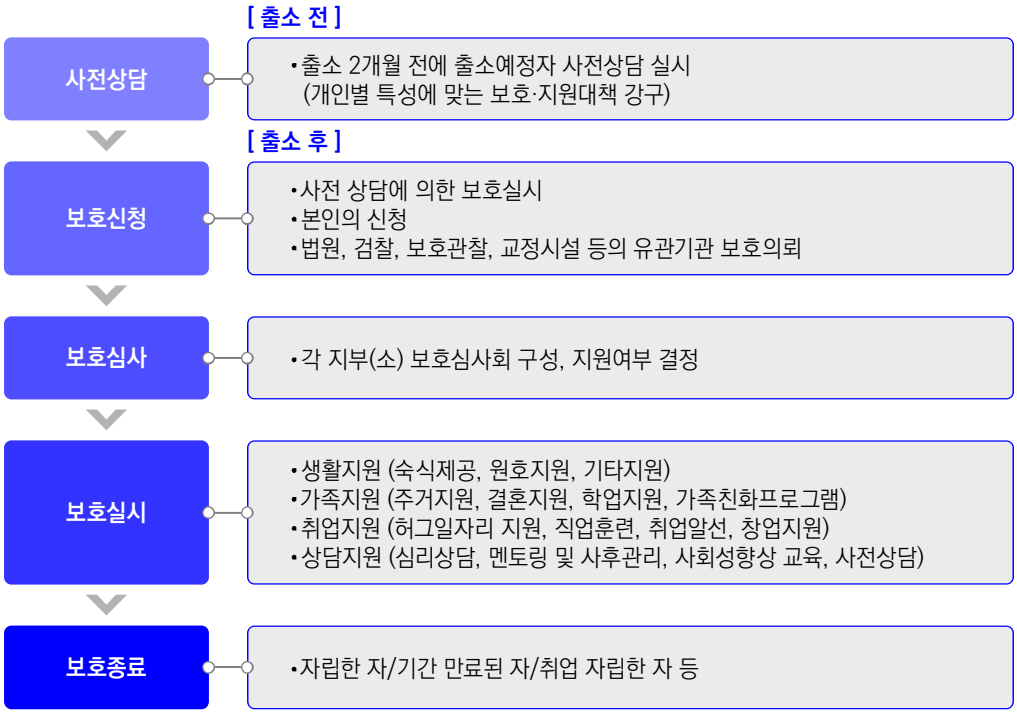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서면상담 등) 도입하여 교정기관 및 소년원과의 협력을 통해 출소(퇴원)예정자 대상 서면상담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소통창구 카카오채널(HUG)을 개설하여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단·교정·보호관찰소 간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33회, 459명 참석)하는 등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 및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6,605명(전년 동기 대비 488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288명이 수료(3,501명 진행 중)하였으며, 이 중 1,905명(83.3%, 전년 동기 대비 178명 증가)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표 2-66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6	4,997	4,619	2,797	60.6
2017	5,655	5,130	3,005	58.6
2018	5,726	2,220	1,528	68.8
2019	6,117	2,282	1,727	75.7
2020	6,605	2,288	1,905	83.3
계	29,100	16,539	10,962	66.3

| 그림 2-93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공단 비대면 소통창구(카카오톡채널 허그)

공단·교정·보호관찰 3자 협의회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2008. 6월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례화를 통해 1,019개 업체에 출소자 2,711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0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80%→90%)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0. 10월 법무부 장관이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에 대한 감사패를 직접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 그림 2-94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식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감사패 전달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가공), 경기 화성(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2-67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1. ~ 2020.)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울 산	927	761	82.1	390	51.2	
인 천	850	752	88.5	387	51.5	
경기남부	472	334	70.8	97	29.0	
충 남	297	263	88.6	92	35.0	
전 북	398	319	80.2	91	28.5	
경 남	492	390	79.3	99	25.4	
경 북	155	111	71.6	17	15.3	
계	3,591	2,930	81.6	1,173	40.0	

또한 매년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출소자 201명에게 79억 3,46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20년 한 해 주거지원 110호, 심리상담 12,669회, 수형자 가족지원 802명 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총 2,378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3,303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았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채용하여 2020년까지 63,686명에게 98,190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학업지원 843건, 주거지원 28가구, 심리상담 407건, 원호지원 452건, 접견지원 279건, 장학금 지원 65건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68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0.)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관리주택(호)
1	서 울 지 부	서울 중앙, 남부, 동부 지역	219
2	인 천 지 부	인천, 부천	259
3	경 기 지 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290
4	경기남부지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66
5	경기북부지부	경기 북부	167
6	강 원 지 부	강원 전지역	86
7	대 전 지 부	대전	169
8	충 남 지 부	충남 전지역	30
9	충 북 지 부	충북 전지역	72
10	대 구 지 부	대구, 경주, 포항	212
11	경 북 지 부	경북 전지역(경주, 포항제외)	14
12	부 산 지 부	부산	127
13	울 산 지 부	울산	107
14	경 남 지 부	경남 전지역(부산·울산 제외)	131
15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전 지역	173
16	전 북 지 부	전북 전지역	101
17	제 주 지 부	제주	33
18	서울북부지소	서울 북부지역	122
합계			2,378

| 그림 2-95 |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활동

수형자 가정방문 및 환경조사

수형자 미성년자녀 장학금 전달

3)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20. 11월 공단본부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자원봉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 덕분에, 다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69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 엑 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홍보대사)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2020. 11. 04.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아울러, 2013년부터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그림 2-96 |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4)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가정복원위원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0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16개, 자원봉사자 6,616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0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 위원	취업 지원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종교 교화	여성	사전 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16	11	36	26	22	14	22	23	31	131
인원	6,616	42	747	700	543	174	434	549	928	2,499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까지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 일자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목포 등에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자녀학업지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2020년 신문(482회), 방송(44회), 인터넷매체(1,972회), 온라인매체(16,567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출소자 우수사례 수기집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보라미 방송에 송출하던 취업지원 관련 홍보 영상 외에도 생활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법무보호사업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은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이기용

가. 개요

신뢰 받는 법무·검찰문화를 정립하고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감찰업무를 통한 직장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나.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2차 피해 모니터링, 갑질 신고 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피해)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와 교육 실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절차 안내 및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역 신고 안내 등을 통해 비위 발생에 대한 일반예방 및 공직윤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청렴한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비위행위자, 감독자의 과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 활동, 부장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제도 신설 등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감찰활동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 추천을 하였다.

3)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 등이 감찰첩보 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4)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보다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위해 파견직원을 정식 직제화하여 해당 감찰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라. 감찰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9. 10월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을 통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사유 확대, 법무부에 대한 보고의무, 자료제출의무 등 법무부의 검찰 감찰업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확립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전면 개편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위원회 심의대상을 5급이상으로 확대하고, 법무부 감찰위원 11명 중 10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감찰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찰 기능을 도모하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혜주

가. 자체감사체계 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

1) 추진개요

2020년도에는 '적극행정 확산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자체감사의 목표로 정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자체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면책심의를 위한 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사팀을 신설하여 비위신고 사건의 직접 처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1년간 감사주기와 감사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04개 소속기관과 1개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에 맞춰 특별 복무감사, 내부 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법무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서면감사로 진행하였으며, 총 12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65명에게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하였고,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879만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71 |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105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7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72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조치결과 / 종별	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등		회수		감액 등	
	건	인원	금액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123	65	58,788	3	3	4	5	98	57	8	20,061	10	38,727
종합감사	46	30	20,061	0	0	1	1	37	29	8	20,061	0	0
특정감사	24	12	38,727	3	3	3	4	8	5	0	0	10	38,727
복무감사	53	23	0	0	0	0	0	53	23	0	0	0	0

나. 반부패 시책 적극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1) 추진개요

공공부문의 높은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7년부터 우수기관으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최초로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장관 주재 회의를 통해 부패방지시책평가 지표별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청렴도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인 '신고자 보호 제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에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2)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① 고위공직자 대상 신개념 청렴교육(청렴LIVE) 실시

2020. 7. 10.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장·차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 고위공무원 35명 참석한 가운데 '100분 청렴LIVE'를 개최하였다.

청렴LIVE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청렴교육을 접목한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새로운 청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② 법무부 청렴소식지 “청렴알림e” 창간호 발간

법무부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0. 8월 청렴소식지 “청렴알림e”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청렴알림e”는 발간 전 공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이며, 창간호에는 2020년 상반기 본부와 소속기관의 주요 청렴추진 활동을 소개하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에 관한 특집기사와 청렴 수기 공모전 우수작 등을 담았다.

또 공모전 수상작 속 사연을 바탕으로 청렴퀴즈를 함께 수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청렴알림e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발행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③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웹툰·영상) 대국민 공모전 개최

조직내 갑질을 근절하고 보다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웹툰·영상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2020. 10. 21.부터 11. 27.까지 개최하였다. 총 77편(웹툰 53편, 영상 24편)이 접수되었고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 3차에 걸쳐 심사하여 최우수작 2편과 우수작 8편이 선정되었다. 우수작 10편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으며, 향후 갑질 예방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경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18. 8.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 272개 과제)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기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는 각 부처가 제출한 전년도 이행결과에 한하여 사후에 논평을 하는 것에 그치고 평가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쉽게 측정 가능한 정량적 산출물에 치중하는 문제가 있어 각 부처의 이행계획 수립단계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자문단의 자문 및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선정된 중점과제에 관한 과제별 이행 가이드라인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과정에서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통하여 분야별 추진 과제의 적극적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인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증진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차별시정명령 활성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현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18회의 심의를 수행하여 총2회 시정명령을 발한 바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차별로 인한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가중요건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1.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점을 검토·반영하는 등 시정명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0년의 주요 성과로는 유엔 총회 사형제 모라토리엄 결의 찬성 표결이 있다. 또한 법무부 소관 인권조약과 관련하여서는 유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도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진정 사건 및 유엔 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요청 서한이 다수 접수되었는바, 법무부는 이에 따른 우리나라 보고서·답변서 작성 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출입국·교정·인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유엔 전문가의 주제별 보고서 작성, 미 의회 상원 종교자유위원회 등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적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기구 업무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시민사회가 국내 인권정책 현안을 유엔에 진정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인권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민사회·국회·인권위·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향상하여 국제인권기구 대응업무를 내실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 인권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관행을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아직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 비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문제 대응에 힘 쓸 예정이다. 먼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권고이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업과 인권' 국제

기준의 국내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가 반복적으로 제정을 권고해 온 사항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 인권정책과 서기관 김에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당초 제57회 '법의 날'인 2020. 4. 25.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2020. 6. 24.(수)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사법정의실천연합」이라는 비법인 단체를 창립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시민참여운동을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김주덕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을 다짐하였다.

| 그림 2-97 |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축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바.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 인권정책과 사무관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0. 12. 4.(금) 11:00 서울 중구 노보텔 동대문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공동주최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은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기업의 실천방안 및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이루어졌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발표자와 일부 국내 발표자가 온라인과 영상으로 참석하였고, 일반 참석자도 온라인 참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화에 의해 기업의 공급망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이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유엔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관련자가 초청되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이 논의되었다. 페기 힉스(Peggy Hick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첫 공동주최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을 축하하며 사회 안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호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하였다. 1부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 및 실천방안'에서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서는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다. 1부에서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 아시아 총괄 매니저와 꾼띠(Khunt Htee) 피와이오 대표, 임자운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종철 변호사는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소개하였고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인권경영을 위한 국내 기업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2부에서 나디아 베르나즈(Nadia Bernaz) 바헤닝언 대학 교수는 기업책임법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데이비드 빌쉿츠(David Bilchitz) 요하네스버그 대학 교수는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송세련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우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교수,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은 인권경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림 2-98 | 기업과 인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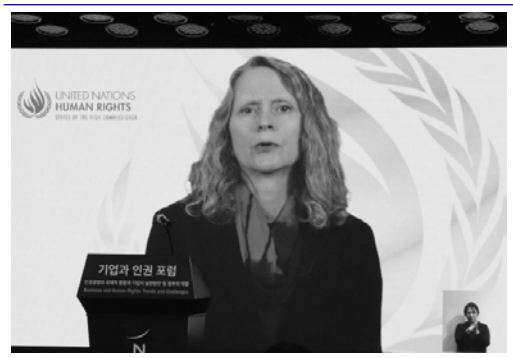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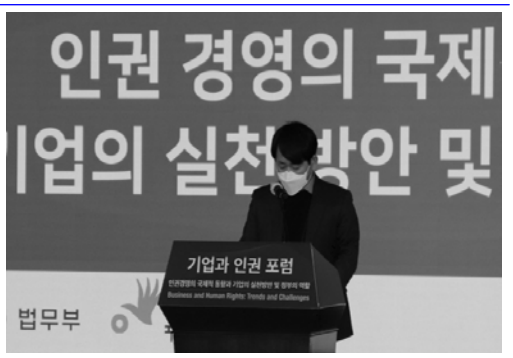

인권국장 환영사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 11월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 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총 206건, 96억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찬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평가, 심리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10.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20년 제주지역에 신규 개소함으로써 연도말 기준 전국 15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99 | 제주스마일센터 개소식('20.10.29.)

'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년 말까지 17,34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316,983건), 임시주거 제공(24,469건), 사회적 지원(19,044건) 및 법률적 지원(23,163건) 등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73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18	2,938	77,001	63,485	3,207	4,677	5,632	1,718
2019	2,630	74,556	59,571	5,172	5,113	4,700	2,128
2020	2,402	66,993	55,659	4,122	4,992	2,220	3,632

2) 평가 및 발전방향

'20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개소 등 외형적 확대에 맞추어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표 2-74 |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189	**30.55**	11.27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189	**12.59**	9.75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189	**51.90**	18.77	• 기준점 25점 • 25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189	**22.43**	17.81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190	**29.88**	12.52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190	**13.09**	11.65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189	**26.82**	14.28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189	**10.11**	11.46	

※ 출처 : 2020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 5월 주거지원 공고문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여 얼굴 공개, 보복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였다.

| 표 2-75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좌동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에도 총 39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친부 성폭력 피해자, 학대피해 아동 및 친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 유가족 등 31명에게 총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04명에게 4억 8,1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아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2020년도에 총 35억 6,8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85,464건, 경제·의료 지원

18,416건, 신변보호 526건, 기타 17,715건 등 총 122,121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2-76 | 최근 3년간(2018 ~ 2020)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8	107,771	76,173	15,817	538	15,243
2019	117,896	82,569	17,313	485	17,529
2020	122,121	85,464	18,416	526	17,715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조모임,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00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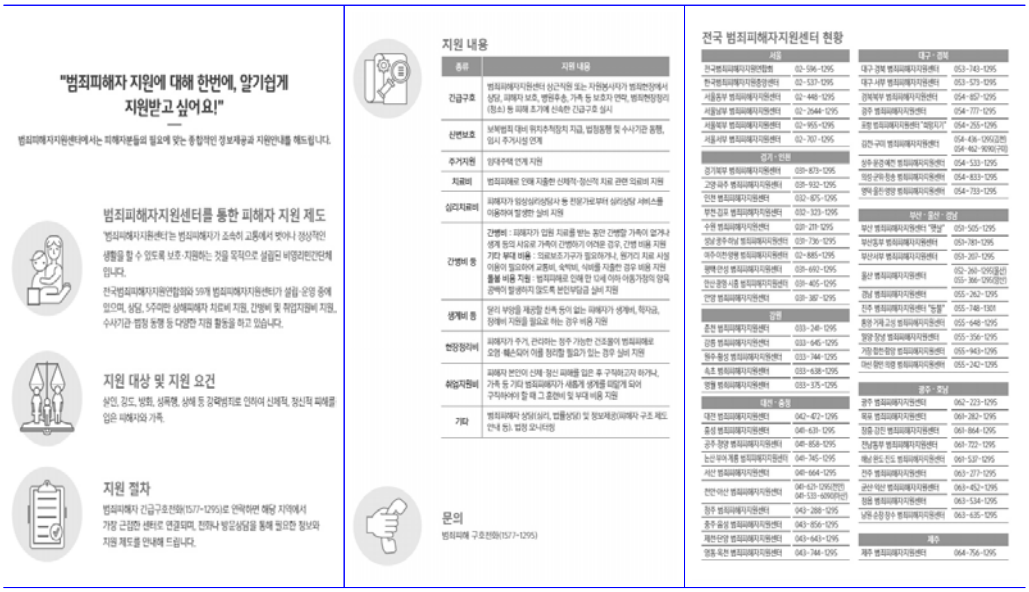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곱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다만,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과 달리 2020. 7. 8.부터 3주간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을 부제로 하여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웹·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이 7,380명으로써 전년 대비 5,366명이 증가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 공유 인원만 1,393명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시 접근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라인 캠페인의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01 |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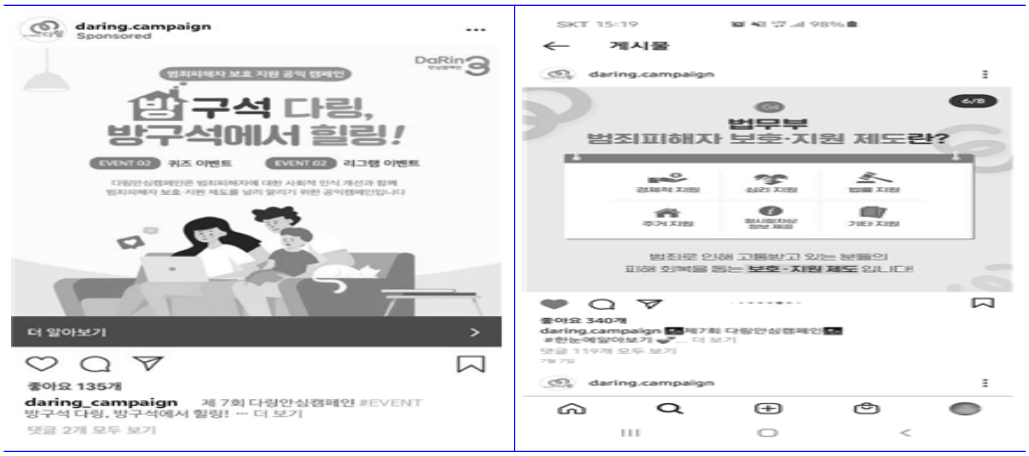

2)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0. 11. 2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 정부포상식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08년 '1985. 11. 29.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된 후 13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올해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및 국무총리표창(4명)이 전수되었고, 특히 국민포장은 살인피해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인 희망카페 운영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온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홍구 이사장에게 수여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진정한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향후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 그림 2-102 | 제13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국민포장 전수

기념촬영

3) 홍보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전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광고를 제작하여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액자광고를 수도권 지하철 3,4,5,7호선에 1개월

동안 상시 게재하였고, 하반기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육성이 포함된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여 12월 한 달 동안 청취율이 높은 라디오 프로그램 시간대를 통해 송출함으로써 연간 균형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2020. 12.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라인 상시 제도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죄피해'와 연관된 단어를 검색하면 위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국민들께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상시적으로 쉽게 접근하여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그림 2-103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액자광고 디자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 화면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주무관 문성우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월)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월)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1.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 편성 현황은 〈표 2-77〉과 같다.

| 표 2-77 | 2020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3,376	39,480
	형사조정활성화	4,284	
	범죄피해자구조금	10,708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12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69	38,6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1,382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100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4,808	24,808
총 계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02,939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4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과 출연금 협의에 따라 '19. 1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의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까지 무료법률구조를 확대 실시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 1월부터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새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78 |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실시 시기	법률구조사업 실적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1. 1.	8,120건, 208,107백만 원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9. 1.	42건, 1,586백만 원
장기소액연체자 파산 및 면책사건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9. 1. 1.	693건, 62,548백만 원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실시	2020. 1. 28.	채무자대리인선임 893건, 소송구조 22건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개정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79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지원확대 내용	시기	추진 실적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09. 1. 21.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실적 (법률구조) 129,927건 (법률상담) 1,024,775건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6. 1.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1. 5. 27.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8. 2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3. 7. 23.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5.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12.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트랙[11](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하여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되로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0 | 패스트 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구 분	'19년		'20년		증 감 률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실 적	253	2,770	229	3,188	△9.5	15.1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 후 2017.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9개 지부로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2020년 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96.0점으로 평가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11)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 4월부터는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 8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 6개 기관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는 등 One-Stop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1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명)	144,303	143,095	150,447	162,977	137,637
건수(건)	89,759	90,151	95,137	106,249	90,174
금액(천원)	935,710,540	965,727,546	983,438,918	1,118,822,106	1,009,918,012

| 표 2-82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건수	59,002	64,425	66,706	67,338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90,174

공단은 2017. 4. 24.부터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 8. 26. 부터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업무지원(출장)하여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으며, 2019년 대비 실적 증감률은 구조인원 대비 △15.5%, 구조건수 대비 △15.1%, 구조금액 대비 △9.7% 각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3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횟수	415	303	287	300	135
건수	1,739	1,251	1,151	2,267	696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운영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04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1,605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7,228건, 법률구조 704건, 강연 337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4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소송대리 등(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18	220	1,999	47	25	2,414
2019	226	2,072	73	26	2,912
2020	95	609	33	6	560

2020년의 경우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이동신문고 12회, 법률상담 76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공단은 2014. 10월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고, 2019. 8월 1대를 교체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상담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의 영향으로 2020년 이동법률상담 사업실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화상상담을 도입하고 전화상담을 활성화하였다. 화상상담은 2020. 11. 1.부터 시범실시를 통해 2020. 12. 31.까지 3,033건을 실시하였고, 전화상담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673,991건을 실시하였다.

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 권리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5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명)	3,567	3,193	3,361	4,273	2,347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하에 코로나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 등을 찾아가 학습자의 수요에 맞추어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학교폭력예방교육 242회, 6,536명)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여성·농업인·상담원·재소자 등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0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여성	농업인	상담원	재소자
추진노력 대상	김해시여성대학	농업기술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김천교도소
추진실적	30명	130명	140명	24명

3) 평가 및 발전방향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은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였고, 2019. 3월 국선전담변호사 4명, 2020. 4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여 2020. 12월 현재 전국 23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70,646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 2-87〉과 같다.

| 표 2-87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조건수	4,496	4,054	4,394	5,701	5,777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변호사 윤리에 관한 교육을 전국 5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총 6회(서울 2회-온라인교육 1회 포함), 328명(서울 : 192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7년부터 다음 〈표 2-88〉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및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은 다음 〈표 2-89〉와 같으며, 2020년 조정개시 후 조정성립 비율은 57.5%를 달성하여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88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2017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및 설치지부 확정	2016. 12월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 → 제 규범 정비,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교육훈련, 홍보 등	2017. 3~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2017.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17. 12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책자 발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현장 간담회	2018. 5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2018.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안내문구 삽입 → 시내버스 외벽 광고,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2018. 7~1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6월,12월 2019. 4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범 정비관련 사무국장 간담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표 2-89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률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실 적(건수)	2,192	681	389	1,536	414	238	△29.9%	△39.2%	△38.8%

3)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생계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 지부(2019. 4. 17.)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20년 다음 〈표 2-90〉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91〉과 같으며, 2020년 조정개시 후 조정성립 비율은 55.7%를 달성하여 국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90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TF 가동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제규범 정비, 개소식 준비, 시스템 정비 등)	2019. 3 ~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홍보 등	2019. 4 ~ 12월
•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으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수수료 무료 지원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무료 지원	2019. 9월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표 2-91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접수	조정 미개시				조정 개시			
		각하	화해취하	기타	확인진행	조정성립	불성립	기타	조정진행
실 적(건수)	482	274	46	24	32	59	11	25	11

3)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주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법률구조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법률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미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주치의 개념의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확대하여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92 | 2020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권역	배치기관(65개)
서울	광진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13)
인천·경기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광주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15)
강원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3)
충북	충북사회복지협의회(청주), 충주시 (2)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6)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 (3)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순천시,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 (5)
대구·경북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8)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9)
제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구조 인프라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서민들 가까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력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법률보호에 있어 모세관과 같은 효율적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105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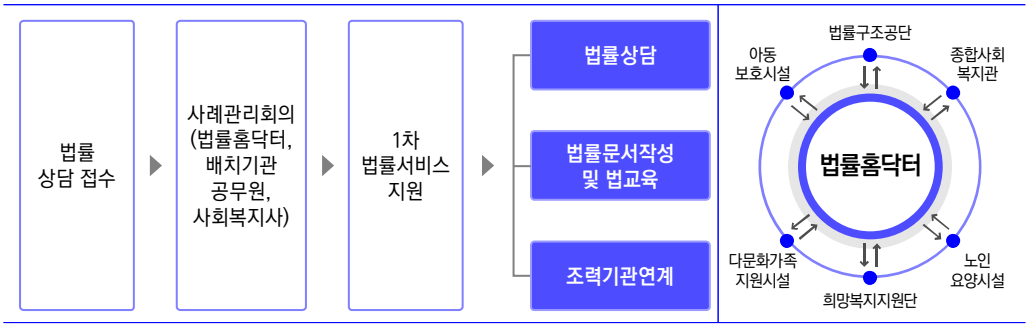

2020.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사법무 상담 중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국 65개 지역에 설치된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2020. 5월 이천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긴급 파견하여 피해 배상, 상속 등 현장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홈닥터 제도 홍보를 위해 리플렛 및 포스터를 전국 시군구,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였으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서울·경기지역 버스와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 그림 2-106 |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홍보동영상

2020년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상담, 법교육 등 대면서비스 제공의 제약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47,172건이었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7.84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표 2-93 | 법률홈닥터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실적	11,792	17,611	28,563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 지원실적 :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2-107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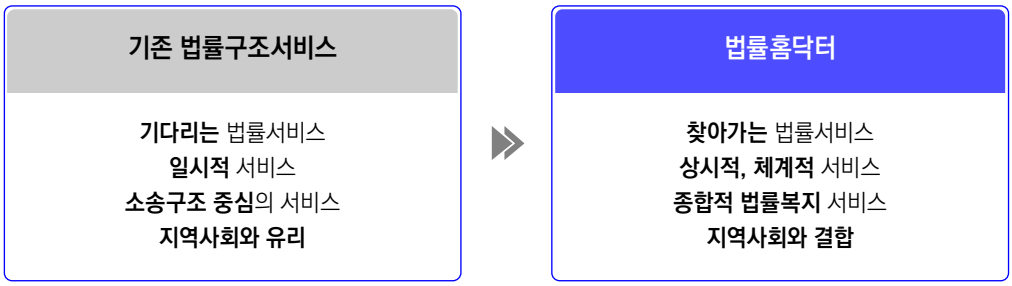

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인권구조과 서기관 김건수

가. 추진배경

형사절차상 초동수사 단계에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국선변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피의자신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 등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11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강·절도 피의자

22명에 대한 소위 '날개꺾기 고문'), '17 ~ '18년 광주지방경찰청 불법체포사건(마약던지기 수법 알고도 불법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19. 11월 기존 국선변호 대상이 되는 피의자 외에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 제도를 확대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운영주체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 **(대상범위)** 체포된 ①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②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
- **(선정 절차)** 수사기관은 대상자 체포 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 공단이 국선변호인 선정
- **(활동기한)** 국선변호인은 ① 피의자 석방, ② 사선변호인 선임, ③ 구속영장·체포적부심사 청구 시까지 활동

【법률구조법】
- **(운영방식)** ① 법률구조공단에 국선변호인 명부작성 및 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② 위원은 법원·법무부·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임명
- **(비용부담)** 중죄피의자 중 경제적 곤란 소명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비용 부담
- **(기 타)** 피의자 국선변호 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② 위원의 직무상 독립, ③ 사무국 업무담당자의 겸직금지 등 규정

하지만 체포피의자 중 선정하는 기존 방안의 경우 체포 이후 영장 청구 시까지 최장 48시간 동안만 변호를 제공하게 되어(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피의자가 석방되면 변호인 선정 효력 상실)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어 대상자와 활동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은 체포 이전의 초동 수사단계에서 더욱 필요
② 조력 기간이 짧아 수사절차 입회, 충분한 접견 등 충실한 변론 기대 어려움
③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법원이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되어 연속적인 변론이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존 방안의 경우 ① 공단 이사회 구성, 정책결정 등에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려움, ② 공단의 기존 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피해자 국선변호

등)와 피의자(가해자) 국선변호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운영에 참여하여 변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피해자 국선변호 등의 업무와 이해 충돌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검토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관여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를 조력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 될 것이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고문 등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사 절차상 위법 논란이 사전에 예방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설치 중에 있고, 2020년에 8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법무부 인권국(2대)과 총 55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08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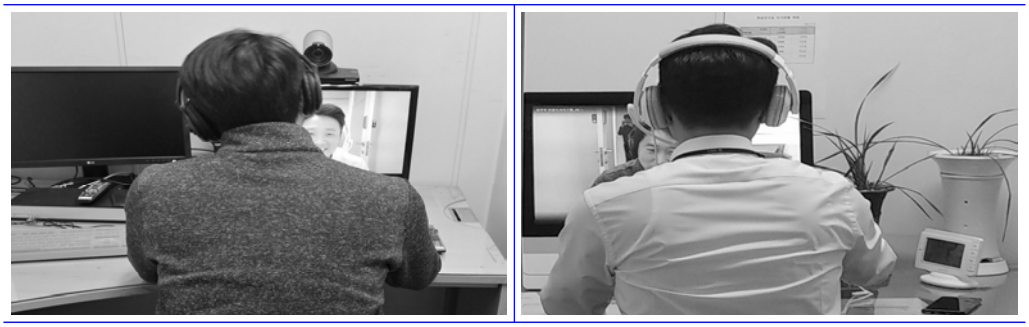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은 기존에 서면 또는 출장조사만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접수 시 신속하게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수용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면전진정 신청서'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의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 표 2-94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적	98	137	125	189	358	355	462	508	526	530	859

2020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52개소와 소망교도소(민영),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부곡법무병원 등 55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 신축된 강원북부교도소 및 소년보호시설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0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3,967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3,907건(전화 19건, 우편 2,757건, 인터넷 113건, 팩스 1,010건, 방문 8건), 인지사건은 60건이다. 2020년

4,005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89건, 이첩 1,501건, 각하 1,968건, 기각 447건) 하였다.

2020년에는 중요 인권침해 사건 또는 신속한 현장조사로 관련자료 확보 및 개선·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에 대비하여 인권침해사건 현장조사반을 편성·운용하였고, 보호소년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에 임장하여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 후, 인용·구제 조치(개선조치 권고, 징계의결 요구 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0년에는 부산구치소 등 총 47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비방문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2019년 10개 기관 → 2020년 32개 기관)하고, 비방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중점 실태조사를 신설·실시하는 등 실태조사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20년 5,642명), 개별면담(2020년 258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95 | 2020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29	4	3	11	47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0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등을 대신하여 인권보호상황 평가 점수 하위기관, 진정사건 다수기관, 설문조사 점수 하위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권조사과 교육팀이 직접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하는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96 | 2020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 기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일반 교육				인권동영상 교육(교정)	합계
	교정	보호	출입국	검찰	교정	출입국	군검사		
횟수	11	8	3	1	2	1	1	7	34
인원	498명	266명	68명	110명	100명	47명	22명	735명	1,846명

마. 인권보호 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검찰 6명, 교정 4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6.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양질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경기 및 부산 권역에 각 1명씩 확대(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 고양·부산동부 출장소)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 1명을 경기 권역에 1명 추가 배치(경기해바라기센터)하였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10억 원 증액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성폭력사건 발생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6,007건을 지원하였고, 진술조력인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2,684건을 지원하였다.

| 표 2-97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피해자 국선변호사	2,908	8,084	13,363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진술조력인	-	-	386	727	1,203	1,381	1,722	2,226	2,684
합계	2,908	8,084	13,749	16,833	20,539	21,284	24,477	27,713	28,691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12]이다. 특히 2021. 6월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지원됨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대상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9. 5.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에 따라 기존에는 민간인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현장조사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폭 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 10.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등 사례관리를 제외한 아동학대 대응 전반을 수행하고,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까지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은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대응을 보완하였다. 아동학대 조기예방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신고제도와 피해아동 지원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등)를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을 케이블TV 광고, 유튜브 계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하였다. 또한 '20. 10.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12) 2021년 전국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명,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 계획

시행으로 새로 신설되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형사사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 10~12월 법률 교육(331명 이수)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완료하였다.

| 그림 2-109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송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유튜브 허팝 채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법무부 페이스북)

| 그림 2-110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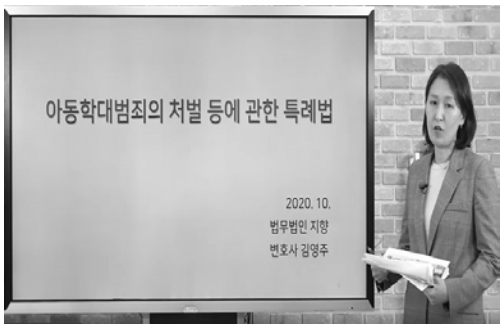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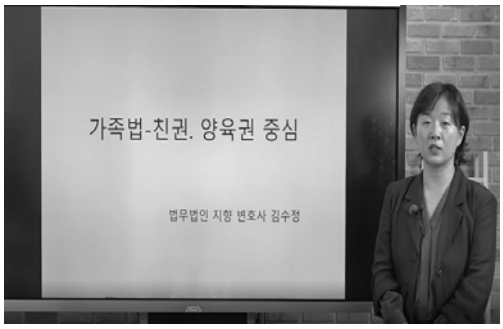

2)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 아동 보호·지원 방안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형사사법 역량이 필요한 유관기관에 법무부의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전파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1. 1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육대상이 사법경찰관까지 확대되므로, 사법경찰관과의 합동 교육을 통해 기관간 업무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 및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차현지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다.

2017. 4월부터 현재(2020.12.31.)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북한인권 관련 자료는 총 1,923건으로, 이를 분석하여 가해자 인명카드를 포함한 사건카드를 작성,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은 사건카드 적정성 평가 심의 메뉴를 신설하고 분류·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등 자료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였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 관리에 관하여,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1312호, 2020. 10. 8. 제정)」을 제정하여 보존기간 지정 및 평가, 심의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 표 2-98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4회)	2020(4회)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923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이관한 자료를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민간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와 이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보존자료의 증거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초빙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 분석·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강화하여 북한인권기록이 향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8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인권향상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작

보안과 교정관 우태영

1) 추진배경

교정시설은 의료기관과 달리 치료중심의 수용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와 처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신병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 방안이 미비하여 자칫 인권침해의 요소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경과

2020. 6월 정신과 전문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2020. 10월에는 전국 교정기관 당직간부 화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 12월에는 직원 교육용 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그림 2-111 |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작 관련 추진사항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 구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직원 교육용 영상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작을 계기로,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입소단계부터 조기선별하고 집중관리하여 수용자의 질병 만성화를 예방할 것이다. 수용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정장비 개선

보안과 교정관 김승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신질환 노역수형자 등 교정시설 내의 처우곤란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 7월 ① 보호장비 사용시간 제한 ② 취침시간(22:00~06:00)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③ 보호장비 착용 시 의료관계 직원이 2시간 마다 신체활력 징후 측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와 함께 2020. 8월 전국 교정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현장근무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그림 2-112 | 보호장비 사용 개선 관련 전국 교정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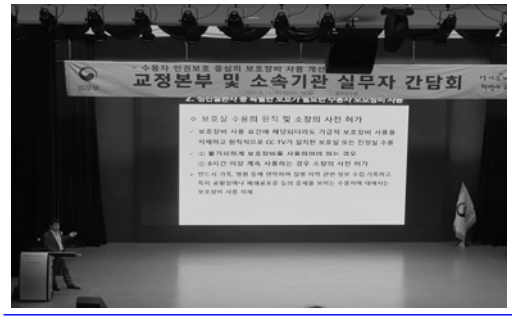

2)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보호실과 진정실을 증설하고, 현재 수용동 내에 설치된 보호실을 가급적 팀사무실 등 별도의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다. 미결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용감방 인수

보안과 교정관 이형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2020. 8월 거창경찰서 등 4개 경찰서의 대용감방 인수를 끝으로 경찰서 대용감방을 모두 인수하였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의 검찰수사와 법원 공판을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대신 수용하는 시설로,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할 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대용감방 인수는 교정시설 신축과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이후 여주경찰서 등 16개(신축 인수 11, 인근기관 인수 5) 대용감방을 인수하였다.

| 표 2-99 | 경찰서 대용감방 인수현황(2000년 이후)

연 도	인계 기관	인수 기관	비고	연 도	인계 기관	인수 기관	비고
'01년	여주경찰서	여주교도소	신축 인수	'09년	해남경찰서	해남교도소 등 2개 기관	신축 인수
'01년	서산경찰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신축 인수	'14년	상주경찰서	상주교도소	신축 인수
'04년	충주경찰서 제천경찰서	충주구치소	신축 인수	'14년	정읍경찰서	정읍교도소	신축 인수
'04년	통영경찰서	통영구치소	신축 인수	'20년	속초경찰서	강원북부 교도소 등 2개 기관	신축 인수
'07년	영덕경찰서	포항교도소	인근기관 인수	'20년	거창경찰서	대구교도소	인근기관 인수
'07년	의성경찰서	경북북부제1교도소 등 2개 기관	인근기관 인수	'20년	영동경찰서	김천 소년교도소	인근기관 인수
'09년	밀양경찰서	밀양구치소 등 2개 기관	신축 인수	'20년	남원경찰서	순천교도소	인근기관 인수
'09년	영월경찰서	영월교도소 등 2개 기관	신축 인수				

2) 평가

이번 대용감방 인수를 계기로 미결수용자 대용감방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찰에서도 미결수용자 처우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등의 오해와 관리상 어려움 해소를 통해 고유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정본부는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사무관 손영조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703억 원을 편성하여 대구교도소 이전신축(완료), 강원북부교도소 신축(완료), 거창구치소 신축(18%) 및 기타 원주·전주·창원교도소 설계를 진행하였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2개동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동을 증축 하였다. 또한 군산교도소, 인천·서울남부구치소 3개 기관의 시설 내 노후·유휴공간에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여자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 그림 2-113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대구교도소 이전신축(완료)

강원북부교도소 신축(완료)

거창구치소 신축(18%)

경북북부제3교도소(100%)

군산교도소 주복도 리모델링

인천구치소 창고 리모델링

3) 향후 추진계획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여성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수용정원 500명) 설계가 진행 중이며, 호남지역의 구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주구치소 신축(수용정원 900명),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과 병행한 대전지역 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대전·창원·원주·전주·부산·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이전·신축 사업과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남원교정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 예정되어있다. 국토균형발전 및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태백시에서 추천한 부지에 태백교정시설 신축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소규모 교정시설 증축을 통한 울산구치소, 제주교도소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목포·천안·청주·제주·강릉교도소 등 구내 유휴 부지를 이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통해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가.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 개발

교정기획과 교정관 이도곤

1) 추진배경

채팅봇(Chatting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서 사람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채팅봇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선호도 변화(SNS → 메신저앱)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정본부도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정책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채팅봇을 신규 개발하였다.

2) 주요 특징

- 민원인의 실제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 및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을 적용하여 질의응답이 누적될수록 보다 정확한 답변 제공
-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를 활용한 카드형 말풍선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친근하고 직관성 있는 시각적 효과 연출
- 각종 접견예약, 인터넷 서신발송, 영치금 잔액조회 등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기능 연계
- 교정본부 페이스북, 유튜브, 월간 교정 웹진 등 정책 홍보 콘텐츠 연동

3) 성과 및 기대효과

교정 민원 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의 개발에 따라 민원인은 별도의 웹 접속이나 앱 다운로드 없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국 교정기관, 접견, 영치금·영치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교정본부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교정행정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 경감을 통해 1363 교정민원콜센터 상담원의 피로도 감소 및 업무효율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비스 개시 후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약 7,000명

| 그림 2-114 | 교정본부 민원톡 주요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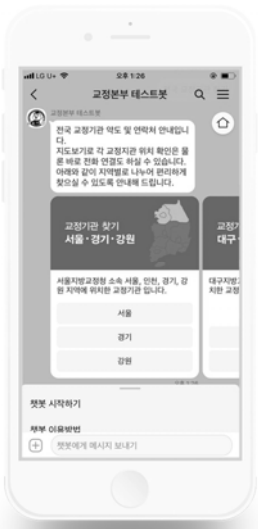

전국 교정기관 안내

접견 안내

영치금·영치품 안내

수용생활 안내

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도작업 동참

직업훈련과 교정관 허영열

1) 추진배경

정부가 2020. 2. 18.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0. 3. 9.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를 시행하며 1인당 1주 2매로 판매 매수를 제한하였다. 당시 민간 제품은 5~6천원 등 고가에 거래되거나 사재기 등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교정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중 하나로 교정기관에서 면마스크 생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13개 교도작업 봉제작업장은 생산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수용자 500여명을 투입하여 면마스크 생산체제로 전환하였고, 2020. 3~4월에 면마스크 34만장을 집중 제작하였다.

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은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각 자치단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면마스크를 제작하여 독거노인,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게 15만 장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 표 2-100 | 지역사회 무상공급 현황

교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급수량	공급일자	작업인원
		150,000		244명
광주교	광주시청	50,000	'20. 3. 25.	44명
부산교	창원시청	20,000	'20. 3. 26.	69명
여주교	여주시청	15,000	'20. 3. 27.	26명
순천교	순천시청	10,000	'20. 3. 26.	28명
강릉교	강릉시청	35,000	'20. 3. 26.	29명
청주교	청주시청	10,000	'20. 3. 27.	13명
청주여자교	청주시청	10,000	'20. 3. 27.	35명

또한 외교부, 교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면마스크 16만 장을 공급하였고, 안양교도소 교도작품 상설 매장인 '보라미 매장'에서 지역주민에게 면마스크를 원가로 총 3만 장을 판매하였다.

| 그림 2-115 | 교정기관 면마스크 무상배부 관련 언론보도, 면마스크

연합뉴스

광주 교도소 수형자, 3월까지 면마스크 5만장 제작 배부

송고시간 | 2020-03-10 15:43

손상원 기자

| 광주시-광주 교도소 협약…취약계층 등에 우선 공급

마스크
[광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교도소 수형자들이 면마스크 5만장을 제작해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 배부한다.

광주시와 광주교도소는 10일 면마스크 원부자재 지원·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광주교도소에 지원한다.

| 그림 2-116 | 안양교도소 보라미 매장 면마스크 판매현장, 관련 언론보도

연합뉴스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에 교도소 수형자들도 힘 보탠다

송고시간 | 2020-03-02 19:57

김광호 기자

| 안양교도소, '감염차단 효과' 마스크 생산·저가 판매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안양교도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르면 3일부터 수형자들과 함께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면 마스크를 제작,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형자들이 만든 마스크 판매 중인 안양교도소 매장
[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 정책성과 및 평가

국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면마스크 생산을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정본부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신뢰와 소통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였고, 특히 거동불편 등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위안과 도움을 주었다.

다. 교화방송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수희

1) 추진배경

교화방송센터는 현재 2개의 TV채널과 라디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국민이 라디오 DJ로 참여할 수 있는 12시 면회 코너를 신설해 일반국민 참여와 더불어 유명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국민에게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용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 추진경과

다양한 직종의 국민과 유명인 등이 직접 방송에 참여해 교정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좁혔으며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0. 12. 31. 기준으로 일반국민, 변호사, 가수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하였고, 12시의 면회 라디오일일DJ는 매주 금요일 12시에 방송되고 있다.

| 그림 2-117 | 라디오 일일DJ 출연자들

보이는라디오 INTRO

가수 박주용

변호사 백성문

방송인 에바

3) 성과 및 기대효과

교정본부는 방송청취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해 관심을 이끌어 내는 참여형 방송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중에 있으며 수용자, 수용자 가족, 일반 국민까지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보이는 라디오를 유튜브에 게시해 국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 교정시설 대체복무제도 시행

● 교정기획과 교정관 김봉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 6. 28.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생겨났고, 2018. 7월 병무청과 법무부 사이의 대체복무 인력 활용 협의를 하였다.

국방부 대체복무추진단은 3차례의 교정기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소방·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복무분야와 비교한 결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 1.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위해 2020. 1월부터 대전교도소 합숙시설 등 11개 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영월 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증축을 위한 기초설계를 실시하여 합숙시설을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인권 시민단체 및 변호사 등 내·외부위원을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및 합리적인 외출범위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대체복무제 운영 기본계획 및 대체복무요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 10월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및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을 제정하였다.

교육센터 건립 전 제도시행을 위해 대전교도소 합숙시설을 교육센터로 운영하여 2020. 10. 26. 대체복무요원을 소집 및 교육하였다.

2020년 1차 63명, 2차 43명 총 10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목포교도소 54명·의정부교도소 42명·대전교도소 10명이 배치되었다.

대체복무요원은 복무분야는 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급식·물품·보건위생·교정·교화·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보조 분야에서 복무 중에 있다.

| 그림 2-118 | 대체복무제 시행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 사진

목포교도소 합숙시설 전경

3)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2021년에는 서울구치소 합숙시설 등 10개 기관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센터 건립 공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경비교도대 생활관이 없는 교정기관은 합숙시설을 증축해야 함에 따라 2021년부터 서울남부(구) 등 10개 기관의 기초설계를 실시 할 계획이다.

향후 교정본부는 2020년 대체복무 실시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반기 1회 개최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처우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교정혁신추진단 서기관 최종일

1) 추진배경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9.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정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0. 11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추진내용

제1차 기본계획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비전으로 ①인권중심, ②다양성 존중, ③국민신뢰, ④조직혁신, ⑤스마트 교정 등 다섯 가지 추진목표를 갖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공간 확충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고, 실질적 사회복귀가 가능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모니터링, 연간 운영보고서 공개 등 교정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교정시설별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직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교정시설을 조성하여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 그림 2-119 |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협의체 회의

관계부처 위원들

나.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교정혁신추진단 교정관 강홍석

1) 추진배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각종 교정사고로 인해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가 출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0. 9. 25. 위원회 출범 이래 2021. 1월까지 총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에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방안 마련, 교정시설 보호실·진정실 운영 및 시설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림 2-120 |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및 회의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위원장 위촉장 수여

교정개혁위원회 개최

3)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교정혁신추진단 교정관 문정훈

1) 추진배경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구축 이후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시스템 구조의 복잡화·비표준화·노후화로 인해 연계 미흡, 오류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정본부는 민원인 편의성 및 교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총사업비 430억원[구축비 328억, 유지보수(5년) 102억]을 투입하여 3개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2) 추진경과 및 내용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② 스마트 수용자관리 플랫폼 구축, ③ 지능형 계호 시스템 구축 등 3단계로 추진 중이며, 2020. 3월 1단계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의 전산화) 수용기록부, 교도관 근무일지 등 종이문서 기반업무의 전산화
- (최신 IT 활용) 태블릿·접견 키오스크 도입, 녹음·녹화시스템 재구축, 접견 통합 플랫폼 구축, 비상시스템 구축
- (자동 이송·배정) 수용자 이송·배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연계 강화) 솔루션 기반의 내·외부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3) 향후계획

1단계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1. 5월 오픈을 앞두고 있고, 2021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스마트 수용자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지능형 계호 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121 | 시스템 구축 이미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성(안)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

라. 수용자 상담 채널 다변화를 위한 '화상상담' 실시

심리치료과 사무관 최형윤

1) 추진배경

대면상담, 전화상담으로 단편화되어 있는 수용자 전문상담 채널을 다변화하여 전문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상담이 제한되는 상황을 타개하여 행정공백(전문상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4개 교정시설에서 화상상담을 시범실시('19. 10. ~ 11.)한 결과 높은 만족도(4.0점 / 5.0만점)를 보였다. 이에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에 보급된 단말기(수용자용 화상공중전화기)를 활용하여 화상상담을 전 교정시설로 확대 운영('20. 4.)하였다.

| 표 2-101 | 외부전문가 화상상담 운영 체계

① 대상자 등 선정	② 화상상담 실시*	③ 상담결과 활용
• 대상 수용자 및 상담사 서약서 작성	• 화상상담 실시	• 만족도 조사 • 수용처우에 활용

* 외부상담전문가 핸드폰에 "법무부 스마트 공중전화" 앱 설치(무료) 후, 전용단말기(교정기관)로 외부 상담전문가 핸드폰으로 전화 연결(화상전화 접속)하여 화상상담 실시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화상상담 도입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에도 중단없는 전문상담 실시가 가능하여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함은 물론,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 및 교정행정의 디지털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의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교정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상담가의 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여 수용처우 향상에도 높은 기여를 하였다.

| 표 2-102 | 외부상담전문가 화상상담 실시 현황('20년)

(단위 : 건)

합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97	3	21	32	57	49	58	53	58	66

* '20년 화상상담 건수는 '20년 전체 외부전문가 상담(1,438건)의 27.6%

| 그림 2-122 | 화상상담 도입

화상상담 실시 모습

화상상담 전용단말기

3) 향후 추진계획

일부 교정시설은 화상상담을 위한 별도의 장소가 없어 개방된 공간에서 화상상담을 실시함에 따라 상담의 집중력 및 효과성이 떨어지고, 화상상담 시 수용자 전화용 단말기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화상상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정본부는 화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조성 및 화상상담 전용 단말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개설

직업훈련과 교정관 위종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그동안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등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관련직종 취업과 연결함으로써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였다.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은 취업 후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교정시설에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용자를 대상으로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업체에서는 방문 기술지도, 면접을 통하여 출소와 함께 채용함으로써 출소자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구인업체에게는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2) 추진성과

전국 3개 교정기관에서 6개의 직종, 용접, 조리, 건축목공,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전기기술로 취업매칭반이 개설되었으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취업의지가 강한 모범수형자 84명을 대상으로 2020. 1월 ~ 12월까지 훈련을 시범실시하여 출소자 46명 중 7명이 취업하였다.

| 표 2-103 |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 개념도

교 정 시 설		구 인 업 체
• 구인업체 맞춤형 집중훈련 - 취업매칭반 운영 - 잔형기 1년 6월 이하 기능보유 모범 수형자로 구성 - 필요시 취업조건부 가석방 실시 • 실제 필요한 실무 기술지도	⇔	• 언제든 필요직종, 인력소요 제시 • 필요한 기술수준 요구 • 원하는 우수 인력 채용 - 수시 교정시설 방문 기술지도 - 언제든 채용후보자 개별·심층면접 실시 - 채용약정 → 출소 후 채용

3) 평가 및 발전방향

「취업매칭 맞춤형 직업훈련」은 교정의 기본적인 임무인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별개로 운영되던 것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였다.

앞으로 교정본부는 지난 1년간 시범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나.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의료과 교정관 최장훈

1) 추진배경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를 보완하고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는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그림 2-123 | 원격의료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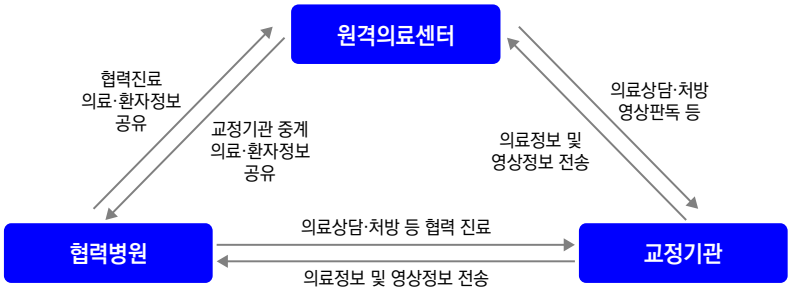

2) 추진내용 및 성과

원격의료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영월교도소 등 5개 기관을 추가 구축하여 47개 교정기관에서 서울대병원 등 외부 협력병원, 원격의료센터 전문의의 다양한 과목의 진료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의 진료기회를 확대하였다.

| 그림 2-124 | 원격의료시스템 활용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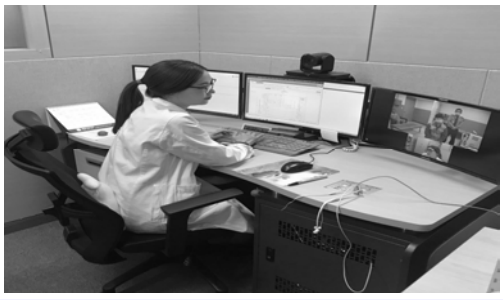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원격당직의사 제도 시현

또한 2020. 9. 21.부터 원격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원격당직의사 제도를 11개 기관에 시범 운영하여 휴일 및 야간에 입소하는 신입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25 | 원격당직의사 제도 진료절차

〈원격당직의사 제도 진료절차〉

진료의뢰	진료접수	원격진료	처방전 발행
당직교감 또는 의료숙직자가 유선으로 진료 의뢰	원격의료시스템 진료접수 등	원격당직의사 기관의 원격진료시스템과 연결	당직의사 진료 후 처방전 발행

3) 평가 및 기대효과

원격의료센터 및 협력병원을 통한 다양한 진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진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등 다자간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Post-코로나 시대에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교정행정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분류심사과 서기관 김진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증가하고,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부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였다.

성폭력 사범 등의 강력사범, 아동학대, 음주운전·가정폭력 등의 상습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26 | 연도별 가석방 인원 및 출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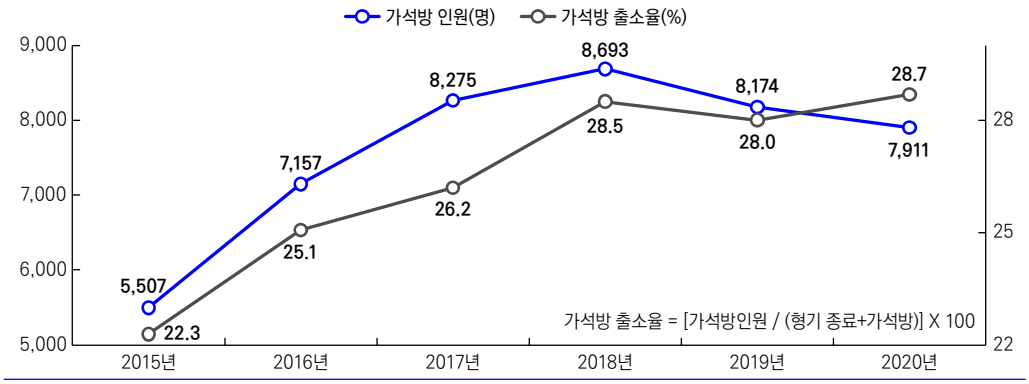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하였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사회복귀를 유도하여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라.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사회복귀과 교정관 이용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2018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엄마의 목소리' 등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모의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2019. 4월에는 교정정보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을 통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관리를 시행하여 미성년 자녀 보호방안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 10. 24. 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의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

2020. 6월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를 발족하였고,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정례적 실태조사' 마련, '토요 아동접견의 날' 시행 등 미성년 자녀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교정위원, 직원회, 교화법인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에 대해 장학지원, 생계비지원,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엄마의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자녀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8월 여성수용자가 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20. 12월까지 54명의 수용자가 170회 참여하였다.

| 표 2-104 | 2020년 미성년 자녀 지원 실적

〈2020. 12. 31. 기준〉

지원내용	장학금	생계비 등	상담·멘토링
지원실적	2억7,151만원	2억1,565만원	477명

3)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를 통해 도출된 미성년자녀의 현황관리 및 정례적실태조사, 아동을 위한 온라인 접견의 확대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엄마의 목소리와 같은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가족관계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가.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국경관리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경관리 필요성 증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해외 유입 억제 조치와 함께 필수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선제적 국경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무사증 입국 정지 등 대응 조치 실시

2020. 2. 4.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출발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탑승을 차단하고, 2020. 3. 9.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정지, 2020. 4. 13.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90개국의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의 특별 입국절차 수행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후, 격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검역소 요청 특별입국 불허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따라 시설/자가 대상자 선별 업무를 지원하고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 및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회수하였다.

| 표 2-105 | 공항만 격리통지서 교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천공항	기타 공항만
합 계 (2020. 4. 7. ~ 12.31.)	636,255	621,548	14,707

2) 평가 및 발전방향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25,364명의 탑승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로 불요불급한 이동을 막고 사증심사 단계에서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 후 사증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선별적 제한 조치로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해외 유입 억제 조치를 시행하여 국경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해외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였다.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소의 입국불허 요청자 191명을 특별입국 불허하였고, 636,255건의 격리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검역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력 외국인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탑승 전 사전정보 분석·심사를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전염병 발생 시 국내 유입 차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준비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확산 전,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연평균 22.1%씩 증가하였고 2019년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52.9%를 차지하는 등 사증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급증하였다. 이에 공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태국 등 일부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입국불허가 증가하여 외교적 마찰 등 사증면제 및 무사증 제도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 및 코로나19 유입 차단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하여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 적격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게 되었다.

2020. 8월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 구축 예산(약 29억 3천만원)을 받아 10월에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10.16.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2021. 3. 15.에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사증면제 46개국, 무사증입국 허가 66개 국가·지역 총 112개국 이며, ETA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여행정보, 범죄 및 감염병 정보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불체다발 국가 등의 국민은 7개 항목 추가) 하여야 하며, ETA 홈페이지(웹 : www.k-eta.go.kr, 모바일앱: K-ETA)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으로 출발국 탑승 전에 개인정보를 전송 받아 비교·분석해 문제 외국인의 탑승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대테러·전염병 유입차단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율 상위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전체 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정보축적을 통해 향후 해당 외국인의 사증발급, 조사 등 관련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교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인터뷰 등 재심심사 및 강제송환 감소로 공·항만 행정력 감축도 기대된다.

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공·항만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 및 외국인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양양공항, 무안공항, 평택항에 신규 설치하여 11개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공·항만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입국 자동심사 전면 제한(2020. 4. 11.) 및 출국 외국인 자동심사 제한(2020. 6. 11.)으로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전년(40.3%) 대비 3.2%감소하여, 전체 출입국자의 37.1%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다.

| 표 2-106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0.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설치 대수	202	148	15	6	4	4	4	3	3	7	5	3

| 표 2-10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입국자	계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국 민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외국인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17,269,210	24,620,574	30,466,946	37,697,784	5,459,765
	국 민	16,292,958	23,810,124	29,420,061	32,093,114	4,706,607
	외국인	976,252	810,450	1,046,885	5,604,670	753,158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21.6%	30.6%	34.3%	40.3%	37.1%
국민 자동이용율		36.0%	44.6%	50.8%	55.5%	51.3%
외국인 자동이용률		2.8%	3.0%	3.4%	15.7%	13.6%

| 그림 2-127 | 추진경과

- 2008 6 —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국민, 승무원)
- 2010 8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영주·투자자격 등록외국인)
- 2012 4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확대 (결혼이민자 등 11개 체류자격 소지자)
- 2013 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14세 이상 국민, 복수상륙허가 승무원)
- 2014 3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한국방문우대카드)
- 2015 11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자 확대 (외국국적동포·거주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 2016 7 —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 2017 3 — •자동출입국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 2018 10 — •자동출입국 이용 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생략
- 2019 7 — •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국심사대 이용
- 2020 4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동심사대 이용 제한 (입국 자동심사 전면 제한(4.11.), 출국 외국인 자동심사 제한(6.1.))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간 교류가 제한됨에 따라 전년대비 자동출입국자심사대 이용자는 32,238,019명 감소하여 85.5%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이 제한되어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37.1%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나, 추후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증가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증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출입국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라. 출국금지제도 개선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이호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출국금지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6.8.) 및 국가인권위원회(2020.7.15.)의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출국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심사 절차 재검토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심사 절차,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출국금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 출국금지 대상자 한정 ▲ 통지 제외 기간 축소 ▲ 통지 제외 요청서 신설 ▲ 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법적근거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출국금지 제도의 사후통제를 위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5인(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장관정책보좌관, 출입국정책단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으로 조정하였다.

| 표 2-108 |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493	14,714	14,886	15,092	11,201	42,693
검 찰	6,591	6,919	6,137	5,569	5,539	8,400
경 찰	1,810	2,283	2,107	2,325	2,525	3,424
관세청	86	37	73	66	78	69
국세청	1,611	4,421	5,670	6,503	2,220	2,085
병무청	319	439	391	253	159	99
기 타	17,076	615	508	376	680	28,616

*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이고, 2020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22,613명은 코로나19 관련자

나)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시행

본인(또는 소송 수임 변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불편함이 컸던 출국금지 조회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 12. 24. 온라인으로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2020. 6. 1.부터 정보통신망(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출국금지여부·요청기관·출국금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온라인 조회 제도를 시행하였다.

| 표 2-109 |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실적(2020. 6. 1.~12. 31.)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863건	511건	590건	503건	522건	542건	570건	625건

| 그림 2-128 |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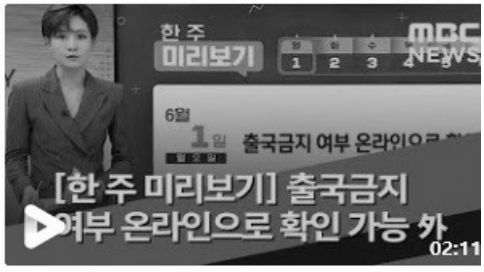

[한 주 미리보기]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外 (2020.06.01/뉴스투데이/MBC)

MBCNEWS Youtube

▶ 71 2020.05.31.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국금지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출국규제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출국금(정)지 이의신청 기간 확대, 출국금(정)지 기간 장기화 방지 등 개선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시행 이후 2020. 6. 1. ~ 12. 31.까지 총 3,863명이 온라인을 통해 출국금지를 조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출입국이 활발해지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국규제 제도와 관련하여 「출국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규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며, 출국규제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온라인 출국금지 조회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마.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확대 시행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참전용사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12월 개정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건부 고액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총 1,176건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였다.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21. 1월부터 호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의 ABTC(모바일 ABTC)의 발급을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2020. 12월 말 현재 19개국 총 카드 발급 수는 372,353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58,961개로 회원국 중 2위이다.

| 표 2-110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활용카드 현황

(기준 : 2020. 12. 31., 단위 : 개)

국가 / 카드수	중 국	호 주	한 국	싱가폴	홍 콩	베트남	타 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372,353	61,067	22,322	58,961	53,143	44,476	17,152	11,331	10,684	23,472
일 본	대 만	인도네시아	페 루	칠 레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35,302	19,286	4,744	1,863	3,089	1,866	1,021	169	232	2,173

나)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13. 12월 시행 후 2020. 12월 말 현재 18,652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다) 한국방문우대카드(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0. 12월 말 현재 2,878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우대카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여 기업인 및 사회발전 공헌자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 간의 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바일 ABTC 도입 준비 등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하며 투자,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 국경 안전 강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 : I-PreChecking)”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 2. 16.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 4. 1.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20. 12월 말 현재 48개국, 100개 항공사, 18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험지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현지 공항에서 탑승을 차단하여 대한민국 영토 진입 전 감염병력 등의 위험 외국인의 선제적 입국제한 조치가 가능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7. 4. 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후 2020. 12. 31.까지 입국규제자 3,480건, 인터폴 수배자 정보 35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32,179건 등을 포함한 총 100,091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 간 인력이동의 제약이 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별적 입국 허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수인력의 입국 허용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국가 간 인력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필수인력 입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사.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김지연

2020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93,548,093명 보다 84.3% 감소한 14,701,831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9,171,481명으로 전년도 57,795,389명에 비해 84.1%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5,530,350명으로 전년도 35,752,704명에 비해 84.5% 감소하였다.

| 그림 2-129 |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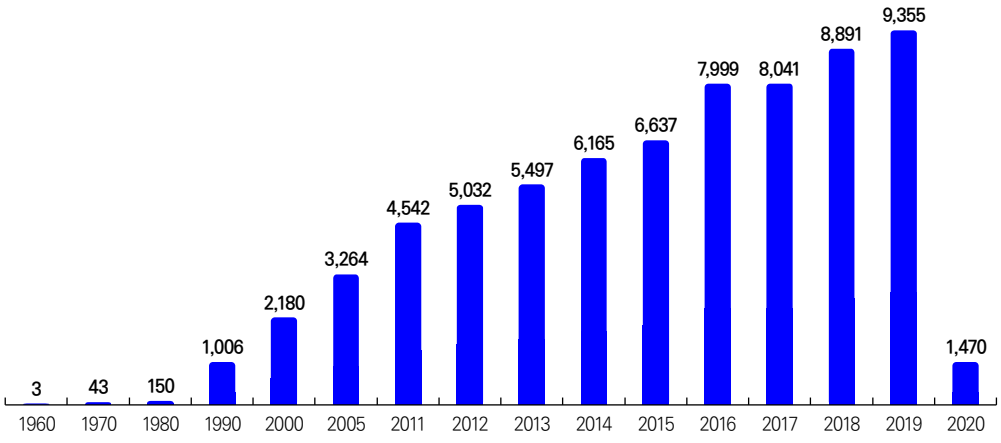

1) 외국인 입국자

2020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2,659,845명으로 전년도 17,880,503명에 비해 85.1%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74만 명(27.8%), 일본 43만 명(16.5%), 미국 26만명(10%), 대만 17만 명(6.5%), 필리핀 12만 명(4.5%)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67만 명(63%)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11만 명(4.2%), 유학 8만 명(3.4%)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30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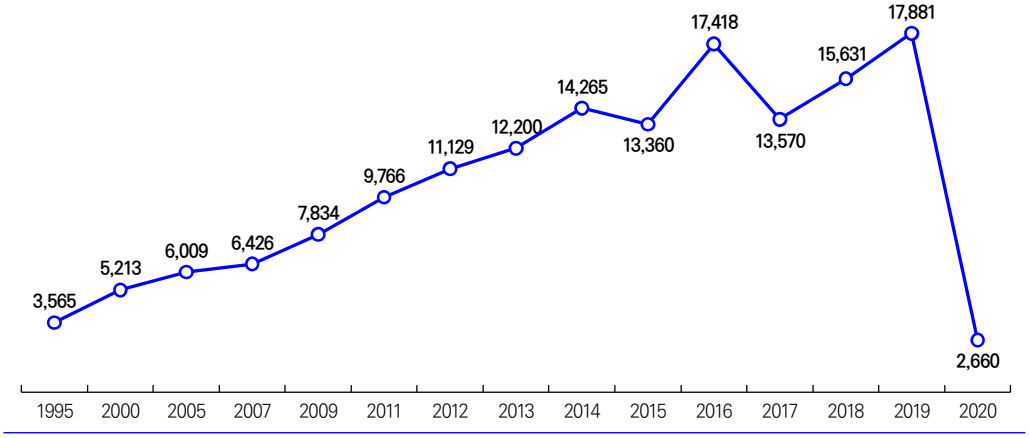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4,301,903명으로 전년도 28,905,763명 대비 대폭(85.1%)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의 출국자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1994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그림 2-131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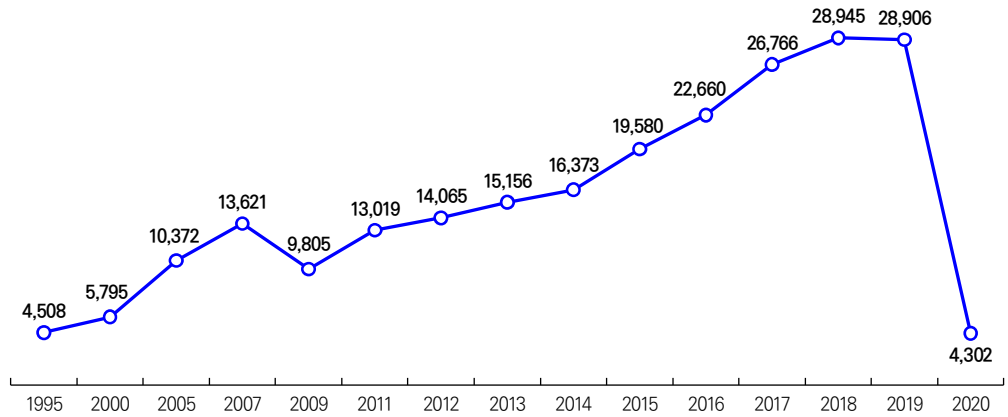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가. 비자스티커 폐지 및 전자검증 시스템 도입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대한민국을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평균 260여만 장의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발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발급하는 비자스티커 인쇄에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22억 원에 달하며, 비자 발급량이 많은 공관에서는 공관별로 평균 2명 이상의 행정원이 비자스티커 관리 및 부착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비자발급 방식의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17. 4월부터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 전면시행 등 정보인프라 개선으로 비자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기존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인이 손쉽게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비자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선된 비자발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0. 2월부터 우선 비자 발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지역(총 24개국*), 미국,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시범운영 하였다.

*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불가리아,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위스, 독일, 스웨덴

2020. 7월부터는 전 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발급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 그림 2-132 | 비자발급확인서 온라인 발급

〈기존 : 여권부착〉	〈개선 : 온라인 발급〉

3) 평가 및 발전방향

비자스티커 부착 폐지로 인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연간 약 2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행안부 주관, '2020년 혁신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가 일손 지원

●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 9월부터 충북 괴산군·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어촌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 농·어번기 계절성이 있는 농작물과 수산물 분야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5. 10월 ~ 2016. 12월) 7개 지자체에 219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21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085명(농업 831명, 어업 254명), 2018년에는 42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824명(농업 2,249명, 어업 575명), 2019년에는 50개 지자체에 3,497명(농업 2,948명, 어업 549명)을 활용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 신규입력 도입이 불가능하여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 및 취업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을 허용하여 25개 지자체에 223명(농업 142명, 어업 81명)을 계절근로자로 활용하였다.

| 표 2-111 | 계절근로 외국인 국적별·연도별 운영 현황

연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	네 팔	9	33	45	82	45	214
2	라오스	·	·	31			31
3	러시아	·	·	8	7		15
4	몽 골	20	61	152	95		328
5	베트남	29	375	1,039	1,535	112	3,090
6	우즈베키스탄	·	1	8	11	4	24
7	인도네시아	·	2	2	2	1	7
8	중 국	73	163	128	233	11	627
9	캄보디아	·	37	158	251	10	456
10	키르키즈스탄	11	·	·	139		150
11	필리핀	58	413	1,253	1,142	4	2,870
12	기타					36	36
합 계		200	1,085	2,824	3,497	223	7,848

특히, 2020년에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8명),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농가당 1명씩 추가고용), 계절근로 5개월 장기체류자격(E-8) 허용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대폭 개선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공로로 담당 김택균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정책명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그림 2-133 | 계절근로 5개월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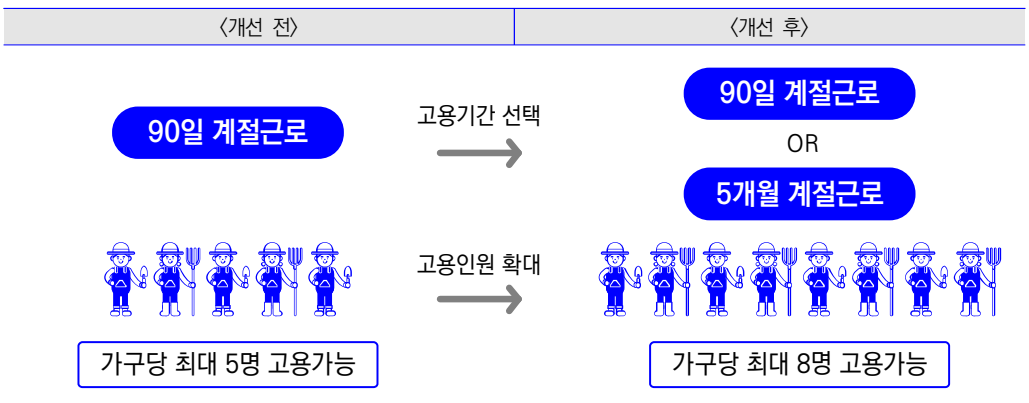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공급자(농어민)·소비자(일반 국민)·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가의 인력수급을 위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을 못하고 있는 동포(H-2)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코로나19 감염 해외유입 최소화를 위한 '재입국허가제' 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기존에는 등록외국인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됐지만 2020. 6. 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했고, 또 재입국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병원진단서 또는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체류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였다.

재입국허가를 전격 시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자유롭게 입출국을 할 수 있었던 등록외국인이 혼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홍보가 필요했고, 이에 법무부는 외신기자 간담회(2020. 6. 16.), 주한 EU회원국 대사 간담회(2020. 6. 17.) 등을 열어 제도취지 등을 적극 대외에 알렸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 신청제를 시행하였다.(2020. 10. 12.)

| 그림 2-134 | 재입국허가 시행 홍보

〈외신기자간담회(6.16. 프레스센터)〉

〈주한 EU 회원국 대사 회의〉

2020. 12월까지 39,442명이 재입국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36,671명(93%)이 출국, 7,719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112 | 월별 재입국허가 운영 현황

구분	총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입국허가	39,442	3,804	3,435	3,057	3,838	5,612	7,498	12,198
- 출국자	36,671	2,016	3,567	3,005	3,841	5,102	6,028	13,112
- 입국자	7,719	48	565	1,567	1,193	1,333	1,357	1,656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입국허가제 시행 이후 국내 체류외국인의 불요불급하지 않은 해외 이동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재입국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진단서 소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코로나19 해외유입 감소에 기여하였다.

라. 코로나19로 인한 외국국적동포 고충 해소 지원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1) 추진내용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행(2020. 2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강화대상 국가 출신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2020. 10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2020. 11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출국 항공편이 마련될 까지 계속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을 유예하였다.

| 그림 2-135 | 출국기간 연장 관련 언론 기사

법무부 '신종 코로나'로 중국 못간 中동포 체류 연장

입력 2020-02-03 19:01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창궐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 동포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종코로나 사태 속 중국 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하는 까닭

입력 2020-02-06 16:05

체류연장·체류유예 특별조치 시행에 "많이 고마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호

2020. 7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일부 국가를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하면서 방역강화대상 국가 국민은 사증발급이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족이 있는 방역강화대상국가 동포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어려워져 가족 간 이별이 장기화 되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초중고에 다니다 출국하였다가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사증발급이 제한된 동포의 자녀와 동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대상에서 해제하였다.

2020. 11. 16.부터는 방문취업(H-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하던 동포가 체류기간이 끝나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경우(동포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그의 가족도 함께 출국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 가족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해당 동포가 입국 후 함께 체류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면서도 국가 간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계속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괄직권연장 및 비대면 민원처리 확충

체류관리과 사무관 용창식

1) 추진배경

코로나19의 확산 및 재확산으로 인한 자국행 비행편 등의 부재로 출국을 못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였고, 이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주변의 주민은 물론 각종 체류허가를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체류외국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재한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민원처리에 확충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우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

직권 연장은 2월 24일. 4월 9일, 12월 1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총 21만여 명의 외국인이 직권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직권연장은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었으며, 연장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 뿐 아니라 출국을 못하는 단기체류 외국인들의 이동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시급하게 이들에 대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에는 단기체류외국인 출국기간 연장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6월에는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뒤이어 구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체류·국적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온라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9월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온라인 신청제를 전면 시행하였고, 10월에는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제를 전면 시행하여 비대면 민원처리를 확충하였다.

제도 시행이후 2020. 12월말까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는 39,442건이고, 단기체류외국인 출국기간연장은 342,114건 허가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의 직권연장 조치와 비대면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민원인의 이동을 최소화 하여 지역사회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온라인을 통하여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직권연장의 경우, 직권연장 조치 후 관련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문자 전송, 홈페이지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정책도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바. 6.25 70주년 기념, 한국전 참전용사 등에 대한 출입국·체류 지원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내용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법무부는 한국전 UN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 참전국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시행했다.

유해 봉안식, 재방한 행사 등 정부초청 방한사업(외교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입국하는 참전용사와 그 후손·가족에 대해서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무료로 발급하였으며, 참전용사 및 그 직계가족에게는 우리나라 각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우대심사대'를 이용하여 '전용통로(fast-track)'로 쉽고 편리하게 입출국 할 수 있도록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하였다.

또한, 국가보훈처 주관 '6.25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 68명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다.

* (UN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UN참전국(22개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을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10명 내외를 선발·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

** (정부초청장학생)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그림 2-136 | 참전국 후손에 비자혜택 언론보도

2) 추진성과

이번 참전국 국민에 대한 거주(F-2) 비자 발급 정책은 우리정부가 한국전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민으로 하여금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숭고한 뜻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재한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방역당국과의 3자 외국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1월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이하 '1345')를 24시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재한외국인에게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전국보건소 등의 의료진과 외국인간의 통역지원도 강화하였다.

2) 추진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온 운영체제를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 평일 09:00~18:00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
  18:00~09:00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 토·공휴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특히, 상담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2,197건의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상담은 182,826건에 이르고 있다.

* (18개 기관) 질병관리청,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한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존 목동센터에서 염창센터를 추가하여 2원화 운영함으로써 상담사 근무 밀집도를 낮추는 등 상담사의 개인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그림 2-137 |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3) 향후계획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200만 명이 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24시간 출입국 및 각종 체류 관련 상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는 한편, 국내 체류외국인이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민조사과 주무관 정성식

2019. 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른 2020년 상반기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7월 이후 자진출국 외국인 범칙금 부과 등 다양한 감축 정책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중단·축소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되어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19년도와 비슷한 39만명 선으로 유지하였다.

| 그림 2-138 |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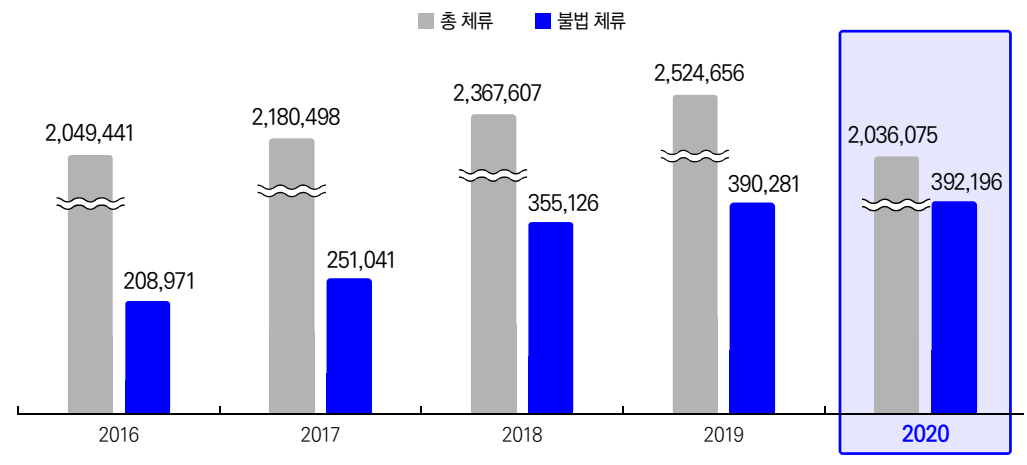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36개 특별단속지역과 74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정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및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등 주요 출입국사범,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새로운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단속유예 및 관계기관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점검·계도, 추석 전후나 연말연시

국가별 행사·모임 자제 홍보 및 방역 점검 강화 등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으로 5월 등 집중방역기간에는 전국단위 단속을 유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 과정에 대하여는 단속 유예

한편,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단속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1월, 12월), 대포차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2월),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4월 ~ 6월),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 단속(8월 ~ 9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 12월 현재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118,829명 가운데, 강제퇴거 5,867명(4.9%), 출국명령 2,062명(1.7%), 출국권고 2,097명(1.8%) 등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10,026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2,605명(2.2%), 그 밖에 통고처분 17,863명(15.0%), 과태료 21,358명(18.0%) 등 처분받은 사람은 총 108,803명이었다.

| 표 2-113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명	금액		명	금액	
2018	176,849	31,811	4,770	3,273	30,395	49,452,520	3,482	15,595	2,086,170	87,523
2019	175,609	34,557	5,852	2,687	26,106	49,564,840	4,552	14,330	1,960,670	87,525
2020	118,829	5,867	2,062	2,097	17,863	25,114,680	2,605	21,358	3,033,820	66,977

※ 기타 : 처분면제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운영

연중 코로나19 검진 독려를 위한 계도 및 자진출국유도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의 진정추세와 보호시설 과밀화 여부를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20년 한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14,163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단속활동 위축 및 '방역우선'의 정부시책에 따라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38.2%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 그림 2-139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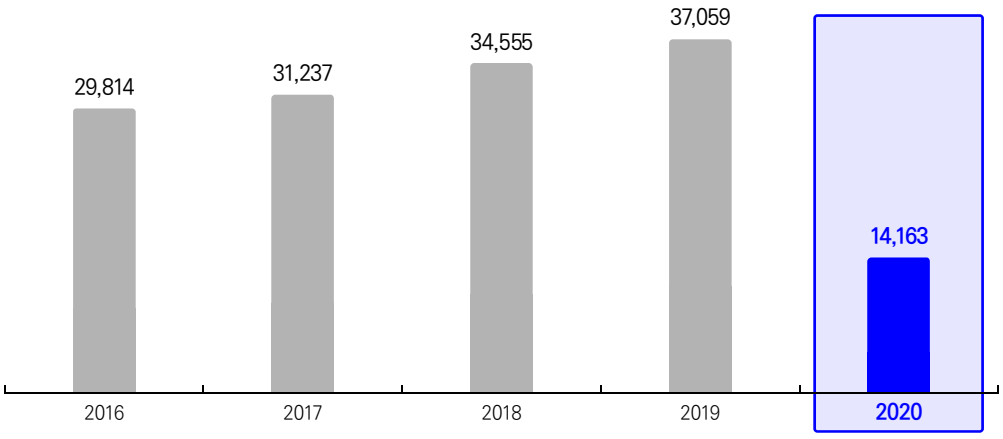

2019. 12월「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시행으로 '20. 6. 30.까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진출국 신고자의 코로나 감염전파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및 대면신고를 지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1차 : 3. 11. ~ 6. 30., 2차 : 12. 16. ~)하였고,

2020.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지자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방역 실태 점검·계도, 방역 홍보 활동 및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추석 전후 방역 점검 및 이동 자제 홍보활동, 핼러윈데이 대비 특별 방역계도 순찰활동 등 연말까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 벌집촌·밀집시설 등 2,539개소, 인력사무소 738개소 점검, 마스크 6만여 개, 손소독제 1.6만여 개 배부 (7. 1. ~ 12. 31.)

| 표 2-114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19 대비 2020 실적
자진출국자	52,431	39,513	64,814	71,663	55,260	16,403↓ (22.9%↓)

2)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명령 시행

이민조사과 주무관 장기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 4. 1.부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격리 대상 외국인들이 격리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실효적 제재방안을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활동범위 제한명령은 외국인 입국심사 시 대상 외국인에게 거주 장소(체류지)로 주거 제한 및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의무 준수를 부과하는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격리 위반자(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라 활동범위제한 명령 1회 위반 시, 50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예방 및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우리 부에서는 격리 중인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1회 위반할 경우 내야하는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2020. 5. 29.부터 시행하였다.

| 그림 2-140 | 활동범위 제한 제도 관련 언론보도

3) 기획조사 및 격리위반 집중단속

이민조사과 주무관 황규택

2020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자 등 2,338명(595건)을 적발하여 그 중 44명을 구속, 21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418명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 하였다.

불법체류 발생 주요 요인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 브로커 41명, 불법고용주 46명, 불법취업 외국인 206명을 적발하였고, 대포차 운행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97명을 적발하고, 대포차량 268대(자동차103, 오토바이 165)에 대해 통보조치 하였으며,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을 단속하여 알선자 25명, 외국인 1,296명, 불법고용주 277명을 적발하고, 유흥·마사지업소 등의 방역지침 저해 행위 및 불법 전단지를 통한 불법고용·알선행위를 단속하여 외국인 682명, 불법고용주 205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활동범위제한 명령 위반자 등 격리이탈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여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41명을 적발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19, 출국명령22)하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26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10, 출국명령15) 하였다.

| 그림 2-141 | 격리위반 출국조치 관련 언론보도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로 기획조사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표 2-115 |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계		위변조 여권		허위초청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9년	882	7,569	92	121	84	151	220	2,791	486	4,506
2020년	595	2,338	44	118	44	98	146	755	361	1,367
전년대비(%)	67.5	30.9	47.8	97.5	52.4	64.9	66.4	27.1	74.3	30.3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단속활동이 자제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실적 32.5% 감소

4)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0. 10. 13. ~ 10. 27.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2020. 5월과 11월 청주 외국인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2020. 2월, 6월, 10월, 12월 4차례에 걸쳐 외국인 보호시설 기관장 등 영상회의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들의 체불임금 1,198건, 의료구호 2,276건 등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산·전파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격리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대규모 단속활동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가.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지난 2019년 선·후배 이민자 간 소통과 선순환적 사회통합 유도를 위한 이민자 멘토교육의 성공적 시범실시와 더불어 선배 이민자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져감에 따라, 2020. 5월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35명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이민자 멘토교육은 물론, 내국인 대상 상호문화 이해 강의,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정책자문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민자 멘토단은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칭 변경 관련 정책 제안을 하여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교육을 121회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자 2,25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멘토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위기극복 릴레이 캠페인'과 '덕분에 챌린지' 등 공익캠페인과 내·외국인 상호소통 강화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법무연수원 '재한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 그림 2-142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은 출범 1년 간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 정책자문,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법무부는 이민자 멘토단이 참여한 '재한외국인이 들려주는 상호문화의 이해' 강의를 2021년부터 법무연수원과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등에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전면실시를 통한 코로나19 탄력 대응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등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기존 집합교육으로 운영하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4월, 기존 집합교육 방식에서 전면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교육 참여자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운영 정상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외국인들이 영주자격 취득 및 귀화에 필수적인 한국사회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143 |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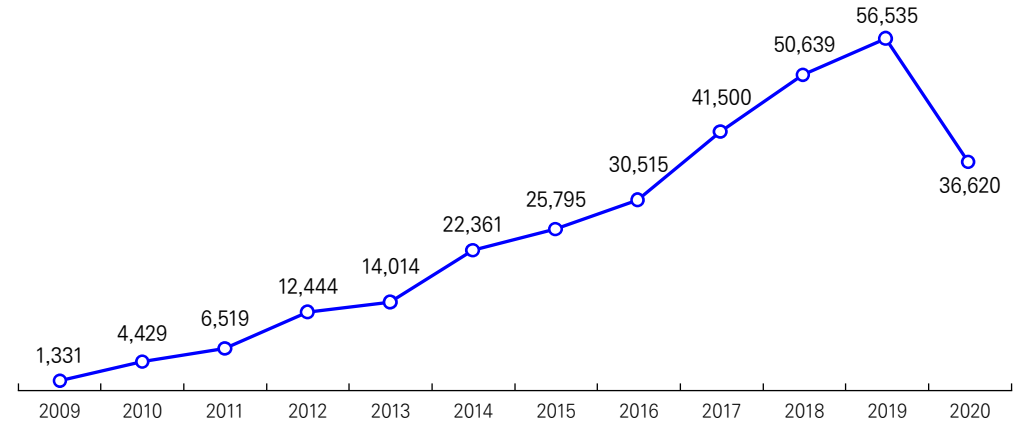

| 그림 2-144 |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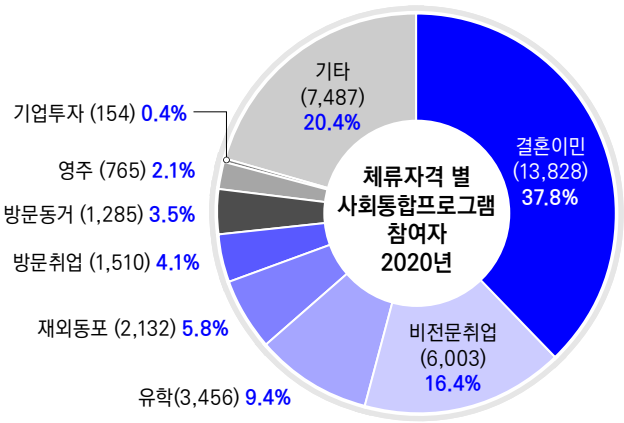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체류유형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국적동포 및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21년 특수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과정 신설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정보,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교육이 주중 일과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그동안 직장인들은 연차를 활용해야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7월부터 수도·중부·전라·경상·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월1회 이상 주말과정을 개설하여, 직장인들이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생업 등을 이유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웠던 한국인 배우자들은 주말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교육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라.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은숙

2020. 5. 2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었다며, 그 위기 극복과정에는 재한외국인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영거 수산나 메리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수산나 여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평생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며 지역사회 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박인규 회장과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단체)가 대통령표창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은자 대표, 서울시립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학교 이성균 교장, 유니버설문화원 바수무쿨 대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과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한드랙쟁채벨마 회장 등 5명과 (사)글로벌국제비전센터 등 2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그림 2-145 |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마. 한부모 결혼이민자 안정적 체류지원 방안 마련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민과 혼인관계가 단절된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F-5)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녀 양육자의 안정적 국내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0. 12월,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 양육자의 국내 생활기반 및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혼인단절 후 자녀(국민)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요건,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등의 체류지위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체류환경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고, 이민배경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가.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되고 「국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2019. 1. 21. 제1회 국적증서수여식(국립한글박물관)의 개최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새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3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2020년 전국 18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연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지속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15,641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다.

| 그림 2-146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75주년 광복절기념 국적증서수여식(8. 12.)-포토뉴스 제공

특히 법무부장관은 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에게 직접 국적증서를 수여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20. 9월 추석을 맞아 1966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된 이래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 등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평생을 노력해 온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안광훈)신부를 위한 특별공로자 국적수여식도 개최하여 귀화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민의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47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특별공로자 브레넌 로버트 존(안광훈)신부의 국적증서수여식(9.24.)-포토뉴스 제공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2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 기획한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과 '안광훈' 신부의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따라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국적취득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정체성을 함양하는 행사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집합형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법에 따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개별국적수여 방식으로 국적수여 방식을 다각화하는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연중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27%이상 증가한 인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여 감염병 확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적취득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식순에서 벗어나 귀화자 및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기념일·지역 특성화 축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 참여형 수여식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적법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기존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반드시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이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12273호, 2020. 12. 22. 일부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재외공관을 통하여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대통령령 제312273호, 2020. 12. 22. 일부개정)하여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에 종합평가·면접심사 면제 여부, 건강정보 및 참고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귀화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화 신청자에게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귀화 면접심사의 시의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 면접심사의 질문지 내용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질문 문항을 추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면접 응시자의 학습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던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내용을 수정 및 보강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발간·배포하는 등 국적 신청자의 면접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국적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48 | 발간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2019년 발간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2020년 발간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밖에, 국적을 신청하는 민원인의 사무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적 업무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해외 각국의 이동 제한조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라인 선 접수 후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국적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先온라인 신고 後 방문접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적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국적 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국적 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우편 접수 및 대행제도 등 국적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적업무처리절차를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적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예외 없는 국적이탈 시기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0. 9. 24.)을 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적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시행

●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5. 4. 국적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학술·체육 등 분야로 한정적이고 경력이나 소득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당초 도입취지에 비해 유치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속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민자 및 귀화자 증가에 따른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적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 6. 26.「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대상을 확대(4개→10개 분야)하고, 경력 및 소득요건을 현실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포섭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가점제도를 신설하여 국민고용 창출, 납세실적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 및 기부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소재·부품·

장비 분야 및 신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표 2-116 | 우수인재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세부분야
학술분야 (127)	과학(56)	의학(20), 약학(3), 보건학(2), 물리학(5), 화학(3), 미생물학(2), 생명과학(6), 지질학(1), 해양과학(3), 환경과학(2), 나노과학(5), 신소재(3)
	공학(42)	건축공학(1), 교통공학(1), 기계공학(3), 반도체(1), 바이오센서(1), 식품공학(2), 인공위성(1), 재료공학(4), 전기·전자공학(4), 정보전자융합(1), 정보통신(2), 조선해양(1), 컴퓨터공학(5), 토목공학(3), 항공우주(2), 핵공학(1), 화학공학(5), 환경공학(2), 인공지능(2)
	인문학(11)	인문학(1), 신학(2), 역사학(1), 기타어학(2), 영문학(4), 음악학(2), 경제학(4)
	사회학 등(18)	법학(2), 경제학(1), 경영학(2), 문헌정보학(1), 교육심리학(1), 국제학(1), 무역학(1),마케팅(1), 언론홍보(1), 건축학(1)
문화·예술, 체육분야 (42)	체육(29)	농구(4), 태권도(2), 럭비(1), 마라톤(1), 배구(1), 유도(1), 아이스하키(11), 바이애슬론(4), 쇼트트랙(1), 루지(1), 아이스댄스(1), 장애인노르딕스키(1)
	문화·예술(13)	바이올린(2), 피아노(1), 음악(2), 문학(4), 영화(1), 조각(1), 큐레이터(1), 기타(1)
첨단기술 (12)	나노(2)	생명과학(1), 나노과학(1)
	생물(1)	바이오나노(1)
	융복합(1)	융복합산업(1)
	전자(4)	반도체(2), 디스플레이(1), 전자제어·계측(1)
	정보기술(1)	이동통신(1)
	제약(4)	신약개발(3), 나노과학(1)
경영분야 (9)	경영·무역(9)	경영(4), 무역(5)
신산업분야 (2)	신산업(2)	바이오헬스(1), 반도체(1)
전문분야 (1)	전문분야(1)	변호사(1)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와 서면회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대상자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와 리플릿을 한글·영문으로 제작하여 우수인재들이 근무하는 대학교·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및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온·오프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제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49 |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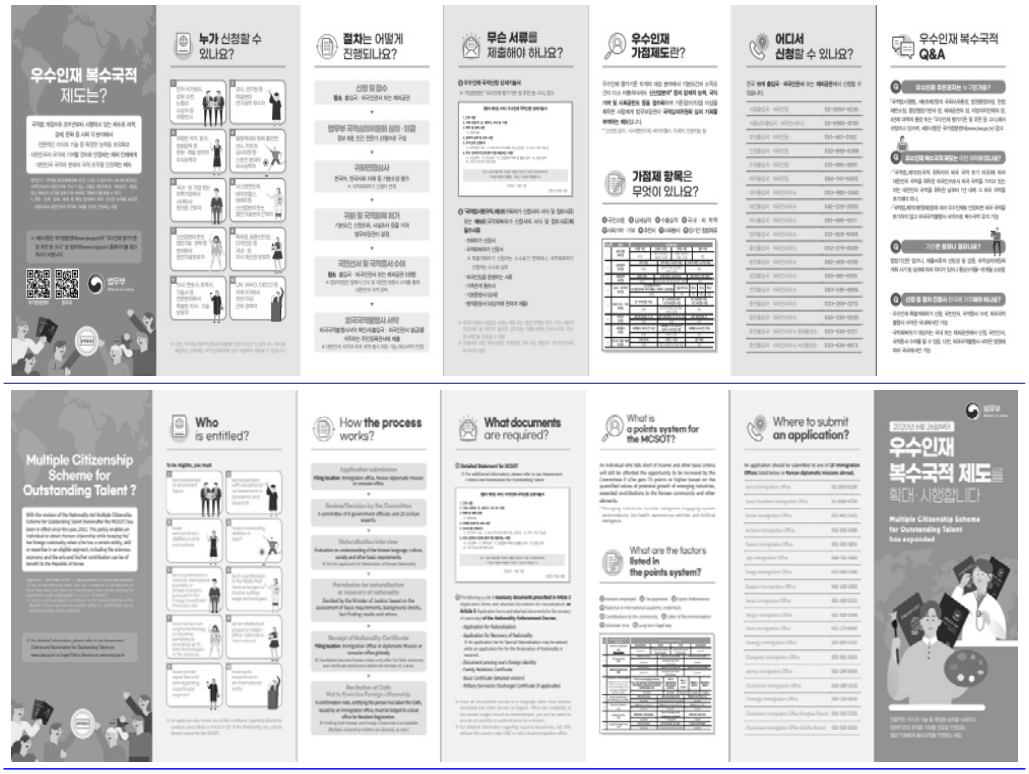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도입 이래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20년 말까지 총 36회 개최(2020년 4회) 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127명, 문화·예술 13명, 체육분야 29명, 첨단기술분야 12명, 경영·무역분야 9명, 신산업분야 2명 등 총 192명을 우수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총 4회의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산업·첨단기술, 의사 등 전문분야의 다양한 우수인재를 38명 선정하였으며 이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유치한 우수인재의 연평균 수(15.6명) 대비 143%가 증가한 획기적인 실적 달성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과 소통을 통한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 등 내·외부 정책환경을 개선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 국적업무 처리 현황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귀화자는 2016년 10,108명, 2017년 10,086명, 2018년 11,556명이며 2019년에는 9,914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13,885명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귀화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연간 귀화심사 TF를 운영하였고, 그 결과 국적취득자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일반귀화는 성년자로서 영주권을 갖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도 귀화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로 전체 귀화자 중 48.4%(6,717명)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반귀화자로 24.3%(3,380명)이다. 전년도 일반귀화자는 1,172명이었으나 연간 귀화심사 TF를 운영을 통하여 특히, 일반귀화자 수가 3,38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부 또는 모의 귀화 시에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인 귀화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표 2-117 |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타		
2016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	10,086	715	6,438	304	2,238	391
2018	11,556	1,037	7,689	264	2,064	502
2019	9,914	1,172	6,027	339	1,763	613
2020	13,885	3,380	6,717	432	1,925	1,43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회복제도는 국적법 제정 시부터 있었으나,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2011. 1. 1.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적회복자가 「국적법」개정 전인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31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 2018년 2,698명, 2019년 2,443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에서 신청자들이 입국하지 못하여 국적회복자가 1,76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표 2-118 | 국적별 국적회복자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 연도별	합계	미국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2016	2,303	1,486	286	113	102	316
2017	2,775	1,655	356	245	112	407
2018	2,698	1,681	334	144	116	423
2019	2,443	1,476	277	182	121	388
2020	1,764	1,057	221	120	63	303

국적선택제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적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1,513명, 2017년 1,329명, 2018년 1,714명, 2019년 1,829명, 2020년 2,1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적상실은 2016년 35,257명, 2017년 19,364명, 2018년 26,608명, 2019년 22,078명, 2020년 25,034명이며 국적이탈은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미성년자로서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신고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그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재취득 등이 포함된다.

| 표 2-119 | 국적 신고 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기타
2016	1,513	35,257	1,147	629
2017	1,329	19,364	1,905	519
2018	1,714	26,608	6,986	538
2019	1,829	22,078	2,461	679
2020	2,106	25,034	3,651	626

※ 2016년, 2018년, 2020년 국적상실 현황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2018년과 2020년 국적이탈 현황은 개정「재외동포법」시행 (20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하여 증가한 것임

라.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한 예외없는 국적이탈 시기 제한에 대하여 법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적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지속 실시 및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특별공로자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꾸준히 발굴,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귀화자 등에 대한 국민정체성을 함양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가. 추진배경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사증면제 협정 등 잠정정지 조치 등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어 난민신청 건수도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난민법」시행 이후 난민신청은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 급감함에 따라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적체 현상은 지속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 심사 운영과 난민통역의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심사제도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난민업무 전담인력을 확대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전담부서인 난민심의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난민심사관과 통역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심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난민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 12월에 입법예고하였다.

| 표 2-120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난민신청		7,541	9,942	16,173	15,452	6,684
대기	1차	3,791	7,317	16,887	22,321	14,976
	이의신청	3,066	2,325	2,747	3,253	5,118

나. 추진내용

1)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정책과 사무관 홍인표

2013년 「난민법」 시행 당시 전국 18명에 불과했던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이후 5년간 21명이 증원되어 2018년 말 기준 전국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39명으로 늘어났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9년에는 52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위원회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난민심의과')를 신설(2명 인력 증원)하였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내용과 출신국의 정황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 외에도 관련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을 총 5회 실시하는 등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 표 2-121 | 2020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교육과정	주요 내용	주최
1차 (5. 28.~5. 29.)	초·중급 (49명)	• 난민이론 개관(박해 등 기초이론)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아동 면접의 특수성 – 유의미한 진술 도출법과 진술의 신빙성 분석 – 러시아 및 CIS 국가정황의 이해 – 중동 국가정황의 이해(여성 인권 및 개종)	법무부/UNHCR
2차 (8. 13.)	초급 (22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국가정황정보 수집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협약상의 박해사유 분석 및 난민인정기준 – 난민통역의 이해	법무부/UNHCR
3차 (9. 1.~9. 4.)	초급 (26명)	• 난민이론 개관(난민법 및 난민협약)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최신 소송 동향 및 판례 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라포형성 훈련 – 트라우마 및 치유상담의 이해 –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가정황의 이해	법무부
4차 (11. 6.)	중·고급 (38명)	• 난민이론 및 면접기법(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 전문가 초청 강연 – 성소수자 난민의 이해 – 성소수자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 사례 분석, 역할극 및 소그룹 토론 • 해외판례 분석	법무부/UNHCR
5차 (11. 20.)	중·고급 (20명)	• 중동권 국가 심사 시 유의사항, 최근 쟁점사항 공유 • 전문가 초청 강연 – 이집트 국가정황의 이해 • 사례 분석 및 소그룹 토론	법무부

2) 난민 통역 제도

●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이 85개, 난민통역 언어가 36개에 달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구사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특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고, 2020. 12월 현재 29개 언어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

한편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품질을 검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0년에는 4차에 걸쳐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난민전문통역인 154명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난민전문 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3)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지원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득·자산, 주거현황,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5억4천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22 | 2020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센터 비(非)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2020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6,684명 중 460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이 중 26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2020년 신규 입소자는 총 19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어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은 화상 교육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해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 사무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선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재정착난민 수용

● 난민정책과 사무관 임연주

재정착난민제도는「난민법」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여 지역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내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며 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20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26명, 2019년 37명, 20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현재까지 재정착난민 제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난민은 총 166명이다.

| 표 2-123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6) 난민업무 처리 현황

●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1994년 난민업무를 시행한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71,042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자진 철회된 16,970건을 제외한 총 34,836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091명에게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2,370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결과적으로 총 3,461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0년에는 난민신청 수가 총 6,684건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폭 감소(2019년 총 15,452건)하였고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20,094건으로 전년대비 5,480건 감소하였다. 2020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6,766건으로 전년도 5,073건 대비 33%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은 69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155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2%, 33% 감소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2019년에 실시한 난민통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의 내용을 기반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해 통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역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통역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난민전문통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진행된 「난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지원하는 한편,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효과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중동지역의 무슬림간의 종교 분쟁 및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종족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전세계 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19년 이의신청 건수는 4,068건으로 2018년 이의신청 3,113건 대비 31%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2019. 12월말 기준 이의신청 심의 대기 건수는 3,255건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는 등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표 2-124 |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의신청	3,258	5,277	3,722	3,113	4,068	5,956
심사결정	1,994	4,276	4,415	2,584	3,434	3,793

또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이의신청 절차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준사법절차보장이 필요하나, (특별)행정심판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두 의견 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 2. 25. 법무부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의과〉가 신설되었다.

〈난민심의과〉 가 신설되면서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의신청 심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나. 추진내용

1) 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2014. 6월 현 난민 분과위원회(3개 분과) 체제를 구축한 이후 난민신청자 약 5.3배(2014년 2,896명 → 2019년 15,452명), 이의신청인 약 2.3배(2014년 1,759명 → 2019년 4,062명) 증가

하였고, 난민신청 대상 국가(2014년 60개국→2019년 96개국) 및 사례도 다양화·복잡화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권 및 러시아 국적 난민신청자가 약 284배(2014년 19명→2019년 5,396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의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2014년 8명→2019년 5,065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난민신청 추이 및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환경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1, 2분과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아시아권 국가 및 러시아를 하나의 분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3개(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 국가를 조정하고, 1개(중앙아시아권, 러시아) 분과위원회를 증설하여 총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다.

또한, 2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신설분과(4분과) 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위촉위원(지역전문가)으로 지정하여 분과위원장 전원을 위촉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였다.

| 표 2-125 |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2)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

난민심의과 사무관 전동균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 국가 및 사례는 복잡·다양해진 반면, 난민 이의신청 심의위원은 15명으로 제한되어 전문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고, 종교·여성·성 소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외부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관계부처 및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축하였다.

| 표 2-126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총계	국가정황 전문가			종교 전문가	특정집단 전문가	
	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여성인권	성 소수
35명	8명	8명	9명	4명	4명	2명

이를 통해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대면 개최 시 심의 안건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자문을 청취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자문을 받음으로써 난민위원 수 부족에 따른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3) 이의신청 절차 비대면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비대면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 훈령)」을 개정하여 영상회의 방식의 회의 개최 근거와 영상회의로 참석한 난민위원의 출석 인정 및 의결서 개별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전동균

출신국의 박해를 피해 급박하게 탈출하는 난민의 열악한 지위 및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은 자신이 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진술로 대신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의 판단 근거로서 신청자의 국적국 국가정황정보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여 난민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나, 다양한 박해사유에 대한 국가정황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의신청 심의 대기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및 각 국에서 발간한 최신 국가정황 자료* 및 그 외 언론 보도 자료, 학술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전문적으로 수집하여 번역 및 분석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호주 외교통상부(DFAT), 캐나다 이민난민심판원(IRB),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 등에서 등재되는 국가정황정보

이에 난민 업무 담당자가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정황정보 센터 및 국제기구, 인권단체,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등재된 국가정황정보를 키워드로 일괄 검색 및 수집할 수 있는 국가정황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 및 시범 운영함으로써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급증하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신속·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정황정보 조사팀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이의심사 기회 보장으로 난민 불복절차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난민 이의신청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8.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가.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노종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13]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 7. 23.부터 2020. 7. 29.까지 '제2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13)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 그림 2-150 | 외국인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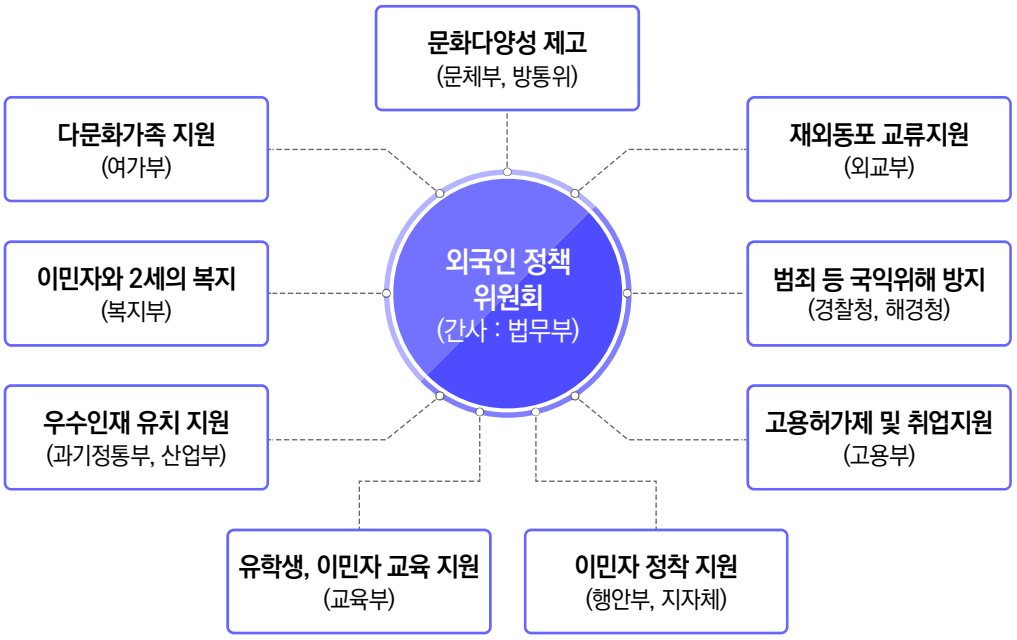

2) 주요내용

'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2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5,281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재외공관 비자신청센터 및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우수인재 발굴 및 입국·체류·적응 상담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및 유학생 지원 체제 등 교육의 질 관리 강화
- 5개월까지 계절근로 가능한 체류자격 신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예방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중장기 검토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관광코스 다양화, 목표그룹 선정 및 홍보 확대, 인천공항 환승관광 신규코스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전자민원 확대,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회통합 관련 강사,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보장과 내국인 권익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결혼제도 개선안 후속 조치 지속 추진
- 지방자치단체 이민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 모델 개발 추진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정보 활용 체계 강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이용 대상 확대
-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발할 수 있는 '신속 출동팀' 운영, 불법입국·취업 브로커 집중단속을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권역별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이민자 차별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 전문 상담·법률·의료지원 등 종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확대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을 위한 이주민 자조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요건 완화 및 자격 부여 확대를 통한 동포 왕래 및 경제 활동 확대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체류만기 도래자 등 자진귀국 의사가 있는 자 등 인도적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출국 비용 지원 등 귀국 지원, 자발적 귀환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추진
- 법무부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자 위원의 비율 확대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 과정 교육 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 공무원 교육 강화

• 국제 인구이동 통계·전국 및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및 결과 공표 등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표 2-127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0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221	528,101	176	286,548	1,045	241,553
1. 개방	120	218,104	43	165,491	77	52,613
2. 통합	701	164,588	39	24,814	662	139,774
3. 안전	42	18,918	25	18,344	17	574
4. 인권	287	50,224	44	17,179	243	33,045
5. 협력	71	76,267	25	60,720	46	15,547

나. 2020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0. 11. 6.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 정책발표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3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0. 11. 6.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 '모바일 여권, C.I.Q 통합신고, 비접촉 심사도입'이 최우수상을, '보건의료 투자이민제 도입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환승구역 관리방안'이 우수상을, '빅데이터센터 신설을 통한 혁신 출입국·외국인행정 구현방안'과 '수사업무 전자화 방안 ', '동일외국인 정보결합'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51 | 제23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다. 2020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 방식의 이민정책포럼 개최를 잠시 중단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운영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0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통합', '물류산업의 인력수급 실태와 외국인력 도입 효과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민정책 방향', '독일의 이민법개정 배경과 실리적 선택', '이슬람과학문명', '인구학 이론'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52 | 2020년도 이민정책포럼

라.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혼란 속에서도 다양한 이민동향을 파악하여 국제 환경 변화 흐름에 부응 하고자 하였고,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는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등에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제 3차 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의 난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였다.

출입국 관련 주요 협력국인 일본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세계의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한-중 코로나19대응 방역협력 대화와 한-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회의에 참여하였고, K-방역 웹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출입국관련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급변하는 세계이민동향에 발맞춰 국제기구에서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 파악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 1월부터 12월까지 ① 제12차 GFMD 정상회의, ② OECD 고위급 포럼 및 이주

장관회의, ③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④ IGC 워크숍, ⑤ 한-메르코수르 TA 제5차 협상, ⑥ 한-UNHCR 정책협의회, ⑦ IGC 고위급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리나라와의 주요 협력 국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과 고위급회담을 실시하였고, 출입국 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그림 2-153 | 고위급 회담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 분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에 동참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0. 3. 18.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에 참여하여 분야별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0. 4. 29. 한-콜롬비아 당국 간 코로나19대응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관리 경험 공유를 하여 양국 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20. 6. 3. 출입국·검역 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K-방역 웹세미나(4th Special Webinar on Covid-19 for Policy and Technology Sharing- Policies & Practices of ROK's Immigration Sector and Quarantine Measures)를 개최하여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분야에 대한 우수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총 18개국 853명이 웹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위 세미나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의 입국 정책과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검역·방역 지원 입국심사 등을 소개하여 K-방역 출입국관리 분야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다.

| 그림 2-154 |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K-방역 웹세미나

제10절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이민국경안전대응반장 김용규

1.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운영

2020. 1. 20. 최초의 확진자 발생으로 시작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법무부는 감염병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2020. 8. 27.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을 신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은 업무 조율을 위하여 출입국정책단장(고위공무원)이 단장을 겸임하되, 보좌기관인 이민국경안전대응반을 두어 반장(4급) 이하 총 7명을 배치, 주말·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등 범정부 회의 관리, 대외 협의, 감염병 대응 출입국절차 마련·관리, 방역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대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림 2-155 |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

현판식 사진

화상 점검

2. 진행상황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은 출범 이후 매일 수십여 종의 정형 통계와 비정형 통계를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 부처 회의' 관계기관 협의체에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세부 방역절차 마련 시, 탑승객 사전정보시스템 등 전산인프라와 숙련된 출입국심사 인력을 활용,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외유입원을 선별적·선제적으로 차단하는 K-방역 업무를 적극 분담하였다.

| 표 2-128 |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주요 조치 사항

연번	일자	내용
1	8. 27.	코로나19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 신설
2	9. 8.	항만 검역소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처벌 시행
3	9. 12.	격리면제서 발급 강화 시행 (격리면제기간 차등, 면제서 유효기간, 입국외국인에 활동범위통지서 교부)
4	9. 15.	출입국관서 출입자 명부 작성(방문콜) 시행
5	10. 7.	우즈베키스탄발 외국인 입국자 검역 강화
6	10. 8.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7	10. 31.	항만입항 선원 검역 강화 조치 시행(러시아, 필리핀 발)
8	11. 30.	『환타510』 캠페인 시작
9	12. 23.	영국 변이 발생에 따른 입국자 방역 강화(입국심사 강화 포함)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9. 10.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관련 지시(알림)	•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자에게 활동범위제한서 교부 및 수령증 회수 • 유효기간 도과 격리면제 소지자 격리대상자 전환 • 격리면제기간 만료 후 활동계획 위반자 사범처리 • 입국일로부터 14일이내 출국자 발견 시 격리위반 여부 확인	외교부(영사서비스과),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9. 11.	출입국기관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지시	• 기관 출입자 명부 작성, 4주간 보관 후 폐기 • 방역기관 역학조사시 명부 제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쪽지에 명부를 작성하여 함에 직접 투입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9. 17.	전화 발신기록 활용 출입명부 관리 지시	• 기관 출입자 명부 작성 시 출입자가 기관용 수신 전용 번호에 전화하면 전화번호가 자동 수집되는 '방문콜'제도 활용 지시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9. 17.	추석 연휴 재한외국인 이동 및 모임 최소화를 위한 홍보 지시	• 같이 송부한 8개 국어 번역문을 활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연휴 재한외국인 이동 및 모임 최소화 홍보활 동 지시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9. 25.	러시아 국민에 대한 환승 제한 해제 알림	• 러시아 국민에 대한 환승 잠정 중지 조치(2020. 6. 4.) 해제	외교부, 국토부, 이민정보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9. 29.	소속기관 보호근무상황 일일점검 지시	• 일일보호근무현황을 보고 • 취약시간대(01:00~04:00) 불시 유선점검 시행 • 요주의 보호외국인 관리 강화 등	출입국기획과, 이민조사과,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0. 7.	일본 출발 기업인 격리면제 절차 변경 관련 지시	• 일본 출발 격리면제 기업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징구 지시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0. 7.	방역강화국가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방역강화국가 중 특정국가 PCR 음성확인서 영사 확인 일련번호 확인 철저 지시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0. 7.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자(격리거부) 탑승차단 시행	• 시설격리·격리비용 납부 거부로 검역소 요청에 따라 입국불허한 외국인에 대하여 송환일로부터 6개월간 탑승 차단 조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0. 8.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격리 면제등)관련 PCR 확인서 징구 및 양식 등 알림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따른 격리면제서 서식 및 징구 절차 전파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개인 방역수칙 준수 지시	• 개인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등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0. 26.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 및 조치 사항 알림	• PCR 음성확인서 확인 및 미소지·부적합시 입국 불허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1.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핵심 방역수칙 준수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 거리두기 준수 등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1. 27.	겨울철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 철저 준수(본부장 지시)	• 2시간에 한번 10분씩 자연 환기 등 방대본 환기지침 전파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2. 10.	중국동포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안내문자 발송 지시	• 중국동포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안내 문자 발송 지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2. 11.	수도권 체류외국인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홍보 지시	•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 수도권 체류외국인 진단검사 참여 홍보 지시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2. 30.	수도권 체류외국인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홍보 지시(연장)	• 방역당국의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2주 연장 결정에 따라 홍보 기간 2주 연장 • 불법 체류자의 방역사각지대화 방지를 위하여 증상유무 관계없이, 익명, 무료로 “비자가 없어도 신고 걱정 없이 진단검사 가능” 홍보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12. 31.	국내 입국 SOFA협정 적용 주한미군 관련자 지침 정정 알림	• SOFA 협정 대상자로서 무증상자의 경우 미군 측에서 검사·격리 등을 관리하는 대상자 범위에 주한미군의 가족 및 관련자를 포함 • 방대본의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에 반영 및 관련 사실 전파	갑(55~64), 기	코로나19 이민국경 안전긴급 대 응 단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정책기획단 검사 송인호

1.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가. 추진배경

○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입법 추진

○ 검사가 인권보호관, 공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검찰상 정립

나. 추진경과

○ 법률 개정

- 2018. 6월 법무부·행안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2020. 2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

○ 하위법령 제정

- 2020. 2월 법무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TF」 구성
- 2020. 10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각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 등 제정 및 시행
- 2021. 1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각 법무부령)
- 2021. 1월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개정 및 시행(각 법무부령)

다. 주요내용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 대통령령으로 수사준칙 제정
-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 ⇒ ① 사경 수사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있을 경우 검사는 시정 조치 요구·사건 송치 요구 가능, ②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위하여 보완 수사 요구 가능
- 사경은 불송치 사건의 결정문,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90일 이내에 사경에 반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검사는 재수사 요청
- 검사의 수사 개시는 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③ 검사 수사개시 사건, 사경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조정 절차 규정
-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강요 금지,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 제한, 수사서류 열람·등사 범위 확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규정
- 의무적 입건 사유 확대,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 구체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 통제 규정
- 검사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 접수·수사 시 의무적 이송 규정
-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신설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관련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사준칙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 대통령령으로 검사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의 범위를 특가법위반(뇌물), 특경법위반(사기·횡령·배임) 등 죄명으로 명확하게 규정
- 법무부령으로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의 범위를 공직자 신분(재산등록의무자), 금액(뇌물범죄 3천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억원 이상) 등으로 추가 제한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후보로 구성된 후보단 중에서 심의 신청 시마다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9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위원후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영장 청구 적정을 의결하도록 규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 개진할 수 있고,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인 경우 피의자 및 변호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며,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 규정
- 피의자에 대한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동석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시간 조사 제한 및 휴식시간 부여 등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규정
- 검사는 법률에 따라 특사경을 적정하게 지휘하고,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대효과

○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인 인권옹호, 수사과정의 적법성 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사법경찰관은 현장 수사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및 형사사법 정의 구현

○ 이를 통해 검·경 간 대립·갈등 관계를 종식시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검·경이 협력하여 형사사법 정의 구현

○ 검사는 직접수사에 소요되는 역량을 사법통제 및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에 투입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강하게 보호 또는 보장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실현

○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정착,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상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운영

정책기획단 검사 송인호

가. 개요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9. 9. 30. 법무·검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간부, 일선의 형사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리고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 종료일인 2020. 9. 29.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신속히 실현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나. 진행상황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의 검찰개혁 기조를 담당하는 제1분과와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등의 검찰개혁 기조를 담당하는 제2분과, 그리고 이행점검을 위한 특별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9. 9. 30.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50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모두 25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검찰 직접수사축소,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화 등이며,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권고안 내용과 발표일자는 〈표 2-129〉와 같다.

| 표 2-129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

회차	일자	내용
1	'19. 9. 30.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2	'19. 10. 7.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3	'19. 10. 18.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4	'19. 10. 21.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5	'19. 10. 21.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6	'19. 10. 28.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7	'19. 11. 12.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8	'19. 11. 18.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9	'19. 11. 25.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10	'19. 12. 9.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11	'19. 12. 23.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12	'20. 1. 13.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 등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
13	'20. 2. 10.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14	'20. 2. 24.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의견진술권 보장
15	'20. 3. 23.	미결수용자 등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보장
16	'20. 4. 13.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
17	'20. 4. 27.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18	'20. 5. 18.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19	'20. 6. 8.	출국금지 제도 개선
20	'20. 6. 29.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
21	'20. 7. 27.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22	'20. 9. 14.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23	'20. 9. 14.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24	'20. 9. 21.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
25	'20. 9. 28.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률
2009	73	15	6	6	3	56	15	19	22	2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2018	58	1	-	1	-	57	19	23	15	
2019	51	2	-	1	1	48	9	24	15	1
2020	71	2	-	1	1	69	27	25	17	-

제2절 법률

Ⅰ. 개정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가. 추진배경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자가 직접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3. 15. 국회제출
2020. 1. 9. 국회의결
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 면제 신청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의 첨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제45조의2제2항)
◦ 법무부장관이 범죄경력조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제45조의2제4항)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순화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1. 29. 국회제출
2020. 1. 9. 국회의결
2020. 2. 4. 법률 제1691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용어 변경(제17조 등)

3. 중재법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법무부장관을 추가

나. 추진경과

2017. 9. 8.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1. 9. 국회 본회의 의결
2020. 2. 4. 법률 제16918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18. 12. 19. 국회제출(금태섭 의원안)
2019. 2. 1. 국회제출(황주홍 의원안)
2019. 10. 30. 국회제출(백혜련 의원안)
2020. 1. 9. 국회의결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공포(2020. 8. 5.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 제명 등 변경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불구속재판의 확대, 범죄인 사회복귀 촉진, 범죄예방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장치 활용의 목적임을 규정(제1조)
-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용어 변경(제16조 제2항 제3호 등)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제22조)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

◦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규정 마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제31조의2)

  ※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제31조의3)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 및 검사에 통지(제31조의4)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양형(量刑)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교정성적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두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2. 28. 정부안 국회 제출
2019. 11. 27. 법사위 수정 의결
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 신설

◦ 양형 참고자료 및 수용이력에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원·검찰 등의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 조문을 법률로 상향 입법

◦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상 직역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

나. 추진경과

2019. 11. 22. 차관회의 원안 의결
2019. 11. 27. 국무회의 원안 의결
2020. 6. 9. 법률 제17366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 소관 법률인 법무사법·변호사법·변호사시험법·비송사건절차법·정부법무공단법의 시험 응시 자격이나 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

7. 형법(1)

가. 추진배경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음

◦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6. 7. 11.(김승희 국회의원), 2018. 7. 25.(주광덕 국회의원), 2018. 12. 21.(오신환 국회의원), 2019. 4. 15.(천정배 국회의원), 2019. 10. 31.(서영교 국회의원), 2020. 3. 23.(백혜련 국회의원), 2020. 4. 9.(박대출 국회의원), 2020. 4. 21.(한정애 국회의원) 제안
2020. 4. 2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
◦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 추진배경

◦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음

◦ 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28.(윤상현 국회의원), 2017. 9. 7.(정성호 국회의원), 2017. 12. 29.(이만희 국회의원), 2018. 1. 5.(백혜련 국회의원), 2018. 3. 6.(이언주 국회의원), 2019. 1. 9.(윤상직 국회의원), 2019. 1. 16.(김수민 국회의원), 2019. 3. 13.(윤소하 국회의원), 2019. 4. 29.(조응천 국회의원), 2019. 5. 3.(임재훈 국회의원), 2019. 5. 7.(김영호 국회의원), 2019. 8. 19.(박인숙 국회의원), 2019. 10. 30.(진선미 국회의원), 2020. 1. 20.(이종배 국회의원), 2020. 3. 23.(백혜련 국회의원), 2020. 3. 25.(송희경 국회의원), 2020. 3. 31.(박광온 국회의원), 2020. 4. 9.(박대출 국회의원), 2020. 4. 21.(한정애 국회의원) 제안
2020. 4. 2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가. 추진배경

◦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처벌 요구가 강함

◦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으로는 그 처벌에 한계가 있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나. 추진경과

2018. 2. 14.(민경욱 국회의원), 2019. 10. 31.(이종걸 국회의원), 2019. 11. 15.(박광온 국회의원), 2019. 11. 29.(박대출 국회의원) 제안

2020. 3. 5.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공포

2020. 6. 25. 시행

다. 주요내용

◦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함

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며,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업무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6. 26.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7. 29.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제출
2020. 7. 30. 국회 본회의 의결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공포(일부 조항 2020. 1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갱신 시 차임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각 지자체가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
◦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가. 추진배경

◦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부동산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경과

2020. 6. 26.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7. 29.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가결
2020. 7. 30. 국회 본회의 의결
2020. 7. 31. 법률 제17471호로 공포(일부 조항 2020. 1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및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

12. 부동산등기법

가. 추진배경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기절차를 개선하고 대국민 등기정보자료제공의 근거를 신설

나. 추진경과

2019. 4. ~ 5.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2. 4. 법률 제16912호로 공포
2020. 8. 5. 시행

다. 주요내용

◦ 등기 단독신청 대상 추가 및 합필·합병 제한 사유 축소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신청의사 확인의무 신설
- 변호사나 법무사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위임인 확인 방법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활성화
- 누구든지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등기명의인 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 구체적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수수료의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13. 출입국관리법(1)

가. 추진배경

◦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9. 7. 19. (조응천 국회의원), 8. 13.(송기헌 국회의원) 제안
2020. 1. 9. 국회의결
2020. 2. 4. 법률 제16921호로 공포
2020. 8. 5. 시행(일부 5. 5. 시행)

다. 주요내용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등이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유효한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지”를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로 함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임대료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한 차임액이 계약 해지·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를 규정

나. 추진경과

2020. 9. 23.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제출
2020. 9. 24. 국회 본회의 의결
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갱신거절, 계약 해지 등의 요건이 되는 차임 연체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
◦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19. 5.「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한 아동학대공공화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19. 12. 대안법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여,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시행된지 5년이 경과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연장 문제, 신고의무자 범위 등 실무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2. 17. 송기헌 국회의원 등 10인 발의
2020. 3. 5.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공포
2020.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그 밖에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관련 조치의 주체가 되어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유도(친권상실청구(제9조), 현장출동(제11조),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 신청 등(제14조~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임시 후견인 및 보조인(제23조, 제48조), 보호처분 관련(제36조, 제38조, 제40조~제42조), 항고와 재항고(제45조, 제57조),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조치(제47조~제51조, 제55조의2) 등)

16. 민법

가.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나. 추진경과

2020. 7. 3.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9. 23.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제출
2020. 9. 24. 국회 본회의 의결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

1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할 필요

◦ 법제처에서 '과태료 금액 지침'을 마련하여 과태료 설정 기준 등을 제시하면서,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수의 가벌성이 각기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단일한 과태료 상한액(1,000만원 이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이에 따라 경미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조정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10.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9. 23. 법사위 원안 의결
2020. 10. 20. 법률 제1750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교정법인이 경미한 사항의 정관변경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 민영교도소장이 수용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 민영교도소 직원이 근무 중 제복 착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3. 국회제출
2020. 9. 24. 국회통과
2020. 10. 20. 법률 제175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
- 보호소년·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
-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을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

◦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 도입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년원장이 검사·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을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소년원 수용 중에 22세가 되거나 같은 법에서 정한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후 3년 간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요청 가능하도록 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등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격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7. 3. 국회제출
2020. 9. 24. 국회의결
2020. 10. 20. 법률 제1751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규정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의3제1호)
◦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수용질서 위반 행위로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전문의가 아닌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제25조의3제2항 단서)

20. 형법(2)

가. 추진배경

◦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22.(신영대 국회의원) 제안
2020. 9. 24. 국회의결(위원회안 가결)
2020. 10. 20. 법률 제1751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의 위헌성이 제거되도록 정비함

21. 변호사시험법

가. 추진배경

◦ 저년차 변호사가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갖도록 현행 1년의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연장이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7. 24. 의원 발의
2020. 11. 19. 국회 통과
2020. 12. 8. 법률 제1756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
◦ 현행 부칙 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됨에 따라, 현행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7. 12. 12.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부칙 조항 신설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가. 추진배경

◦ 제4차 산업 시대의 ICT 환경 전환에 따라 기존 종이서면 및 대면거래 활동을 대체하여 전자서면 및 비대면 거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문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기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종이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한정적 열거로 이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혼란이 존재함에 따라,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활용가능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5. 20.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공포
2020. 12. 10. 법률 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서면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
-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성질상 적합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함

◦ 전자화문서의 효력 명확화 및 서면보관 대체 근거 마련
- 서면을 스캔하여 전자화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법령상 서면보관의무의 효력을 부여하고, 서면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 완화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전자장치부착법」의 위반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의 제도 관련 이해부족, 업무과중 등으로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발생,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 및 효율적 지도·감독으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6. 17. 국회제출
2020. 11. 19. 국회의결
2020. 12. 8. 법률 제17570호로 공포(2021. 6. 9. 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장치부착법」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 부여(제3조제6항 및 제5조제4호의2 등 신설)

24. 검찰청법

가. 추진배경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6. 26. 의원발의
2020. 11. 19. 국회통과
2020. 12. 8. 법률 제1756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25. 출입국관리법(2)

가. 추진배경

◦ 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단기체류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19. 10. 25.(조응천 국회의원), 2020. 2. 24(정성호 국회의원) 제안
2020. 5. 20. 국회의결
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공포
2020. 12. 10. 시행

다. 주요내용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

가. 추진배경

◦ 아동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통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9. 14. 국회제출(고영인 의원안)
2020. 9. 17. 국회제출(강훈식 의원안)
2020. 9. 29. 국회제출(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김남국 의원안)
2020. 12. 8. 법사위 의결(대안가결)
2020. 12. 9. 국회의결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정비
-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으로 변경(제9조의2제1항제1호)
-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로 변경(제9조의2제1항제2호)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를 신설(제9조의2제1항제5호)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제9조의2제3항)

◦ 준수사항 부과 규정 등 명확화
-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피부착명령자)이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4조의3 신설)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형 상한을 “3천만원”으로, “「보호관찰법」 준수사항”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제39조제1항 및 제2항)
-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제39조제3항)

※ (개정 전)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 등 근거 법률로 상향
-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전자장치부착법」에서 규정하도록 상향 입법(제16조의3 신설)

27. 상법

가. 추진배경

◦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20. 8. 31. 정부안 국회 제출
2020. 12. 9. 국회 통과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 분리선출
-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

◦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
-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감사위원 등 선임시 주총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과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제정]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등기에 필요한 보증서나 확인서 발급 요건 및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3. ~	2020. 8.	공동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2020. 5. ~	7.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6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
- 시·구·읍·면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

◦ 보증서 발급절차(안 제9조)
-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5명이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증서에 날인하면 지체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

◦ 확인서 발급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 등기신청을 위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

-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공고, 보증취지 확인,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현장조사를 함
-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되,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

Ⅱ. 대통령령[개정]

1.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1)

가. 추진배경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소유지를 강화 및 부장검사 정원으로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비직제부) 등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1. 28. 대통령령 제303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반부패수사부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 전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4개부→2개부)하여 경제범죄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 공공수사부·외사부 등 축소 및 형사부·공판부 전환
- 공공수사부 및 외사부 등을 축소(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7개청 8개부, 외사부 3개청 3개부→2개청 2개부 등)하여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
- 인천·대구·부산지검 각 1개 형사부를 공판부로 전환

◦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 부장검사 정원에 따라 운영하던 61개 비직제부를 직제화(형사부 58, 공판부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

◦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등 제한
-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문화,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 명문화

2. 상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회사 임원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20. 1. 16. 제3회 차관회의 통과
2020. 1. 21. 제3회 국무회의 통과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
-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전자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및 의결권 변경·철회 허용

◦ 임원 구성 투명성 제고
- 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
-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기간 확대 및 장기재직 금지 신설

3.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2.8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3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20.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단, 3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는 부칙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4. 검사정원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3과를 신설하고, 국제적인 수사공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검사 정원 이체·조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1명과 대검찰청의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 정원 1명으로 조정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

가. 추진배경

◦ 2020년 검찰청 소요정원 반영 및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과 감찰3과 신설에 따른 대검찰청 조직개편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등 특허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4명)을 증원하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 국제적인 수사공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국제

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3과를 신설

◦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7급 정원 2명을 연구사 정원 2명으로 전환

6. 상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감사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나. 추진경과

2020. 4. 2. 제14회 차관회의 통과
2020. 4. 7. 제17회 국무회의 통과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1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감사위원 자격 요건 명확화
-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하며(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구체적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한편 종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관련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 이에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관련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정비

7.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가. 추진배경

◦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보다 엄정하고 면밀하게 살펴 비위행사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의 토의대상이 되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을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으로 확대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외부인사의 비율을 늘리며, 재적위원 과반수만 출석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의결이 불가능한 현행 의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

나. 추진경과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범위 확대(제2조제2항제1호)
-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을 토의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바, 종전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사건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함

◦ 감찰위원회 구성 다양화(제3조제2항)
- 감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위촉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법조계 인사는 2분의 1 이하로 위촉하도록 함

◦ 감찰위원회 의결방법 명확화(제6조제3항)
- 감찰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감찰·감사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위원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함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하여 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 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

※ 현재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비용(조사비용 등)과 기간(신청 ~ 인가결정까지 평균 약 180일 소요)이 적게 소요됨

나. 추진경과

2020. 5. 21. 제21회 차관회의 통과
2020. 5. 26. 제27회 국무회의 통과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 상향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임

-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근 5년('14. 4. ~ '19. 4.) 서울 기준 전체 회생 사건의 약 48%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간이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소송에 대한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승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3. 4.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7호로 공포(2020. 12. 28. 시행)

다. 주요내용

◦ 행정소송 권한 이관
◦ 국가소송 승인 업무 일원화
◦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2. 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확대되고,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20. 8. 5. 시행)

나. 추진경과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 가석방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마련(제19조 신설)
- 교도소의 장 등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한 자료(인적사항, 처우등급 등)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송부
-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에는 범죄경력, 범죄내용 및 직업, 경제력, 생활환경 등 개별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방법 등 마련
- 전자장치 부착집행 절차 및 방법(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 보석조건 이행상황 등 통지 절차 및 방법(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석방예정자의 재범방지, 자립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죄명, 범죄횟수, 석방종류, 입소일 및 출소일 등 수용이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용기간 중 해당 수용자의 직업훈련 내역, 수상이력 및 학력변동사항 등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 규정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일시, 신청 업무 등을 방문하는 전날까지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함

◦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지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증을 발급받는 외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증발급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 방문 전날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등을 추가함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3)

가. 추진배경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소속 인력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인력 재배치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2호로 공포·시행(일부 2020. 12. 28. 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을 법무부로 이체
◦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 정원 6명(9급 6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정원 3명(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치
◦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14.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가. 추진배경

◦ 현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심사승진의 대상자 범위를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의하고 있는데 상위직급의 정원비율이 낮은 교정조직 직급구조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심사승진의 대상자 범위가 협소해지는 문제 발생
◦ 이에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직 내 활력을 높이고 근무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

나. 추진경과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2호로 공포
2020. 9. 1. 시행

다. 주요내용

◦ 5급 이하로의 심사승진 시 승진심사대상 확대
- (개정) 승진심사대상 : 결원 수의 5배수

15. 검사정원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형사부 및 공판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직위별 검사 정원 이체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9. 3. 대통령령 제309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사 정원 1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여 서울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에 각각 1명씩 이체

1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4)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의 형사·공판 지휘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 및 일선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전환 등 추진

나. 추진경과

2020. 9. 3. 대통령령 제30987호로 공포·시행(일부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의 검찰사무 지휘 기능 중 형사부 및 공판부와 관련된 지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1개 정책관, 2개 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공공수사정책관 및 과학수사기획관을 각각 폐지하는 대신, 체계적인 형사정책의 기획 및 연구를 위하여 차장검사를 보좌하는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각각 신설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

◦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사이버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정원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두고 있던 형사부(비직제부)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 및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하게 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 저금리 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상한율을 조정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8. 31.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임대인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으로 규정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로 하향 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지역본부 및 한국부동산원 6개 지사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건관리회의, 민감정보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6. ~ 7.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협의
2020. 6. ~ 7.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7호로 공포
2020.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됨(안 제4조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면제 신청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의 첨부를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제45조의2제2항)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7.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에 확대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9. 2.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7호로 공포(일부 조항 2020. 1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신설
◦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지역본부 및 한국부동산원 6개 지사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

2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개별 법령상의 감정평가업무 진입 제한 규정 개정

나. 추진경과

2020. 9. ~ 11.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 12. 1. 대통령령 제31196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로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를 포함

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6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단기체류자격 숙박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20. 6. 9.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그 시행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2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정보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 발급 요건 마련
- 개정 법률이 유통정보의 생성·보관 및 유통증명서의 발급 주체를 전담기관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유통정보 생성·보관,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요건 마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결격 사유 정비
- 개정 법률에 따라 지정취소 뿐만 아니라 인증취소 요건을 결격사유에 추가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 폐지 및 인증제 전환에 따른 인증요건, 절차 등 개선

◦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갱신 근거 마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성 유통 및 중계를 위한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23.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난민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있으나, 난민위원회 회의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심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난민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추진경과

2020. 9. 17. ~ 9. 24.	입법예고
2020. 12. 8.	국무회의 통과
2020. 12. 15.	대통령령 제31263호로 공포
2020. 12. 15.	시행

다. 주요내용

◦ 원격영상회의 방식 난민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
- 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출석 및 이의신청인 등의 회의 출석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24. 국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효율적인 귀화 심사를 위한 심사 절차 마련
◦ 국적 취득 후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의 편의 제고

나. 추진경과

2020. 7. 21. ~ 8. 31.	입법예고
2020. 12. 15.	국무회의 통과
2020. 12. 22.	대통령령 제31273호로 공포
2020. 12. 22.	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신청자에 대한 의견진술·자료제출 및 거주지 현지조사 절차 규정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또는 국적회복허가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함

2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벌금 수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금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나. 추진경과

2020. 8. 28. ~ 9. 17.	입법예고
2020. 10. 13.	국무회의 통과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6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제정]

1.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에 대한 보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추진경과

2020. 6. ~ 7.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7. 31.	법무부령 제974호로 공포
2020. 8. 5.	시행

다. 주요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최대 562만5천원)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 보증업무를 시작한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요청 또는 그 자의 사정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 조항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Ⅱ. 규칙[개정]

1.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술로도 할 수 있게 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 내용이나 참고인 등의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0. 1. 31. 법무부령 제96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변호인 참여권 강화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명시,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 외에 구술로도 가능하도록 함
- 변호인 참여 중단 시 불복방법을 고지토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 부여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에 앉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 동의를 요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의 대상 확대

◦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

◦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 통지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신문·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
-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의 제한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과 그 변호인도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복무평정규칙

가. 추진배경

◦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나. 추진경과

2020. 2. 20. 법무부령 제96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 평정방법에 '근무자세(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사례 등)'를 추가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조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전자증권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난민인정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강원북부교도소 및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조직에 필요한 인력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과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9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88명, 7급 106명, 8급 155명, 9급 168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5명(6급 59명, 7급 69명, 8급 83명, 9급 8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1개 과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451호, 2020.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

나. 추진경과

2020. 2. 25. 법무부령 제96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0년 소요정원 반영 등

- 기구 신설 : 4개 기관(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력 증원 : 548명(628명 중 1분기 반영인력)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34호, 2020. 4.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의 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의 분장 사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분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 되었던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12명(5급 12명)의 존속기한을 2020. 4. 30.에서 2023. 4. 30.으로 3년 연장

나. 추진경과

2020. 4. 28. 법무부령 제97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외국인본부 소속기관 인력 12명의 존속기한 3년 연장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대상 외국인의 활동범위 제한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0. 5. 29. 법무부령 제97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여 범칙금 상향 조정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종전의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

나. 추진경과

2020. 6. 30. 법무부령 제97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2년 한시)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921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0. 8. 5. 법무부령 제97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증이 면제된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 제도의 세부사항 마련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등의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조끼형포승의 규격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5. 법무부령 제97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포승의 종류에 조끼형포승 추가

◦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및 수용자의 사망장 서식 신설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0. 2. 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확대되고, ‘보석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마련 필요(’20. 8. 5. 시행)

나. 추진경과

2020. 8. 5. 법무부령 제97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

◦ 서식 제·개정
-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한 ‘보석 피고인 신고서’,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서’ 등 서식(4건)을 제정
- 규칙 제명 및 용어 변경(“가해제” → “임시해제”)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서식 명칭 등을 정비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소속 인력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인력 재배치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8. 5. 법무부령 제97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을 법무부로 이체

◦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정책관 등을 신설하며, 관련 소송사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0명)을 증원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1개 과를 설치

11. 검찰사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서도 사법경찰관의 명령신청권을 두는 내용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361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검찰의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이 효과적으로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0. 9. 10. 법무부령 제9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관련, 사후 임시조치청구 서식 신설 및 근거 마련
◦ 사건 수리사유에 법원에서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을 추가, 수사 종결 시 검사의 결정 항목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추가 및 관련 부수처분 규정 일괄 정비
◦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신설
-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취지에 따라 동 규칙에도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서식 규정 추가
◦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 서면통지가 원칙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식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 통지
◦ 항고결정서 양식을 기각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149호서식(항고사건결정서)으로 통일하고, 별지 제150호서식(항고사건기각결정서)은 삭제

◦ 사법경찰관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처리 근거 및 서식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을 경우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근거 및 관련서식 신설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
- 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 신청에 관한 법원, 검사의 기각 등의 경우 몰수·추징보전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 규정 제164조 제4항, 제5항 준용 규정 신설
-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서식 변경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신청·보완·수정·취소 등 요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추징보전명령 취소 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 추징보전부에 일부취소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식 수정

◦ 사건의 수리입력항목 중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변경(별표 2)
- '19. 8. 1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공포·시행에 따라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 기타 별지서식 정비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0. 3. 24. 공포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10. 1. 시행 예정)에 맞추어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가 되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별표 및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피해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6. ~ 7.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9. 26. 법무부령 제982호로 공포
2020. 10. 1. 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통해 관련 조치를 수행하게 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함(안 제2조 등)
◦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등)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라 필요한 인력 80명(6급 9명, 7급 9명, 8급 30명, 9급 32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장의 분장사무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교정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

나. 추진경과

2020. 10. 7. 법무부령 제98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체복무제도 시행 관련 복무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 3/4분기 소요정원 80명 반영
◦ 체류허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 조정

14.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나. 추진경과

2020. 9. 16.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9. 29. 법무부령 제983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임대인등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제공요청 서식 수정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 2020. 12. 10. 법무부령 제9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단기 체류자격으로 숙박하는 외국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여권 등의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공중보건상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등의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하여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등을 출국정지 대상자에 추가

16. 국적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귀화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추진경과

2020. 12. 22. 법무부령 제9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에 종합평가·면접심사 면제 여부, 건강정보 및 참고사항 항목 등을 추가하고, 「국적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각종 서식을 정비

1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6)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소속기관에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8명(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0명(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국내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8.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보호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법무부 법체험시설 업무의 운영지원”을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을 치료처우과장의 분장사무에서 소년보호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하부조직 중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별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법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를 법체험연수과로, 교육운영과를 비행예방교육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규정

나. 추진경과

2020. 12. 30. 법무부령 제99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규인력 평가 결과 반영(전자감독 및 소년수용자 관리 68명 제외, 체류외국인 관리 90명 연장)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 ‘전자감독’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서명칭 변경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고영석

2020년도에는 총 9회 (375회 ~ 383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 등 주요정책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민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75회	'20. 1. 13. ~ 1. 14. (2일간)	【본회의】 • 1차례 개의 • 통과법안('20. 1. 1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1차례 개회(전체회의)
제376회	'20. 2. 17. ~ 3. 17. (30일간)	【본회의】 • 총 11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0. 2. 18.) •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통합당, '20. 2. 19.) •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의원모임, '20. 2. 20.)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0. 3. 2.)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0. 3. 4.) • 통과법안('20. 3. 5.)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제377회	'20. 4. 16. ~ 5. 15.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0. 4. 20.) • 통과법안('20. 4.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0. 4. 29.)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1소위 3, 제2소위 2)
제378회	'20. 5. 20. ~ 5. 29. (10일간)	【본회의】 • 1차례 개의 • 통과법안('20. 5. 2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제379회	'20. 6. 5. ~ 7. 4. (30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0. 6. 29.)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0. 7. 3.)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 업무현황보고('20. 6. 18.) • 주요현안보고('20. 7. 27.)
제380회	'20. 7. 6. ~ 8. 4. (3일간)	【본회의】 • 총 8차례 개의 • 제21대 국회 개원식('20. 7. 16.)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0. 7. 20.)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0. 7. 21.)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0. 7. 22.)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0. 7. 24.) • 통과법안('20. 7. 30.)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81회	'20. 8. 18. ~ 8. 31. (14일간)	【법제사법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1, 예결심사소위 1)
제382회	'20. 9. 1. ~ 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5차례 개의 • 정기회 개회식('20. 9. 1.)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0. 9. 7.)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0. 9. 8.)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20. 9. 14.)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0. 9. 15.)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0. 9. 17.) • 통과법안('20. 9. 24.)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0. 10. 28.)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20. 11. 19.) • 통과법안('20. 11. 1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20. 12. 2.) • 통과법안('20. 12. 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27차례 개회(전체회의 15, 예결심사소위 2, 제1소위 8, 안건조정위 2) • 국정감사('20. 10. 7. ~ 10. 26.) – 법무부('20. 10. 12.), 대검찰청('20. 10. 22.), 종합감사('20. 10. 26.) 실시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83회	'20. 12. 10. ~ '21. 1. 8. (30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통과법안('20. 12. 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제1소위)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연내 수시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하여 법무부와 여당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20. 2. 14.	•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관련 논의	• **〈당 측〉** – 박주민, 이종걸, 이상민, 김상희, 김종민, 백혜련, 정춘숙, 이철희, 김민기, 박홍근 의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당정 협의	'20. 4. 5.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논의	• **〈당 측〉** – 백혜련, 김영주, 서영교, 유승희, 임종성, 허윤정, 송기헌, 박주민 의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
당정 협의	'20. 4. 23.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당 측〉** –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윤관석, 백혜련, 송기헌, 정춘숙, 이원국, 홍익표 의원 등 • **〈정부 측〉** –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청 차장 • **〈청 측〉** – 사회수석
당정 협의	'20. 7. 21.	• 임대차 3법 개정안 관련 논의	• **〈당 측〉**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백혜련 간사 등 법사위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
당정 협의	'20. 7. 30.	• 권력기관 개혁 후속 추진 과제 점검 및 이행방안 논의	• **〈당 측〉** –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 **〈청 측〉** –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
당정 협의	'20. 9. 3.	• 정기국회 대비 법제사법위원회 워크숍	• **〈당 측〉**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백혜련 간사 등 법사위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20. 11. 16.	•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논의	• 〈당 측〉 –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 〈정부 측〉 – 금융위원장, 법무부 차관 등
당정 협의	’20. 11. 26.	• 보호수용 대체입법안, 의무 이행소송 도입방안 논의	• 〈당 측〉 –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072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6,608
기획재정부	136	122	149	153	171	169	174	314	285	150
교육부	-	-	185	222	217	287	303	234	262	389
미래창조과학부	-	-	107	149	192	78	92	-	-	-
교육과학기술부	280	289	41	-	-	-	99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348	228	231
외교부	27	38	27	26	23	32	33	18	40	42
통일부	11	10	153	16	28	44	41	57	65	68
법무부	398	330	480	263	438	272	570	710	1,008	896
국방부	104	99	121	118	138	101	142	118	130	126
행정자치부	-	-	-	19	313	418	247	-	-	-
안전행정부	444	410	625	412	-	-	187	-	-	-
행정안전부	-	-	-	-	-	-	187	509	605	672
문화체육관광부	133	152	192	224	225	210	240	249	345	332
농림축산식품부	338	280	281	238	287	310	279	309	308	319
산업통상자원부	300	111	316	252	324	370	248	314	379	246
보건복지부	422	356	432	346	430	469	609	530	567	541
환경부	149	174	210	164	196	220	250	310	344	316
고용노동부	141	114	194	145	172	200	261	229	273	170
여성가족부	96	84	118	125	121	77	108	122	114	146
국토교통부	472	418	553	571	578	559	687	706	720	744
해양수산부	-	-	120	194	196	179	176	203	293	212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156	190	157
국민안전처	-	-	-	2	150	139	103	-	-	-
방송통신위원회	66	62	38	35	47	70	67	91	82	75
국무조정실	9	18	25	21	10	25	31	28	29	32
공정거래위원회	62	46	51	33	34	74	132	88	141	76
금융위원회	123	99	192	169	94	198	186	231	274	188
국민권익위원회	12	9	14	10	9	11	25	26	23	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	-	3
국가보훈처	49	46	64	55	60	66	86	81	72	108
인사혁신처	-	-	-	1	50	57	65	91	85	99

부처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법제처	8	14	15	10	5	8	11	12	9	18
식품의약품안전처	-	-	91	103	103	106	131	119	131	137
기타	292	459	302	382	200	340	456	338	320	65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	14	10	168	185	188	171	178	204	171
기획재정부	1	-	1	2	-	2	-	1	2	2
교육부	1	-	-	7	6	1	2		-	-
미래창조과학부	-	-	-	1	1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2	3	4
외교부	-	-	-	-	-	2	4	1	1	4
통일부	-	-	-	1	-	-	-	-	-	-
법무부	-	-	1	-	8	17	12	10	13	11
국방부	-	-	-	-	1	2	1	3	-	2
행정자치부	-	-	-	-	6	6	2	-	-	-
안전행정부	-	-	-	5	-	-	-	-	-	-
행정안전부	-	-	-	-	-	-	-	9	6	12
문화체육관광부	-	-	2	1	-	-	-	1	3	-
농림축산식품부	-	-	-	2	-	-	1	-	-	-
산업통상자원부	-	2	2	2	-	1	1	-	1	1
보건복지부	-	-	1	1	5	2	2	2	1	1
환경부	2	-	-	3	-	-	1	-	3	1
고용노동부	1	1	-	3	-	-	1	2	3	3
여성가족부	-	-	-	4	3	1	-	-	1	2
국토교통부	1	1	-	4	5	7	4	5	9	5
해양수산부	-	-	-	-	-	-	1	4	-	-
국민안전처	-	-	-	-	1	1	4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1	-	1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	-	-	1	1	-
금융위원회	-	-	-	1	1	1	1	3	1	-
국민권익위원회	-	-	-	-	-	3	-	-	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보훈처	-	-	-	-	-	4	-	-	-	-
인사혁신처	-	-	-	-	-	-	1	-	1	-
법제처	-	-	-	-	-	-	-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	-	-	-	3	-	-
기타	4	10	3	129	148	138	133	130	154	121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8	61	59	74	55	67	66	55	48	73
제 정	소 계	8	7	4	7	3	5	2	1	2	8
	법 률	-	2	1	1	-	3	-	-	-	0
	대통령령	3	3	1	4	2	1	2	1	1	5
	총리·부령	5	2	2	2	1	1	-	-	1	3
개 정	소 계	58	51	54	67	52	62	64	52	45	65
	법 률	11	10	13	22	7	18	15	5	5	15
	대통령령	21	24	14	23	19	20	20	18	21	27
	총리·부령	26	17	27	22	26	24	29	29	19	23
폐 지	법 령	2	3	1	-	-	-	-	2	1	-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간횟수	4	10	8	22	18	17	18	11	8	16

2. 국제법무활동

| 표 5-5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 수	43	38	40	56	28	14	9	14	16	13

| 표 5-6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 수	7	11	5	7	7	12	7	9	4	1

| 표 5-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횟 수	30	26	39	48	27	29	11	18	27	53
인 원	44	34	73	82	55	42	20	38	47	117

3. 변호사·공증

| 표 5-8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인원	12,607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개 업	10,976	12,532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비 개 업	1,631	2,002	2,305	2,754	3,107	3,469	3,833	4,263	4,551	4,802

| 표 5-9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임명공증인		42	48	59	66	73	77	75	78	81	83
법무법인	사무소	291	280	268	261	245	241	239	238	234	227
	구성원	1,322	1,211	1,183	1,170	1,029	1,000	981	946	918	882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소	46	36	31	29	27	25	23	20	20	19
	구성원	188	127	121	115	109	93	86	85	60	55
대 행 청		14	13	12	12	12	12	13	13	13	13

| 표 5-10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연 도 \ 구 분	사건처리건수
2011	4,802,467
2012	4,027,514
2013	4,030,468
2014	3,825,991
2015	3,758,294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4. 국가소송

| 표 5-11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0,086	10,887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10,116	10,549	10,987
	구 수	5,786	6,018	7,171	8,025	9,350	5,841	5,192	5,227	5,570	6,082
	신 수	4,300	4,869	4,720	5,387	5,524	4,549	4,790	4,889	4,979	4,905
처리	계	3,637	3,120	3,373	3,560	4,485	5,293	4,530	4,526	4,250	4,373
	승 소	1,440	1,360	1,477	1,623	1,882	1,822	1,746	1,806	1,587	1,660
	패 소	565	514	522	586	606	568	546	485	471	500
	기 타	1,632	1,246	1,374	1,351	1,997	2.903	2,238	2,235	2,192	2,213
미 제		6,449	7,767	8,518	9,852	10,389	5,097	5,452	5,590	6,299	6,614

| 표 5-1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1	10,086 (4,300)	3,637	1,440	565	1,632	6,449
2012	10,887 (4,869)	3,120	1,360	514	1,246	7,767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8,518
2014	13,412 (5,387)	3,560	1,623	586	1,351	9,852
2015	14,874 (5,524)	4,485	1,882	606	1,997	10,389
2016	10,390 (4,549)	5,293	1,822	568	2,903	5,097
2017	9,982 (4,790)	4,530	1,746	546	2,238	5,452
2018	10,116 (4,889)	4,526	1,806	485	2,235	5,590
2019	10,549 (4,979)	4,250	1,587	471	2,192	6,299
2020	10,987 (4,905)	4,373	1,660	500	2,213	6,614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3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0,074	10,875	11,879	13,398	14,860	10,377	9,966	10,096	10,536	10,975
국가원고	계	1,413	1,469	1,663	2,936	4,213	2,328	2,212	2,181	2,061	2,435
	부동산	316	346	351	265	314	343	419	376	405	461
	손해배상	24	26	26	30	26	17	15	14	9	6
	기 타	1,073	1,097	1,286	2,641	3,873	1,968	1,778	1,791	1,647	1,968
국가피고	계	8,661	9,406	10,216	10,462	10,647	8,049	7,754	7,915	8,475	8,540
	부동산	3,179	2,986	2,942	2,951	2,942	2,649	2,638	2,617	2,800	2,700
	손해배상	2,342	2,980	3,668	3,786	3,536	2,017	1,793	1,749	2,010	2,081
	기 타	3,140	3,440	3,606	3,725	4,169	3,383	3,323	3,549	3,665	3,760

| 표 5-14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3,207	3,753	4,231	7,113	5,731	6,220	6,983	8,134	8,974	9,519
	구 수	1,552	2,206	2,111	4,328	3,373	3,584	4,288	5,047	5,566	5,984
	신 수	1,655	1,547	2,120	2,785	2,358	2,636	2,695	3,087	3,408	3,535
처리	계	998	1,398	1,543	3,718	1,785	2,020	1,977	2,596	3,062	2,678
	종 결	805	1,220	1,318	1,234	1,394	1,512	1,336	1,762	2,314	1,907
	본안이송	87	77	95	2,325	222	255	355	348	255	240
	취 하	62	66	87	86	116	137	149	159	202	225
	각 하	10	17	14	30	15	17	29	36	77	55
	기 타	34	18	29	43	38	99	108	291	214	251
미 제		2,209	2,355	2,688	3,395	3,946	4,200	5,006	5,538	5,912	6,841

5. 행정소송

| 표 5-15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구 수	19,400	21,346	20,289	22,317	22,775	19,239	18,246	18,326	18,709	21,463
	신 수	15,447	15,508	16,155	15,865	16,107	17,560	18,723	18,804	19,063	18,610
처리	계	13,118	16,071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18,560	16,414	18,868
	승 소	6,635	7,867	6,371	7,132	6,290	9,392	10,250	10,064	8,991	10,478
	패 소	1,601	2,047	1,865	1,702	1,740	2,056	1,814	1,811	1,687	1,807
	취하등	4,882	6,157	4,855	5,758	5,255	7,216	6,736	6,685	5,736	6,583
미 제		21,729	20,783	23,353	23,590	25,597	18,135	18,169	18,570	21,358	21,205

| 표 5-16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1	34,847 (15,447)	13,118	6,635	1,601	4,882	21,729
2012	36,854 (15,508)	16,071	7,867	2,047	6,157	20,783
2013	36,444 (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2014	38,182 (15,865)	14,592	7,132	1,702	5,758	23,590
2015	38,882 (16,107)	13,285	6,290	1,740	5,255	25,597
2016	36,799 (17,560)	18,664	9,392	2,056	7,216	18,135
2017	36,969 (18,723)	18,800	10,250	1,814	6,736	18,169
2018	37,130 (18,804)	18,560	10,064	1,811	6,685	18,570
2019	37,772 (19,063)	16,414	8,991	1,687	5,736	21,358
2020	40,073 (18,610)	18,868	10,478	1,807	6,583	21,205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7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유형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조 세 관 계	4,698	4,810	5,644	6,849	7,379	6,089	5,246	4,849	5,412	5,206
공 무 원 신 분	1,611	1,623	1,681	1,582	1,645	1,515	1,611	1,635	1,799	1,999
국 토 도 시 계 획	3,625	3,473	3,129	3,141	2,846	2,642	2,477	2,632	2,619	2,702
영업허가취소·정지	2,828	3,190	3,534	3,934	3,389	2,283	2,414	2,424	2,163	1,786
자격·면허·등록·인가	3,116	2,754	2,678	2,810	2,231	1,889	2,062	2,802	2,779	3,255
기 타	18,969	21,004	19,778	19,866	21,392	22,381	23,159	22,788	23,000	25,125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8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2,983	3,011	4,517	3,976	4,149	4,738	4,558	6,064	5,860	7,371
	구 수	443	938	885	1,130	1,057	1,059	1,140	1,629	2,001	2,408
	신 수	2,540	2,073	3,632	2,846	3,092	3,679	3,418	4,435	3,859	4,963
처리	계	2,058	2,127	3,299	2,915	3,047	3,598	2,921	4,054	3,452	3,768
	인 용	736	1,063	1,767	1,177	1,057	1,154	801	1,129	895	1,109
	기 각	1,222	944	1,424	1,627	1,896	2,249	2,008	2,777	2,357	2,456
	기 타	100	120	108	111	94	195	112	148	200	203
미 제		925	884	1,218	1,061	1,102	1,140	1,637	2.010	2,408	3,603

| 표 5-19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1	2,983 (2,540)	2,058	736	1,222	100	925
2012	3,011 (2,073)	2,127	1,063	944	120	884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2018	6,064 (4,435)	4,054	1,129	2,777	148	2.010
2019	5,860 (3,859)	3,452	895	2,357	200	2,408
2020	7,371 (4,963)	3,768	1,109	2,456	203	3,603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20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77	190	167	168	174	196	175	185	204	150
	구 수	57	61	53	56	58	50	70	58	97	63
	신 수	120	129	114	112	116	146	105	127	107	87
처리	계	114	137	111	109	124	126	109	88	141	87
	인 용	93	116	91	84	110	112	101	78	119	74
	기 각	15	16	19	20	12	14	7	9	14	11
	기 타	6	5	1	5	2	0	1	1	8	2
미 제		63	53	56	59	50	70	66	97	63	63

| 표 5-2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1	177 (120)	114	93	15	6	63
2012	190 (129)	137	116	16	5	53
2013	167 (114)	111	91	19	1	56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0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2018	185 (127)	88	78	9	1	97
2019	204 (107)	141	119	14	8	63
2020	150 (87)	87	74	11	2	63

* 접수란 중 ( )는 신수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22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 급 총 액	배 상 결 정	판 결	소송비용확정액
2011	489 / 80,765	140 / 434	185 / 79,382	164 / 949
2012	659 / 133,869	120 / 398	198 / 127,483	341 / 5,988
2013	409 / 57,389	119 / 273	290 / 57,116	- / -
2014	745 / 203,013	85 / 180	385 / 198,872	275 / 3,961
2015	1,005 / 300,722	122 / 438	461 / 293,615	422 / 6,669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2020	763 / 72,781	94 / 210	258 / 62,530	411 / 10,041

8. 헌법재판 현황

| 표 5-23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1	계	2,226	1,428	68	29	7	5	27	283	168	-	115	1,077	798
	위헌법률	77	46	24	22	-	2	-	15	15	-	-	7	31
	권한쟁의	12	7	1	-	-	-	1	3	-	-	3	3	5
	헌법소원	2,137	1,375	43	7	7	3	26	265	153	-	112	1,067	762
2012	계	2,509	1,661	74	15	7	5	47	337	140	-	197	1,250	848
	위헌법률	53	21	9	9	-	-	-	7	7	-	-	5	32
	권한쟁의	9	3	-	-	-	-	-	2	-	-	2	1	6
	헌법소원	2,447	1,637	65	6	7	5	47	328	133	-	195	1,244	810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	2	43	357	133	-	224	1,138	700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연도	구분	접수(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3,349	2,447	168	57	-	59	52	379	108	-	271	1,900	902
	위헌법률	7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15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3,257	2,403	142	49	-	41	52	369	98	-	271	1,892	854
2019	계	3,632	2,519	49	8	-	7	34	348	142	-	206	2,122	1,113
	위헌법률	69	18	6	5	-	1	-	11	11	-	-	1	51
	권한쟁의	1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3,547	2,496	41	3	-	6	32	335	131	-	204	2,120	1,051
2020	계	4,354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71	20	11	7	-	4	-	8	8	-	-	1	51
	정당해산	-	-	-	-	-	-	-	-	-	-	-	-	-
	권한쟁의	16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4,267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9. 제9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표 5-24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2018	변호사시험	3,490	1,985	1,505
2019	변호사시험	3,617	2,038	1,579
2020	변호사시험	3,592	1,986	1,606

| 표 5-25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1	1,088	1,598	638	198	49	20

| 표 5-26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 율)	3,592	1,454	2,138

나. 합격자 현황

| 표 5-27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기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기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변호사시험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변호사시험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0.89
2020	변호사시험	3,316	1,768	53.31	1,809	972	54.98	1,507	796	45.02

| 표 5-28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율)	1,768	637	1,131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29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2,333,951	2,401,107	2,474,033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구수			65,803	74,547	84,196	83,944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신수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처리	계			2,259,500	2,316,969	2,389,660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기소	소계		917,335	902,552	910,158	870,320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구공판		182,436	196,484	182,322	191,080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구약식		734,899	706,068	727,836	679,240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불기소	소계		1,203,587	1,257,938	1,297,033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무혐의		280,482	304,120	315,513	334,419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기소유예		359,305	357,854	338,628	338,350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기소중지		123,232	147,858	185,052	208,340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참고인중지		17,740	17,710	17,582	15,694	12,542	10,008	8,411	7,150	6,836	7,153
		각하		67,423	83,974	87,987	95,974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기타		355,405	346,422	352,271	352,002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이송	소년보호		33,233	37,253	29,992	25,226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가정보호		3,039	3,753	6,414	9,449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타관		102,087	115,214	145,830	124,378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성매매보호		219	259	233	218	387	1,338	956	465	249	212
		아동보호		-	-	-	-	-	-	2,564	2,757	3,873	4,678
미제				74,451	84,138	84,373	89,154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나. 청별 사건

| 표 5-30 |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서울중앙	190,118	184,574	183,105	175,052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서울동부	75,844	77,063	78,169	76,497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서울남부	103,816	103,313	100,572	99,170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서울북부	87,418	80,196	86,491	90,907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서울서부	65,026	64,295	69,321	68,703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의정부	77,549	82,393	87,021	87,175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고양	49,437	52,782	56,961	59,494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인천	123,444	133,871	139,475	141,832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부천	49,460	52,915	53,972	55,792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수원	106,624	114,135	119,807	123,235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성남	53,956	56,576	60,269	60,984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여주	17,497	17,600	19,137	19,216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평택	30,922	30,888	31,973	34,926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안산	68,829	67,886	70,573	69,766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안양	38,528	40,836	41,395	40,557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춘천	19,264	19,895	22,126	20,227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강릉	17,384	17,794	17,736	18,166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원주	18,604	20,927	19,976	18,948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속초	6,778	7,308	7,518	7,157	7,472	7,362	7,423	6,798	7,132	6,670
영월	8,289	9,010	8,299	7,790	8,403	8,745	7,315	6,916	7,488	6,740
대전	62,516	64,623	67,572	68,139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홍성	13,074	12,971	13,773	13,732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공주	5,222	5,456	5,772	5,878	5,788	5,806	5,473	5,994	5,926	5,920
논산	7,836	7,971	8,728	8,193	8,707	8,193	8,146	7,770	7,702	7,895
서산	14,443	16,433	17,688	17,597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천안	34,386	36,999	38,163	43,292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청주	36,870	39,015	40,919	41,656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충주	13,100	14,128	13,489	13,769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제천	7,466	6,886	7,691	7,158	7,086	6,787	6,390	5,986	5,903	5,649

검찰청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영동	3,220	3,414	3,316	3,302	3,623	3,259	3,020	2,673	3,323	3,249
대구	100,006	101,075	94,367	95,746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안동	12,044	13,404	12,745	12,985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경주	12,201	13,256	14,377	12,774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포항	22,593	23,231	25,424	22,382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김천	24,177	25,732	27,104	25,438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상주	7,686	7,634	7,724	7,276	7,496	7,277	7,139	7,576	7,807	7,417
의성	3,897	3,796	4,056	3,687	3,846	4,415	3,944	4,058	4,492	4,065
영덕	3,307	3,726	3,913	3,959	4,239	4,244	4,376	4,313	4,062	4,319
대구서부	47,390	47,703	47,116	48,041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부산	122,481	133,132	135,847	138,579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부산동부	40,509	43,464	44,037	42,094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부산서부	-	-	-	-	-	-	37,240	42,841	45,057	42,435
울산	58,498	60,683	67,016	64,205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창원	71,063	48,574	54,548	49,294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진주	24,216	22,829	22,730	22,036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통영	21,727	22,008	22,604	22,667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밀양	6,583	6,782	6,341	6,753	7,009	6,918	6,836	6,478	8,029	6,975
거창	4,915	5,091	5,046	4,975	5,422	5,610	4,901	4,432	4,811	4,560
마산	9,394	19,111	19,963	20,829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광주	90,173	94,790	97,246	94,977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목포	23,022	23,895	25,656	24,568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장흥	3,529	3,187	3,233	3,120	3,264	3,502	3,264	3,179	3,245	3,154
순천	39,803	40,558	39,768	38,272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해남	6,884	6,879	7,263	6,619	7,106	7,081	6,992	6,490	6,483	6,218
전주	35,704	40,733	37,598	36,633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군산	28,424	30,632	27,495	26,272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정읍	8,868	8,632	8,624	8,389	8,902	8,865	9,267	8,242	8,646	8,227
남원	4,832	5,077	4,643	4,566	5,053	4,737	4,893	4,027	4,261	4,112
제주	27,302	28,793	32,346	34,134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31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664,971	724,116	758,785	743,223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구 수			41,621	47,077	58,920	58,821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신 수			623,350	677,039	699,865	684,402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처리	계			618,034	665,687	699,795	680,782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기소	소 계		140,388	149,723	158,071	152,955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구공판		36,428	38,088	43,723	46,110	43,211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구약식		103,960	111,635	114,348	106,845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불기소	소 계		418,441	449,344	461,758	465,207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무혐의		161,287	167,592	167,470	169,636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기소유예		40,195	44,070	41,160	40,706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기소중지		64,215	73,812	84,669	84,952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기 타		152,744	163,870	168,459	169,913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이송	소년보호		2,232	2,199	1,573	1,441	1,241	1,614	2,040	2,354	2,705	2,706
		가정보호		503	549	626	867	973	909	895	995	839	712
		타 관		56,470	63,872	77,767	60,309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성매매보호		–	–	–	3	1	2	3	1	–	5
		아동보호		–	–	–	–	–	–	376	379	502	578
미 제				46,937	58,429	58,990	62,441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32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23,426	26,034	33,626	25,824	23,301	19,397	11,352	8,392	7,605	5,343
	구 수		58	81	155	160	99	76	80	78	114	135
	신 수		23,368	25,953	33,471	25,664	23,202	19,321	11,272	8,314	7,491	5,208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처리	계		23,345	25,888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8,274	7,516	5,221
	기소	소계	13,781	15,764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5,201	4,469	2,676
		구공판	1,675	1,627	1,834	1,899	1,786	1,623	1,293	963	801	816
		구약식	12,106	14,137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4,238	3,668	1,860
	불기소	소계	8,789	9,129	11,973	8,682	6,443	5,091	3,348	2,785	2,783	2,275
		무혐의	383	367	405	393	432	407	242	277	251	205
		기소유예	1,096	1,309	1,493	1,187	1,207	1,026	969	1,190	1,343	464
		기소중지	6,596	6,968	6,823	5,870	3,903	2,591	1,240	828	752	1,189
		기타	714	485	3,252	1,232	901	1,067	897	490	437	417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775	995	1,485	443	427	375	244	288	264	270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81	146	165	95	72	79	80	118	89	122

| 표 5-33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16,642	129,450	124,139	125,015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구수		6,117	9,117	11,246	10,474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신수		110,525	120,333	112,893	114,541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처리	계		108,529	119,048	114,372	114,950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기소	소계	28,269	27,697	26,896	26,097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구공판	9,090	8,277	8,479	9,146	9,208	9,114	8,897	8,667	8,492	8,519
		구약식	19,179	19,420	18,417	16,951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불기소	소계	68,975	77,534	72,154	76,958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무혐의	15,370	16,788	17,072	16,885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기소유예	13,808	16,240	15,578	17,135	19,042	12,547	11,420	9,204	8,134	8,555
		기소중지	6,531	7,787	7,834	8,701	8,201	6,835	6,570	7,270	8,300	7,638
		기타	33,266	36,719	31,670	34,237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이송	소년보호	808	759	833	680	700	664	534	454	488	616
		가정보호	-		-	-	-	-	1	-	-	-
		타관	10,477	13,058	14,489	11,215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성매매	-		-	-	-	-	-	-	-	-
미제			8,113	10,402	9,767	10,065	9,064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 표 5-34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408,396	427,029	407,284	404,955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구 수			8,408	8,811	8,963	6,775	6,863	6,754	7,481	8,272	9,469	10,762
	신 수			399,988	418,218	398,321	398,180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처리	계			400,235	418,265	399,869	397,142	424,815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기소	소 계		123,839	125,433	114,961	105,712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구공판		19,726	22,496	25,799	30,006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구약식		104,113	102,937	89,162	75,706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불기소	소 계		257,627	269,504	263,823	269,267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무혐의		32,836	35,343	34,033	33,672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기소유예		83,729	83,948	70,644	61,757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기소중지		5,528	10,401	20,157	33,711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기 타		135,534	139,812	138,989	140,127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이송	소년보호		10,150	12,473	7,593	6,476	6,072	6,329	7,291	6,914	6,807	5,930
		가정보호		2,897	3,605	6,170	9,069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타 관		5,722	7,250	7,322	6,618	7,638	8,832	9,471	8,756	9,385	8,780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	-	256	251	347	313
미 제				8,161	8,764	7,415	7,813	6,802	7,272	8,060	9,115	11,881	15,999

| 표 5-35 |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5,079	19,798	18,855	18,125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구 수			653	1,010	993	926	1,196	838	1,299	1,213	1,277	1,551
	신 수			14,426	18,788	17,862	17,199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처리	계			14,433	18,789	17,391	16,826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기소	소 계		4,745	7,178	6,681	6,450	5,912	5,260	4,671	4,787	4,665	2,173
		구공판		4,739	6,926	6,403	5,796	5,158	4,810	4,382	4,514	4,504	2,135
		구약식		6	252	278	654	754	450	289	273	161	38
	불기소	소 계		8,041	9,199	8,714	8,466	9,099	7,694	10,335	9,630	8,892	5,264
		무혐의		2,359	3,347	3,482	3,775	3,869	3,866	3,964	4,094	4,362	1,073
		기소유예		720	1,006	936	1,096	1,196	978	785	682	667	376
		기소중지		532	819	962	1,058	1,042	1,234	1,246	1,116	1,093	143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기 타	4,430	4,027	3,334	2,537	2,992	1,616	4,340	3,738	2,770	3,672
이송	소년보호	574	1,145	673	593	379	384	347	284	312	167
이송	가정보호	5	22	24	25	49	29	26	33	19	5
이송	타 관	1,068	1,245	1,299	1,292	1,324	1,359	1,066	1,224	1,331	451
이송	성 매 매	-	-	-	-	-	-	-	-	-	-
이송	아동보호	-	-	-	-	-	-	4	7	5	1
미 제		646	1,009	1,464	1,299	892	1,315	1,264	1,306	2,625	743

| 표 5-36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629,998	650,966	654,364	644,397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접수	구 수	1,281	2,689	1,960	1,870	2,528	2,456	2,941	3,317	3,234	3,630
접수	신 수	628,717	648,277	652,404	642,527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처리	계	627,311	648,985	652,063	641,732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처리	기소 소 계	407,817	394,315	388,961	361,137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처리	기소 구 공 판	69,436	82,244	51,890	41,637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처리	기소 구 약 식	338,381	312,071	337,071	319,500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처리	불기소 소 계	208,819	243,731	253,597	270,987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처리	불기소 무 혐 의	19,386	44,250	53,248	59,968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처리	불기소 기소유예	42,239	54,666	55,688	58,600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처리	불기소 기소중지	8,511	9,992	11,857	14,304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처리	불기소 기 타	138,683	134,823	132,804	138,115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처리	이송 소년보호	7,130	7,258	5,813	5,042	4,731	4,901	5,073	4,231	4,535	5,496
처리	이송 가정보호	1	3	-	-	1	1	1	-	-	1
처리	이송 타 관	3,544	3,678	3,692	4,566	5,165	7,743	7,638	6,935	6,572	6,397
처리	이송 성 매 매	-	-	-	-	-	-	-	-	-	-
미 제		2,687	1,981	2,301	2,665	2,386	2,801	3,219	3,170	3,545	8,053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37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05,225	120,191	102,454	91,100	91,723	88,226	85,178	76,642	76,871	74,422
	구 수			1,117	1,069	1,563	1,018	921	823	1,062	1,276	1,690	1,817
	신 수			104,108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처리	계			104,201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기소	소 계		7,262	8,475	8,086	6,764	6,618	6,238	5,648	5,945	6,155	6,847
		구공판		4,150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구약식		3,112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불기소	소 계		59,317	66,766	55,541	50,897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무혐의		4,865	6,174	5,702	5,260	6,201	5,964	5,532	5,280	5,522	5,395
		기소유예		41,720	44,349	35,132	31,036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기소중지		1,816	2,537	5,349	6,490	5,322	6,707	6,566	5,031	4,889	3,081
		기 타		10,916	13,706	9,358	8,111	9,192	8,489	8,652	7,325	6,931	5,903
	이송	소년보호		33,186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가정보호		14	19	36	49	156	180	183	169	212	233
		아동보호		0	0	0	0	0	0	0	9	6	9
		타 관		4,412	6,257	7,820	7,253	8,023	7,972	7,067	7,666	7,926	9,054
		성매매		10	4	1	4	8	10	27	10	6	1
미 제				1,024	1,477	1,033	942	833	949	1,152	1,492	1,677	2,086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38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1,142	2,194	5,536	6,047	4,947	2,972	2,264	1,061	1,360	3,082
	구 수	35	26	137	74	76	35	17	27	39	35
	신 수	1,107	2,168	5,399	5,973	4,871	2,937	2,247	1,034	1,321	3,047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처리	계			1,118	2,077	5,460	5,970	4,912	2,957	2,242	1,024	1,329	2,954
	기소	소계		69	152	215	363	274	244	148	40	27	147
		구공판		13	69	147	177	95	85	86	16	9	84
		구약식		56	83	68	186	179	159	62	24	18	63
	불기소	소계		736	1,307	3,435	3,645	3,046	1,809	1,417	534	676	1,358
		무혐의		45	142	344	415	463	247	163	55	95	257
		기소유예		580	841	2,431	2,353	1,829	1,007	863	288	343	716
		기소중지		8	71	125	179	245	211	210	90	103	138
		기타		103	253	535	698	509	344	181	101	135	247
	이송	소년보호		279	529	1,473	1,520	1,089	670	495	336	448	1,121
		가정보호		-	-	2	2	4	4	2	3	5	10
		타관		34	89	335	439	496	229	180	111	173	318
		성매매		-	-	-	1	3	1	0	0	0	0
미제				24	117	76	77	35	15	22	37	31	128

| 표 5-3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6,669	6,636	9,182	7,778	7,942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구수			870	720	822	884	1,085	960	1,233	1,634	1,677	2,057
	신수			5,799	5,916	8,360	6,894	6,857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처리	계			6,140	6,148	8,288	7,044	7,314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기소	소계		528	423	332	415	293	303	345	190	180	128
		구공판		392	375	280	354	256	274	301	147	148	111
		구약식		136	48	52	61	37	29	44	43	32	17
	불기소	소계		5,310	5,376	7,524	6,278	6,755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무혐의		2,128	2,349	2,561	2,560	2,443	2,481	2,894	2,920	2,988	3,102
		기소유예		394	165	133	121	99	104	171	95	80	60
		기소중지		12	24	58	91	71	45	79	74	65	78
		기타		2,776	2,838	4,772	3,506	4,142	5,201	8,013	13,138	13,896	14,970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302	349	432	351	266	419	539	666	488	532
		성매매		-	-	-	-	-	-	-	-	-	-
미제				529	488	894	734	628	927	1,425	1,375	1,786	2,752

| 표 5-40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37,143	33,121	35,281	38,674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구 수			690	757	821	775	1,283	1,049	1,257	1,145	1,486	1,785
	신 수			36,453	32,364	34,460	37,899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처리	계			36,436	32,365	34,561	37,615	47,280	53,001	45,867	43,671	48,866	48,071
	기소	소 계		13,999	12,584	13,965	13,863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구공판		2,160	2,208	2,451	2,894	3,979	3,985	3,974	4,162	4,927	5,221
		구약식		11,839	10,376	11,514	10,969	12,556	14,347	10,970	9,627	9,884	9,700
	불기소	소 계		20,895	18,441	19,093	22,100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무혐의		3,003	3,040	3,410	4,138	5,981	6,832	5,840	5,175	5,649	5,930
		기소유예		10,035	7,950	7,227	8,308	10,246	11,788	9,960	9,130	10,599	9,169
		기소중지		3,163	3,026	3,405	4,191	5,642	5,863	5,325	5,385	5,851	6,204
		기 타		4,694	4,425	5,051	5,463	6,508	7,126	7,048	7,407	8,075	7,854
	이송	소년보호		25	29	38	31	45	48	57	61	86	164
		가정보호		41	39	96	145	314	350	303	365	480	388
		타 관		1,471	1,266	1,366	1,468	2,004	2,649	2,386	2,320	3,312	3,439
		성매매		5	6	3	8	5	13	4	6	3	2
미 제				707	756	720	1,059	997	1,199	1,061	1,397	1,940	1,322

| 표 5-4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42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1	계	44,125	5,562	8,970	28,814	-	28,831	28,134	28,016	118	313	384	40	27	90	227
	검사	6,944	-	1,693	4,505	-	4,413	4,373	4,362	11	3	37	11	8	3	15
	사경	37,181	5,562	7,277	24,309	-	24,418	23,761	23,654	107	310	347	29	19	87	212
'12	계	41,270	6,202	7,195	27,327	-	27,948	27,429	27,333	96	258	261	38	31	87	105
	검사	6,873	-	1,711	4,618	-	4,421	4,398	4,381	17	1	22	4	14	1	3
	사경	34,397	6,202	5,484	22,709	-	23,527	23,031	22,952	79	257	239	34	17	86	102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298	28,040	27,953	87	118	140	33	42	65	82
	검사	7,327	-	1,769	5,075	-	5,476	5,440	5,424	16	-	36	1	32	3	5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22	22,600	22,529	71	118	104	32	10	62	77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0	36	0	30	3	3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0	17	1	14	1	1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4	2	88	4	8	30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0	0	10	0	5	1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4	2	78	4	3	29

3. 구속적부심사

| 표 5-43 |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구 수	-	-	-	-	-	-	-	-	-	-
	신 수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처리	계	2,293	2,052	1,717	2,127	2,117	2,353	2,125	1,993	1,929	1,812
	석 방	609	439	304	441	344	355	301	240	197	118
	기 각	1,652	1,573	1,379	1,656	1,748	1,972	1,795	1,730	1,691	1,666
	취 하	32	40	34	30	25	26	29	23	41	28
심사중		-	-	-	-	-	-	-	1	-	1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44 | 항 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39,890	24,365	48,642	51,995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구 수	3,419	1,804	3,447	3,327	4,386	4,505	4,825	5,435	7,936	7,651
	신 수	36,471	22,561	45,195	48,668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처리	계	36,554	22,574	45,312	47,602	50,632	48,341	51,886	57,524	72,539	72,879
	기소명령	98	292	176	201	121	117	96	50	60	28
	재기수사명령	2,671	1,795	3,060	3,606	3,436	3,067	3,646	4,402	4,695	4,706
	주문변경명령	96	118	103	114	90	255	240	140	135	44
	항고기각	30,284	19,178	37,736	39,618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각 하	3,405	1,191	4,237	4,063	4,001	4,597	5,648	9,304	15,198	10,521
미 제		3,336	1,791	3,330	4,393	4,508	4,827	5,440	7,932	7,656	7,748

| 표 5-45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수	계	4,867	2,244	2,651	2,936	3,110	2,669	3,754	4,300	7,312	6,447
	구수	1,062	602	1,110	919	461	348	465	523	908	1,479
	신수	3,805	1,642	1,541	2,017	2,649	2,321	3,289	3,777	6,404	4,968
처리	계	3,184	1,737	1,732	2,476	2,762	2,204	3,231	3,392	5,833	5,263
	기소명령	-	-	-	-	-	-	-	-	-	-
	재기수사명령	161	122	72	52	72	59	61	56	104	142
	주문변경명령	-	-	-	-	1	-	-	-	-	-
	항고기각	703	307	928	1,501	1,722	1,655	2,170	2,247	3,717	4,550
	각하	2,320	1,308	732	923	967	490	1,000	1,089	2,012	571
미제		1,683	507	919	460	348	465	523	908	1,479	1,184

| 표 5-46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중		7,168	2,652	14,688	16,037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접수	계	14,129	7,740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29,743
	공소제기명령	-	-	-	-	-	-	-	-	-	-
	고법송부	14,129	7,739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신청취소	-	1	-	-	-	-	-	3	2	1
처리	계	12,048	7,080	14,419	18,007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신청기각	11,810	6,911	14,231	17,738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공소제기결정	133	105	118	150	160	86	171	106	97	161
	신청취소	105	64	70	119	117	127	204	172	187	160

5. 형의 집행

| 표 5-47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 '07	2008	'09 ~ '20
집행인원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2	5	2	-	4	-	6	-

| 표 5-48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 분 금 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1	31,073,627,198	1,361,572,755	3,360,866,184	229,632,610	4,952,071,549	26,121,555,647
2012	30,812,230,452	1,411,087,487	2,937,264,777	302,088,236	4,650,440,500	26,161,789,951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0,582,716	238,671,053	4,218,101,678	26,037,347,344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49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91. 12. 24.	-	1	-	-	-	1	-	
'92. 12. 24.	-	9	-	1	-	12	2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08. 1. 1.	-	8	-	14	-	18	35	
'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	165	
'13. 1. 31.	-	16	-	3	-	18	18	
'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 8. 15.	-	858 (6)		261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50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4,080,000	7,972,000	11,000,000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보상인원	15,116	39,519	29,015	34,363	14,546	8,713	7,374	5,073	4,257	4,380
지급금액	22,565,518	53,178,959	57,671,711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51 |

(단위 : 천원)

구 분 \ 종 류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120,000	180,388	300,388
2019	89,800 (27)	180,388 (1,648)	270,188
2020	30,100 (7)	45,480 (247)	75,580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52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	–	3	–	1	–	–	–	–	1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53 |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2020	2	1	-	-	1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표 5-54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보호감호	–	–	–	–	–	–	–	–	–	–	–
치료감호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 표 5-55 | 죄명별 청구인원

연도 / 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184	–	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7	–	1	–	7	–	5	–	1	–	–	–	1	–	–	–	–	–	1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76	–	36	–	42	–	36	–	27	–	18	–	1	–	–	–	–	–	–	–	–
절도	–	9	–	30	–	14	–	7	–	11	–	5	–	10	–	8	–	2	–	16	–	2
강도	–	6	–	8	–	4	–	5	–	4	–	2	–	2	–	2	–	–	–	3	–	–
살인	–	47	–	10	–	27	–	40	–	22	–	29	–	17	–	9	–	9	–	14	–	20
강간	–	42	–	12	–	16	–	13	–	6	–	4	–	4	–	1	–	2	–	2	–	–
사기	–	5	–	40	–	10	–	10	–	4	–	3	–	0	–	2	–	–	–	5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1	–	–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6	–	11	–	16	–	14	–	16	–	15	–	16	–	12	–	8	–	39	–	13
방화·실화	–	17	–	23	–	10	–	14	–	11	–	11	–	6	–	14	–	7	–	12	–	3
상해(폭행)치사	–	6	–	2	–	–	–	–	–	2	–	3	–	1	–	–	–	2	–	2	–	–
무고	–	–	–	2	–	–	–	–	–	–	–	–	–	–	–	–	–	–	–	–	–	–
기타	–	90	–	115	–	98	–	110	–	52	–	65	–	60	–	51	–	47	–	90	–	22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56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강도	43	43	33	32	32	18	8	5	12	13
절도	18	23	23	19	16	10	3	3	9	9
폭력	5	4	4	2	2	0	-	1	2	-
성폭력	53	64	59	48	47	32	20	8	8	8
기타	1	1	-	3	3	2	-	-	-	-

| 표 5-57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초범	10	8	7	6	7	3	3	-	1	3
2~3범	27	32	28	22	18	11	5	4	7	3
4~5범	41	47	39	31	32	20	10	4	8	10
6~7범	30	34	33	31	29	20	7	6	8	3
8~9범	7	8	7	8	7	4	3	2	5	8
10범 이상	5	6	5	6	7	4	3	1	2	3

| 표 5-58 | 동기별 수용인원

동기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108	120	105	101	98	62	31	17	31	30
원한·분노	-	-	-	-	-	-	-	-	-	-
취중	1	2	4	3	2	-	-	-	-	-
우연	-	-	-	-	-	-	-	-	-	-
기타	11	13	10	-	-	-	-	-	-	-

| 표 5-59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무 학	2	2	9	15	11	14	-	-	3	2
초 졸	27	34	40	31	36	14	7	8	11	6
중 졸	42	45	21	19	17	12	11	2	8	15
고 졸	47	52	47	38	35	22	13	7	9	7
대 졸	2	2	2	1	1	-	-	-	-	-

| 표 5-60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노 동	38	45	22	29	30	12	1	3	5	3
종 업 원	42	53	32	16	14	6	1	1	2	1
농 업	3	3	1	-	1	-	-	-	-	-
상 업	29	27	13	10	9	8	3	1	2	2
기 타	8	7	51	49	46	36	26	12	22	24

| 표 5-6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1년 미만	25	17	10	5	4	7	3	3	2	-
1년 이상 ~ 2년 미만	24	28	20	13	11	7	4	7	5	3
2년 이상 ~ 3년 미만	22	30	30	23	12	10	7	1	4	3
3년 이상 ~ 4년 미만	20	18	27	27	24	22	7	1	2	6
4년 이상	29	42	32	36	49	16	10	5	18	18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62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살인	297	297	318	334	340	372	343	338	328	336	321
상해(폭행)치사	37	33	35	37	37	36	34	38	30	30	28
폭력	127	149	163	180	195	161	137	156	149	140	171
절도	80	70	66	64	58	68	60	59	58	62	58
방화	54	62	62	63	71	80	75	80	76	74	64
강도	53	50	40	45	54	57	52	48	48	44	44
성폭력	131	170	209	247	263	279	272	242	208	184	184
기타	108	117	128	152	131	127	120	135	141	142	146

| 표 5-63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초범	566	596	664	721	759	769	728	721	671	657	663
2범	93	95	112	130	121	132	133	129	126	132	135
3범	46	58	63	63	70	77	61	65	57	60	61
4범	45	41	38	44	42	40	45	35	38	37	35
5범 이상	137	158	144	164	157	162	126	146	146	126	122

| 표 5-64 | 병명별 수용인원

병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조현병	355	382	450	480	509	533	507	519	528	543	575
정신지체	100	82	86	89	104	102	97	93	84	77	84
조울증	64	42	54	57	72	81	85	84	71	76	79
성격(인격)장애	52	33	38	44	38	35	27	27	23	13	10
간질	25	25	28	26	20	14	12	10	10	9	10
약물중독	68	50	71	85	176	175	130	35	46	35	19
기타	223	334	294	341	230	240	235	328	276	259	239

| 표 5-65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무 학	42	55	59	42	41	48	44	73	70	54	53
초 졸	130	131	129	138	143	141	139	189	163	153	153
중 졸	194	212	202	222	230	227	202	186	173	156	161
고 졸	377	389	444	497	494	512	475	478	475	499	378
대 졸	144	161	187	223	241	252	233	170	157	150	271

| 표 5-66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노 동	81	83	89	103	104	102	85	94	93	81	89
종 업 원	33	26	35	43	94	67	53	46	40	30	33
농 업	37	33	32	29	28	28	27	27	31	28	25
상 업	9	7	11	10	41	7	40	22	17	4	3
무 직	589	629	669	732	759	745	695	693	658	664	691
기 타	138	170	185	205	123	231	193	214	199	205	175

| 표 5-67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1년 미만	313	320	293	434	548	279	283	220	195	210	193
1년 이상~2년 미만	198	195	225	188	126	199	181	230	167	136	153
2년 이상~3년 미만	107	129	135	126	115	173	133	156	178	123	112
3년 이상~4년 미만	81	81	104	110	99	126	115	103	116	144	103
4년 이상	188	223	264	264	261	403	381	387	382	399	455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표 5-68 | 교육훈련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	11	17	14	7	7	-	2	-	-
학과교육	소 계	-	2	4	12	7	6	-	2	-	-
	초 등 반	-	-	-	-	-	-	-	-	-	-
	중 등 반	-	-	-	-	-	-	-	-	-	-
	고 등 반	-	1	-	2	-	-	-	-	-	-
	학사고시반	-	1	4	10	7	6	-	2	-	-
직업훈련	소 계	11	9	13	2	-	1	-	-	-	-
	목 공	-	-	-	-	-	-	-	-	-	-
	미 (도) 장	-	-	-	-	-	-	-	-	-	-
	조 적	-	-	-	-	-	-	-	-	-	-
	타 일	-	-	-	-	-	-	-	-	-	-
	배 관	-	-	-	-	-	-	-	-	-	-
	전 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	12	-	-	-	-	-	-	-
	이·미 용	-	-	-	-	-	-	-	-	-	-
	원 예	-	-	-	-	-	-	-	-	-	-
	양 재	-	-	-	-	-	-	-	-	-	-
	정 비	-	-	1	1	-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 타	11	9	-	1	-	1	-	-	-	-

| 표 5-69 | 기능자격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	9	13	2	-	1	-	1	-	-
천안교도소	소 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	-	-	1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계	11	9	13	2	-	1	-	-	-	-
	1·2기능사	11	9	13	2	-	1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70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9	25	38	33	39	59	53	31	22	34
가출소	19	17	37	33	23	53	43	23	11	15
가출소취소	7	8	1	-	16	6	10	8	11	19
집행면제	13	-	-	-	-	-	-	-	-	-

| 표 5-71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95	265	268	330	354	456	320	326	269	243
종료	-	-	2	1	4	2	3	-	-	-
가종료	275	255	247	275	266	394	226	246	208	186
가종료취소	20	10	19	54	84	60	91	80	61	57

바.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72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9	15	37	33	23	53	43	26	11	15
3년 미만	3	1	5	-	-	3	1	8	6	3
3년이상 ~ 4년 미만	8	4	6	5	5	6	6	6	-	3
4년이상 ~ 5년 미만	2	4	3	8	5	12	23	6	2	2
5년 이상	6	6	23	20	13	32	13	6	3	7

| 표 5-7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9	15	37	33	23	53	43	26	11	15
절도	4	3	7	9	9	10	12	3	2	5
강도	8	7	13	9	5	20	11	10	4	8
폭력행위등	2	3	3	2	-	4	1	-	1	-
성폭력	5	2	14	13	9	19	17	13	4	2
기타	-	-	-	-	-	-	2	-	-	-

| 표 5-74 | 전과별 가출소 인원

전과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9	15	37	33	23	53	43	26	11	15
초범	-	3	2	2	-	4	2	-	-	1
2~3범	2	3	6	10	6	9	8	-	4	2
4~5범	7	3	14	11	5	14	13	6	1	6
6~7범	6	3	11	8	7	17	14	10	5	3
8~9범	4	1	1	1	4	5	3	4	-	2
10범 이상	-	2	3	1	1	4	3	6	1	1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75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1년 미만	3	60	-	55	-	48	-	47	1	65	2	59	1	68	-	11	-	40	-	55	-	53
1년 이상 2년 미만	-	108	-	126	-	107	1	94	-	94	2	72	-	80	2	51	-	39	-	30	-	11
2년 이상 3년 미만	-	40	-	39	-	47	1	43	-	36	-	41	-	62	1	26	-	41	-	33	-	19
3년 이상	-	52	-	55	-	53	-	63	-	80	-	94	1	183	-	138	-	132	-	117	-	105

| 표 5-76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살인	1	19	-	23	-	33	-	33	-	42	-	27	-	77	-	48	-	35	-	23	-	48
상해(폭행)치사	1	7	-	3	-	2	-	3	-	5	-	6	-	10	-	2	-	8	-	3	-	4
폭력행위 등	1	28	-	28	-	39	-	48	-	39	2	81	-	78	2	26	-	38	-	45	-	17
강간	-	5	-	3	-	7	1	9	-	31	1	16	1	50	-	56	-	54	-	50	-	23
강도	-	16	-	12	-	21	-	9	-	6	-	13	1	17	-	12	-	7	-	9	-	6
절도	-	27	-	38	-	26	-	23	-	24	1	13	-	26	-	16	-	19	-	17	-	15
방화, 실화	-	19	-	15	-	18	1	17	-	10	-	10	-	32	-	11	-	19	-	16	-	17
기타	-	139	-	153	-	109	-	105	1	118	-	100	-	103	1	55	-	72	-	72	-	58

| 표 5-77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초 범	1	122	-	120	-	90	-	102	-	114	1	119	-	209	-	124	-	131	-	116	-	87
2 범	1	30	-	33	-	28	1	29	1	37	2	33	1	43	3	25	-	29	-	25	-	26
3 범	1	10	-	14	-	14	-	16	-	15	-	17	1	31	-	13	-	20	-	17	-	13
4 범	-	14	-	16	-	16	-	14	-	14	1	9	-	10	-	15	-	12	-	9	-	14
5범 이상	-	84	-	92	-	107	1	86	-	95	-	88	-	100	-	49	-	60	-	68	-	48

| 표 5-78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조현병	3	42	-	52	-	66	-	71	-	65	2	83	1	139	2	80	-	84	-	63	-	64
정신지체	-	44	-	25	-	17	1	17	-	11	-	16	-	27	-	19	-	16	-	16	-	17
조울증	-	16	-	29	-	13	-	14	-	11	-	15	-	24	-	14	-	23	-	16	-	10
성격(인격)장애	-	27	-	22	-	8	-	8	-	8	-	9	1	8	1	1	-	5	-	8	-	5
간질	-	11	-	3	-	3	-	4	-	7	-	7	-	4	-	2	-	0	-	1	-	1
약물중독	-	81	-	82	-	76	1	107	1	143	-	105	-	138	-	37	-	35	-	41	-	41
기타	-	39	-	62	-	72	-	26	-	30	2	31	-	53	-	73	-	89	-	90	-	50

2.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표 5-79 |

(2020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계	2,620	720	349	335	562	218
가 석 방	46	5	3	12	3	22
임 시 퇴 원	1,774	510	187	199	441	93
기 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800	205	159	124	118	103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0 |

(2020년)

대상 \ 구분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신 수		
계	227,020	73,710	153,310	108,522	118,498
선 고 유 예	29	10	19	12	17
집 행 유 예	130,606	43,830	86,776	50,437	80,169
보 호 처 분	34,699	13,040	21,659	18,646	16,053
가 석 방	10,172	2,344	7,828	8,288	1,884
임 시 퇴 원	1,582	620	962	1,035	547
가 출 소	90	66	24	51	39
가 종 료	840	613	227	279	561
치 료 명 령	1,599	978	621	563	1036
치료감호기간만료	49	35	14	7	42
가 정 보 호	11,199	3,259	7,940	7,817	3,382
성 매 매	275	71	204	165	110
아 동 학 대	2,222	631	1,591	1,392	830
선 도 위 탁	9,664	2,214	7,450	5,798	3,866
성구매자 교육	1,888	458	1,430	983	905
형 기 종 료	3,320	2,499	821	671	2,649
벌 금 미 납	10,561	1,464	9,097	6,622	3,939
이 수 명 령	8,225	1,578	6,647	5,756	2,469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 표 5-81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형법	소계	56,395	56,437	57,485	60,190	63,746	76,366	81,808	85,217	78,079	85,589
	선고유예	15	17	13	9	22	23	16	22	11	17
	집행유예	50,911	51,677	52,803	55,992	59,568	70,670	74,996	78,057	69,627	77,744
	가석방	5,469	4,743	4,669	4,189	4,156	5,673	6,796	7,138	8,441	7,828
소년법	소계	41,253	41,440	34,932	27,765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단기보호관찰	21,252	20,599	16,010	12,214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9,419
	장기보호관찰	12,948	13,018	13,692	10,956	9,570	9,538	9,594	9,224	8,619	8,437
	단독명령	5,964	6,400	3,910	3,238	2,889	2,707	2,910	3,133	2,954	3,803
	임시퇴원	1,089	1,423	1,320	1,357	1,084	1,233	1,192	1,296	1,058	962
치료감호법	소계	535	482	510	531	481	690	986	1,097	1,118	885
	가출소	45	22	61	61	40	87	78	64	34	24
	가종료	490	460	449	470	441	603	434	488	308	227
	치료명령	-	-	-	-	-	-	474	528	745	620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	-	31	14
성폭력처벌법	소계	1,114	1,132	716	3,144	4,389	5,533	10,957	17	11,962	12,414
	선고유예	-	-	3	1	5	11	16	12,544	4	2
	이수명령	-	-	-	-	-	-	5,074	6	6,044	6,231
	집행유예	1,114	1,132	713	3,143	4,384	5,522	5,867	6,223	5,914	6,181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6,315	9,384	7,940
	보호처분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7,875	9,384	7,940
성매매처벌법	소계	572	646	760	910	1,619	2,274	2,835	7,875	879	840
	보호처분	215	273	335	239	390	1,050	1,443	1,274	243	204
	집행유예	357	373	425	671	1,229	1,224	1,392	521	636	636
선도위탁(기소유예)	소계	5,002	5,090	5,899	7,859	11,425	14,859	13,126	753	11,082	8,378
	1급	277	130	199	106	190	103	96	2,301	106	52
	2급	4,725	4,960	5,700	7,753	4,096	3,810	3,553	148	1,835	1,123
	선도교육	-	-	-	-	7,139	10,946	9,477	2,153	9,141	7,203
성구매자교육	소계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7,213	2,457	1,430
	기소유예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3,239	2,457	1,430
형기종료	소계	468	311	996	971	833	870	795	3,239	793	822
	형기종료	468	311	996	971	833	870	795	891	793	822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891	7,413	9,097
	벌금미납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7,624	7,413	9,097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919	1,055	1,287	5,175	5,608	4,444	1,609	7,624	1,270	1,242
	선고유예	-	-	-	-	-	1	1	1,219	-	-
	이수명령	129	274	414	4,454	4,356	3,219	257	-	251	258
	집행유예	790	781	873	721	1,252	1,224	1,351	-	1,019	984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	-	-	-	522	981	1508	1,219	1,705	2,052
	이수명령	-	-	-	-	149	20	31	1,029	103	158
	보호처분	-	-	-	-	301	839	1235	-	1,364	1,591
	집행유예	-	-	-	-	72	122	242	784	238	303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 표 5-82 |

기관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서울	6,223	5,766	5,924	7,052	7,875	8,645	8,438	7,153	7,113	6,959
서울동부	2,764	3,065	3,167	3,191	3,626	3,964	3,718	3,397	3,579	3,732
서울남부	4,292	4,169	4,099	4,298	4,758	5,436	5,880	5,361	5,455	5,170
의정부	4,554	4,962	4,527	4,338	4,670	6,561	6,175	6,050	5,850	6,531
인천	5,729	4,640	4,414	5,315	6,092	7,633	7,895	6,856	6,295	5,975
수원	4,391	5,421	5,799	5,966	6,687	8,784	8,857	7,992	7,992	8,589
춘천	1,383	1,642	1,353	1,335	1,340	1,478	1,717	1,596	1,447	1,374
대전	4,461	4,322	4,382	4,255	4,541	4,895	5,753	5,804	5,541	6,251
청주	2,736	2,200	2,151	2,348	2,631	2,654	3,155	3,346	3,270	2,897
대구	4,518	4,612	4,164	4,056	5,975	6,351	5,843	5,204	5,637	5,700
부산	6,063	5,144	4,866	5,370	5,413	7,460	6,634	4,479	3,424	3,478
울산	4,096	3,234	2,961	4,110	3,552	3,178	4,964	4,097	4,738	5,508
창원	4,076	4,043	3,333	3,963	3,818	4,843	4,961	3,976	4,650	5,825
광주	4,925	5,504	5,270	5,159	5,577	5,355	7,899	6,872	5,608	5,982
전주	2,487	2,141	1,747	2,041	2,104	2,888	3,191	3,005	2,667	3,153
제주	1,475	1,451	1,528	1,797	1,699	2,493	3,103	2,839	2,851	2,722
서울서부	2,593	2,491	2,276	2,662	2,988	3,330	3,247	3,132	3,195	3,235
서울북부	2,606	2,364	2,439	2,294	2,898	3,152	3,014	3,328	4,076	4,019
고양	2,926	2,816	2,810	2,942	4,070	4,401	4,155	3,539	3,522	4,247
부천	2,663	2,358	2,619	2,837	2,991	3,548	4,351	4,172	4,117	3,656
성남	2,572	2,877	2,899	3,302	3,344	4,440	4,676	4,026	3,710	3,672
여주	1,345	1,507	1,277	1,109	1,172	1,422	1,588	1,321	1,255	1,414
안산	4,453	3,652	4,375	4,253	5,301	6,515	5,177	4,856	4,493	4,203
평택	1,437	1,669	1,679	1,802	2,286	3,063	2,580	2,128	2,664	2,897
안양	2,227	2,028	1,653	1,828	2,156	2,606	2,378	2,305	2,308	2,121
강릉	1,056	811	887	1,259	1,192	1,366	1,355	1,209	1,401	1,192
원주	958	1,583	1,194	1,214	1,562	1,780	1,561	1,499	1,530	1,432

기관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속초	437	437	548	548	474	630	396	497	505	560
영월	482	534	438	445	501	487	489	433	597	620
홍성	1,020	856	914	843	1,128	992	900	943	754	959
공주	454	431	376	421	429	547	505	478	387	466
논산	651	608	769	805	778	891	890	657	805	717
서산	916	813	914	1,191	1,205	1,079	988	926	1,082	1,443
천안	2,149	2,288	2,007	2,034	2,283	3,304	3,059	2,784	3,173	3,153
충주	1,244	912	1,042	904	1,048	1,182	1,130	915	886	962
제천	497	559	557	723	746	629	623	506	547	519
대구서부	2,862	2,568	2,422	2,389	3,147	3,790	3,011	3,023	3,044	2,868
안동	1,028	1,304	863	971	948	1,296	958	1031	839	773
경주	573	521	556	703	685	789	724	621	587	786
포항	1,425	923	1,039	1,193	1,584	2,178	2,317	1,754	1,706	2,000
구미	1,462	1,555	1,545	1,611	1,533	1,974	1,978	1,913	2,199	2,550
상주	667	536	533	510	608	612	657	470	643	579
영덕	385	353	260	209	308	388	336	298	332	521
부산동부	3,080	2,943	2,524	2,870	2,918	4,196	3,708	3,436	3,359	3,269
부산서부	-	-	-	-	-	-	-	3,580	2,883	3,160
진주	1,317	966	1,006	1,156	1,170	1,478	1,659	1,595	1,562	2,309
통영	1,549	1,615	1,294	1,513	1,499	2,015	2,025	1,627	1,720	1,305
밀양	362	335	418	421	482	544	464	473	470	592
거창	310	331	335	351	361	503	448	440	472	509
목포	1,218	1,567	1,560	1,603	1,755	1,932	2,366	1,772	1,311	1,294
순천	2,176	1,761	1,974	2,036	2,431	2,955	3,319	2,848	2,831	3,014
해남	627	683	654	738	783	788	866	851	692	581
군산	1,416	1,409	1,379	1,438	1,482	1,778	1,469	1,612	2,016	1,864
정읍	825	865	691	700	608	782	851	839	893	772
남원	410	407	351	320	335	348	324	325	399	427
인천서부	2,185	1,882	1,847	2,426	2,577	3,057	3,417	2,850	2,689	2,510
영동	452	426	269	349	240	251	218	243	283	294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3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27,141	240,073	227,733	223,072	227,020
소년	계			49,687	47,493	45,364	40,587	39,291
	형법	소계		745	727	684	777	814
		선고유예		2	5	6	3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98	657	606	699	742
			단독명령	33	52	60	56	54
		가석방		12	13	12	19	17
	소년법	소계		40,693	40,482	5	36,629	3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8,637	18,465	5	15,592	3
			장기보호관찰	17,103	16,721	40,108	15,693	36,281
			단독명령	3,227	3,489	18,189	3,557	15,003
		임시퇴원		1,726	1,807	16,271	1,787	15,293
	치료감호법	소계		-	3	3,685	3	4,403
		치료명령		-	3	1,963	3	1,582
	성폭력처벌법	소계		105	107	104	127	114
		선고유예		-	2	2	1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5	83	71	88	81
			단독명령	20	22	31	38	32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1	55	40	61	48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48	34	30	53	31
			단독명령	13	21	10	8	17
	성매매처벌법	소계		8	12	12	7	4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5	9	9	6	4
			단독명령	3	3	3	1	-
		소계		-	-	1	5	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1	5	3
			단독명령	-	-	-	-	-
	선도위탁	소계		7,864	5,894	4,173	2,750	1,821
		기소유예		7,864	5,894	4,173	2,750	1,821
	성구매자교육	소계		17	11	5	3	3
		기소유예		17	11	5	3	3
	벌금미납	소계		67	68	56	37	26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벌 금 미 납		67	68	56	37	26
	청소년 성보호법	소 계		122	129	173	185	172
		선 고 유 예		-	1	1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5	110	136	136	121
			단독명령	33	13	35	47	50
		이 수 명 령		4	5	1	2	1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5	5	3	3	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4	5	3	3	-
			단독명령	1	-	-	-	1
		소 계		-	-	-	-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	-	1
		이 수 명 령		-	-	-	-	-
성	계			177,454	192,580	182,369	182,485	187,729
	형법	소 계		109,973	122,762	120,652	119,625	126,227
		선 고 유 예		40	26	31	26	2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2,588	67,840	65,058	61,578	62,042
			단독명령	40,582	46,524	46,323	47,129	54,007
		가 석 방		6,763	8,372	9,240	10,892	10,155
	치료감호법	소 계		1,380	1,854	2,396	2,726	2,575
		가 출 소		157	169	170	137	90
		가 종 료		1,223	1,208	1,221	1,059	840
		치 료 명 령		-	477	988	1,486	1,596
		치료감호기간만료		-	-	17	44	49
	성폭력처벌법	소 계		12,186	14,342	16,245	16,011	16,763
		선 고 유 예		15	24	18	6	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254	3,575	3,690	3,534	3,547
			단독명령	8,917	4,797	4,943	5,108	5,489
		이 수 명 령		-	5,946	7,594	7,363	7,723
인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10,098	12,186	10,425	12,064	11,15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644	7,849	6,820	7,998	7,083
			단독명령	3,454	4,337	3,605	4,066	4,068
	성매매처벌법	소 계		1,192	1,909	861	399	27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32	1319	691	302	133
			단독명령	460	590	170	97	138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 계	1,938	2,232	1,723	1,358	1,084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360	1,661	1,318	999	703
		집행유예 단독명령	578	571	405	359	381
	선도위탁	소 계	12,324	11,132	9,515	11,016	9,330
	선도위탁	기소유예	12,324	11,132	9,515	11,016	9,330
	성매매 구자교육	소 계	12,493	9,226	3,942	3,135	1,885
	성매매 구자교육	기소유예	12,493	9,226	3,942	3,135	1,885
	형종기료	소 계	2,844	2,907	3,218	3,183	3,321
	형종기료	형기종료	2,844	2,907	3,218	3,183	3,321
	벌금미납	소 계	9,825	9,751	9,006	8,672	10,535
	벌금미납	벌금미납	9,825	9,751	9,006	8,672	10,535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1,930	2,211	2,076	1,841	1,728
	청소년성보호법	선고유예	2	-	2	-	-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93	828	800	728	617
	청소년성보호법	집행유예 단독명령	912	1085	939	797	812
	청소년성보호법	이수명령	223	298	335	316	299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1,080	1,690	1,869	1,940	2,221
	아동학대처벌법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894	1,306	1,425	1,373	1,468
	아동학대처벌법	보호처분 단독명령	186	384	444	567	753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191	378	441	388	436
	아동학대처벌법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00	183	206	206	215
	아동학대처벌법	집행유예 단독명령	64	150	166	182	221
	아동학대처벌법	이수명령	27	45	69	127	202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 표 5-84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27,141	240,073	227,733	223,072	227,020
보호관찰	계			100,995	105,705	104,850	101,089	95,861
	형 법	소 계		50,743	55,951	56,842	55,325	53,472
		선고유예		42	31	37	29	24
		집행유예		43,926	47,535	47,553	44,385	43,276
		가석방		6,775	8,385	9,252	10,911	10,172
	소년법	소 계		28,809	27,520	27,600	25,735	24,098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3,761	12,940	12,842	11,386	10,658
			장기보호관찰	13,322	12,773	12,795	12,562	11,858
		임시퇴원		1,726	1,807	1,963	1,787	1,582
	치료감호법	소 계		1,380	1,814	2,336	2,637	2,492
		가출소		157	169	170	137	90
		가종료		1,223	1,208	1,221	1,059	840
		치료명령		-	437	928	1,397	1,513
		치료감호기간만료		-	-	17	44	49
	성폭력처벌법	소 계		2,092	2,323	2,430	2,309	2,311
		선고유예		15	26	20	7	5
		집행유예		2,077	2,297	2,410	2,302	2,306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6,361	5,956	5,155	6,210	5,673
		보호처분		6,361	5,956	5,155	6,210	5,673
	성매매처벌법	소 계		1,508	2,112	1,615	1,056	634
		보호처분		476	820	496	222	102
		집행유예		1,032	1,292	1,119	834	532
	선도위탁	소 계		5,875	5,340	3,740	2,796	2,023
		기소유예		5,875	5,340	3,740	2,796	2,023
	형기종료	소 계		2,844	2,907	3,220	3,183	3,321
		형기종료		2,844	2,907	3,220	3,183	3,321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588	596	596	551	481
		선고유예		2	1	1	-	-
		집행유예		586	595	595	551	481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795	1,186	1,316	1,287	1,356
		보호처분		738	1,076	1,180	1,140	1,212
		집행유예		57	110	136	147	14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봉사명령	계		48,395	53,231	51,224	49,788	51,448
	형 법	소 계	37,624	41,054	40,088	39,910	42,031
		보 호 관 찰 부	12,055	12,755	11,402	10,912	11,517
		단 독 명 령	25,569	28,299	28,686	28,998	30,514
	소 년 법	소 계	6,432	6,981	6,714	5,905	5,655
		단 기 보 호 관 찰	2,456	2,804	2,643	2,095	1,817
		장 기 보 호 관 찰	2,276	2,311	2,113	1,991	1,924
		단 독 명 령	1,700	1,866	1,958	1,819	1,914
	치 료 감 호 법			43	65	92	86
	성폭력처벌법	소 계	1,184	1,406	1,572	1,592	1,761
		보 호 관 찰 부	307	361	374	389	411
		단 독 명 령	877	1,045	1,198	1,203	1,350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795	820	610	616	612
		보 호 관 찰 부	322	275	273	294	245
		단 독 명 령	473	545	337	322	367
	성매매처벌법	소 계	849	1,076	528	412	424
		보 호 관 찰 부	300	442	205	149	138
		단 독 명 령	549	634	323	263	286
	선 도 위 탁	소 계	1,140	1,354	1,181	838	448
		기 소 유 예	1,140	1,354	1,181	838	448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299	348	307	297	290
		보 호 관 찰 부	86	97	105	100	77
		단 독 명 령	213	251	202	197	213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72	149	159	126	141
		보 호 관 찰 부	30	51	56	32	36
		단 독 명 령	42	98	103	94	105
수강명령	계		38,857	45,459	41,884	42,408	50,357
	형 법	소 계	22,358	26,488	24,406	25,167	31,538
		보 호 관 찰 부	7,312	8,211	6,709	6,980	7,991
		단 독 명 령	15,046	18,277	17,697	18,187	23,547
	소 년 법	소 계	5,452	5,981	5,794	4,989	6,528
		단 기 보 호 관 찰	2,420	2,721	2,704	2,111	2,528
		장 기 보 호 관 찰	1,505	1,637	1,363	1,140	1,511
		단 독 명 령	1,527	1,623	1,727	1,738	2,489
	성폭력처벌법	소 계	4,169	4,774	4,753	4,874	5,082
		보 호 관 찰 부	955	1,000	977	931	911
		단 독 명 령	3,214	3,774	3,776	3,943	4,171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4,777	5,465	4,700	5,299	4,914
		보호관찰부	1,783	1,652	1,422	1,547	1,196
		단독명령	2,994	3,813	3,278	3,752	3,718
	성매매처벌법	소 계	781	965	454	301	304
		보호관찰부	289	435	199	107	71
		단독명령	492	530	255	194	233
	선도위탁	소 계	-	-	-	-	-
		기소유예	-	-	-	-	-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938	1,093	1,008	860	829
		보호관찰부	206	246	236	213	180
		단독명령	732	847	772	647	649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382	693	769	918	1,162
		보호관찰부	173	257	262	263	291
		단독명령	209	436	507	655	871
성구매자교육	계		12,510	9,237	3,947	3,138	1,888
	기소유예		12,510	9,237	3,947	3,138	1,888
벌금미납사회봉사	계		9,892	9,819	9,062	8,709	10,561
	벌금미납사회봉사		9,892	9,819	9,062	8,709	10,561
이수명령	계		5,073	6,290	7,999	7,808	8,225
	이수명령		5,073	6,290	7,999	7,808	8,225
선도교육	계		11,419	10,332	8,767	10,132	8,680
	기소유예		11,419	10,332	8,767	10,132	8,680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5 |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6	2,618	2,602	1	-	2	13
2017	2,840	2,811	-	-	7	22
2018	2,184	2,165	-	-	3	16
2019	877	854	-	-	2	21
2020	492	454	-	-	3	35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6 |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6	1,796	31	1,695	36,129	726	1,780	109	11	40	58	149
2017	1,713	24	1,594	38,752	791	1,576	118	7	49	70	194
2018	1,417	14	1,350	35,479	749	1,217	128	14	35	76	219
2019	1,231	9	1,125	33,849	694	982	122	20	36	65	201
2020	961	9	824	26,412	506	965	85	16	25	56	184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 표 5-87 |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 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 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6	31	29	2,663	5	2,658	1,796	791	87	10	4	1,695	1,695	5	293	1,264	3	111
2017	24	32	2,613	15	2,598	1,713	806	85	14	11	1,594	1,594	4	300	1,160	-	121
2018	14	30	2,265	23	2,242	1,417	829	51	16	24	1,302	1,343	6	241	942	2	132
2019	9	20	1,921	24	1,897	1,230	7622	77	6	15	1,080	1,125	3	236	718	1	127
2020	9	37	1,526	12	1,514	961	564	113	8	17	804	824	4	129	579	-	88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88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6	48,395	39,532	36,426	572	1,825	709
2017	53,213	44,157	40,653	644	2,061	799
2018	51,224	41,853	38,447	609	2,023	774
2019	49,788	40,043	36,918	607	1,930	588
2020	51,448	21,609	17,821	629	2,484	675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89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선도위탁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16	48,395	41,435	37,624	32,117	6,432	5,459	-	-	1,184	1,036	795	698	849	729	1,140	1,071	299	259	72	66
2017	53,231	44,386	41,054	33,914	6,981	5,923	43	42	1,406	1,188	820	708	1,076	945	1,354	1,237	348	293	149	136
2018	51,224	42,249	40,088	32,911	6,714	5,650	65	53	1,572	1,326	610	530	528	404	1,181	973	307	261	159	141
2019	49,788	40,279	39,910	32,214	5,905	4,805	92	74	1,592	1,262	616	517	412	344	838	733	297	226	126	104
2020	51,448	41,946	42,031	34,175	5,655	4,746	86	60	1,761	1,420	612	521	424	341	448	339	290	226	141	118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0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48,395	17,969	30,426	7,616	4,973	2,643	40,779	12,996	27,783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2018	51,224	17,405	33,819	7,845	5,111	2,734	43,379	12,294	31,08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2020	51,448	16,324	35,124	6,292	4,004	2,288	45,156	12,320	32,836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1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6	36,998	9,236	27,762	88	25,457	681	1,346	190
2017	41,297	8,538	32,759	79	30,747	952	734	247
2018	39,007	6,521	32,486	48	30,325	1,089	770	254
2019	37,453	5,775	31,678	53	29,718	899	725	283
2020	18,450	6,501	11,949	7	10,057	991	678	216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92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6	38,857	30,038	27,674	284	1,261	819
2017	45,459	36,859	34,100	311	1,452	996
2018	41,884	34,046	31,353	293	1,439	961
2019	42,408	33,575	31,199	273	1,262	841
2020	50,357	22,359	19,045	328	2,012	974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93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선도위탁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6	38,857	31,971	22,358	18,532	5,452	4,367	4,169	3,320	4,777	3,980	781	699	-	-	938	745	382	328
2017	45,459	36,657	26,488	21,508	5,981	4,775	4,774	3,781	5,465	4,488	965	698	-	-	1,093	834	693	573
2018	41,884	33,309	24,406	19,607	5,794	4,510	4,753	3,703	4,700	3,801	454	331	-	-	1,008	737	769	620
2019	42,408	34,523	25,167	20,582	4,989	3,975	4,874	3,850	5,299	4,512	301	214	-	-	860	624	918	766
2020	50,357	41,672	31,538	26,643	6,528	5,305	5,082	3,978	4,914	3,922	304	237	-	-	829	621	1,162	966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4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38,857	14,643	24,214	5,587	3,999	1,588	33,270	10,644	22,626
2017	45,459	16,159	29,300	6,139	4,446	1,693	39,320	11,713	27,607
2018	41,884	13,872	28,012	5,952	4,151	1,801	35,932	9,721	26,211
2019	42,408	13,292	29,116	5,182	3,355	1,827	37,226	9,937	27,289
2020	50,357	14,679	35,678	6,724	4,143	2,581	43,633	10,536	33,097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5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6	27,958	27,386	572	26	-	27	275	51	193
2017	34,411	33,845	566	1	-	5	244	22	294
2018	31,646	30,800	846	6	64	53	140	34	549
2019	31,472	29,977	1,495	2	81	104	61	70	1,177
2020	19,373	18,811	562	1	3	56	109	57	336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 표 5-96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환경조사	소 계	1,616	1,740	1,701	1,594	1,561	1,555	1,921	1,502	1,442	1,365
	소년원	1,380	1,500	1,555	1,395	1,432	1,419	1,693	1,373	1,343	1,297
	교도소	173	146	43	106	59	60	167	104	93	62
	감호소	28	69	103	93	70	76	60	19	6	6
환경개선		35	25	-	-	-	-	1	6	1	4

머. 조사

| 표 5-97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판결전조사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결정전조사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검사결정전조사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청구전조사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소급청구전조사	772	354	247	192	119	79	86	39	52	37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 표 5-98 |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6	3,288	2,396	1,817	579	1,666	1,344	1,133	211	1,622	1,052	684	368
2017	3,196	2,315	1,682	633	1,479	1,181	997	184	1,717	1,134	685	449
2018	2,887	2,089	1,430	659	1,267	1,018	828	190	1,620	1,071	602	469
2019	2,457	1,812	1,233	579	1,035	822	675	147	1,422	990	558	432
2020	1,968	1,369	959	410	860	666	550	116	1,108	703	409	294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 표 5-99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6,766	6,144	6,658	6,297	6,252	7,895	8,821	9,434	11,571	11,973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 표 5-100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 수	7,067	6,502	6,150	5,503	5,716	7,221	8,248	8,575	8,268	8,271
필 요	4,779	4,246	4,174	3,734	3,816	5,127	6,205	6,394	7,962	7,169
불 요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허 가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3. 갱생 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 표 5-101 |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6,794	1,981	4,353	11,332	115	7,823	19,440	21,827	4	5,872	788	13,169	20,090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표 5-102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원호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1,663	1,634	4,280	11,264	110	7,619	19,172	21,332	2	3,716	788	12,669	19,077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 표 5-103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5,131	347	73	68	5	204	268	495	2	2,156	500	1,013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104 | 입·출원 인원

입·출원		성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원	계	남	3,382	3,848	4,314	3,863	3,223	2,884	2,763	2,974	2,770	2,392	2,036
		여	631	706	665	572	484	504	476	510	539	565	504
	전년도 이월	남	978	1,217	1,202	1,197	1,175	945	928	858	924	695	693
		여	213	224	195	201	169	155	215	176	186	185	210
	송치	남	2,265	2,534	2,995	2,548	1,933	1,858	1,754	2,022	1,729	1,607	1,279
		여	396	426	435	341	295	321	241	308	333	349	272
	임시퇴원 취소	남	139	97	117	118	115	81	81	94	117	90	64
		여	22	56	35	30	20	28	20	26	20	31	22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
		여	-	-	-	-	-	-	-	-	-	-	-
출원	계	남	2,381	2,360	2,954	2,685	2,275	1,961	1,900	2,029	2,064	1,700	1,330
		여	439	401	446	401	333	281	316	320	352	358	345
	퇴원	남	1,595	1,555	1,873	1,676	1,254	1,119	1,045	1,135	1,049	877	553
		여	226	235	278	243	188	164	147	194	210	183	134
	임시퇴원	남	735	768	1,036	941	952	786	788	832	946	747	689
		여	199	158	159	145	137	103	158	114	123	137	170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31	25	29	48	46	43	41	36	50	58	56
		여	13	8	9	12	8	13	10	8	18	35	37
	사망	남	-	-	-	-	-	-	-	-	-	-	1
		여	-	-	-	1	-	-	-	-	-	-	-
	이탈	남	-	-	1	-	-	-	-	-	-	-	-
		여	-	-	-	-	-	-	-	-	-	-	-
	기타	남	20	12	15	20	23	13	26	26	19	18	31
		여	1	-	-	-	-	1	1	4	1	3	4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105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남	963	계	남	1,063	1,188	1,207	1,056	921	932	981	869	738	738
	여	200		여	201	202	173	181	192	199	185	209	208	189
서 울	남	208	서 울	남	254	270	295	270	236	234	246	204	172	206
	여	-		여	-	-	-	-	-	-	-	-	-	-
부 산	남	127	부 산	남	140	161	175	132	118	138	124	111	86	86
	여	1		여	-	1	1	1	1	1	1	-	-	-
대 구	남	130	대 구	남	127	143	128	137	130	141	137	114	94	86
	여	-		여	-	-	-	-	-	-	-	-	-	-
광 주	남	99	광 주	남	142	165	161	129	94	104	134	107	95	104
	여	-		여	-	-	-	1	-	-	-	-	-	-
전 주	남	112	전 주	남	110	126	128	123	108	92	81	91	102	103
	여	-		여	-	-	-	-	-	-	-	-	-	-
대 덕	남	142	대 전	남	146	165	139	112	111	92	109	106	64	48
	여	9		여	16	14	9	10	5	6	12	15	20	21
청 주	남	-	청 주	남	-	-	-	-	-	-	-	-	-	-
	여	54		여	48	60	54	46	45	45	45	85	85	66
안 양	남	-	안 양	남	-	-	-	-	-	-	-	-	-	-
	여	136		여	137	127	109	123	141	147	127	109	103	103
춘 천	남	106	춘 천	남	112	128	151	117	93	89	107	103	92	79
	여	-		여	-	-	-	-	-	-	-	-	-	-
제 주	남	39	제 주	남	32	30	30	36	31	42	43	33	33	25
	여	-		여	-	-	-	-	-	-	-	-	-	-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6 | 기관별 신수용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남	2,404	계	남	2,534	2,994	2,666	2,048	1,939	1,835	2,116	1,846	1,697	1,343
	여	418		여	426	435	371	315	349	261	334	353	380	294
서 울	남	344	서 울	남	521	552	635	489	474	442	524	482	474	453
	여	-		여	-	-	-	-	-	-	-	-	-	-
부 산	남	381	부 산	남	322	337	351	267	281	213	265	208	198	158
	여	60		여	31	46	44	44	44	54	48	38	43	51
대 구	남	174	대 구	남	138	129	88	110	143	176	162	78	73	75
	여	38		여	25	16	21	15	25	16	13	5	6	1
광 주	남	79	광 주	남	97	116	146	154	122	90	137	139	147	131
	여	17		여	27	19	40	28	36	9	28	20	39	29
전 주	남	48	전 주	남	69	109	69	16	5	-	5	3	385	350
	여	12		여	22	15	3	-	-	-	-	-	-	-
대 덕	남	1,285	대 전	남	1279	1,540	1,242	921	828	849	943	876	362	152
	여	21		여	22	10	9	4	3	15	21	8	30	11
청 주	남	-	청 주	남	-	-	-	-	-	-	-	-	-	-
	여	168		여	181	228	137	106	110	71	102	31	105	82
안 양	남	-	안 양	남	-	-	-	-	-	-	-	-	-	-
	여	90		여	105	90	113	108	122	87	114	233	150	116
춘 천	남	54	춘 천	남	74	146	90	53	66	38	39	30	41	4
	여	4		여	4	3	-	6	1	3	1	9	3	-
제 주	남	39	제 주	남	34	65	45	38	20	27	41	30	17	20
	여	8		여	9	8	4	4	8	6	7	9	4	4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7 | 수용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월 미만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3월 미만	86	76	125	96	80	62	62	47	64	705	232
6월 미만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월 이상	100	76	115	149	108	91	126	115	131	240	207
7월 이상	5	4	16	20	19	15	13	8	12	5	4
8월 이상	15	14	28	15	19	28	13	20	8	11	7
9월 이상	20	32	26	26	29	16	14	16	25	18	11
10월 이상	24	23	14	11	13	16	11	12	18	9	10
11월 이상	13	11	10	11	20	15	12	8	20	17	18
12월 이상	86	32	39	25	30	30	47	19	49	64	70
13월 이상	156	91	139	81	77	43	71	46	85	94	81
14월 이상	134	161	181	114	91	86	83	90	99	78	75
15월 이상	69	117	138	82	132	84	75	71	87	51	73
16월 이상	31	38	53	72	80	58	73	59	53	32	33
17월 이상	4	14	23	30	37	30	37	49	37	21	18
18월 이상	1	3	8	21	35	26	21	23	24	15	12
19월 이상	-	4	4	7	19	11	11	10	7	13	7
20월 이상	2	1	4	3	4	7	20	3	6	4	25
평균수용기간(월)	4.61	4.66	4.66	4.9	5.18	4.8	5.35	4.85	5.1	5.6	6.9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8 | 처우과정 분류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6
7호	소계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기타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8호	소계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기타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9호	소계	782	780	975	960	768	766	713	857	741	716	621
	교과	54	57	132	111	125	168	161	95	87	97	127
	직업	-	-	-	77	70	102	72	243	219	236	180
	특성화	189	178	244	188	134	178	136	132	74	78	64
	기타	539	545	599	584	439	318	344	387	361	305	250
10호	소계	655	748	663	687	562	611	538	581	516	538	471
	교과	118	227	174	196	118	53	31	45	34	64	69
	직업	297	244	295	279	294	408	332	374	314	349	288
	특성화	47	62	50	36	27	13	12	8	1	-	-
	기타	193	215	144	176	123	137	163	154	167	125	114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9 | 교과교육 수료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86	287	389	228	139	135	154	187	208	253	300
초등학교	-	-	-	-	-	-	-	-	-	-	
중 학 교	206	198	210	101	49	32	25	26	18	95	90
고등학교	80	89	179	127	90	103	129	161	190	158	210

| 표 5-110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94	497	688	619	670	600	676	617	447	420	409
초졸	4	5	3	4	3	1	-	-	-	-	-
중졸	228	254	283	246	224	190	152	141	76	65	45
고졸	162	238	402	369	443	409	524	476	371	355	364

| 표 5-111 |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직 업 훈 련	386	374	523	472	497	500	640	552	633	532	442

| 표 5-11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일 반 기 능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컴 퓨 터 관 련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외 국 어 관 련	45	41	48	-	-	-	-	-		-	-
기 타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 표 5-113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15,754	11	5,148	345	10,250	38	0	38
2010	2,759	4	935	74	1,746	28	-	28
2011	2,246	7	800	71	1,368	8	-	8
2012	2,546	-	837	72	1,637	2	-	2
2013	1,220	-	511	16	693	-	-	-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 표 5-114 | 취업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인원	328	261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181

| 표 5-115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8	111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130
대 학 교	38	22	45	45	71	91	93	88	86	55	64
고등학교	70	89	92	70	63	63	66	79	79	49	66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16 | 입·출원 인원

구분		성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원	계	남	5,486	5,691	5,746	5,888	5,230	5,508	4,778	4,931	4,745	4,055	3,534
		여	1,277	1,445	1,307	1,228	1,095	1,104	1,051	1,372	1,398	1,305	1,122
	이월인원	남	387	366	392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여	81	88	77	69	75	68	73	61	102	98	83
	신수용인원	남	5,099	5,325	5,354	5,552	4,889	5,144	4,430	4,598	4,407	3,748	3,258
		여	1,196	1,357	1,230	1,159	1,020	1,036	978	1,311	1,296	1,207	1,039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
		여	-	-	-	-	-	-	-	-	-	-	-
출원	계	남	4,942	5,359	5,351	5,547	4,866	5,159	4,446	4,593	4,439	3,778	3,358
		여	1,185	1,348	1,240	1,153	1,027	1,030	992	1,270	1,300	1,223	1,077
	보호자위탁	남	22	13	14	8	10	29	16	14	19	11	9
		여	15	8	6	9	4	8	-	6	10	5	10
	보호시설위탁	남	460	435	440	492	429	474	430	456	438	454	481
		여	145	195	189	197	181	163	201	241	281	249	262
	소년원송치	남	1,797	2,049	2,243	2,090	1,684	1,709	1,507	1,689	1,455	1,227	1,128
		여	340	321	312	301	270	319	243	288	305	285	229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321	2,483	2,262	2,603	2,318	2,472	2,121	2,138	2,139	1,789	1,408
		여	592	697	599	555	494	418	461	630	591	589	462
	위탁변경	남	130	107	111	112	114	112	92	72	65	38	7
		여	12	24	40	26	25	21	18	17	14	12	1
	심리불개시	남	-	-	1	-	-	-	-	-	-	-	2
		여	1	-	-	-	-	-	-	-	-	-	1
	불처분	남	20	5	15	16	10	9	8	5	8	11	3
		여	2	-	-	2	2	2	2	1	-	2	2
	이탈	남	-	-	-	-	-	-	-	-	-	-	-
		여	-	-	-	-	-	-	-	-	-	-	-
	기타	남	192	267	265	226	301	354	272	219	315	248	320
		여	78	103	94	63	51	99	67	87	99	81	110
연말현재인원		남	371	337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여	70	79	69	75	68	73	61	101	98	83	45

| 표 5-117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남	341	계	남	367	379	391	391	364	327	348	334	301	254
	여	77		여	89	85	80	80	72	71	95	97	95	79
부 산 (부산심)	남	63	부 산 (부산심)	남	83	78	74	73	78	70	70	66	63	45
	여	12		여	17	17	11	11	16	17	18	16	19	17
대 구 (대구심)	남	27	대 구 (대구심)	남	27	25	28	28	28	32	30	25	25	16
	여	8		여	7	5	7	7	5	6	6	6	6	5
광 주 (광주심)	남	40	광 주 (광주심)	남	34	35	41	41	37	35	43	36	27	25
	여	9		여	8	8	8	8	8	6	10	9	6	4
전 주	남	15	전 주	남	14	11	7	7	-	-	-	-	-	-
	여	4		여	4	2	2	2	-	-	-	-	-	-
대 덕	남	36	대 전	남	28	20	24	24	26	35	28	33	28	28
	여	6		여	6	4	5	5	5	7	11	11	9	7
춘 천	남	10	춘 천	남	12	14	11	12	9	9	15	11	12	8
	여	4		여	4	4	2	2	1	1	2	2	4	3
제 주	남	2	제 주	남	1	1	3	3	3	2	2	3	4	3
	여	1		여	-	-	1	1	1	1	1	0	1	1
서울심	남	148	서울심	남	168	195	203	203	183	144	160	160	141	129
	여	33		여	43	45	44	44	36	34	47	53	51	42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8 | 기관별 위탁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남	5,099	계	남	5,325	5,352	5,552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여	1,196		여	1,357	1,230	1,159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부 산 (부산심)	남	966	부 산 (부산심)	남	1,257	1,208	1,074	1,059	1,055	893	901	771	670	567
	여	207		여	271	250	167	195	213	211	249	186	205	218
대 구 (대구심)	남	363	대 구 (대구심)	남	342	327	336	367	368	395	344	297	278	198
	여	113		여	103	66	89	71	68	73	75	71	66	59
광 주 (광주심)	남	559	광 주 (광주심)	남	426	422	495	403	463	413	513	452	348	322
	여	124		여	110	99	105	97	110	73	110	120	73	55
전 주	남	170	전 주	남	181	144	111	1	-	-	-	-	-	-
	여	49		여	50	32	28	1	-	-	-	-	-	-
대 덕	남	620	대 전 (대전의료)	남	454	299	355	305	387	450	363	422	356	328
	여	114		여	101	56	75	57	81	102	150	140	107	93
춘 천	남	135	춘 천	남	176	207	161	176	139	144	215	182	169	88
	여	54		여	61	54	33	31	18	19	34	31	51	37
제 주	남	50	제 주	남	22	30	38	44	44	27	26	36	40	48
	여	16		여	15	8	14	21	16	8	11	7	16	12
서울심	남	2,236	서울심	남	2,467	2,715	2,982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여	519		여	646	665	648	547	530	493	682	741	689	565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9 | 위탁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출원 인 원	6,164	6,707	6,589	6,700	5,893	6,187	5,438	5,863	5,739	5,000	4,435
10일 미만	164	159	158	124	154	166	106	124	144	70	67
10 ~ 20일	1,491	1,182	1,053	949	754	950	679	562	616	371	393
21 ~ 30일	3,578	4,367	4,200	4,392	3,874	3,850	3,326	3,851	3,573	3,134	2,862
31 ~ 40일	784	851	916	1,026	877	1,014	1,018	1,032	1,001	907	812
41 ~ 50일	113	128	198	145	191	160	250	238	291	400	242
51 ~ 60일	34	20	64	64	43	47	58	56	114	118	59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20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분 류 심 사	5,723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6
상 담 조 사	5,301	5,296	5,148	4,382	4,261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검사결정전조사	397	126	7	-	-	-	25	-	-	-	-

| 표 5-121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76,577	82,942	89,342	154,934	196,798	408,850	371,625	408,850	315,184	336,404	137,023
대안교육	소 계	12,862	23,382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일반학생	11,396	21,280	26,814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45,180	41,557	13,430
	기소유예	1,124	1,191	2,034	2,767	4,993	5,123	5,757	5,416	4,365	4,608	2,975
	보호처분	342	911	1,274	507	278	217	255	193	1,090	2,533	774
청소년심리검사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보호자교육		6,626	7,498	8,101	8,246	9,192	8,964	9,465	13,314	12,024	10,373	4,044
법교육		50,651	44,089	41,674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94,750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표 5-122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판정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164	6,707	6,591	6,700	5,893	6,189	5,438	5,863	5,739	5,000	4,435
1호	37	21	20	17	14	37	16	20	29	16	19
2호	39	54	47	59	31	42	46	47	80	73	42
3호	34	50	35	65	69	55	33	29	88	56	41
4호	1,214	1,287	1,088	1,132	1,153	1,464	1,118	1,169	1,323	1,049	786
5호	1,663	1,893	1,773	2,026	1,659	1,426	1,464	1,599	1,407	1,285	1,134
6호	605	643	650	689	610	637	631	697	719	703	743
7호	50	79	87	69	88	74	63	99	116	95	98
8호(1개월)	941	1,035	1,164	860	682	672	525	593	531	372	321
9호(단기)	621	618	754	837	684	714	670	774	658	607	526
10호(장기)	525	638	627	622	501	568	492	511	455	479	412
기타	435	389	346	324	402	500	380	325	333	265	313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23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8	99,043	190	98,853	25,952	1,194,603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 표 5-124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3	57,240	41,748	10,140	1,641	3,711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 표 5-125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기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3,268,220	9,305,000	9,584,000	7,929,000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보상인원	209	287	291	312	331	382	279	264	248	305	206
지급금액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 표 5-126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연도 \ 구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4	1,755	54	1,369	56	147	129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3,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 표 5-127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연도 \ 구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5	1,820	958	543	234	85(4.7%)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제5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28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용정원			45,690	45,690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1일평균수용인원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1,644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수형자	29,820	29,448	30,181	30,727	32,649	33,791	35,382	34,380	33,813	33,392
		노역수	1,824	1,854	2,097	2,024	1,976	1,827	1,624	1,497	1,468	1,397
	미결구금자	소 계	14,201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피의자	724	703	712	747	847	864	753	643	632	558
		피고인	13,477	13,483	14,934	16,630	18,420	20,013	19,539	18,224	18,711	18,526

| 표 5-129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1	49,779,000	45,845	0.092	15,478	3.0
2012	50,004,441	45,488	0.091	15,757	2.9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 표 5-130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5,038	46,708	48,824	51,760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수형자	소 계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남	29,694	29,863	30,525	31,661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여	1,504	1,571	1,612	1,783	1,976	2,198	2,262	2,339	2,313	2,345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4.8	5.0	5.0	5.3	5.6	6.0	6.3	6.6	6.7	6.7
미결수용자	소 계	13,840	15,274	16,687	18,316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남	12,915	14,263	15,376	17,008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여	925	1,011	1,311	1,308	1,543	1,708	1,511	1,558	1,539	1,627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6.7	6.6	7.9	7.1	7.9	8.1	7.9	8.2	7.9	8.5

| 표 5-131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16세 미만	2	16	6	3	0	2	4	1	4	1
18세 미만	49	70	55	50	47	46	45	35	41	45
20세 미만	231	251	280	270	262	290	244	248	231	2233
25세 미만	2,153	2,147	2,327	2,514	2,609	2,642	2,484	2,335	2,255	2,378
25세 이상	2,899	2,539	2,366	2,247	2,244	2,450	2,562	2,779	2,860	3,058
30세 이상	8,018	7,681	7,677	7,584	7,678	7,678	7,543	7,059	6,834	6,488
40세 이상	9,708	9,714	9,714	9,986	10,310	10,275	9,712	9,307	8,637	8,427
50세 이상	6,344	6,866	7,362	7,989	8,624	9,255	9,330	9,067	9,033	8,941
60세 이상	1,794	2,150	2,350	2,801	3,324	3,841	4,243	4,440	4,802	5,178

| 표 5-132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98	1,132	1,222	1,271	1,884	1,997	2,096	2,079	2,315	2,451
소계	기 결	848	769	773	770	1,123	1,232	1,320	1,338	1,416	1,445
	미 결	350	363	449	501	761	765	776	741	899	1,006
중국	기 결	488	482	488	492	800	852	903	805	730	700
	미 결	206	223	269	340	500	477	431	343	426	432
일본	기 결	14	4	3	4	6	8	8	7	7	6
	미 결	2	2	1	3	1	1	4	4	2	1
미국	기 결	24	30	30	34	35	37	35	37	40	34
	미 결	12	20	20	24	29	28	26	28	17	15
기타	기 결	322	253	252	240	282	335	374	489	639	705
	미 결	130	118	159	134	231	259	315	366	454	558

| 표 5-133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절 도	5,315	4,752	4,650	4,599	4,420	4,061	3,858	3,678	3,549	3,254
폭력행위등 처벌법	2,343	2,396	2,582	2,748	2,863	2,815	2,624	2,547	2,509	2,330
사기 및 횡령	3,951	4,150	5,024	5,911	6,834	7,699	7,630	8,029	8,024	8,330
성 폭 력	4,877	5,215	5,845	6,284	6,272	5,953	5,480	5,711	5,717	5,652
마 약 류	1,339	1,295	1,380	1,344	1,553	1,890	2,133	2,002	1,996	1,595
과 실 범	1,123	1,257	1,315	1,463	1,423	1,691	1,722	1,896	1,851	2,474
강 도	3,623	3,506	3,276	3,014	2,821	2,552	2,333	2,038	1,919	1,803
살 인	3,729	3,711	3,675	3,750	3,728	3,584	3,484	3,291	3,228	3,170
기 타	4,898	5,152	4,390	4,331	5,184	6,234	6,903	6,279	5,904	6,141

| 표 5-134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징역	소 계	29,889	30,082	30,796	32,064	33,694	35,048	34,736	33,847	33,292	33,287
	1년 미만	5,421	5,322	5,078	5,312	5,724	6,362	6,050	6,169	5,611	4,402
	1년 이상	9,666	9,829	10,344	10,898	12,001	13,010	13,208	12,591	12,817	14,052
	3년 이상	6,610	6,493	6,613	6,866	6,870	6,747	6,727	6,589	6,339	6,428
	5년 이상	4,335	4,601	4,912	5,088	5,216	5,195	5,029	4,886	4,900	4,902
	10년 이상	3,344	3,317	3,299	3,335	3,283	3,127	3,071	2,927	2,901	2,784
	20년 이상	455	462	492	507	543	550	594	628	669	719
금고	소 계	45	84	53	60	67	86	73	81	66	86
	1년 미만	25	53	33	37	42	47	32	30	32	27
	1년 이상	15	26	16	19	17	28	28	41	25	45
	3년 이상	5	5	4	4	8	11	13	10	9	14
무기징역		1,264	1,268	1,288	1,320	1,337	1,345	1,358	1,343	1,343	1,320
사형		58	58	58	58	57	57	57	57	56	56

| 표 5-135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무경험자		15,225	16,676	17,483	18,604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유경력자	소 계	15,973	14,758	14,654	14,840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 회	5,373	5,308	5,292	5,552	5,987	6,437	6,979	6,741	6,474	6,265
	2 회	2,622	2,540	2,515	2,531	2,506	2,665	2,728	2,668	2,847	2,822
	3 회	1,993	1,889	1,833	1,790	1,742	1,685	1,615	1,623	1,638	1,654
	4회이상	5,985	5,021	5,014	4,967	5,069	5,043	4,790	4,681	4,783	4,629

| 표 5-136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소자	계	55,046	53,689	55,479	56,044	62,395	64,541	62,624	57,562	56,420	51,874
	신 입 소	27,253	26,145	27,333	26,573	29,357	28,330	24,851	22,421	21,827	18,609
	형 확 정	23,163	22,931	23,267	24,281	27,206	30,269	31,500	29,477	29,225	28,204
	기 타	4,630	4,613	4,879	5,190	5,832	5,942	6,273	5,664	5,368	5,061
출소자	계	55,436	53,202	54,297	54,203	60,414	62,979	62,819	58,303	56,900	51,817
	형기종료	16,551	15,742	16,374	17,191	19,187	21,357	23,324	21,759	21,092	19,736
	가 석 방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사 면	0	374	13	282	559	479	309	0	560	206
	기 타	17,367	16,857	17,501	16,173	15,927	14,184	12,559	11,031	10,178	8,588
	노역종료	14,389	13,729	14,208	15,163	19,234	19,802	18,352	16,820	16,896	15,375
연도말 인원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나. 미결구금자

| 표 5-137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4,300	43,152	44,274	48,265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신 입 소	40,084	39,029	39,604	43,171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기 타 (보석취소 등)	4,216	4,123	4,670	5,094	5,544	5,835	5,887	5,525	5,461	5,304

| 표 5-138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3,987	41,433	42,651	46,272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구속취소	1,465	1,355	1,400	1,669	2,056	2,452	2,761	2,538	2,474	2,200
벌 금	1,235	947	1,078	1,224	1,306	1,310	1,218	976	775	684
집행유예	11,030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8,985	8,831	7,536
보 석	3,376	2,662	2,882	3,167	3,069	2,678	2,555	2,127	2,105	2,165
형 확 정	21,955	21,660	22,017	23,155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기 타	4,926	4,868	5,174	5,280	5,324	5,564	5,956	5,071	4,836	4,301
연도말인원	13,840	15,274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39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절 도	26	42	43	34	26	23	24	17	10	21
사기·횡령	-	2	1	2	10	2	12	12	9	8
폭력·상해	5	17	17	5	10	27	4	3	11	13
강 간 등	33	54	46	34	27	35	44	24	26	21
강 도 등	18	24	16	11	14	19	8	5	14	13
살 인	10	11	7	6	5	5	4	4	3	1
과 실 범	1	2	-	2	2	2	-	1	4	1
기 타	21	18	22	37	36	37	32	39	39	37

| 표 5-140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1	2	4	1	-	-	-	1	-	-
	10년 이상	4	5	4	3	2	2	-	-	1	-
	5년 이상	12	13	10	11	12	13	9	13	21	15
	3년 이상	38	44	39	42	48	56	47	33	45	41
	1년 이상	48	94	87	67	56	69	64	55	45	55
	1년 미만	10	12	8	7	11	8	8	2	4	2
	6월 미만	1	-	-	-	1	1	-	1	-	2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1	-	-	-	-

| 표 5-141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57	115	122	124	118	97	113	99	97	81
가 석 방	64	56	53	33	27	31	28	26	35	35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 기 종 료	75	45	45	68	78	53	64	38	43	37
기 타	18	14	24	23	13	13	21	35	19	9

라. 외부교통권

| 표 5-142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163,186	178,762	198,458	214,205	246,045	279,42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 표 5-143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463,230	487,228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 표 5-144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374,780	410,980	479,481	533,348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 표 5-145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1,964,389	1,979,015	2,159,672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46 | 2016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16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7,917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87	0.3%
6월 이내	535	1.9%
1년 이내	2,465	8.8%
2년 이내	5,371	19.2%
3년 이내	7,039	25.2%

※ 조사대상인원 : 27,917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4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47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인원		재복역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7,917	2,015	7,039	210	87	2	448	9	1,930	48	2,906	94	1,668	57
형기종료	20,230	1,113	6,495	192	86	2	435	9	1,841	47	2,670	87	1,463	47
가석방	7,157	805	489	17	1	-	11	-	80	1	212	6	185	10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53	-	13	-	-	-	1	-	3	-	6	-	3	-
사 면	478	97	42	1	-	-	1	-	6	-	18	1	17	-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2%, 가석방 6.5%,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24.5%, 사면 8.8%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1%, 6월 이내 1.60%, 1년 이내 6.9%, 2년 이내 10.4%, 3년 이내 6.0%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87명(1.2%), 3월이상 6월이내 448명(6.4%), 6월이상 1년이내 1,930명(27.4%), 1년이상 2년이내 2,906명(41.3%), 2년이상 3년이내 1,668명(23.7%)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6.4%, 여자 10.4%

| 표 5-14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7,917	16,500	4,835	1,913	1,170	3,499
	재복역인원	7,039	1,928	1,407	828	609	2,267
	재복역률	25.2	11.7	29.1	43.3	52.1	64.8
형기종료	출소인원	20,230	9,990	3,763	1,856	1,163	3,458
	재복역인원	6,495	1,565	1,246	822	607	2,255
	재복역률	32.1	15.7	33.1	44.3	52.2	65.2
가석방	출소인원	7,157	6,055	1,044	53	3	2
	재복역인원	489	325	158	4	1	1
	재복역률	6.8	5.4	15.1	7.5	33.3	50.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53	5	5	3	4	36
	재복역인원	13	0	1	2	1	9
	재복역률	24.5	0.0	20.0	66.7	25.0	25.0
사면	출소인원	478	451	23	1	0	3
	재복역인원	42	38	2	0	0	2
	재복역률	8.8	8.4	8.7	0.0	0.0	66.7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1.7%, 2범 29.1%, 3범 43.3%, 4범 52.1%, 5범 이상 64.8%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65.2%), 가석방 4범(33.3%), 가출소 3범(66.7%), 사면 5범(66.7%)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9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7,917	175	4,121	5,859	7,731	7,271	2,760
	재복역인원	7,039	76	1,187	1,475	2,035	1,754	512
	재복역률	25.2	43.4	28.8	25.2	26.3	24.1	18.6
형기종료	출소인원	20,230	137	2,710	4,311	5,742	5,300	2,030
	재복역인원	6,495	64	1,015	1,352	1,928	1,650	486
	재복역률	32.1	46.7	37.5	31.4	33.6	31.1	23.9
가석방	출소인원	7,157	20	1,357	1,444	1,859	1,827	650
	재복역인원	489	2	151	121	99	92	24
	재복역률	6.8	10.0	11.1	8.4	5.3	5.0	3.7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53	-	-	-	14	28	11
	재복역인원	13	-	-	-	5	7	1
	재복역률	24.5	-	-	-	35.7	25.0	9.1
사면	출소인원	478	18	54	104	117	116	69
	재복역인원	42	10	21	2	3	5	1
	재복역률	8.8	55.6	38.9	1.9	2.6	4.3	1.4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43.4%, 20대 28.8%, 30대 25.2%, 40대 26.3%, 50대 24.1%, 60대 이상 18.6%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6.7%)는 20세 미만, 가석방(11.1%)은 20대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50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7,917	754	610	1,962	3,318	3,731	9,426	1,625	2,548	3,943
	재복역인원	7,039	50	139	332	1,037	1,864	1,489	744	640	744
	재복역률	25.2	6.6	22.8	16.9	31.3	50.0	15.8	45.8	25.1	18.9
형기종료	출소인원	20,230	236	377	1,950	2,841	3,301	5,383	1,624	1,823	2,695
	재복역인원	6,495	32	118	329	974	1,729	1,297	743	576	697
	재복역률	32.1	13.6	31.3	16.9	34.3	52.4	24.1	45.8	31.6	25.9
가석방	출소인원	7,157	517	207	-	459	369	3,680	1	704	1,220
	재복역인원	489	18	17	-	61	110	173	1	63	46
	재복역률	6.8	3.5	8.2	-	13.3	29.8	4.7	100.0	8.9	3.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53	1	26	12	1	13	-	-	-	-
	재복역인원	13	-	4	3	-	6	-	-	-	-
	재복역률	24.5	-	15.4	25.0	-	46.2	-	-	-	-
사면	출소인원	478	-	-	-	18	48	363	-	21	28
	재복역인원	42	-	-	-	2	19	19	-	1	1
	재복역률	8.8	-	-	-	11.1	39.6	5.2	-	4.8	3.6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6.6%), 강도(22.8%), 성폭력(16.9%), 폭력(31.3%), 절도(50.0%), 사기·횡령(15.8%), 마약류(45.8%), 과실범(25.1%)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0.0%)·사면(39.6%)·가출소(46.2%)는 절도가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1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7,917	951	8,562	13,847	3,008	752	322	280	145	50
	재복역인원	7,039	248	2,136	3,724	735	110	40	32	10	4
	재복역률	25.2	26.1	24.9	26.9	24.4	14.6	12.4	11.4	6.9	8.0
형기종료	출소인원	20,230	928	7,172	9,097	2,077	552	227	115	38	24
	재복역인원	6,495	247	2,045	3,353	678	105	39	22	4	2
	재복역률	32.1	26.6	28.5	36.9	32.6	19.0	17.2	19.1	10.5	8.3
가석방	출소인원	7,157	15	1,287	4,444	876	196	92	138	88	21
	재복역인원	489	-	84	339	55	5	-	1	4	1
	재복역률	6.8	-	6.5	7.6	6.3	2.6	-	0.7	4.5	4.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53	-	-	-	-	-	2	27	19	5
	재복역인원	13	-	-	-	-	-	1	9	2	1
	재복역률	24.5	-	-	-	-	-	50.0	33.3	10.5	20.0
사면	출소인원	478	8	103	307	55	4	1	-	-	-
	재복역인원	42	1	7	32	2	-	-	-	-	-
	재복역률	8.8	12.5	6.8	10.4	3.6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 미만(26.1%), 6월 이상 1년 미만(24.9%), 1년 이상 3년 미만(26.9%), 3년 이상 5년 미만(24.4%), 5년 이상 7년 미만(14.6%), 7년 이상 10년 미만(12.4%), 10년 이상 15년 미만(11.4%), 15년 이상 20년 미만(6.9%), 20년 이상(8.0%)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36.9%) 및 가석방(7.6%)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2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53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73	761	785	720	609	556	616	639	655	647
고졸 검정	569	485	510	498	428	411	444	473	498	517
중졸 검정	238	207	228	188	147	126	150	155	144	123
초졸 검정	66	69	47	34	34	19	22	11	13	10

| 표 5-154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14	558	571	565	575	533	508	492	502	508
고졸 검정	325	390	370	390	394	383	371	364	379	425
중졸 검정	162	130	187	163	147	133	125	120	113	76
초졸 검정	27	38	14	12	34	17	12	8	10	7

| 표 5-155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교육인원	40	30	30	30	30	30	21	22	17	20
	졸업인원	10	5	9	6	7	6	5	7	6	8
천안	교육인원	-	-	-	-	-	-	-	-	-	-
	졸업인원	-	-	-	-	-	-	-	-	-	-
김천	교육인원	40	30	30	30	30	30	21	22	17	20
	졸업인원	10	5	9	6	7	6	5	7	6	8

| 표 5-156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1	51	457	68,162	
2012	51	503	78,826	
2013	51	535	68,786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2020	46	361	8,983	

| 표 5-157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실시 인원	8,744	6,789	6,202	5,763	8,604	10,066	10,525	9,909	11,566	4,917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8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1,165	1,209	1,282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75

| 표 5-159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4,323	4,099	4,245	4,417	4,322	4,991	5,080	4,850	4,859	134

| 표 5-160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11,566	11,681	11,578	11,855	12,755	14,393	11,095	8,891	9,004	59

| 표 5-161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1,120	1,177	1,261	1,338	1,361	1,431	1,583	1,913	1,908	27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62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069	4,915	4,833	4,688	4,706	4,765	4,830	4,777	4,592	4,495
교화위원	2,070	1,971	1,915	1,778	1,804	1,790	1,845	1,812	1,702	1,647
종교위원	1,962	1,942	1,967	1,924	1,895	1,931	1,910	1,891	1,864	1,835
교육위원	225	218	211	246	275	315	329	328	333	335
의료위원	123	112	108	98	102	98	97	91	84	77
취업위원	689	672	632	642	630	631	649	655	609	601

| 표 5-163 | 교화위원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647	61	37	74	1,108	19	348

| 표 5-164 | 종교위원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835	862	614	327	32

| 표 5-165 | 교육위원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35	75	13	27	12	208

| 표 5-166 | 의료위원 현황

(2020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77	67	2	2	0	6

| 표 5-167 | 취업위원 현황

(2020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01	411	17	51	42	80

| 표 5-168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 담 (명)	1,728	1,615	1,591	2,390	1,629	1,734	1,704	1,334	2,371	219
교화강연(회)	13	6	3	8	11	15	5	3	14	-
자매결연(명)	719	186	363	515	519	341	204	306	1,101	10
수 용 생 활 지 원 (명)	4,739	4,440	4,619	6,992	5,867	6,726	4,434	5,363	6,068	8,491

| 표 5-169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리지도(명)	37,072	39,667	41,207	37,790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99
자매결연(명)	9,652	2,920	3,989	3,448	3,828	3,333	7,158	11,641	12,360	356
수용생활지원(명)	26,093	27,305	24,780	22,336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교화도서기증(권)	2,361	1,782	401	670	346	3,441	164	3,809	1,013	151

| 표 5-170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훈련지도(명)	8,783	7,665	6,761	7,668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자매결연(명)	7	4	8	29	18	13	44	-	-	-
수용생활지원(명)	110	1	-	11	36	187	67	93	20	103
교화도서기증(권)	89	276	-	20	100	43	249	-	230	400

| 표 5-171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지원(명)	6,029	4,970	4,762	4,731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자매결연(명)	-	3	2	5	9	3	-	-	-	-
수용생활지원(명)	38	19	-	-	45	115	68	120	380	676
교화도서기증(권)	33	-	-	-	-	-	-	100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72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형자 총인원		31,032	31,620	32,076	32,867	34,425	36,082	35,990	34,633	34,605	34,621
취업 불가능인원		8,469	9,053	9,140	9,085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취업가능인원	계	22,563	22,567	22,936	23,782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취업인원	19,379	18,826	18,991	21,471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비율(%)	86	83	83	90	92	92	91	92	94	93
	불취업인원	3,184	3,741	3,945	2,311	1,877	1,828	2,112	1,772	1,380	1,432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73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32,000	32,913	33,789	37,699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실적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실적/계획(%)	122.6	115.6	124.6	125.3	132.6	112.1	115.9	109.5	103.0	102.4
실적 증가율(%)	18.7	△3.0	10.7	12.2	18.1	11.6	6.2	△0.6	△0.5	△0.6

| 표 5-174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실 적	39,220	38,038	42,099	47,246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직영작업	실 적	26,496	22,951	22,873	24,801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구성비 (%)	67.6	60.3	54.3	52.5	54.2	56.2	57.7	57.7	54.7	59.0
위탁작업	실 적	6,170	7,907	11,548	15,026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구성비 (%)	15.7	20.8	27.4	31.8	31.3	30.1	29.2	30.2	32.2	29.1
외통·개방	실 적	6,256	7,004	7,020	7,217	7,914	8,330	8,456	7,807	8,114	7,357
	구성비 (%)	16.0	18.4	16.7	15.3	14.2	13.4	12.8	11.9	12.9	11.7
기타	실 적	298	176	658	202	202	148	218	134	107	132
	구성비 (%)	0.8	0.5	1.6	0.4	0.4	0.2	0.3	0.2	0.2	0.2

| 표 5-175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총액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관수용품	계	23,857	20,320	19,354	22,504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교정기관	23,081	19,513	18,757	20,535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법무부산하	153	346	296	311	205	994	74	99	1,162	211
	부 외 처	623	461	301	1,658	2,327	3,250	4,209	3,569	1,863	1,507
일반판매		15,363	17,718	22,745	24,743	27,289	30,516	30,784	37,115	36,109	31,247

| 표 5-176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급액 (천 원)	10,550,869	11,966,506	14,901,986	17,798,954	20,231,129	20,853,628	22,641,637	19,882,229	23,129,488	20,621,076
지 급 연인원 (명)	4,958,200	4,965,893	5,022,670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1인당 1일평균 (원)	2,128	2,410	2,967	4,013	3,591	3,713	3,854	4,443	4,458	4,013

| 표 5-177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급인원	6	5 (1)	3	-	5	5 (2)	2	5 (2)	2	4 (1)
지 급 액	60,804	73,735 (42,709)	11,346	-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 ( )는 조위금

| 표 5-178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 급 액	549,227	599,907	700,846	630,667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지급인원	97	122	117	98	92	64	32	16	21	18
1인당 평균 지 급 액	5,662	4,917	5,990	6,435	7,468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 표 5-17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16	104,461	86,244	18,217	
2017	97,566	90,298	7,268	
2018	118,233	110,222	8,011	
2019	114,086	100,203	13,883	
2020	118,424	107,406	11,018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80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185,468	180,123	5,345

| 표 5-181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 업 종 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60%)	7,500 (60%)	6,500 (60%)	4,000 (60%)	3,500 (55%)	3,000 (50%)	1,400	1,300	1,200	3,700	3,200	2,700	900

| 표 5-182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업	1,080	1,238	1,405	1,636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나. 직업훈련

| 표 5-183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825	4,129	4,852	6,276	6,484	6,644	6,727	6,939	6,433	5,942
양성·향상 훈 련	3,076	3,386	3,336	3,811	3,758	3,913	3,719	4,313	4,276	4,397
숙 련 훈 련	369	350	249	397	360	364	457	608	626	777
일 반 훈 련	380	393	1,267	2,068	2,366	2,367	2,551	2,018	1,531	768

| 표 5-184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803	2,813	2,953	3,278	3,264	3,316	3,443	3,424	3,338	3,128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2	4	4	1	5	4	-	-	2	-
기 사	4	-	11	-	-	1	-	1	-	5
산업기사	288	252	158	79	50	56	92	87	60	100
기 능 사	2,509	2,557	2,780	3,198	3,209	3,255	3,351	3,336	3,276	3,023

| 표 5-185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6	85	95	101	87	76	77	98	99	94
지방대회	71	72	84	88	77	64	63	76	76	73
전국대회	15	13	11	13	10	12	14	22	23	21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86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계	45,422,910	50,322,102	54,966,229	61,652,158	66,372,908
	승객	40,976,012	45,744,545	48,888,699	55,316,870	60,054,078
	승무원	4,446,898	4,577,557	6,077,530	6,335,288	6,318,830
국민	소계	26,064,463	28,136,628	30,352,303	32,722,368	39,111,816
	승객	23,759,315	25,557,744	27,646,533	29,971,333	36,228,736
	승무원	2,305,148	2,578,884	2,705,770	2,751,035	2,883,080
외국인	소계	19,358,447	22,185,474	24,613,926	28,929,790	27,261,092
	승객	17,216,697	20,186,801	21,242,166	25,345,537	23,825,342
	승무원	2,141,750	1,998,673	3,371,760	3,584,253	3,435,750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계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승객	73,916,823	75,134,915	83,558,252	87,822,137	12,777,578
	승무원	6,071,151	5,272,787	5,350,168	5,725,956	1,924,253
국민	소계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승객	42,197,580	50,130,062	54,321,526	54,198,298	7,957,472
	승무원	3,116,318	3,314,968	3,538,144	3,597,091	1,214,009
외국인	소계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승객	31,719,243	25,004,853	29,236,726	33,623,839	4,820,106
	승무원	2,954,833	1,957,819	1,812,024	2,128,865	710,244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7 |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중 국	2,045,380	2,731,121	3,923,190	5,663,482	6,154,730
일 본	3,270,290	3,497,525	2,715,451	2,254,307	1,859,190
미 국	694,990	733,984	743,017	798,858	859,361
타 이 완	457,680	570,442	566,200	666,805	551,362
홍 콩	272,600	352,019	391,340	550,268	524,116
필 리 핀	113,552	126,566	133,595	162,615	412,197
태 국	262,703	334,502	313,347	412,217	375,021
말 레 이 시 아	136,531	161,970	187,322	227,434	223,782
베 트 남	106,360	110,250	114,357	141,827	199,323
인 도 네 시 아	85,351	110,209	119,179	132,547	194,472
러 시 아	86,129	104,273	119,691	164,628	191,214
싱 가 포 르	110,610	138,813	157,696	185,712	160,402
인 도	52,009	56,329	60,675	68,097	154,294
캐 나 다	112,417	119,943	122,330	135,163	147,715
오스트레일리아	114,844	121,795	114,106	129,504	134,357
영 국	97,817	104,724	106,783	113,786	124,833
독 일	80,142	86,327	86,759	89,004	101,251
프 랑 스	60,209	63,555	67,836	73,846	85,093
몽 골	48,632	61,771	65,446	63,584	81,201
우 즈 베 키 스 탄	29,910	42,133	44,326	48,777	59,453
뉴 질 랜 드	25,504	28,239	27,065	29,119	28,806
기 타	402,843	465,460	498,623	570,439	737,528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중 국	8,268,262	4,393,936	5,032,906	6,284,486	740,039
일 본	2,321,842	2,337,588	2,976,444	3,303,088	438,708
미 국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265,134
타 이 완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171,943
홍 콩	651,639	659,182	679,942	685,569	87,118
필 리 핀	566,693	459,588	471,532	516,503	120,171
태 국	474,262	503,777	565,784	580,191	78,878
말 레 이 시 아	311,686	308,152	383,467	409,254	48,741
베 트 남	299,084	380,929	519,448	624,640	112,938
인 도 네 시 아	296,377	231,908	250,248	280,146	67,301
러 시 아	238,171	275,779	308,665	350,093	75,117
싱 가 포 르	221,844	216,574	232,359	246,736	18,136
인 도	196,773	124,458	120,975	144,758	34,299
캐 나 다	178,023	178,761	196,859	208,280	35,437
오스트레일리아	153,125	151,583	154,390	174,681	23,559
영 국	136,900	128,046	133,149	146,132	21,124
독 일	111,413	111,077	117,173	121,989	24,543
프 랑 스	93,039	94,013	101,854	112,588	19,891
몽 골	82,780	108,139	118,783	118,977	22,535
우 즈 베 키 스 탄	71,299	81,711	89,391	95,634	17,570
뉴 질 랜 드	32,038	33,526	34,652	39,504	6,772
기 타	886,426	863,669	928,113	1,007,421	229,891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8 |

항구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인천공항	5,810,937	6,694,670	6,791,570	7,910,157	7,778,178
제주공항	374,352	610,609	1,035,720	1,188,019	958,601
김해공항	578,389	706,527	768,412	826,736	789,992
김포공항	1,097,356	1,200,431	1,080,350	1,056,803	943,451
부산항	236,334	259,977	244,125	223,248	460,625
인천항	364,524	364,662	416,320	465,523	543,334
청주공항	20,577	37,470	70,967	190,906	194,255
평택항	71,655	113,328	96,698	141,425	170,805
대구공항	12,039	9,962	11,961	40,523	51,145
군산항	28,568	28,877	30,859	35,035	47,844
감천항	7,327	9,384	9,800	10,070	56,558
울산항	8,120	7,928	8,593	8,429	48,852
광양항	3,431	2,452	9,651	9,622	29,080
오산공항	21,388	26,380	24,943	29,920	36,431
무안공항	4,135	4,591	23,639	32,019	37,727
양양공항	2,253	11,320	19,231	86,785	47,005
동해항	11,017	9,962	8,329	8,320	21,234
여수항	4,774	12,376	10,809	4,649	20,337
창원항	1,879	1,658	1,659	2,380	13,526
서산항	2,309	2,216	2,186	2,380	6,433
속초항	56	526	7,452	8,879	1,386
기타	5,083	6,644	5,060	400,191	1,102,902

항구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인천공항	10,010,950	9,288,559	10,789,900	11,983,837	1,899,649
제주공항	1,327,513	555,387	839,775	1,220,957	117,997
김해공항	1,059,397	1,062,683	1,279,277	1,375,031	154,778
김포공항	1,029,912	922,837	1,084,115	1,165,403	148,795
부산항	850,990	412,465	380,537	450,550	82,576
인천항	621,693	332,305	410,667	510,530	34,139
청주공항	237,282	61,021	68,166	89,695	5,756
평택항	179,051	211,138	210,495	296,933	26,151
대구공항	103,339	68,730	107,407	204,324	19,520
군산항	65,265	76,979	109,649	169,779	13,632
감천항	57,818	57,964	56,697	60,005	26,365
울산항	48,071	46,328	43,955	43,266	26,247
광양항	44,614	38,986	35,377	34,642	18,956
오산공항	34,994	32,599	32,306	28,809	27,188
무안공항	34,295	4,074	7,717	20,770	1,275
양양공항	34,202	2,446	13,699	12,113	4,724
동해항	27,978	31,066	28,465	28,423	6,757
여수항	26,904	26,031	31,798	59,960	18,417
창원항	13,191	13,034	13,071	13,389	7,715
서산항	6,590	7,782	8,527	8,425	2,904
속초항	1,101	11,858	4,969	5,938	516
기타	1,603,157	305,237	73,953	97,724	15,788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9 |

체류자격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계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사증면제(B-1)	909,930	1,066,334	1,090,907	1,426,293	1,249,506
관광통과(B-2)	4,969,884	5,524,120	5,040,354	5,335,626	4,632,593
단기상용(C-2)	182,404	22	-	-	-
단기종합(C-3)	1,324,640	2,102,656	2,728,573	3,725,073	3,635,898
유 학(D-2)	112,291	111,219	114,818	117,836	140,160
기술연수(D-3)	2,274	1,951	1,806	1,663	1,934
일반연수(D-4)	37,432	34,413	37,282	45,624	62,550
종 교(D-6)	2,190	4,083	2,362	2,323	2,292
주 재(D-7)	8,469	8,908	9,234	9,103	8,991
기업투자(D-8)	38,102	39,584	39,859	40,550	40,795
무역경영(D-9)	18,191	17,456	32,326	38,867	33,958
교 수(E-1)	7,824	8,181	8,186	7,323	7,555
회화지도(E-2)	44,108	40,848	38,572	34,567	32,299
연 구(E-3)	8,023	8,525	9,223	9,670	9,810
예술흥행(E-6)	3,655	4,162	4,368	4,710	4,596
특정활동(E-7)	29,143	35,907	36,904	39,260	43,300
비전문취업(E-9)	106,442	99,140	105,738	115,294	123,433
선원취업(E-10)	8,900	7,173	8,281	9,574	9,431
방문동거(F-1)	29,597	38,883	41,740	41,043	49,310
거 주(F-2)	117,377	19,099	24,948	30,189	35,728
동 반(F-3)	27,671	31,704	36,544	40,173	43,222
재외동포(F-4)	190,212	227,836	280,130	349,137	405,948
영 주(F-5)	58,805	70,890	87,497	101,184	118,553
기 타	428,939	618,856	898,682	1,156,937	2,667,839

체류자격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사증면제(B-1)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222,306
관광통과(B-2)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939,748
단기상용(C-2)	-	-	-	-	
단기방문(C-3)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503,028
유 학(D-2)	169,715	212,295	248,472	291,007	89,414
기술연수(D-3)	1,678	1,723	1,449	1,103	321
일반연수(D-4)	81,033	90,357	83,538	84,653	29,048
종 교(D-6)	2,348	2,428	2,313	2,398	647
주 재(D-7)	9,160	8,548	8,460	9,072	2,045
기업투자(D-8)	42,007	41,984	41,886	42,442	9,252
무역경영(D-9)	26,302	18,288	9,705	8,669	3,169
교 수(E-1)	7,550	7,491	7,160	6,904	2,061
회화지도(E-2)	32,158	30,922	27,291	29,115	11,326
연 구(E-3)	9,494	9,618	9,508	9,212	2,569
예술흥행(E-6)	3,996	3,765	4,570	5,436	1,790
특정활동(E-7)	46,324	47,528	46,661	46,475	12,398
비전문취업(E-9)	134,764	140,072	145,174	151,116	41,992
선원취업(E-10)	9,877	10,720	11,737	11,634	6,325
방문동거(F-1)	69,742	82,857	88,747	97,159	32,329
거 주(F-2)	43,041	48,924	53,672	58,425	13,330
동 반(F-3)	43,684	40,048	38,402	40,284	13,651
재외동포(F-4)	468,336	515,587	565,636	579,522	112,752
영 주(F-5)	134,138	151,115	162,760	177,531	34,140
기 타	3,666,764	1,881,740	1,659,120	1,832,218	576,204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0 |

국가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중 국	1,016,607	1,018,074	1,070,566	1,101,782	894,906
베 트 남	149,384	169,738	196,633	224,518	211,243
미 국	140,222	143,568	151,018	156,982	145,580
태 국	100,860	153,259	197,764	209,909	181,386
필 리 핀	56,980	58,480	60,139	62,398	49,800
우즈베키스탄	54,490	62,870	68,433	75,320	65,205
일 본	51,297	53,670	60,878	86,196	26,515
인도네시아	47,606	45,328	47,366	48,854	36,858
캄보디아	45,832	47,105	47,012	47,565	41,405
몽 골	35,206	45,744	46,286	48,185	42,511
네 팔	34,108	36,627	40,456	42,781	39,743
타 이 완	34,003	36,168	41,306	42,767	19,444
러 시 아	32,372	44,851	54,064	61,427	50,410
스리랑카	27,650	26,916	25,828	25,064	22,466
캐 나 다	26,107	25,692	25,934	26,789	21,794
미 얀 마	22,455	24,902	28,074	29,294	26,412
방글라데시	15,482	16,066	16,641	18,340	16,823
오스트레일리아	13,870	13,008	14,279	15,222	7,913
파 키 스 탄	12,639	12,697	13,275	13,990	12,842
인 도	10,515	11,244	11,945	12,929	10,892
영 국	7,180	6,727	6,972	7,550	5,871
기 타	114,576	127,764	142,738	166,794	106,056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1 |

체류자격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사증면제(B-1)	112,323	177,629	228,194	248,753	179,332
관광통과(B-2)	118,566	121,725	149,474	204,541	51,977
단기방문(C-3)	190,443	199,518	218,743	256,696	114,261
단기취업(C-4)	594	1,719	1,302	1,645	2,356
유 학(D-2)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기술연수(D-3)	2,950	2,705	2,461	1,964	1,634
일반연수(D-4)	41,592	49,939	59,729	63,691	52,952
종 교(D-6)	1,719	1,723	1,594	1,561	1,254
상사주재(D-7)	1,631	1,340	1,308	1,400	1,057
기업투자(D-8)	5,999	5,939	5,889	5,909	5,587
무역경영(D-9)	5,697	2,982	2,520	2,352	2,136
교 수(E-1)	2,511	2,427	2,341	2,187	2,053
회화지도(E-2)	15,450	14,352	13,749	13,910	12,621
연 구(E-3)	3,174	3,214	3,145	3,132	3,110
예술흥행(E-6)	4,302	3,704	3,633	3,549	3,011
특정활동(E-7)	21,498	21,206	21,884	21,314	19,534
비전문취업(E-9)	279,187	279,127	280,312	276,755	236,950
선원취업(E-10)	15,312	16,069	17,447	17,603	17,552
방문동거(F-1)	103,826	111,449	118,192	122,886	105,382
거 주(F-2)	39,681	40,594	41,099	43,671	43,666
동 반(F-3)	22,828	22,457	22,360	22,890	20,050
재외동포(F-4)	372,533	415,121	444,880	464,152	466,682
영 주(F-5)	130,237	136,334	142,151	153,291	160,947
방문취업(H-2)	254,950	238,880	250,381	226,322	154,537
기 타	226,398	223,470	232,129	246,228	275,624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2 |

사무소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서 울	116,280	113,921	119,496	118,335	102,859
서 울 남 부	126,799	121,990	130,854	127,223	106,526
부 산	47,788	48,752	51,849	52,323	46,147
인 천	97,343	102,281	112,056	118,283	110,849
수 원	119,924	123,675	132,472	133,871	121,265
제 주	19,593	21,689	24,841	25,668	22,943
대 구	47,524	48,647	51,947	54,698	49,605
대 전	35,358	36,771	39,186	41,593	37,511
여 수	5,897	6,004	6,576	6,817	6,673
양 주	36,416	36,774	38,212	39,806	37,291
광 주	29,724	31,564	33,479	34,535	31,372
창 원	31,279	30,815	30,911	30,854	27,472
춘 천	10,561	11,146	11,808	12,196	10,924
청 주	34,169	35,357	38,148	39,114	35,610
전 주	21,830	23,322	25,647	26,973	25,496
울 산	32,933	30,701	31,295	32,239	28,081
세 종 로 (출)	63,173	63,312	67,776	69,750	61,768
안 산 (출)	85,796	85,764	91,433	91,164	83,680
구 미 (출)	13,287	13,127	13,140	13,078	12,111
포 항 (출)	7,557	7,844	8,612	8,740	8,349
천 안 (출)	34,530	37,231	39,703	41,226	37,188
서 산 (출)	7,394	7,676	8,115	8,308	7,843
고 양 (출)	22,524	22,929	23,939	24,080	22,177
목 포 (출)	14,452	13,386	14,204	15,424	14,621
거 제 (출)	14,178	9,089	7,473	8,302	6,641
군 산 (출)	5,490	5,266	5,700	6,101	5,792
평 택 (출)	37,829	40,424	43,855	45,606	43,623
김 해 (출)	20,761	21,123	21,315	21,883	19,492
기 타	21,288	21,182	22,584	23,617	21,631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3 |

지역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경 기	373,923	381,628	408,526	414,318	380,144
서 울	273,441	267,153	283,984	281,876	242,623
경 남	81,021	75,136	74,304	76,123	67,239
충 남	64,098	68,280	73,174	76,375	69,622
인 천	59,103	62,596	67,869	72,259	67,648
경 북	51,351	53,364	56,969	58,119	52,469
부 산	41,840	42,837	45,738	45,999	40,366
충 북	35,499	36,656	39,537	40,714	37,060
전 남	31,750	31,221	33,042	34,638	32,906
전 북	27,320	28,588	31,347	33,074	31,288
대 구	26,493	26,442	28,033	30,191	27,798
울 산	23,457	20,513	20,002	20,450	17,884
광 주	19,920	21,279	22,815	23,825	21,323
제 주	19,593	21,689	24,841	25,668	22,943
대 전	17,035	17,431	18,184	19,109	16,895
강 원	15,833	16,949	18,261	19,069	17,332

※ 충남은 세종시(5,076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94 |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775,715	841,308	878,665	878,439	811,211
중 국	652,028	702,932	728,539	719,269	662,845
미 국	46,050	45,177	45,011	45,655	44,039
캐 나 다	15,959	15,947	15,933	16,046	15,975
우즈베키스탄	26,385	31,081	34,355	36,752	31,962
러 시 아	15,555	21,264	25,302	28,020	26,871
오스트레일리아	4,609	4,617	4,624	4,783	4,430
뉴 질 랜 드	2,387	2,395	2,436	2,490	2,393
카 자 흐 스 탄	5,236	9,223	12,586	14,992	13,033
독 일	908	854	841	809	787
일 본	817	827	826	852	768
기 타	5,781	6,991	8,212	8,771	8,108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95 |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유 학(D-2)	76,040	86,875	102,690	118,254	101,810
한국어연수(D-41)	39,873	48,208	57,971	61,867	51,545
외국어연수(D-47)	14	4	10	10	6
증 감 률 (전년대비, %)	(20.3%)	(16.5%)	(18.9%)	(12.1%)	(-14.9%)

국가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15,927	135,087	160,671	180,131	153,361
중 국	66,614	67,133	68,994	71,719	52,102
베 트 남	15,193	27,563	45,143	57,539	57,945
몽 골	6,000	7,784	8,650	8,739	8,240
우즈베키스탄	2,386	4,793	7,840	10,499	9,077
일 본	2,384	2,464	2,676	2,887	2,193
인도네시아	1,365	1,418	1,520	1,461	1,342
파 키 스 탄	1,266	1,461	1,720	1,905	1,531
인 도	1,151	1,406	1,411	1,451	1,289
말레이시아	1,099	1,093	1,075	969	724
미 국	1,062	1,119	1,210	1,385	861
(타 이 완)	1,030	1,211	1,354	1,108	859
방글라데시	824	1,016	1,206	1,387	1,160
러 시 아	769	826	884	965	918
네 팔	722	1,078	1,636	2,331	2,796
필 리 핀	672	666	659	613	452
기 타	13,390	14,056	14,693	15,173	11,872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96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인 원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증감률 (전년대비, %)	(0.5%)	(2.0%)	(2.4%)	(4.3%)	(1.5%)

국가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중 국	56,930	57,644	58,706	60,324	60,072
베 트 남	41,803	42,205	42,460	44,172	44,058
일 본	13,110	13,400	13,738	14,184	14,595
필 리 핀	11,606	11,783	11,836	12,030	12,002
캄 보 디 아	4,473	4,459	4,496	4,641	4,638
미 국	3,354	3,471	3,658	3,883	4,312
태 국	3,182	3,671	4,411	5,130	5,929
몽 골	2,381	2,396	2,438	2,497	2,486
우즈베키스탄	2,302	2,367	2,425	2,688	2,625
캐 나 다	1,318	1,345	1,320	1,334	1,397
러 시 아	1,321	1,367	1,494	1,668	1,800
네 팔	1,032	974	901	884	841
파 키 스 탄	936	937	968	984	979
타 이 완	929	1,072	1,213	1,394	1,472
영 국	842	911	969	1,045	1,120
인 도 네 시 아	687	748	809	905	998
방 글 라 데 시	369	369	368	375	361
기 타	5,799	6,338	6,996	7,887	8,909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97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귀화	10,108	10,086	11,556	9,914	13,885
	회복	2,303	2,775	2,698	2,443	1,764
중 국	귀화	5,126	4,781	4,838	4,371	7,932
	회복	113	245	144	181	120
베 트 남	귀화	3,289	3,742	4,849	3,867	4,076
	회복	56	57	45	39	29
필 리 핀	귀화	337	359	597	423	375
	회복	3	7	7	11	7
몽 골	귀화	107	93	99	102	145
	회복	7	17	14	6	10
우즈베키스탄	귀화	62	48	72	78	138
	회복	19	27	12	6	8
일 본	귀화	35	29	17	14	15
	회복	31	38	53	41	54
태 국	귀화	41	52	58	52	68
	회복	5	4	5	3	7
파 키 스 탄	귀화	33	51	42	48	26
	회복	0	10	2	0	0
기 타	귀화	1,078	931	984	959	1,110
	회복	2,069	2,370	2,416	2,156	1,529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8 |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청	1차	71,042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이의신청	29,704	2,202	349	1,759	3,258	5,277	3,722	3,113	4,068	5,956
심사결정	소계	63,682	4856	914	3,349	6,238	10,602	9,634	6,881	9,311	11,897
	1차	39,954	2,901	598	2,388	4,244	6,326	5,219	4,297	5,877	8,104
	이의신청	23,728	1,955	316	961	1,994	4,276	4,415	2,584	3,434	3,793
철회*	소계	16,970	895	350	408	351	815	1,245	2,412	4,264	6,230
	1차	16,112	840	327	362	278	735	1,197	2,305	4,138	5,930
	이의신청	858	55	23	46	73	80	48	107	126	300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99 |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심사완료		34,836	2,646	523	1,574	2,755	5,665	5,874	3,960	5,073	6,766
난민인정(보호)	소계 (보호율, %)	3,461 (9.9)	495 (18.7)	63 (12)	627 (39.8)	303 (11)	350 (6.2)	437 (7.4)	652 (16.5)	310 (6.1)	224 (3.3)
	인정 (인정률, %)	1,091 (3.1)	324 (12.2)	57 (10.9)	94 (6)	105 (3.8)	98 (1.7)	121 (2.1)	144 (3.6)	79 (1.6)	69 (1)
	인도적 체류	2,370	171	6	533	198	252	316	508	231	155
불인정		31,375	2,151	460	947	2,452	5,315	5,437	3,308	4,763	6,542

※ 2020. 12. 31. 기준 시점에서 작성된 최종 심사결과에 대한 통계임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1건 포함(2009년 4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4년 1건)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사설과를 기획관리실 사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악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 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산설 및 인력 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 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 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 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 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2016.12.30.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2017. 5.24.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2017. 6.20.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 8. 1.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2017.10.20.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2017.12.29.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2018. 2.20.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2018. 3.30.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시행규칙 일부개정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147	2018. 5. 8.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18. 5.10.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2018. 6.26.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50	2018.10. 2.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2018.10. 4.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51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2018.12. 4.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52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2018.12.31.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53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2019. 2.26.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54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2019. 5. 7.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2019. 8.13.	법무부령 제956호	법 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2019.12.31.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2020. 2.25.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0. 4.28.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63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2020.12.30.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비행예방교육과

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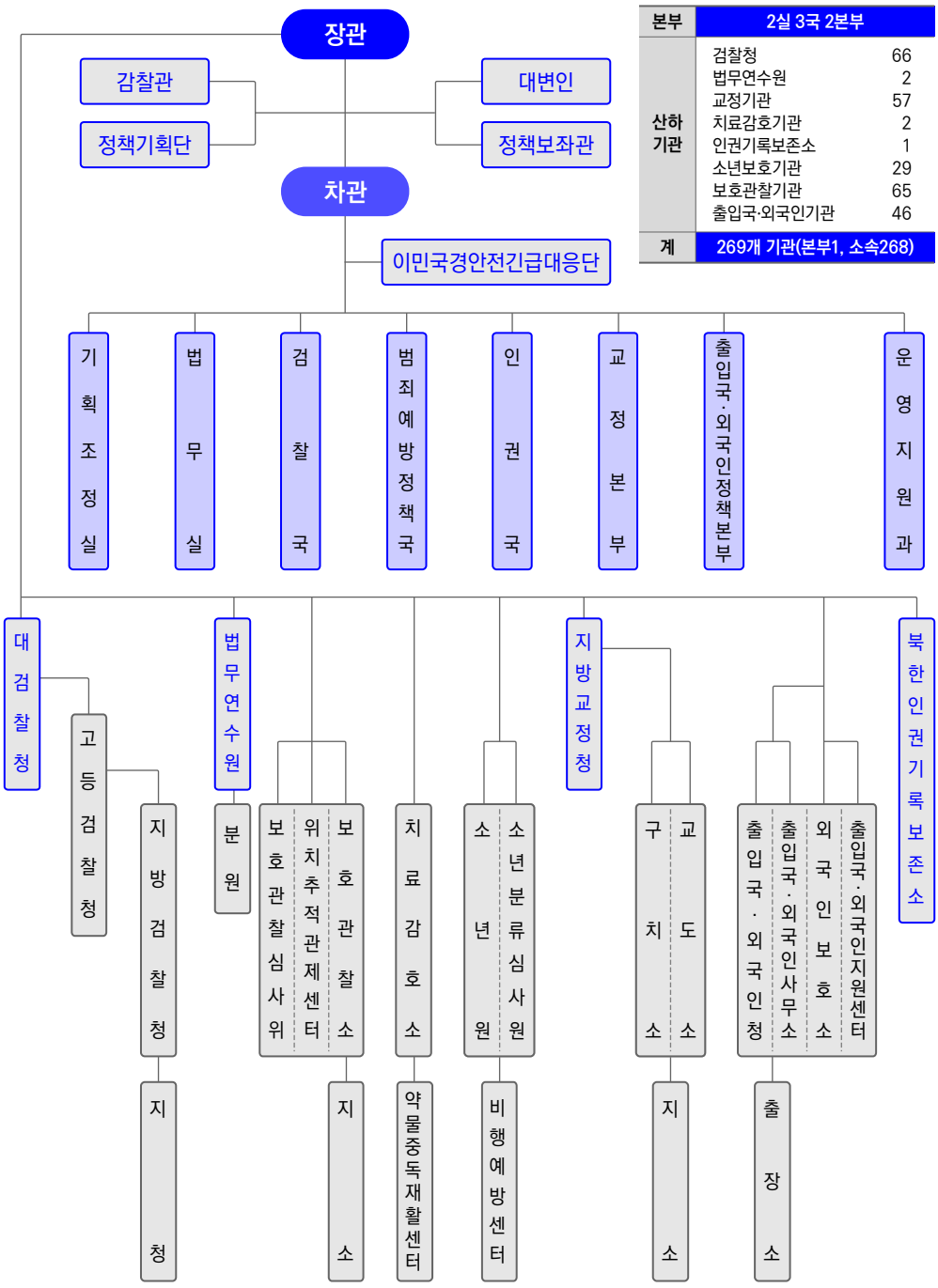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6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7
	치료감호기관	2
	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5
	출입국·외국인기관	46
계	269개 기관(본부1, 소속268)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형무소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조선형무관학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형무관학교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교도관학교 138	138	138	138	138	138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 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 무 연 수 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법 무 연 수 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북 한 인 권 기 록 보 존 소								12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274	1. 1.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의무관 부재 기관에서 타 기관 의무관 진료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보호소년의 건강권을 보장 •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관리 철저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전담직원 지정 규정 신설	소년보호과
1280	1. 1.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 자격요건(해촉사유) 중 다른 법령에 없는 결격사유 삭제, 소년보호위원 임기 3년 규정 신설 •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 도입, 활동유예 항목의 구체적 지정 등을 통한 소년보호위원 활동 내실화 도모	소년보호과
1281	1. 31.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사전컨설팅 감사로 용어 정리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세부기준, 절차, 효력을 정비	감찰담당관실
1282	2. 1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규정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 • 보호(일시)해제된 난민신청자의 지원센터 이용 규정 신설	난민정책과
1284	2. 25.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사관 자격 관련 업무 소관부서(범죄예방기획과→보호관찰과) 및 주관 담당자 변동	보호관찰과
1285	2. 26.	보호소년 교육지침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적용 및 직업훈련 반편성 시기 최적화, 예·체능교육 활성화 정책 반영	소년보호과
1286	3. 6.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 경제사범의 재취업이나 영업 활동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형사기획과
1287	3. 13.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난민심의과가 신설됨에 따라 난민위원회 간사를 난민심의과장으로 변경 •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분과위원회 확대 운영	난민심의과
1288	3. 25.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289	3. 25.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규정	• 법무행정 분야의 소년보호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년보호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399	4. 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국제분쟁대응과
1290	4. 9.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실무수행능력평가 응시자격 수정 • 5급 직위분류표 및 권역별 기관분류표 수정	범죄예방기획과
1291	4. 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등 용어 현행화	출입국기획과
1292	4. 9.	출입국관리기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반영 등 용어 현행화	출입국기획과
1293	5. 6.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정보시스템(ICRM2019)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출입국자기록의 수정·보완 업무가 민원처리 청장·사무소장 결재 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	이민정보과
1294	5. 8.	검찰통계사무규정	• 형법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통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주요 범죄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검찰과
1295	5. 8.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폐지사항 현행화 • 숙직자 휴무규정의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개정	보호관찰과
1296	5. 18.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국무조정실의 「2020년 규제정부입증책임제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등의 개념, 절차 등 관련 근거 마련	혁신행정담당관실
1297	5. 20.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상위 근거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 • 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기한 변경	감사담당관실
1298	5. 27.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조항 신설 • 사건 조사 취소·중지 절차 개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299	6. 26.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 법무부감찰위원회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7조 제2항 삭제	감찰담당관실
1300	7. 1.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운영지원과
1301	7. 14.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 전담관리대상 자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기록 제외, 전담관리자료의 열람·지원실적 통계 및 연간 세부시행계획·전년도 추진결과 통보 의무 조항 삭제 및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이민정보과
1302	8. 3.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 보호·출입 8급 승진임용권 본부 환원 • 소속기관의 임기제공무원 등 시험실시권 근거규정 마련	혁신행정담당관실
1303	8. 14.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추가 • 일반해제 대상의 범위 보정 • 보증금 국고귀속절차 보완	이민조사과
1304	8. 21.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간사 및 자문확인서 확인자를 검사에서 사무관으로 변경	국제법무과
1305	8. 25.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 「공공감사기준」 반영, 자체감사기준 세분화 • 재심의(면책)심의회 설치·운영 규정 신설,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업무의 공정성과 적절성 확보	감사담당관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06	8. 27.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 코로나19관련 해외유입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각종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	출입국기획과
1307	9. 1.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	• 법무·교정행정에 관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정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사항을 발굴하여 자문하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교정혁신추진단
1308	9. 16.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운영지원과
1309	9. 28.	보호소년 처우지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동일한 규격의 청원함 규격을 신설하고, 서식을 비치하도록 하여 청원의 편의성 제고 •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생활성적의 상·벌점 부과 기준 통일	소년보호과
1310	9. 28.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분리되었던 주무과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시설 내 감호와 외부 감호로 단순화 • 벨트형 족승의 사용방법 규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스총 탄환 폐기 등 보호장비 관련 내용 구체화·명문화	소년보호과
1312	10. 8.	북한인권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북한인권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한 자료평가심의회의 운영 등 절차 마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313	10. 21.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대체역 복무관리를 위한 신규대원 배치 및 전보, 복무관리 및 사고예방, 복제 및 지급품, 휴가·종교활동 및 복무점검·실태조사, 예비군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 제정	교정기획과
1314	10. 21.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 대체복무요원 교육 운영계획, 교육과정 및 기간, 준수사항 및 휴대금품 관리, 종교활동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	교정기획과
1315	10. 21.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 공증인 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 중 법무부 소속 검사 부분을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조문 체계 정비 위해 개정	법무과
1316	10. 28.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 인사혁신처와의 전문직위 협의결과 반영 • 출입국 4급 직위 변경 등 직제 개정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317	10. 28.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지침	• 근로자 채용 시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318	10. 29.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호소년과 처우형태가 전혀 다른 위탁소년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년보호과
1319	10. 29.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 개편 및 명칭 변경사항 반영	소년보호과
1320	10. 2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영상자료 중 재판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보관기간 '1년'을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로 변경하여 법정 대응력을 강화	소년보호과
1321	11. 9.	법무부 감찰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의 임의규정화 추진	감찰담당관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22	11. 30.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성과관리 운영규정의 기관·부서 명칭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춰 현행화	혁신행정담당관실
1324	12. 11.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능 :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 운영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	혁신행정담당관실
1325	12. 11.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인한 징계,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징계의결 등 요구 : 200만원 이하 지원 - 고소·고발 등 : 500만원 이하 지원(기소 이전에 한함) - 민사상 책임 소송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혁신행정담당관실
1326	12. 14.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 세부규정에 규정된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침에 규정하여 체계 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의료과
1327	12. 15.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분과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석한 위원의 의결서 제출 근거 등 마련	난민심의과
1328	12. 16.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비공개)	• 교정시설의 방호업무 및 각종 교정장비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 등 규정	보안과
1329	12. 21.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 '과' 정원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팀' 설치기준 제시 • 기구 및 인력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업무량 등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근거 신설	교정기획과
1330	12. 22.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여 운영방식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제형사과
1331	12. 23.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소속기관장의 전보인사에 관한 의견 제시 근거 규정 신설 • 실무수행능력 대상 법령 및 보호직 5급 직위 분류표 수정	범죄예방기획과
1332	12. 28.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45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333	12. 28.	전시 법무부 위임전결규정(대외비)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1223호)에 따라 일부 부서의 전시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334	12. 28.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 근무 시간을 1~3시간 범위 내로 조정 가능	보호관찰과
1335	12. 31.	치료감호소 감호업무지침(비공개)	• 병동 4부제 시범운영에 따른 근무구분에 '4부제' 추가 • 피감호자의 이상행동 발견에 대한 보고체계에 '주치의' 추가 및 용어정비 등	치료처우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36	12. 31	검사윤리강령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	감찰담당관실
1337	12. 31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형사법제과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45	1. 9.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 지침	• 법무행정 및 교정정책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하는 정책자문단 운영	교 정 기 획 과
1246	1. 15.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경비의 예산·결산 및 신청·지급·관리·집행·정산 등 회계처리	분 류 심 사 과
1247	3. 13.	교정위원 운영지침	• 교정위원의 신규위촉 대상자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교정참여활동실적을 6개월 이상 충족에서 1년 6개월 이상 충족으로 상향 조정 • 교정위원 사망의 경우 사망한 때 위촉에 대한 자연 소멸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촉 절차를 생략하고 교정위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함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변경	사 회 복 귀 과
1248	3. 16.	영치금품 관리지침	• 영치금 관리·감독 개선 정기검사 강화	복 지 과
1249	3. 16.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재난경보 발령 기준 개선에 따른 예규 개정	비상안전 기획관실
1251	5. 6.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310호) 일부 개정(2019. 12. 31.)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 규정 신설	혁신행정 담당관실
1252	5. 15.	분류처우 업무지침	• 분류심사 유예자 관리 규정, 노역수형자 분류심사 규정, 수형자 신입분류심사 대상자 관련규정, 수형자 부정기 재심사 관련 규정, 무기형 수형자 재심사 관련 규정 등 보완 • 분류심사 거부자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규정 신설	분 류 심 사 과
1253	5. 20.	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	• 「정부조직법」이 '17. 8. 개정됨으로 인하여 정부조직 명칭 변경사항 등 개정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실무를 반영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법 무 심의관실
1254	5. 26.	공익법무관 관리지침	•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함 • 공익법무관의 직무교육, 임용·배치, 복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	법 무 과
1255	6. 1.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	•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 등이 감찰첩보 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명으로 조서 및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명조서 및 진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업무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감 찰 담당관실
1257	6. 8.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임용 규정	• 전문경력관 가군의 전문성 강화, 숙련공 양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가군 임용자격 요건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로 임용자격 요건 강화 및 명확한 용어 사용	직 업 훈 련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258	6. 18.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적용범위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포함 여부가 혼란의 여지가 있어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제외됨을 명시 • 시스템관리자의 대량메일 발송 여부에 대한 승인 절차 삭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보발송 500건 이상 시 업무시간 외에 발송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 •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의 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고, 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의견을 즉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	정보화담당관실
1259	6. 18.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코로나 대비 비대면 제도 운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면회의와 병행한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도입 근거 마련 • 민간 전문위원을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적법 시행령에 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지침에 반영하여 우수인재 심의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	국적과
1260	7. 8.	심리치료 업무지침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 근거 마련 및 마약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구분기준에 '이수명령 시간' 추가 • 소속기관 심리치료 집행기구에 '심리치료과' 추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 '심리치료과장' 추가 •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위기상담 지속 근거 및 수용자 상담 관련 사례회의 개최 근거 마련	심리치료과
1261	9. 3.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신입수용자 입소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교부 •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을 수형자에서 수용자로 변경 등	사회복귀과
1262	9. 11.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입법위원회 운영지침	• 유엔 9대 핵심인권협약 중 미가입 협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 및 국회 비준을 위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를 꾸려 국내법 정비 방안 마련	인권정책과
1263	9. 21.	보관금품 관리지침	• 용어 정비 및 지침 제명 변경	복지과
1264	10. 15.	분류센터 운영지침	• 분류센터 처우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규정 신설 • 최근 법죄 동향을 반영한 분류센터 대상자 확대 • 분류센터 관할 외 대상자 선정 및 심사규정 신설 • 재범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 등에 외부전문위원의 실질적 참여 규정 신설	분류심사과
1265	11. 2.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교도작업제품 평가감 판매 범위 확대 • 비생산작업자 직영생산작업 및 취사원에 편입 • 개방지역작업자 작업장려금 지급 비율 인상 • 작업장 전체 실시 미작업시간은 감액 제외 • 피보호 감호자 근로등급 축소 및 편입 변경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내용 변경 • 공제작업시간 감액기준표 내용 변경 • 공휴일 또는 기타 휴일작업시간 계산율 조정	직업훈련과
1268	11. 17.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에 대해 위치, 교통, 해당 청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을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에서 완화함	검찰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69	11. 19.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 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필요 사항 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270	12. 28.	교정기관 공용차량 관리지침	•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	복지과
1271	12. 29.	국적업무처리지침	• 코로나19관련 해외유입 확산방지 등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각종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	국적과
1272	12. 30.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 청원조사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엄수 등 조사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 • 청원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청원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 • 수용자가 청원취하서 또는 고충해소 종결서를 제출하여 각하 또는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실질조사를 할수 있는 규정 신설	분류심사과
1273	12. 31.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	감찰담당관실
1274	12. 31.	가석방 업무지침(별표1 비공개)	•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가석방 신상조사표 양식 변경에 따른 작성요령 반영 • 기존 지침 제3조(대상자 선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의 근거 마련 • 감영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분류심사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2.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지시	•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디엔에이 강제채취 규정 효력 상실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 지시	무	보 안 과
1. 6.	교정기관 수용정원 조정(안) 시달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거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증감 수용인원을 수용정원에 반영	무	보 안 과
1. 6.	결혼이민(F-6) 사증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알림	• 결혼이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외교부 (재외공관)	이 민 통 합 과
1. 8.	'20. 1월 불법 유흥 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철저 이행 지시	• 2020. 1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 21.	대포차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 합동 단속 지시	• 2020. 2. 1.~2. 29.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지방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대포차 운행 외국인 단속	기	이 민 조 사 과
1. 2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정 지시	•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 대상자의 불복 절차 미규정으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안 공포·시행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한 디엔에이시료 채취 업무 관련 지시	무	보 안 과
1. 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시달 (주의단계)	• 「관심」에서 「주의」 격상에 따른 교정기관 대응방안, 대책반 편성 및 상황실 운영, 신입수용자 출입 단계부터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 절차 강화	무	의 료 과
1. 22.	'20년도 범죄예방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시달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74개소), 외국인 밀집지역 담당관제 지정·운영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 22.	외국인등록(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지시	• ICRM2019 전환 이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지시일까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	이 민 정 보 과
1. 22.	사회통합교육 참여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 수업참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교육,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타 수강생과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등	기	이 민 통 합 과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시달(경계단계)	• 「주의」에서 「경계」 격상에 따른 교정기관 추가 대응방안 시달, 교화활동, 귀휴 등 잠정 중단. 격리사동 운영, 신입수용자 7일 이상 신입거실 수용 등	무	의 료 과
2. 3.	코로나19 의심환자 입소 시 대응방안 지시 시달	• 의심환자 입소 또는 발생 경우 대응방안 지시 - 격리된 수용자 및 의심환자 N95마스크 착용, 1회용품 식기 사용 및 폐기	무	의 료 과
2. 4.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인수 계획 시달	• 대용감방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수 결정에 따른 세부 인수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2. 4.	소년보호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 전파	• 기관 소재지 내 확진자 발생 여부 수시 확인 • 확진자 접촉 의심 직원 등 신속 파악 등 사전 대책 마련	정	소 년 보 호 과
2. 11.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철저	• 소년원 검정고시 특별반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수업 및 자율학습 시행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2. 13.	2020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방안 시달	• 전국 36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각 관서별 특별단속지역 단속·순찰 자체 시행계획 수립 등	기	이 민 조 사 과
2. 23.	코로나19 유입 차단 조치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상 단체행사 참여 등 사실 확인 시 신속히 보건소 통보 후 자가격리 조치	정	소 년 보 호 과
2. 23.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면회 중지 알림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면회 중지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2. 2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른 대응지침 시달 (심각단계)	• 전 직원 비상근무 체계 가동 및 유관기관 지원 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 언론 대응팀 가동, 격리사동 추가 확보, 외부업체 추가방역 및 자체 방역 강화 등	무	의 료 과
2. 26.	「교정시설 방호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시행 알림	• 교정시설 방호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지휘·감독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 시달	무	보 안 과
2. 27.	소년보호기관 외부인 출입제한에 따른 처우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알림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외부 처우심사위원의 회의 참석 방식을 비대면(전화통화) 형태로 전환	정	소 년 보 호 과
3. 2.	교정시설 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대응방안 시달	• 최근 14일 이내 입소한 신입수용자 중 신천지 관련 수용자 철저 파악, 검찰 및 경찰과 협의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등 신입 수용자 최소화 등	무	의 료 과
3. 4.	'코로나19'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한 변호인·공무상 접견 등 운영 관련 알림	•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변호인접견 등으로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변호인 대상 안내 등 감염병 예방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3. 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 등 선거업무 지침 시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기간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선거업무 지침 시달	무	보 안 과
3. 4.	교도작업 면 마스크 제작 지시	• 전국 13개 봉제작업장 마스크 생산체제 전환	무	직 업 훈 련 과
3. 6.	학사업무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 개최 알림	• 교과교육 소년원과 일반 중·고등학교의 학사업무 세부 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3. 8.	코로나19 대응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정지 등 조치 지시	• 일본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 조치 발표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3. 12.	전자장치부착 대상자 석방 통보 업무 철저 지시	• 전자장치부착대상자 출소 시 관할 보호 관찰소에 대한 석방 통보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3. 16.	코로나19 관련 교정민원콜센터 감염관리지침 시달	• 근무자 상시 마스크 착용, 상담실 차단벽 설치 및 구획분리, 퇴근 후 다중밀집시설 이용 등 자제 교육 등	무	의 료 과
3. 16.	소년보호위원 개인정보 관리 관련 알림	• 소년보호위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내용 추가(10년간 개인정보 보관, 10년 경과 후 개인정보 파기에 따라 활동내역 자료 제공 불가)	정	소 년 보 호 과

자료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3. 16.	재택근무 중 개인정보 관리 철저 지시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재택근무 실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등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3. 24.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알림	• 소년보호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 소속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3. 25.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 집중 단속 실시(안) 시달	• 2020. 4. 6.~5. 15.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국민안전 위협 및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 단속	기	이 민 조 사 과
3. 26.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시행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절근로 신규인력의 도입이 어려움에 따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이 불가능한 국내 장기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	기	체 류 관 리 과
3. 31.	코로나19 특별입국절차 지원 관련 입국심사 시 국내 체류정보 입력 등 철저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협조요청과 관련, 해외입국자 입국심사 시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에 대한 국내 체류정보를 철저히 입력	기	이 민 정 보 과
4. 1.	시설격리 불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 지시	• 시설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검역법 위반에 따른 검역소의 입국불허 요청 시 입국불허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4. 1.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 및 체류관리 지침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를 확대(19→35개)하는 등 결핵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 관련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강화	기	체 류 관 리 과
4. 1.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 방안 시달	• 입국심사 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교부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준수 유도	기	이 민 조 사 과
4. 6.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교부 협조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교부 및 수령증 관리에 관한 행정응원 요청으로,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 교부 및 회수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4. 6.	업무목적 외 각종 개인정보 조회 및 대외유출 금지 지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실시	기	이 민 정 보 과
4. 7.	분류센터 효율적 운영계획(안) 시달	• 대전·광주 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대전·광주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간의 효율적 업무 분담을 통한 분류센터 업무역량 강화 • 분류센터 미설치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기관 수형자에 대한 처우 방향 검토 필요	부	분 류 심 사 과
4. 7.	국회의원 선거 등 거소투표 업무 철저 지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관련, 투표용지 교부 시 본인 확인 등 거소투표 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4. 8.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지침 시달	•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관련자(수용자, 계호 직원, 수용동 근무자)별 진행절차(진료 전, 진료 중, 호송 중, 진료 후)에 따른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 준수사항, 보호구 착용·해제 기준 등 수립 등	무	의 료 과
4. 8.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서면 시행 지시	•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중단 장기화에 따라 1단계를 서면으로 진행 • 집단상담(12시간) 및 개별상담(4회)로 1단계 완료에서 개별상담 서면진행 (2회) 및 출소 후 공단방문 3차 상담실시로 변경	무	직 업 훈 련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4. 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제한 조치 지시	• 효력 잠정 정지 대상인 4.5.까지 발급된 모든 단기사증 소지자 및 입국 제한 90개 국가(지역) 국민에 대한 무사증 탑승 차단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4. 2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시달	•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조절에 따른 수용자 처우 및 교정시설 방역 세부지침 수립, – 수용자와 직계존비속의 일반접견 허용(미결 주 2회, S1·S2 주 1회, S3·S4 격주 1회)등	무	의 료 과
4. 21.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시	• 2020년도 안전사고사례 전파 및 작업 (직업훈련) 시작 전·후 안전 사고 예방교육 반복실시 등 철저 지시	무	직 업 훈 련 과
5. 1.	시설공사 안전관리 철저 지시	• 공사 시행 시 화재 방지 등 작업 안전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5. 6.	'생활속 거리두기'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교정시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시달	• 교정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기본수칙 및 특별수칙) 정비 및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수용자 처우제한 추가 완화 ※ 일반접견 횟수 확대(미결수용자· S1 주 회, S2 월6회, S3 월 5회, S4 월 4회), 교도작업·직업훈련 등 제한적 허용 확대 등	무	의 료 과
5. 13.	코로나19 외국인 특별검진 및 자진출국신고 독려 계도 계획 시달	• 2020. 5. 14.~6. 30. 유흥업소,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검진독려 및 자진출국 신고 계도	기	이 민 조 사 과
5. 19.	「통합 접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접견 등 활성화 방안」시달	• '새로운 접견시스템 구축'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비대면 접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시달	무	보 안 과
5. 25.	학생 수용관리 및 인권보호 철저 당부	• 수용기관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특별지도소년 관리 철저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적법절차 준수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6. 9.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무	복 지 과
6. 10.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시	•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응 체계 수립 및 취약 시설 사전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6. 23.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한 사증심사 강화	• 방역강화 대상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되, 외교·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재외공관, 기	체 류 관 리 과
6. 24.	코로나19 상황 관련, 항만 승무원(선원) 상륙허가 심사 철저 지시	• 외국인 선원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로 강화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상륙허가 업무 처리기준 시달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7. 1.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시행 및 사증 재발급 등 업무 처리 알림	• 7. 1.부터 스티커를 부착해 온 기존 사증발급 방식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사증발급확인서'를 전면 발급	재외공관, 기	체 류 관 리 과
7. 1.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호장비 체험 등 교육 계획(안) 통보	• 교정공무원 대상 보호장비 체험 등 교육 계획(안) 시달 및 각 기관별 이행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7.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상장법인 전문가, 우수대학 졸업자 등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을 위해 나이·학력·소득 등 거주(F-2)비자 심사요건을 개선	기	체 류 관 리 과

자료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7. 15.	외부통근·개방작업자 외부교통권 확대 시달	• 개방지역작업장 공중전화기 설치 • 작업수형자 평일 점심·휴게시간 전화사용 허가	무	직 업 훈 련 과
7. 15.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알림	• 소년보호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 소속기관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7. 30.	전면 중지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안 시달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전면 중지된 수용자 처우 제한적 허용 – (일반접견 민원인수 확대) 민원인 1인 한정 → 민원인 2인 이내 등	무	의 료 과
7. 30.	국민안전 및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 단속 계획 시달	• 2020. 8. 3. ~ 9. 25. 국민안전 위협 및 서민일자리 침해 분야 단속	기	이 민 조 사 과
8. 13.	하계휴가 및 정기 인사 관련 공직기강 확립 지시	• 하계 휴가 및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등 복무관리 철저 및 각 지방교정청의 소속기관 지도점검 실시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8. 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 소년보호기관 추가 조치사항 알림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부산·안양 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	정	소 년 보 호 과
8. 19.	서울·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한 일선기관, 교육운영기관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사항 등	기	이 민 통 합 과
8. 24.	의료관계직원 등에 대한 영상장비 지급 계획 시달	•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한 재택의무관의 상태 관찰 등을 위한 영상장비 지급 계획 시달	무	보 안 과
8. 28.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처우 조정표 시달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직원 또는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 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	무	의 료 과
9. 4.	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관련 지시	• 코로나19 사태 및 질별 등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워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9. 7.	사회통합교육 시 마약 관련 예방교육 강화 지시	• 국내 체류외국인의 마약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대상 관련 교육 철저	기	이 민 통 합 과
9. 8.	소년보호기관 가을·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실시 알림	• 코로나19 및 가을·겨울철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 소년원학생 및 직원 예방접종 철저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9. 9.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준수 철저 지시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겸직 허가 신청,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 직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	무	교 정 기 획 과
9. 14.	소년보호기관 외부강사 및 면회 운영 조치사항 알림	• 교육 상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외부 전문강사 출입 허용 • 폐쇄형 개별면회 재개 및 소극적 실시	정	소 년 보 호 과
9. 14.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일부 개정	• 감염병 등 상황 하에서 일반 운영기관의 화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서식 신설 등	기	이 민 통 합 과
9. 25.	추석 연휴 공무원 특별관리 지침 전파 및 준수 지시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이동을 자제하고 추석 연휴 후 방역수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 차단 철저	무	교 정 기 획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9. 28.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회의 결과 관련 수용자 설문서 작성 등 지시	•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설문조사 등 지시	무	보 안 과
9. 28.	소년원생의 인권적 처우를 위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 보호소년 등 1인 생활 근거 마련,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10. 6.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담당자 교육 계획 시달	•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관련 담당자 비대면 교육 계획 시달	무	보 안 과
10. 12.	대체복무제 운영 기본계획 등 시달	•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시달 • 대체복무요원 코로나19 대응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처우방안 시달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0. 12.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 외국인 계절근로(C-4, E-8) 체류자격의 대리인 범위에 '관할 지역 지자체 담당직원' 포함 등 대리허용 범위를 일부 확대	기	체 류 관 리 과
10. 15.	재활용품 및 불용 결정 폐기물에 대한 관리 철저 지시	• 교정기관 배출 재활용품 및 불용결정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10. 16.	전국 교정기관 당직간부(교감) 영상교육 개최 계획 알림	•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중심 처우 방안' 관련, 전국 교정기관 당직간부 영상교육 계획 시달	무	보 안 과
10. 21.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및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시행 알림	• 법무부 훈령 제정에 따른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및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시달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0. 22.	대체복무요원 통합사용자계정 등록 및 컴퓨터 이용에 관한 지시	• 대체복무요원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합사용자계정 등록 절차 알림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0. 23.	수용자 외부호송 시 보호용품 사용 재강조 지시	• 수용자 법원 등 외부 호송 시 보호용품 사용 등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10. 26.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접수처 지정 및 제출지시	•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를 원활하게 접수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및 담당 지정 등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0. 27.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업무처리 절차 지시	• 외국인의 주요출입국 및 신분변동 구분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0. 29.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부 가석방 실시계획 시달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환자들의 범죄증가로 인해 입원과 가석방 연계의 필요성 제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	부	분 류 심 사 과
11. 2.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심사 관련 업무지시	• 코로나19 인해 입출국이 제한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가 급감하는 등 경제분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심사기준 한시적 완화 지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출 입 국 심 사 과
11. 9.	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사용 유의사항 알림	• 학생 소란 등 발생 시 포승줄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벨트형 포승 사용,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징벌 수단으로 사용 금지	정	소 년 보 호 과
11.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면회 중지 지시	•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면회 기준 변경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1. 9.	검사조사를 위한 관할 외 검찰청 호송 폐지 지시	• 검사조사를 위한 관할 외 검찰청 호송 폐지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 지시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11.	신입자 등 미결수용자 대상 전자보석 제도 적극 안내 지시	• 미결수용자 대상 시행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에 대한 적극 안내 등 지시	무	보 안 과
11. 12.	대체복무요원 배치 및 전보 기준(안) 시달	• 신규대원 소집 및 교육종료 시 배치 • 복무 중 전보 시기 및 방법, 기준 마련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1. 16.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편(안) 시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에 따른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 조정표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등	무	의 료 과
11. 16.	'20. 12월 불법 유흥 마사지업소 단속계획 시달	• 2020. 12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1. 19.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등 변경 적용 알림	• 경고 및 고발 관련 규정 변격 적용 시달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1. 25.	출입항보고서 마감 철저 지시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출입항보고서 마감 철저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1. 30.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달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증가세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방안 마련(입소 시 KF80이상 마스크 지급 등)	무	의 료 과
11. 30.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 운영 지침 시달	• 코로나19 경증 확진 수용자에 대한 격리치료 수용동 설치·운영 관련 그 절차와 예방 수칙 등	무	의 료 과
12. 1.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겨울철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12. 2.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및 교육용 영상자료 시달	• 정신질환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용 영상 등 시달	무 법무연수원	보 안 과
12. 2.	코로나19 전국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알림	• 학생 : 마스크 착용 생활화(신입 학생은 KF80 이상) • 직원 : 학생 및 외부인 대면 업무 시 KF80 이상 착용	정	소 년 보 호 과
12. 3.	외국인 수용자 수용관리 시 對대(영)사관 업무 관련 지시 사항 시달	• 각 국 대(영)사관의 자국민 보호업무 지원을 위한 지시사항 시달	무	보 안 과
12. 10.	특별보관품 보관 관리 및 검사 철저 지시	• 특별 보관품 보관 수량 및 이상 유무 점검 및 보관·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12. 10.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계획 시달	• 신축 대구교도소 내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을 통한 권역별 통일된 정밀 분류심사 체계 구축 • 대구지방교정청 관내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및 집중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처우방안 제시	무	분 류 심 사 과
12. 11.	사회통합프로그램 증정용 교재 배포 알림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등에 배포하여 민원 안내 및 차년도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기,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이 민 통 합 과
12. 14.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지시	• 시설격리를 동의한 입국심사 단계에서 비용 납부 의사 확인 등 입국심사 강화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2. 14.	국가보안시설 경계강화 협조 요청에 따른 지시사항 시달	• 교정시설 방호, 경계에 대한 경비 강화 등 지시사항 시달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2. 17.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내 직원 방역 강화 방안 시달	•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은 원칙적 금지 다만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불필요한 외출 원칙적 금지, 거리두기 1.5단계 이상 및 수용자 접촉시, 상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무	의 료 과
12. 23.	일반·화상접견 중단에 따른 긴급 전화접견 시범운영 지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일반·화상접견 대체를 위한 '긴급 전화접견 제도' 시범 실시 및 관련 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12. 29.	결혼이민사증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한 초청인 추정소득 산정기준 변경 알림	•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혼이민 사증 초청인 추정소득 산정기준 변경	외교부 (재외공관)	이 민 통 합 과
12. 30.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 시달	• 전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및 전 교정시설 직원 및 수용자 전수검사 실시 등	무	의 료 과
12. 30.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개정 알림	•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달 및 관련 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12. 30.	일반·화상접견 중단에 따른 긴급 전화접견 전면시행 알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일반·화상접견 대체를 위한 '긴급 전화접견 제도' 전면 실시 및 관련 업무 철저 지시	무	보 안 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20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1. 3.	• 제67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2. 3.	• 신임검사 임관식(1)	
4. 1.	• 신임검사 임관식(2)	
5. 11.	• 신임검사 임관식(3)	
5. 13.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5. 20.	•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축사	차관 대독
6. 3.	• 제4차 코로나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	
6. 24.	•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7. 9.	•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7. 23.	• 제13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온라인 위촉식 격려사	영상메시지
7. 29.	•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8. 3.	• 신임검사 임관식(4)	
8. 12.	•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9. 24.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10. 15.	•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10. 16.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감사패 수여식 격려사	
10. 22.	•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10. 26.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9기 개강행사 축사	
10. 28.	• 제75주년 교정의 날	
11. 4.	•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날 격려사	
11. 5.	• 제9회 ADR 컨퍼런스 개회사	
11. 20.	•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11. 27.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12. 1.	•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청회	
12. 11.	• 꿈꾸는 디케 청소년 법교육프로그램 시상식 격려사	영상메시지

• 제67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Ⅰ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 책임 있게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김오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Ⅱ

법무 가족 여러분!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종과 신념,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

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Ⅳ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신임검사 임관식(1)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예로운 오늘이 있기까지 신임 검사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가족·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저소득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검찰권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검사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법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 많은 사건들은 사건 관계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며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검사는 스스로가 높은 윤리의식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검사 한 사람의 부적절한 처신이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사로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 동안 꿈꾸어 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권과 정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쉽사리 길들여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한 검사선서문에는 검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덕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이 네가지 가치와 덕목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신임검사 임관식(2)

Ⅰ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가족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Ⅱ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검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관계인과 범죄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검사로서, 일반 시민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검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 많은 사건들은 사건 관계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 사건 관계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며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동안 꿈꾸어 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한 검사선서문에는 검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덕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고,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이 세가지 가치와 덕목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신임검사 임관식(3)

I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가족·친지 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을 이겨낸 만큼, 앞으로 굳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국가와 검찰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먼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여전히 법이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구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이 되도록 맡은 사건에 정성을 다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이야말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2020년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개혁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시대가 열립니다.

검찰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새로운 길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어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긴 초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

Ⅰ

이민자 멘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이 연기되어 많이 아쉬웠는데 드디어 오늘 멘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인 만큼 매우 뜻깊고 반가운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과,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Ⅱ

법무부는 이민정책 총괄 부처로서 외국인의 입국부터 체류허가, 국적취득까지 외국인의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입니다.

특히 이민통합은 재한외국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체류외국인 증가와 함께 그 함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Ⅲ

성공적인 이민자 통합은 국민과 이민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려는 진지한 노력과 상호 소통 없이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민통합 정책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멘토 여러분들이 선배 이민자로서 다른 이민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국민들에게는 아직은 낯선 여러분들의 삶과 문화를 알려주는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Ⅳ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국민과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이러한 작은 시작이 앞으로 우리사회의 이민통합이라는 큰 나무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제1기 이민자 멘토단이 활동하게 될 앞으로의 1년은 성공적인 이민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다시 한 번 멘토단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3회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식 축사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정한 『세계인의 날』입니다.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해외 원조와 차관으로 가난을 이겨냈던 우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참상을 극복하고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지난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우리 국민은 고통을 나누고 희망의 힘으로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은 우리 국민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국인에게 경제적 자립과 교육사업의 후원자였으며, 이제는 든든한 우리 경제의 동반자로서 수 많은 재한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Ⅲ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이 위기 극복의 동반자라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하나됨이 우리사회에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여 한국사회의 그늘진 곳이 더욱 밝아지고 내·외국인 간의 벽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4차 코로나19에 대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이렇게 웹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의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세미나에 참석하신 이민과 검역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이 감염병 예방의 가장 선두에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입국 금지, 항공편 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특히 국경 이동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입국자 통제, 입국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침착하고 단계적인 대처는 세계 여러 나라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업무 외에도 '국경 이동'이라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일상적인 분야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에 따라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하여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에 법무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특히 출입국 관리와 검역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시행해 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한 우리의 정책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웹세미나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전 세계의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그 어떤 나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노력으로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매년 법의 날에 진행되었던 행사가 두 달 여 연기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하여 오신 분들의 노고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포상 전수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세계가 엄중한 도전에 처해있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법과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첫째, 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법은 국민들이 국가에 부여한 강제력이기 때문입니다. 법 안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고 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하고, 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공정해야 법이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은 인권적이어야 합니다. 법은 엄정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애환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은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돼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모두 이러한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개인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참여운동을 해오신 김주덕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정용상 교수님, 윤영준, 안성수, 황은영 검사님, 오수근, 함태성 교수님, 박순애 교정위원님, 김근식 위원님, 송중일 과장님, 권수진 부연구위원님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을 돕고 지지하여 주신 수상자 가족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오늘날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따듯한 손길을 건네주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을 배려하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 법의 따스함이 닿지 않는 소외된 약자들을 살피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교정대상 시상식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많지만,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에게 교정발전을 위한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수상자 여러분의 봉사와 노력이 빛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가족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대상 시상식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님과 임병걸 KBS한국방송 부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정행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을 격리시키는 일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뿐이며,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교화 활동을 통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정은 인권옹호의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수용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과밀수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하였으며, 작업환경 현대화와 의료처우 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수용자 인권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의 대물림을 막고, 소외된 이들이 사회에 기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을 막고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등을 통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교정가족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형자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함께 헌신해 오신 교정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취임 당시, 저는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의 교정대상 시상식이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앞당겨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주신 이순길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3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온라인 위촉식 격려사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같이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드렸을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지난 12년간 법무정책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청년들의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법무부의 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국민께 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 강화'를 활동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죠.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디지털 보안관 활동 강화,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와 같은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주셔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더욱 세심히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그리고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의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혐오·차별 등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과 한국의 젠더폭력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주무부처로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처하여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께 보이겠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은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한 국내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제13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여러분들도 이러한 법무부의 취지에 동참해주시고 올해 목표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활동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선배 법무관들은 법무부,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며 법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맡은 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익법무관 여러분! 공익법무관 인원이 크게 줄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송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 받는 법치의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송무 업무는 국민들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곧 신뢰 받는 법치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법무행정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인권 수호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대상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스런 행동 하나 하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과 민생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구조 업무에 임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상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몸과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하고, 공직자로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임용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신임검사 임관식(4)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주신 가족·친지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 텐데, 희망이 가득한 여러분들을 보니 국가와 검찰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검사의 직을 잘 수행하겠지만, 쉽지 않은 길이니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Ⅱ

먼저,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아동·청소년·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지기추상 대인춘풍'이라는 말처럼, 검사는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겐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칙만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함께 하며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 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임검사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긴 초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75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 국가보훈처 관계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조국을 되찾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기를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오늘 그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먼저, 여러분들의 선조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조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진정 독립을 되찾겠다는 위대한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험난한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 오셨을 후손 여러분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후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적증서수여식을 통해 여러분 선조들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나라와 이웃을 위한 희생의 숭고한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 땅에서 각자가 꿈꾸어왔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국격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도 같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겨,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그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직은 저 나무들의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이미 가을을 맞이할 채비를 하듯 푸른 잎사귀 색들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추(秋)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풍성하고 결실을 맺는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약 1년여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과천청사의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그 중에 가을에 만나는 청사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신 신부님께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특히, 이 가을 신부님 인생에 가장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님,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님, 박용진 국회의원님,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오정삼 삼양주민연대 사무국장님, 그리고 신부님의 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훈 신부님이 처음 선교사로 오셨던 1960년대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는 무척 어렵고 힘든 시절었습니다.

안광훈 신부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평생을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탄광촌에서도, 추운 겨울 삼양동 무허가 판자촌에서도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50여년간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어 주셨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신 신부님의 삶은, 신부님의 이름 '광훈(光薰)'처럼 빛과 향기가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오신 신부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법무부에서 뜻깊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작년 겨울에 염수정 추기경님, 박용진 국회의원님,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특별공로자로 신부님을 법무부에 추천해주셨고,

이에,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신부님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게 되어 오늘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분들을 발굴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 사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마지막으로 안광훈 신부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은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뉴질랜드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신부님은 뉴질랜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이자 훌륭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공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양 국가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도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는 민속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전하는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이번 한가위는 신부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로 그 의미와 기분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이 기쁨을 누리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안광훈 신부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처와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6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앞두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오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대체복무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교정본부에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무부 훈령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의 준비와 함께 합숙시설 개선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차관을 준비단장으로 하여 대체복무에 필요한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고, 이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사회적 합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위원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어렵게 최초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대체복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위원님을 모시고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복지, 처우 등 대체복무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다면, 대체복무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제도의 성공은 우리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하여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소 확산세가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고, 아침저녁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감사패 수여식 격려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소자 고용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출소자들도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살아갈 이웃입니다. 출소자들은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가족관계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출소 후 취업에 문을 두드려도 전과로 인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출소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는 재범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출소자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출소자는 직장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면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자에게 취업이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 서 주셔서 출소자도 편견과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출소자를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한국법학원 회원 여러분,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먼저 이번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웹세미나라는 새로운 형식의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권오곤 원장님과 한국법학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 공동체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존 사회질서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현대 문명사회에 전례 없는 보건 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위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가 또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과 시각으로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대회에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여건은 큰 어려움을 맞고 있고 동시에 비대면 사회활동은 증가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민의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투자 및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법무서비스 구축, 민생을 우선하는 검찰권 행사, 감염병 대응 인프라 정비 등,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한 법률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노력과 법률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이 함께 한다면 자연스레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9기 개강 행사 축사(10. 26.)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예비법률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신 이찬희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더욱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故김대중 대통령님이 싹틔운 남북 평화와 화해의 노력이 그 후 잠시 중단되었으나, 2년 전 남과 북은 냉전의 기운을 걷어내고 다시 평화로 한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사 속에 기록될 평화의 여정은 남·북·미 정상의 고뇌와 결단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멈출 여정이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이자 미래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분야별로 세심하게 법·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한변협과 함께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6년 간 370여 분의 법률가와 예비법률가들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탁월한 법률전문가들이 양성되고, 통일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든든하게 놓일 것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대면 활동은 감소하고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했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통일법제 분야 최고전문가들께서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 ‘북한 헌법과 법체계’, ‘북한의 가족법제’, ‘북한 투자법제’, ‘판례로 본 남북교류협력’,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변화’에 이르기까지 기존 아카데미 강연에서 들을 수 없었던 심화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6주간의 대장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통일법제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시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귀한 역할들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75주년 교정의 날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자주적 교정행정을 시작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75년'이라는 숫자만큼 교정은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고, 그 길에는 묵묵히 교정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정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 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격리와 구금을 넘어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진정한 회복적 사법 및 수용자의 사회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성년 자녀 보호·지원 제도 도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체계와 인권적 처우 환경을 구축하였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정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위상에 걸 맞는 스마트 접견, 화상진료시스템, 교정작품쇼핑몰 개설 등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수용자 스마트밴드',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개발·도입 등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지만 인권의 가치와 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 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변화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관행처럼 남아 있는 우리 안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습은 과감히 척결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극 부응하여,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교정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어 국민이 믿고 맡기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들이 교정행정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일 것입니다.

교정 현장은 인권과 질서, 권한과 책임 등 얼핏보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이 많아 '공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정 현장에 어떤 반칙과 특권도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법 집행에 있어 항상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인권의 가치와 신뢰받는 법치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정비전인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이 실현되도록 법무부장관도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교정가족 모두가 역량을 모아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전국 모든 교정가족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내빈 여러분들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주인공인 교정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격려사

존경하는 법무보호위원 여러분, 함께하신 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위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 준비로 수고하신 신용도 이사장님, 그리고 이계환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오흥배 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단 가족과 위원 여러분!

매년 교정시설에서 약 5만 5천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희망과 각오를 품고 출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출소자 중 일부는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주거, 생계,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이 겪는 삶의 난관과 고통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실의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피고 돕기 위해 우리사회가 나서는 것 그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출소자 개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부와 공단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 리모델링,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무보호위원제도 내실화 등은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보호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은 공단 임직원 분들의 열정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과 위원 여러분!

그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연고 정신질환 출소자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출소자의 진정한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 수립은 물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법무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하나하나의 손길이 더해졌을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공단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도 위원님들이 긍지를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단 임직원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9회 ADR 컨퍼런스 개회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안나 주빈브레 사무국장님,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님, ICC 국제중재재판소 알렉시 무흐 소장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멕 키니어 사무총장님,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2년에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가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어느덧 세계 각 국의 중재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중재 분야의 대표적 행사이자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중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건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었다면, 지금은 의료, 엔터테인먼트, 국제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소비자권익 보호와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분쟁에 관해서는 더 이상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어떤 수단보다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을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새로운 발전 방향,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중재 실무의 변화 양상 등을 주제로 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열띤 논의가 국제거래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재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외설악의 수려한 풍광과 쪽빛 동해의 깊이가 더해 가는 계절에 남북평화와 북방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속초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님, 김철수 속초시장님, 신선익 속초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더 많은 내·외빈을 모시고 싶었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개청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와 노후 교정시설 개선 등 수용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강원북부교도소는, 교정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시설 외관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인 지열을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환경 친화적 교도소로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영랑체육관 등 부대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교도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 봉사단은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지원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등을 벌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과 속초시민 여러분 !
교도소는, 수형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곳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북부교도소 건립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속초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속초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교정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인권의 가치와 공정한 법치가 오롯이 지켜져 '따뜻한 교정, 인권중심의 교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도 법무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원북부교도소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부득이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정부포상 등 각종 영예를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 제도가 시행된 이래 약 30여년 간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의 삶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범죄피해자 분들에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안전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그 내용을 포털 사이트 등에 상시 홍보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분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제주에 추가 개소하여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범죄피해자 분들께 역대 최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분들을 위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어느덧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의 참혹함은 피해를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진정한 피해 극복을 위해서는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한 위로가 전해질 수 있을 만한 진심어린 마음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피해자분들을 최우선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진 가을이 가고 찬바람과 함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겨울을 나면 시간이 지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범죄피해자 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분들이 쌓인 눈을 녹이고 희망의 새싹을 움 틔워 마음에 볕 드는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청회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전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현대적 산업구조와 소비환경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정보처리 사회 구조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상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 전 분야에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변함없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도 병행하여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 꿈꾸는 디케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시상식 격려사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직접 만나서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었어요. '꿈디' 친구들의 활동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직접 얼굴 마주 보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며 활동했다면 더 재미있고 더 기억에 남는 활동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우리 꿈디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꿈디' 친구들이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펼친 법과 인권 동아리 활동을 저도 관심 있게 쭉 지켜보았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법과 인권에 관련된 주제를 찾아서 고민하고, 실천해 보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인권을 이끄는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자신의 권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는 함부로 침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인권침해 같은 거 안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사람으로서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인권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인권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거나 변화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합니다. 인권감수성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인권을 실천하는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디케’ 청소년 여러분 모두가 인권의 국가대표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인권감수성이 가득해져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서도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과 지도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추 미 애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喜)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熙)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伍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개편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熙)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방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방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개방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방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방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방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방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방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개방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일반직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畯)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일반직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20. 12. 31. 기준)

1. 본 부(5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추미애**	**2020. 1. 2.**	행 정 사 무 관	지상균	2020. 2. 10.
차 관	**이용구**	**2020. 12. 3.**	〃	김은정	2019. 7. 1.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2019. 8. 6.	정 책 기 획 단 장	박승대	2020. 9. 3.
감 찰 관	**류 혁**	**2020. 7. 6.**	검 사	문지선	2020. 9. 3.
감 찰 담 당 관	박은정	2020. 2. 3.	검 사	송인호	2020. 2. 3.
검 사	박진성	2020. 2. 3.	검 사	김영빈	2019. 8. 6.
검 사	장형수	2020. 2. 3.	검 찰 사 무 관	조병기	2019. 8. 6.
검 찰 사 무 관	이기용	2019. 1. 28.	**기 획 조 정 실 장**	**심우정**	**2020. 1. 13.**
〃	남호현	2019. 12. 23.	정 책 기 획 관	최정석	2020. 7. 1.
교 정 관	조영혁	2019. 1. 28.	검 사	서지현	2020. 2. 13.
감 사 담 당 관	유지중	2019. 7. 1.	검 사	정우석	2020. 2. 3.
서 기 관	박종국	2019. 4. 15.	서 기 관	조연호	2019. 2. 11.
〃	강기천	2020. 2. 10.	행 정 사 무 관	이현정	2019. 4. 22.
〃	조시형	2018. 1. 15.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정 일	2019. 1. 1.
행 정 사 무 관	서혜주	2019. 1. 14.	행 정 사 무 관	이동주	2020. 3. 30.
〃	이상영	2018. 1. 15.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천정훈	2019. 7. 1.
〃	이준서	2019. 7. 1.	서 기 관	임성훈	2020. 8. 25.
〃	백영준	2020. 2. 10.	〃	고영석	2020. 2. 10.
공 업 사 무 관	최해규	2018. 7. 1.	행 정 사 무 관	김용갑	2019. 4. 22.
운 영 지 원 과 장	김정열	2020. 7. 1.	〃	박상열	2019. 2. 11.
서 기 관	김홍준	2020. 2. 10.	혁 신 행 정 담 당 관	김상권	2019. 7. 1.
행 정 사 무 관	허태구	2018. 1. 15.	서 기 관	박종권	2020. 8. 25.
〃	한제오	2020. 2. 10.	행 정 사 무 관	이준석	2019. 2. 11.
〃	김범영	2018. 1. 15.	행 정 사 무 관	김효민	2020. 2. 10.
〃	홍진희	2017. 8. 1.	시 설 담 당 관	배성용	2020. 1. 1.
시 설 사 무 관	김상태	2020. 1. 1.	행 정 서 기 관	김종관	2020. 11. 7.
대 변 인	박철우	2020. 9. 3.	기 술 서 기 관	엄동철	2020. 1. 1.
부 대 변 인	신승희	2020. 2. 3.	시 설 사 무 관	최기용	2018. 4. 16.
홍 보 담 당 관	한정진	2013. 9. 1.	〃	이인환	2019. 9. 9.
홍 보 기 획 팀 장	최성우	2020. 11. 26.	〃	김진국	2020. 3. 30.
검 찰 사 무 관	이상우	2014. 5. 1.	〃	윤응진	2020. 3. 30.
보 호 사 무 관	김정근	2020. 2. 6.	공 업 사 무 관	임맹원	2019. 4. 1.
출입국관리사무관	유현송	2020. 7. 20.	〃	장동선	2019. 12. 2.
교 정 관	임종오	2020. 9. 21.	보 호 사 무 관	최상현	2016. 4.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정보화담당관	주양근	2020. 1. 1.
기술서기관	김희성	2019. 1. 1.
〃	유상동	2020. 1. 1.
전산사무관	정혜찬	2015. 10. 12.
〃	서종석	2018. 1. 15.
〃	이용규	2020. 1. 13.
〃	정성훈	2018. 10. 11.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철	2019. 12. 2.
정책성과관리팀장	조오행	2020. 11. 7.
행정사무관	이강채	2020. 3. 30.
〃	권호연	2019. 7. 1.
행복민원센터장	안영삼	2020. 9. 21.
시설사무관	양상준	2020. 2.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 11. 20.
행정사무관	김유호	2019. 5. 7.
〃	김승권	2020. 5. 5.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2020. 9. 3.
검사	김상준	2020. 2. 3.
전산사무관	김봉우	2016. 5. 2.
〃	강정관	2020. 8. 31.
보호사무관	장윤정	2020. 1. 13.
법무실장	**강성국**	**2020. 7. 6.**
법무심의관	정재민	2020. 11. 2.
서기관(일반임기제)	임성택	2019. 2. 11.
〃	권혜옥	2019. 3. 11.
검찰사무관	안호현	2019. 9. 3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고민지	2018. 2. 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민지	2020. 5. 1.
〃	허창환	2020. 5. 1.
〃(한시임기제)	김홍정	2020. 9. 1.
송무심의관	김의래	2020. 12. 28.
법무과장	정지영	2020. 9. 3.
검찰수사서기관	김재일	2019. 1. 28.
〃	김지홍	2020. 2. 10.
서기관(일반임기제)	윤성훈	2019. 2. 5.
검찰사무관	윤석인	2019. 9. 3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설기석	2018. 7. 30.
〃	유희원	2020. 5. 13.
〃(한시임기제)	이윤정	2020. 12. 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국제법무과장	박정현	2020. 12. 7.
검찰사무관	김진형	2018. 7. 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은	2019. 8. 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하영	2020. 12. 28.
국제분쟁대응과장	한창완	2020. 8. 05.
검사	유새롬	2020. 8. 05.
서기관(일반임기제)	이현송	2020. 8. 05.
〃	엄영신	2020. 8. 0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조규현	2020. 8. 05.
〃	이형주	2020. 8. 18.
〃	강지아	2020. 11. 16.
〃	황지택	2020. 11. 16.
국가소송과장	김기수	2019. 8. 19.
검찰사무관	김연천	2016. 8. 2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윤경식	2019. 8. 6.
〃	양윤수	2020. 12. 28.
〃	김창형	2020. 12. 28.
행정소송과장	송창현	2020. 12. 28.
검찰수사서기관	정희섭	2020. 12. 28.
검찰사무관	이창균	2020. 12. 28.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류정민	2020. 12. 28.
〃	김종균	2020. 12. 28.
〃	박신영	2020. 12. 28.
〃	이여진	2020. 12. 28.
〃	신재우	2020. 12. 28.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2020. 9. 3.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검찰사무관	장석경	2017. 9. 27.
〃	이해형	2019. 9. 30.
행정사무관	유재륜	2018. 10. 1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태희	2019. 10. 14.
상사법무과장	임철현	2020. 10. 26.
검사	이혜미	2018. 2. 5.
서기관(일반임기제)	이규철	2015. 11. 16.
〃	강혜정	2019. 2. 1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18. 7. 30.
〃	이경미	2020. 8. 18.
〃	윤화섭	2020. 8. 18.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2020. 9. 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이한식	2019. 2. 11.
〃	유경남	2019. 12. 23.
검 찰 사 무 관	안태성	2016. 8. 29.
행 정 사 무 관	최영만	2016. 5. 24.
〃	양동규	2020. 2. 10.
〃	이승항	2013. 7. 29.
검 찰 국 장	**심재철**	**2020. 8. 11.**
사법연수원부원장	윤대진	2020. 1. 13.
검 찰 과 장	김태훈	2020. 2. 3.
검 사	조영희	2020. 9. 3.
〃	이건표	2018. 2. 5.
〃	최수은	2019. 2. 11.
〃	오상연	2020. 2. 3.
검찰수사서기관	정연철	2020. 2. 10.
〃	김동규	2017. 9. 27.
검 찰 사 무 관	이동영	2018. 1. 26.
형 사 기 획 과 장	류국량	2020. 9. 3.
검 사	김치훈	2020. 2. 3.
〃	정윤식	2020. 9. 3.
검찰수사서기관	김철곤	2020. 2. 10.
검 찰 사 무 관	권영한	2019. 1. 28.
〃	허종욱	2019. 9. 30.
공 공 형 사 과 장	차순길	2020. 9. 3.
검 사	전철호	2020. 2. 3.
〃	이주현	2020. 9. 3.
검 찰 사 무 관	안대현	2019. 1. 28.
〃	고영록	2018. 7. 9.
국 제 형 사 과 장	김윤선	2020. 9. 3.
검 사	오진세	2019. 2. 11.
〃	박성진	2020. 2. 3.
검 찰 사 무 관	최창환	2017. 1. 16.
〃	고영호	2018. 7. 9.
형 사 법 제 과 장	이응철	2020. 9. 3.
검 사	추창현	2019. 2. 11.
〃	이경화	2019. 8. 6.
검 찰 사 무 관	임상현	2019. 9. 30.
〃	김보경	2018. 8. 21.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2018. 4. 2.**
범죄예방기획과장	이형섭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민명식	2020. 1. 13.
보 호 사 무 관	김영배	2020. 7. 13.
〃	윤현봉	2020. 1. 13.
〃	정 윤	2019. 7. 22.
〃	석철우	2019. 1. 28.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2018. 4. 2.
검 찰 사 무 관	송학수	2020. 8. 21.
보 호 사 무 관	이동훈	2018. 1. 15.
〃	김동하	2020. 1. 13.
〃	김 영	2020. 7. 13.
행 정 사 무 관	김영남	2021. 1. 25.
〃	구현규	2020. 4. 1.
치료처우과장	송중일	2020. 1. 13.
서 기 관	김택준	2020. 7. 6.
보 호 사 무 관	임합격	2020. 8. 21.
검 찰 사 무 관	박두길	2020. 1. 13.
검 찰 사 무 관	김형식	2020. 7. 13.
보호관찰과장	양봉환	2020. 1. 13.
서 기 관	이정민	2020. 1. 13.
보 호 사 무 관	강신원	2020. 7. 13.
〃	신혜진	2019. 7. 22.
〃	정유희	2020. 1. 13.
소 년 보 호 과 장	염정훈	2020. 4. 5.
서 기 관	이헌구	2020. 1. 13.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편영근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최윤경	2020. 7. 13.
전 자 감 독 과 장	문희갑	2020. 1. 13.
보 호 사 무 관	정주호	2020. 1. 13.
〃	홍재성	2020. 1. 13.
소년범죄예방팀장	양현규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박길수	2019. 1. 28.
〃	이승원	2018. 1. 22.
〃	김경홍	2020. 1. 13.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2020. 7. 6.
보 호 사 무 관	김근한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정진경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이성실	2020. 7. 13.
인 권 국 장	**이상갑**	**2020. 8. 28.**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2019. 5. 29.
서기관	김에오	2017. 9. 29.
검찰사무관	박광수	2018. 1. 26.
행정사무관	김현우	2018. 7. 2.
〃	김경모	2018. 8. 6.
〃	신유정	2018. 2. 5.
〃	유원정	2019. 6. 3.
인권구조과장	김종현	2018. 9. 3.
서기관	김경수	2020. 2. 10.
검찰수사서기관	김건수	2020. 8. 21.
검찰사무관	홍지항	2020. 2. 10.
행정사무관	홍주영	2018. 10. 15.
〃	홍찬주	2020. 1. 10.
〃	윤지원	2018. 2.. 5.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2020. 2. 3.
검사	강명훈	2020. 2. 3.
검찰사무관	조수희	2017. 9. 27.
〃	여혜진	2019. 9. 30.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연정	2020. 12. 17.
검찰사무관	이진선	2018. 1. 26.
〃	이진영	2019. 8. 6.
교정본부장	**이영희**	**2020. 7. 6.**
교정정책단장	유병철	2020. 2. 10.
보안정책단장	신경우	2020. 9. 21.
교정기획과장	오광운	2020. 9. 21.
서기관	서호성	2020. 2. 10.
〃	조관성	2020. 9. 21..
교정관	김선희	2019. 1. 28.
〃	이도곤	2019. 1. 28.
〃	주기남	2019. 1. 28.
〃	조진호	2020. 5. 18.
〃	박승률	2020. 9. 21.
〃	문정훈	2018. 8. 27.
〃	김봉영	2019. 1. 28.
〃	오병각	2020. 9. 21.
직업훈련과장	최규철	2018. 12. 17.
교정관	허영열	2019. 7. 15.
〃	위종진	2020. 2. 10.
행정사무관	이두형	2019.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사회복귀과장	한태환	2020. 9. 21.
교정관	이규성	2017. 2. 13.
〃	정영모	2019. 1. 28
〃	이용현	2020. 9. 21.
〃	박평규	2020. 9. 21
복지과장	김남주	2018. 12. 17.
교정관	김찬우	2020. 9. 21.
행정사무관	권태성	2018. 1. 15.
시설사무관	손영조	2019. 7. 1.
보안과장	민낙기	2020. 9. 21.
교정관	황진석	2018. 1. 1.
〃	김 승	2019. 7. 15.
〃	이형직	2020. 5. 18.
분류심사과장	박삼재	2020. 5. 18.
서기관	김진아	2020. 2. 10.
교정관	조항덕	2020. 4. 20.
〃	고재익	2020. 9. 21.
의료과장	김재술	2020. 2. 10.
교정관	강권홍	2019. 7. 15.
〃	최장훈	2020. 9. 21.
심리치료과장	이희정	2020. 9. 21.
교정관	김수희	2019. 1. 28.
〃	박경식	2020. 9. 21.
행정사무관	선강희	2020. 1. 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2017. 9. 4.**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2019. 10. 7.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렬	2020. 6. 26.
출입국기획과장	배상업	2020. 1. 1.
출입국관리사무관	박주현	2019. 1. 7.
〃	이한태	2019. 1. 7.
〃	이은경	2019. 7. 8.
〃	강영우	2020. 2. 25.
〃	고동중	2020. 8. 27.
출입국심사과장	구본준	2020. 1. 1.
서기관	최문정	2020. 8. 25.
출입국관리사무관	배덕환	2020. 1. 1.
〃	류재석	2020. 7. 20.
체류관리과장	이진곤	2019. 8. 23.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종철	2019. 3. 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김정욱	2019. 7. 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정금심	2020. 1. 1.
〃	이취경	2020. 7. 20.	〃	은기범	2020. 2. 28.
〃	용창식	2020. 7. 20.	〃	최진혁	2020. 7. 20.
이 민 조 사 과 장	반재열	2019. 8. 22.	이 민 통 합 과 장	김현채	2019. 3. 1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박수완	2019. 1. 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권택성	2019. 3. 2.
〃	홍동우	2019. 7. 8.	〃	정해정	2020. 1. 1.
〃	신한진	2020. 7. 20.	〃	서제선	2020. 1. 1.
	이상목	2020. 7. 20.	〃	이주호	2020. 8. 31.
이 민 정 보 과 장	이대우	2020. 12. 14.	난 민 정 책 과 장	김정도	2018. 2. 2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윤철민	2019. 1. 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민경	2020. 1. 1.
〃	이우진	2020. 1. 1.	〃	홍인표	2020. 7. 20.
외 국 인 정 책 과 장	차용호	2019. 2. 5.	난 민 심 의 과 장	이정미	2020. 4. 13.
서 기 관	김정복	2020. 1 .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전동균	2019. 7. 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서석주	2018. 7. 23.	〃	조승래	2020. 7. 20.
〃	최성은	2020. 7. 20.	이민국경안전긴급대응단반장	김용규	2020. 8. 27.
〃	김용국	2020. 8. 2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임용성	2020. 8. 27.
국 적 과 장	송소영	2019. 8. 24.	〃	주재봉	2020. 8. 27.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장	고등검사장	배성범	2020. 01. 13.
기획부장 직무대리	검사	이문한	2020. 09. 03.
용인분원장	검사	주영환	2020. 09. 03.
교정연수부장	고위공무원	오흥균	2020. 07. 30.
연구위원	고등검사장	황철규	2019. 07. 31.
	검사장	한동훈	2020. 06. 26.
	검사	류장만	2014. 04. 28.
	고위공무원	정유철	2020. 09. 21.
	이사관	박규찬	2020. 01. 15.
	비상임	아이마토브 엘베크	2020. 11. 09.
	비상임	응웬 둑 하잉	2020. 11. 23.
검사교수	검사	이문한	2020. 09. 03.
		이종혁	2020. 02. 03.
		조남철	2020. 09. 03.
		박종선	2019. 02. 11.
		송민경	2019. 02. 11.
		윤철민	2020. 09. 03.
		강대권	2020. 02. 03.
		천관영	2020. 02. 03.
		김명운	2020. 09. 03.
		안성희	2020. 09. 03.
		이정배	2020. 09. 03.
		서영배	2020. 09. 03.
		김희영	2020. 02. 03.
로스쿨 검사교수	검사	문지석	2019. 02. 11.
		손상희	2019. 02. 11.
		허훈	2019. 02. 11.
		이유현	2019. 08. 06.
		최근영	2020. 09. 03.
		권재호	2020. 02. 03.
		나희석	2020. 09. 03.
		김준호	2020. 09. 03.
기획과장	검사	신지선	2020. 02. 03.
법무교육과장	검사	박억수	2020. 09. 03.
총무과장	서기관	강의곤	2020. 07. 20.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조승래	2020. 02. 10.
교정연수과장	서기관	서수원	2020. 09. 21.
교정훈련과장	서기관	이천재	2020. 07. 20.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곽강순	2020. 08. 21.
시설팀장	기술서기관	홍성운	2019. 07. 01.
보호직교수	서기관	민덕희	2020. 07. 06.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윤석열	2019.07.25
차 장 검 사	조남관	2020.08.11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2020.08.11
형 사 부 장	이종근	2020.08.11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2020.08.11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2020.08.11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2020.08.11
감 찰 부 장	한동수	2019.10.18
대 변 인	이창수	2020.09.03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2020.09.03
인 권 정 책 관	이정봉	2020.09.03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2020.09.03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2020.09.03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2020.09.03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2020.09.03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2020.09.03
정 책 기 획 과 장	전무곤	2020.09.03
정 보 통 신 과 장	최두천	2020.09.03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2020.09.03
범죄수익환수과장	김 우	2020.09.03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2020.09.03
형 사 제 1 과 장	김봉현	2020.09.03
형 사 제 2 과 장	이만흠	2020.09.03
형 사 제 3 과 장	추혜윤	2020.09.03
형 사 제 4 과 장	손진욱	2020.09.03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2020.09.03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2020.09.03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2020.09.03
공 판 제 1 과 장	김용자	2020.09.03
공 판 제 2 과 장	김현아	2020.09.03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2020.09.03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2020.09.03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2020.09.03
감 찰 1 과 장	임승철	2020.09.03
감 찰 2 과 장	전윤경	2020.09.03
감 찰 3 과 장	허정수	2020.03.31
검 찰 연 구 관	최성국	2020.09.03
〃	임은정	2020.09.14
〃	김종현	2020.09.03
〃	정태원	2020.09.03
〃	윤원기	2020.09.03
〃	박경섭	2020.09.03
〃	채희만	2020.09.03
〃	이병주	2020.09.03
〃	장준호	2020.09.03
〃	김태헌	2020.09.03
〃	윤수정	2020.09.03
〃	장인호	2020.09.03
〃	하준호	2020.02.03
〃	박수민	2020.02.03
〃	홍상철	2020.02.03
〃	김석훈	2020.09.03
〃	서민석	2020.02.03
〃	이주용	2020.09.03
〃	고아라	2020.09.03
〃	김태겸	2020.02.03
〃	유관모	2020.09.03
〃	최형규	2020.09.03
〃	박상용	2020.02.03
〃	한강일	2020.09.03
〃	김은정	2020.09.03
〃	이은주	2020.09.03
〃	선현숙	2020.09.03
〃	조재철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혜승	2020.09.03
〃	김진영	2020.09.03
〃	임홍석	2020.09.03
〃	조현일	2020.09.03
사무국장	복두규	2019.10.05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2020.02.10
집행과장	박순우	2020.02.10
검찰총장실	강의구	2019.07.25
수사정보담당관실	김윤애	2020.02.10
수사지휘·지원과	최병선	2020.02.10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2020.02.10
법과학분석과	손주근	2020.08.21
운영지원과	박치활	2020.08.21
운영지원과	이은상	2019.01.28
운영지원과	김봉석	2018.01.26
공안수사지원과	박영일	2020.08.21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2020.02.10
감찰제1과	이택근	2020.08.21
감찰제2과	김광수	2020.08.21
비상안전담당관	박정호	2018.03.28
정보통신서기관	윤미숙	2016.05.02
정보통신서기관	원민정	2020.08.2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2020.08.11
차장검사	김지용	2020.08.11
부장검사	박철웅	2020.09.03
부장검사	김후균	2020.09.03
부장검사	강지식	2020.09.03
부장검사	명점식	2020.09.03
검사	신배식	2020.09.03
〃	하종철	2018.07.19
〃	김호영	2019.08.06
〃	오규진	2020.09.03
〃	신은철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의경	2018.07.19
〃	박종기	2020.09.03
〃	백찬하	2019.08.06
〃	홍효식	2020.09.03
〃	곽규홍	2020.09.03
〃	고석홍	2020.09.03
〃	이 용	2019.08.06
〃	권도욱	2019.08.06
〃	강길주	2018.02.05
〃	김청현	2020.04.03
〃	최상훈	2020.09.07
〃	이수철	2020.09.03
〃	이주일	2019.08.06
〃	김용승	2020.10.30
〃	김성렬	2019.08.06
〃	최현기	2020.09.03
〃	유두열	2019.08.06
〃	김현채	2020.02.03
〃	김찬중	2020.02.03
〃	박찬일	2020.09.03
〃	이현철	2019.08.06
〃	변창범	2017.08.17
〃	임관혁	2020.02.03
〃	백재명	2019.08.06
〃	송규종	2020.02.03
〃	배용찬	2020.09.03
〃	최용훈	2020.09.03
〃	정규영	2020.09.03
〃	송연규	2020.09.03
〃	이용일	2020.09.03
〃	박재휘	2020.09.03
〃	손영배	2019.08.06
〃	위성국	2020.09.03
〃	정희원	2020.09.03

직위	성명	발령일
〃	정연헌	2020.09.03
〃	최호영	2020.09.03
〃	이형관	2020.09.03
〃	황병주	2020.02.03
〃	박세현	2020.02.03
〃	이태일	2020.02.03
〃	진정길	2020.02.03
사무국장	정연익	2020.08.21
총무과장	강갑진	2020.02.10
사건과장	김기성	2019.09.30
관리과장	오영근	2019.09.30
소송사무과장	유성희	2020.02.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2020.01.13
차장검사	김욱준	2020.09.03
차장검사	최성필	2020.09.03
차장검사	구자현	2020.09.03
차장검사	형진휘	2020.09.03
인권감독관	주상용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이종대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박동진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정지영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석재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재영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정광일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변필건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김형수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허인석	2020.09.03
형사제4부장검사	노진영	2020.09.03
형사제5부장검사	이동언	2020.09.03
형사제6부장검사	박순배	2020.09.03
공판제1부장검사	박찬록	2020.09.03
공판제2부장검사	장윤태	2020.09.03
형사제7부장검사	이병석	2020.09.03

직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8부장검사	이환기	2020.09.03
조사제1부장검사	이동수	2020.09.03
조사제2부장검사	김지완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오세영	2020.09.03
공판제3부장검사	최영아	2020.09.03
공판제4부장검사	유진승	2020.09.03
공판제5부장검사	양선순	2020.09.03
형사제9부장검사	정종화	2020.09.03
형사제10부장검사	김도완	2020.02.03
형사제11부장검사	진철민	2020.02.03
형사제12부장검사	조상원	2020.09.03
형사제13부장검사	서정민	2020.09.03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양동훈	2020.02.03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권상대	2020.09.03
약식부장검사	조석영	2020.09.03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전준철	2020.09.03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정용환	2020.09.03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2020.09.03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2020.02.03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2020.09.03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2020.09.03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	2020.02.03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2020.09.03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2020.09.03
(부부장)검사	김지헌	2020.09.03
〃	정진용	2020.09.03
〃	변수량	2020.09.03
〃	양성필	2020.09.03
〃	유상민	2020.09.03
〃	최현철	2020.09.03
〃	김진남	2020.09.03
〃	이완희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상민	2020.02.03
〃	박기환	2020.09.03
〃	구미옥	2020.09.03
〃	정보영	2020.09.03
〃	유옥근	2020.09.03
〃	오세문	2020.09.03
〃	손정현	2020.09.03
〃	조용우	2020.09.03
〃	최형원	2020.09.03
〃	이승훈	2020.09.03
〃	안동건	2020.09.03
〃	박석용	2020.09.03
〃	박기태	2020.09.03
〃	최청호	2020.09.03
〃	정유리	2020.09.03
〃	박종민	2020.09.03
〃	신금재	2020.09.03
〃	남계식	2020.09.03
〃	신건호	2020.09.03
〃	박성민	2020.09.03
〃	최순호	2020.09.03
〃	서현욱	2020.09.03
〃	박양호	2020.09.03
〃	유효제	2020.09.03
〃	김윤정	2020.09.03
〃	김재화	2020.09.03
〃	송명섭	2020.09.03
〃	송정은	2020.09.03
〃	김은하	2020.09.03
〃	장일희	2020.09.03
〃	권내건	2020.09.03
〃	안광현	2020.09.03
〃	송영인	2020.09.03
〃	정 현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	홍승표	2020.09.03
〃	김승걸	2020.09.03
〃	어인성	2020.09.03
〃	김태형	2020.09.03
〃	장혜영	2020.09.03
〃	박진석	2020.09.03
〃	홍승현	2020.09.03
〃	홍용화	2020.09.03
〃	김정국	2020.09.03
〃	원신혜	2020.09.03
〃	김해중	2020.09.03
〃	이선녀	2020.09.03
검 사	이재표	2020.02.03
〃	김석순	2019.02.11
〃	홍민유	2019.02.11
〃	김희동	2019.02.11
〃	장영준	2019.02.11
〃	윤신명	2019.02.11
〃	김경태	2020.02.03
〃	배관성	2020.02.03
〃	양근욱	2020.02.03
〃	양귀호	2020.02.03
〃	박경세	2020.02.03
〃	송윤상	2020.02.03
〃	염호영	2020.02.03
〃	심기호	2018.02.05
〃	박제연	2019.03.01
〃	한웅세	2019.03.01
〃	안현선	2020.03.01
〃	이지영	2019.03.01
〃	박영웅	2019.03.01
〃	이수경	2020.03.01
〃	김종훈	2020.03.01
〃	정화준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은경	2020.02.03
〃	조은수	2020.09.03
〃	송준구	2019.02.11
〃	허성규	2019.02.11
〃	소창범	2020.09.03
〃	김지영	2019.02.11
〃	이재연	2019.02.11
〃	정유선	2018.02.05
〃	김현우	2018.02.05
〃	윤소현	2019.02.11
〃	김지언	2020.02.03
〃	조재철	2019.02.11
〃	김봉진	2018.02.05
〃	유민종	2018.02.05
〃	신도욱	2020.02.03
〃	송봉준	2018.07.19
〃	천헌주	2018.02.05
〃	소정수	2018.02.05
〃	나하나	2018.02.05
〃	박 철	2017.02.20
〃	신동환	2020.02.03
〃	이태순	2018.07.19
〃	김영주	2017.02.20
〃	김준선	2019.02.11
〃	문하경	2018.02.05
〃	이승희	2020.02.03
〃	장욱환	2020.02.03
〃	강성기	2018.07.19
〃	류주태	2018.02.05
〃	김민구	2019.02.11
〃	박건영	2017.08.17
〃	최두헌	2016.01.27
〃	국 진	2020.09.03
〃	홍정연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신희영	2019.08.06
〃	구민기	2020.02.03
〃	박상범	2019.02.11
〃	박지훈	2017.02.20
〃	김영빈	2017.02.20
〃	정대희	2020.09.03
〃	정원석	2019.02.11
〃	장진성	2020.02.03
〃	나영욱	2020.02.03
〃	박지나	2017.02.20
〃	이지연	2020.09.03
〃	최정민	2019.02.11
〃	조성윤	2017.02.20
〃	차경자	2020.02.03
〃	변진환	2019.02.11
〃	김성태	2018.02.05
〃	방준성	2020.02.03
〃	오민재	2020.02.03
〃	이은윤	2019.02.11
〃	김남수	2020.02.03
〃	김진희	2019.02.11
〃	김진용	2019.02.11
〃	이근정	2018.02.05
〃	장세진	2019.02.11
〃	신은식	2020.02.03
〃	홍정연	2018.02.05
〃	황선옥	2019.02.11
〃	이한울	2019.02.11
〃	이윤구	2019.02.11
〃	소재환	2018.02.05
〃	윤석환	2018.02.05
〃	김승우	2020.02.03
〃	김영신	2016.01.27
〃	천재인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오대건	2018.02.05
〃	신현만	2020.02.03
〃	서동범	2018.02.05
〃	임지수	2020.02.03
〃	양익준	2018.02.05
〃	전영우	2018.02.05
〃	김지윤	2018.02.05
〃	이혜현	2018.02.05
〃	이현주	2019.02.11
〃	송찬우	2019.02.11
〃	박영상	2019.02.11
〃	이윤환	2019.02.11
〃	장태형	2018.02.05
〃	성대웅	2019.02.11
〃	강진욱	2019.02.11
〃	박상선	2020.09.03
〃	임홍주	2019.02.11
〃	문승태	2019.02.11
〃	황영섭	2020.02.03
〃	손수진	2020.02.03
〃	이정현	2019.02.11
〃	박신영	2020.02.03
〃	김방글	2019.02.11
〃	홍지예	2017.02.20
〃	안재욱	2019.02.11
〃	강일민	2019.02.11
〃	김민석	2020.02.03
〃	홍성기	2019.02.11
〃	홍석기	2019.02.11
〃	박성욱	2019.02.11
〃	성기범	2020.02.03
〃	김민정	2020.02.03
〃	고유진	2019.02.11
〃	신비나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전효곤	2020.02.03
〃	정승원	2018.02.05
〃	최성규	2019.02.11
〃	윤성호	2020.02.03
〃	김승기	2018.02.05
〃	신영민	2018.02.05
〃	오준근	2018.02.05
〃	이슬기	2018.02.05
〃	성재호	2018.02.05
〃	이상민	2018.02.05
〃	김희송	2018.02.05
〃	정선희	2019.02.11
〃	이승필	2020.02.03
〃	안성민	2018.02.05
〃	이희준	2018.02.05
〃	조도준	2018.02.05
〃	김정훈	2020.02.03
〃	이선영	2020.02.03
〃	우재훈	2018.02.05
〃	윤효정	2020.02.03
〃	송태원	2019.02.11
〃	양준석	2019.02.11
〃	문종배	2019.02.11
〃	양찬규	2019.02.11
〃	이소연	2018.02.05
〃	정덕채	2019.02.11
〃	정 혁	2019.02.11
〃	문재웅	2019.02.11
〃	신은정	2019.02.11
〃	장지영	2020.02.03
〃	곽중욱	2019.02.11
〃	손정현	2019.02.11
〃	임진철	2020.02.03
〃	남상오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주원	2020.02.03
〃	이권석	2019.04.01
〃	조현욱	2020.04.01
〃	함석욱	2019.02.11
〃	서수정	2020.02.03
사무국장	이갑수	2020.08.21
총무과장	김근모	2020.02.10
사건과장	황세일	2020.08.21
집행제1과장	유정민	2019.09.30
집행제2과장	조현철	2020.02.10
기록관리과장	김혜경	2020.02.10
형사증거과장	조창희	2019.09.30
피해자지원과장	박형석	2019.09.30
공공수사지원과장	허철안	2019.09.30
수사제1과장	조희영	2020.02.10
수사정보과장	김동욱	2020.08.21
수사제2과장	조경익	2020.08.21
수사지원과장	이상돈	2020.02.10
조사과장	이대열	2020.08.21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종필	2020.08.21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2019.09.30
공판과장	박영범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이형봉	2018.01.26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2020.08.21
검사직무대리	김상우	2020.05.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관정	2020.08.11
차장검사	김양수	2020.09.03
인권감독관	강형민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중제	2020.09.03
〃	신명호	2020.09.03
〃	남상관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세진	2020.09.03
형사제1부장	김덕곤	2020.09.03
형사제2부장	하담미	2020.09.03
형사제3부장	유도윤	2020.09.03
형사제4부장	김형주	2020.09.03
형사제5부장	하동우	2020.09.03
형사제6부장	김남훈	2020.09.03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2020.09.03
공판부장	용성진	2020.09.03
(부부장)검사	장봉문	2019.08.06
〃	조용후	2020.09.03
〃	김성원	2020.02.03
〃	진혜원	2020.09.03
검사	조규웅	2018.07.19
〃	박선영	2020.02.03
〃	남소정	2019.02.11
〃	박기웅	2020.02.03
〃	송가형	2020.02.03
〃	고건영	2019.02.11
〃	박예진	2020.02.03
〃	원민영	2020.02.03
〃	문승철	2019.03.01
〃	모형민	2020.03.01
〃	김주성	2020.08.01
〃	정지수	2020.08.01
〃	김병진	2019.03.01
〃	김은성	2019.03.01
〃	박지환	2020.03.01
〃	박유나	2020.03.01
〃	김수진	2020.05.11
〃	김진혁	2020.05.11
〃	유승재	2020.05.11
〃	권예슬	2020.05.11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상수	2020.09.03
〃	이시전	2018.02.05
〃	나희석	2019.02.11
〃	전세정	2018.07.19
〃	김윤정	2019.02.11
〃	이정민	2020.02.03
〃	정효민	2016.01.27
〃	최윤희	2018.02.05
〃	구진미	2019.02.11
〃	이지은	2017.02.20
〃	송혜숙	2020.02.03
〃	류승진	2019.02.11
〃	황보영	2019.02.11
〃	조종민	2020.02.03
〃	황윤선	2019.02.11
〃	박수정	2018.02.05
〃	최현주	2020.02.03
〃	백상준	2020.02.03
〃	국양근	2020.02.03
〃	김소정	2019.02.11
〃	이정규	2020.02.03
〃	박민지	2020.02.03
〃	정정교	2019.04.01
〃	남원석	2020.04.01
〃	박강일	2019.02.11
〃	김태환	2020.02.03
사무국장	정순철	2020.02.10
총무과장	이승환	2020.02.10
사건과장	장정호	2019.09.30
집행과장	조동규	2020.08.21
공판과장	조광훈	2019.09.30
조사과장	정안진	2019.09.30
수사과장	오범석	2019.09.30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2018.01.26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2020.02.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수	2020.10.24
제1차장검사	문성인	2020.09.03
제2차장검사	오현철	2020.09.03
인권감독관	이준엽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영익	2019.08.06
〃	김대룡	2019.08.06
〃	전영준	2020.09.03
〃	김재호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정재훈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정우식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정경진	2020.02.03
형사제4부장검사	김지연	2020.09.03
형사제5부장검사	박태호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2020.09.03
공판부장	손우창	2020.02.03
형사제6부장검사	김락현	2020.09.03
형사제7부장검사	박규형	2020.09.03
금융조사제1부장검사	문현철	2020.09.03
금융조사제2부장검사	이방현	2020.09.03
특별공판팀장	신종곤	2020.02.03
(부부장)검사	나병훈	2020.09.03
〃	최헌만	2019.08.06
〃	김성훈	2020.09.03
〃	김효섭	2020.09.03
〃	이동원	2020.09.03
〃	이성범	2020.09.03
〃	권나원	2020.09.03
〃	임예진	2020.09.03
〃	서경원	2020.09.03
〃	서원익	2020.09.03
검사	금명원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허세진	2020.02.03
〃	황진선	2020.02.03
〃	임상규	2019.02.11
〃	엄상준	2018.02.05
〃	김현웅	2020.02.03
〃	박진아	2019.02.11
〃	김연희	2019.02.11
〃	최우석	2019.03.01
〃	김구열	2020.03.01
〃	박보영	2018.03.02
〃	배상아	2019.03.01
〃	정성용	2020.03.01
〃	안태영	2020.03.01
〃	유재덕	2020.05.11
〃	이지은	2020.05.11
〃	정연우	2020.05.11
〃	최종환	2020.05.11
〃	권태환	2020.05.11
〃	최종필	2018.02.05
〃	김진호	2017.02.20
〃	임연진	2020.02.03
〃	최수봉	2018.02.05
〃	한문혁	2018.02.05
〃	김정화	2020.02.03
〃	최성수	2019.08.06
〃	김종욱	2020.02.03
〃	이수창	2019.02.11
〃	최성겸	2019.02.11
〃	조상규	2020.02.03
〃	최윤경	2020.02.03
〃	김효진	2017.02.20
〃	단정려	2017.02.20
〃	이세종	2019.02.11
〃	신승호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윤 경	2019.02.11
〃	박배희	2020.02.03
〃	최상훈	2018.02.05
〃	박 수	2019.02.11
〃	정성헌	2019.02.11
〃	박재평	2018.02.05
〃	김 진	2019.02.11
〃	배지훈	2018.07.19
〃	김미영	2018.02.05
〃	정광병	2020.02.03
〃	최성준	2019.02.11
〃	진종규	2020.02.03
〃	신헌섭	2020.02.03
〃	김미선	2020.02.03
〃	정동현	2019.02.11
〃	김재우	2020.02.03
〃	김보미	2018.02.05
〃	허수진	2018.02.05
〃	강 현	2019.02.11
〃	임수민	2019.02.11
〃	박진섭	2020.02.03
〃	이재원	2020.02.03
〃	조혜민	2020.02.03
〃	최대호	2020.02.03
〃	김하영	2020.02.03
〃	김진규	2019.04.01
〃	김병채	2020.04.01
〃	조영민	2019.02.11
〃	조아영	2020.02.03
사무국장	김정호	2020.08.21
총무과장	성찬오	2019.09.30
사건과장	김윤기	2019.09.30
집행과장	서진학	2020.08.21
조사과장	최성규	2019.09.30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박정학	2019.09.30
공 판 과 장	이정용	2019.01.28
검 사 직 무 대 리	이 헌	2019.09.30
검 사 직 무 대 리	고병훈	2020.08.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김후곤	2020.01.13
차 장 검 사	김형근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양인철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태광	2020.02.03
〃	손석천	2020.09.03
〃	공태구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박상진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임종필	2020.09.03
형 사 제 3 부 장	이정렬	2020.09.03
형 사 제 4 부 장	박하영	2020.02.03
형 사 제 5 부 장	서인선	2020.02.03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	2020.02.03
공 판 부 장	이지형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2020.09.03
(부부장)검사	장재완	2020.09.03
〃	이동현	2020.09.03
〃	한상훈	2020.09.03
〃	강호준	2020.09.03
〃	노정옥	2020.09.03
검 사	송정범	2019.02.11
〃	김혜주	2019.02.11
〃	남재현	2020.02.03
〃	손정아	2018.07.19
〃	이하영	2020.02.03
〃	김상직	2018.08.01
〃	김준소	2019.03.01
〃	이재희	2019.03.01
〃	조약돌	2020.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유호원	2020.03.01
〃	김태훈	2020.08.01
〃	박성종	2020.08.01
〃	김병준	2019.03.01
〃	최건호	2019.03.01
〃	박민지	2018.04.30
〃	강가람	2020.03.01
〃	남연진	2020.03.01
〃	최예지	2020.03.01
〃	김민호	2020.05.11
〃	이리원	2020.05.11
〃	이현민	2020.05.11
〃	박은혜	2020.05.11
〃	김호경	2018.02.05
〃	김금이	2018.02.05
〃	강은선	2017.02.20
〃	한대웅	2020.02.03
〃	윤인식	2018.02.05
〃	김정은	2020.02.03
〃	이기영	2019.02.11
〃	이종혁	2018.07.19
〃	정우성	2019.02.11
〃	최한나	2019.02.11
〃	박형수	2019.02.11
〃	송민하	2019.02.11
〃	이재연	2019.02.11
〃	최한얼	2020.02.03
〃	설수현	2019.02.11
〃	박지영	2018.02.05
〃	이수환	2018.02.05
〃	심재신	2019.02.11
〃	오승은	2020.02.03
〃	조지현	2020.02.03
〃	박영수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승훈	2020.02.03
〃	김진영	2019.04.01
〃	최서준	2020.04.01
〃	김윤환	2019.02.11
〃	황호용	2020.02.03
사무국장	전병렬	2019.10.28
총무과장	이상남	2019.10.28
사건과장	송영근	2020.08.21
집행과장	박상락	2020.08.21
조사과장	윤대섭	2020.08.21
수사과장	김백중	2020.08.21
공판과장	조달현	2020.02.10
검사직무대리	강재성	2020.02.10
검사직무대리	이일남	2020.0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2020.08.11
차장검사	김도균	2020.09.03
인권감독관	박재억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용수	2020.02.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재현	2020.09.03
〃	박병규	2019.08.06
〃	양건수	2020.09.03
〃	이종찬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박현철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김종호	2020.03.02
형사제3부장검사	최원석	2020.09.03
형사제4부장검사	최지석	2020.02.03
형사제5부장검사	최명규	2020.09.03
공판부장	이준범	2020.09.03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2020.09.03
(부부장)검사	김진호	2020.09.03
〃	조희영	2019.08.06
〃	김상균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혜란	2020.09.03
검사	유재근	2019.02.11
〃	민은식	2020.02.03
〃	김자은	2019.02.11
〃	임병일	2020.02.03
〃	이영준	2019.03.01
〃	이동현	2020.03.01
〃	정기하	2019.03.01
〃	임여은	2019.03.01
〃	신석규	2020.03.01
〃	황인혜	2020.03.01
〃	김정호	2020.05.11
〃	문지석	2019.02.11
〃	이주희	2020.02.03
〃	박대환	2019.02.11
〃	김영준	2020.02.03
〃	손지혜	2020.02.03
〃	김재환	2018.02.05
〃	왕선주	2016.01.27
〃	김지연	2020.02.03
〃	황성아	2020.02.03
〃	김연주	2020.02.03
〃	김동규	2019.02.11
〃	송새봄	2018.02.05
〃	김지혜	2017.02.20
〃	김진희	2019.02.11
〃	김현서	2019.02.11
〃	권동욱	2020.02.03
〃	김은혜	2020.02.03
〃	박한나	2020.02.03
〃	최종경	2019.02.11
〃	홍현준	2019.02.11
〃	김녹원	2018.02.05
〃	박예주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경진	2019.02.11
〃	이평화	2020.02.03
〃	오세진	2020.02.03
〃	김진혁	2019.04.01
〃	이호진	2020.04.01
〃	김혜리	2019.02.11
〃	임주연	2020.02.03
사무국장	윤성진	2020.08.21
총무과장	김승현	2020.08.21
사건과장	현문정	2020.08.21
집행과장	김영일	2020.02.10
조사과장	최대진	2020.01.20
수사과장	이재호	2020.08.21
공판과장	노시탁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2019.09.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2020.08.11
차장검사	정진우	2020.09.03
인권감독관	노만석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근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성훈	2019.08.06
〃	윤대영	2020.09.03
〃	김원학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장준희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채수양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송지용	2020.02.03
형사제4부장검사	최행관	2020.09.03
형사제5부장검사	최우영	2020.09.03
형사제6부장검사	김성동	2020.02.03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2020.09.03
(부부장)검사	윤중현	2020.09.03
〃	이곤호	2020.09.03
〃	이영창	2020.09.03
〃	박혜영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허성환	2020.09.03
〃	최나영	2020.09.03
〃	이희찬	2020.09.03
〃	김희주	2020.09.03
검사	연제혁	2019.02.11
〃	남경우	2019.02.11
〃	이선미	2018.07.19
〃	유광선	2020.02.03
〃	현승록	2020.02.03
〃	김형철	2020.02.03
〃	정소영	2020.02.03
〃	김정선	2019.02.11
〃	고재린	2019.02.11
〃	최재호	2020.02.03
〃	고두성	2020.02.03
〃	고현욱	2020.02.03
〃	오자연	2019.02.11
〃	류재현	2019.03.01
〃	이해영	2019.03.01
〃	김효준	2020.03.01
〃	노우석	2020.03.01
〃	진동화	2020.08.01
〃	이준태	2020.08.01
〃	김태현	2019.03.01
〃	한채란	2019.03.01
〃	이강천	2020.03.01
〃	조진희	2020.03.01
〃	강다롱	2020.03.01
〃	석초롱	2020.05.11
〃	김나경	2020.05.11
〃	정용진	2020.05.11
〃	김다래	2016.08.31
〃	이혜미	2015.02.25
〃	이지혜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해밝은	2020.02.03
〃	박재호	2018.02.05
〃	김유나	2019.02.11
〃	황경원	2018.02.05
〃	김수희	2018.02.05
〃	황수희	2019.02.11
〃	나민영	2019.02.11
〃	김은오	2020.02.03
〃	반영기	2020.02.03
〃	김수길	2020.02.03
〃	정경영	2018.02.05
〃	문태권	2020.02.03
〃	석동현	2020.02.03
〃	도윤지	2020.02.03
〃	라 혁	2020.02.03
〃	정제훈	2019.02.11
사무국장	김진우	2020.02.10
총무과장	조순남	2019.09.30
사건과장	하종찬	2020.08.21
집행과장	정승원	2020.02.10
수사과장	박종필	2020.08.21
공판송무과장	정의수	2019.09.30
검사직무대리	강순석	2020.08.21
(고 양 지 청)		
지청장	박종근	2020.09.03
차장검사	박현준	2020.09.03
인권감독관	강승희	2020.09.03
형사제1부장	강남수	2020.02.03
형사제2부장	성상욱	2020.09.03
형사제3부장	최 혁	2020.09.03
공판부장	한진희	2020.09.03
(부부장) 검사	최준호	2020.09.03
〃	김희영	2020.09.03
검사	최진혁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전형준	2019.02.11
〃	이기명	2019.02.11
〃	김주혜	2019.02.11
〃	김아연	2020.02.03
〃	김동민	2020.02.03
〃	정지원	2020.02.03
〃	박민규	2020.08.01
〃	성용진	2020.08.01
〃	정해빈	2020.08.01
〃	오종혁	2019.03.01
〃	박 현	2019.03.01
〃	이경준	2020.03.01
〃	김광제	2020.03.01
〃	정윤경	2020.03.01
〃	김민정	2020.05.11
〃	강송훈	2020.05.11
〃	윤가희	2020.05.11
〃	임영하	2020.05.11
〃	김성수	2020.05.11
〃	황정임	2019.02.11
〃	김지영	2018.02.05
〃	유지연	2016.08.31
〃	오창명	2020.09.03
〃	김동진	2019.02.11
〃	임지연	2020.02.03
〃	김미혜	2018.02.05
〃	이소연	2019.02.11
〃	박성현	2020.02.03
〃	유상우	2019.02.11
〃	정기훈	2019.02.11
〃	전제희	2020.02.03
사무국장	권영준	2020.02.10
총무과장	이영일	2019.09.30
사건과장	강석인	2020.08.21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조병웅	2020.08.21
수 사 과 장	이보균	2019.09.30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고 흥	2020.08.11
제 1 차 장 검 사	김효붕	2020.09.03
제 2 차 장 검 사	홍종희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전미화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하충헌	2020.09.03
〃	류지열	2019.08.06
〃	양재혁	2020.09.03
〃	박혜경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김용규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황금천	2020.09.03
형 사 제 3 부 장	김태운	2020.02.03
형 사 제 4 부 장	김훈영	2020.09.03
형 사 제 5 부 장	구태연	2020.09.03
형 사 제 6 부 장	유경필	2020.09.03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2020.09.03
강력범죄형사부	문영권	2020.09.03
형 사 제 7 부 장	이희동	2020.09.03
공 판 송 무 1 부 장	황정현	2020.09.03
공 판 송 무 2 부 징	김수민	2020.02.03
(부 부 장) 검 사	김윤섭	2020.09.03
〃	조대호	2020.09.03
〃	박승대	2020.09.03
〃	김 현	2020.09.03
〃	이기영	2019.02.11
〃	안병수	2019.02.11
〃	정영수	2020.09.03
〃	조민우	2020.09.03
〃	허 준	2020.09.03
〃	김재남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신정수	2019.02.11
〃	이지륜	2019.02.11
〃	심강현	2020.02.03
〃	권근환	2018.02.05
〃	채필규	2020.02.03
〃	유주현	2018.02.05
〃	조윤경	2018.02.05
〃	전영경	2018.02.05
〃	김승연	2019.02.11
〃	장지철	2019.02.11
〃	진아름	2020.02.03
〃	원선아	2019.02.11
〃	박윤상	2020.02.03
〃	우세호	2020.02.03
〃	배한진	2020.02.03
〃	박영우	2020.02.03
〃	최윤영	2019.03.01
〃	이태훈	2019.03.01
〃	이동헌	2020.03.01
〃	손성훈	2020.02.03
〃	김선진	2020.08.01
〃	황용범	2020.08.01
〃	정종일	2019.03.01
〃	김미리	2019.03.01
〃	백가영	2018.04.30
〃	김한솔	2020.03.01
〃	박세진	2020.03.01
〃	김윤정	2020.05.11
〃	백희진	2020.05.11
〃	김지윤	2020.05.11
〃	손은선	2020.05.11
〃	김상준	2020.02.03
〃	이치현	2019.02.11
〃	박경택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서성목	2019.02.11
〃	조 철	2018.02.05
〃	김병철	2017.02.20
〃	김상현	2020.02.03
〃	김한민	2020.02.03
〃	성두경	2019.02.11
〃	김병욱	2019.02.11
〃	안준석	2018.02.05
〃	최수지	2018.02.05
〃	김진우	2018.02.05
〃	이승민	2018.02.05
〃	임하나	2015.02.25
〃	황근주	2019.02.11
〃	이영진	2020.02.03
〃	서지원	2018.02.05
〃	김한울	2019.02.11
〃	안상현	2019.02.11
〃	김나리	2017.02.20
〃	이수정	2018.02.05
〃	임찬미	2019.02.11
〃	이홍석	2019.02.11
〃	김영준	2020.02.03
〃	이재인	2020.02.03
〃	차대영	2018.02.05
〃	신지원	2020.02.03
〃	허윤행	2018.02.05
〃	황두평	2019.02.11
〃	서동인	2019.02.11
〃	김준성	2019.02.11
〃	전유경	2019.02.11
〃	권민정	2019.02.11
〃	김현창	2020.02.03
〃	박아름	2020.02.03
〃	정주희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황준성	2019.04.01
〃	목찬수	2020.04.01
〃	김호중	2019.02.11
〃	이수경	2019.02.11
〃	김세윤	2020.02.03
사 무 국 장	윤득영	2020.08.21
총 무 과 장	김수호	2020.02.10
사 건 과 장	신현미	2020.08.21
집 행 과 장	이수환	2020.08.21
조 사 과 장	박호문	2019.09.30
수 사 과 장	주웅일	2020.02.10
마 약 수 사 과 장	김용권	2019.09.30
공 판 송 무 과 장	양인식	2020.02.10
검 사 직 무 대 리	권선기	2020.08.21
검 사 직 무 대 리	현동림	2020.08.21
검 사 직 무 대 리	이용성	2019.09.30
(부 천 지 청)		
지 청 장	이준식	2020.09.03
차 장 검 사	장동철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정유미	2020.09.03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김정진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박정의	2020.09.03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최재봉	2020.09.03
공 판 부 장	손찬오	2020.09.03
(부 부 장) 검 사	김종필	2020.09.03
검 사	이선미	2018.02.05
〃	유희경	2020.02.03
〃	이은정	2019.02.11
〃	유경준	2018.08.01
〃	장근보	2019.03.01
〃	이채훈	2018.02.05
〃	최웅	2020.08.01
〃	이원창	2020.08.01
〃	박광현	2020.08.0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윤용석	2020.02.03
〃	박조민	2019.03.01
〃	양현세	2019.03.01
〃	정재인	2020.05.11
〃	유재승	2020.05.11
〃	장은희	2020.09.03
〃	임두환	2020.02.03
〃	최혜경	2019.02.11
〃	황윤재	2020.02.03
〃	류경환	2019.02.11
〃	최재현	2019.02.11
〃	이지은	2019.02.11
〃	고은실	2017.02.20
〃	이주현	2019.02.11
〃	이강우	2020.02.03
〃	황재동	2018.02.05
〃	김정선	2019.02.11
〃	민수영	2019.02.11
〃	강형윤	2020.02.03
〃	송성광	2020.02.03
〃	조영주	2019.02.11
〃	김윤식	2019.02.11
〃	조운형	2019.02.11
〃	유한실	2020.02.03
사무국장	권영갑	2020.08.21
총무과장	이동영	2020.08.21
사건과장	김탁환	2020.08.21
집행과장	강신영	2019.09.30
수사과장	이준형	2020.02.10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2020.08.11
차장검사	이원석	2020.01.13
검사	위성운	2019.03.01
〃	김영태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성윤	2020.02.03
〃	이선훈	2019.08.06
〃	김 훈	2019.03.01
〃	류원근	2020.09.03
〃	김기준	2020.09.03
〃	박규은	2020.09.03
〃	황의수	2019.08.06
〃	황은영	2019.08.06
〃	김정호	2020.09.03
〃	윤원상	2020.09.03
〃	이병대	2020.09.03
사무국장	이성범	2020.08.21
총무과장	이인주	2020.02.10
사건과장	한생일	2020.02.1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문홍성	2020.08.11
제1차장검사	김춘수	2020.09.03
제2차장검사	송 강	2020.09.03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신엽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윤중기	2020.09.03
〃	윤춘구	2020.09.03
〃	도상범	2019.08.06
〃	김완규	2020.09.03
〃	김정훈	2019.08.06
형사제1부장	이선혁	2020.09.03
형사제2부장	이덕진	2020.09.03
형사제3부장	이정섭	2020.09.03
형사제4부장	배성훈	2020.09.03
형사제5부장	이영규	2020.09.03
형사제6부장	박광현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2020.09.03
공공수사부장	차범준	2020.02.03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부 장	권방문	2020.09.03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 춘	2020.09.03
(부부장)검사	박성훈	2020.09.03
〃	정재현	2020.09.03
〃	황우진	2018.07.19
〃	정현승	2020.09.03
〃	강민정	2020.09.03
〃	김재혁	2020.09.03
〃	김형원	2020.09.03
〃	권성희	2020.09.03
〃	권찬혁	2020.09.03
〃	김영미	2020.09.03
〃	공준혁	2020.09.03
〃	이정민	2020.09.03
〃	오미경	2020.09.03
〃	김상민	2020.09.03
〃	이세희	2020.09.03
검 사	김대철	2019.02.11
〃	이종민	2019.02.11
〃	이종광	2019.02.11
〃	한은지	2020.02.03
〃	구승기	2020.02.03
〃	조소인	2018.02.05
〃	박규남	2018.02.05
〃	권인표	2020.02.03
〃	서아람	2018.02.05
〃	송보형	2019.02.11
〃	주영선	2019.02.11
〃	하지수	2019.02.11
〃	박형건	2020.02.03
〃	고은진	2018.02.05
〃	양서원	2020.02.03
〃	천재영	2019.03.01
〃	김성진	2019.03.01
〃	이상돈	2020.08.01
〃	오재완	2020.08.01
〃	구재훈	2020.02.03
〃	배성재	2019.03.01
〃	정영지	2019.03.01
〃	박상준	2019.03.01
〃	홍유정	2019.03.01
〃	임헌준	2020.03.01
〃	최인혁	2020.05.11
〃	임현진	2020.05.11
〃	신수민	2020.05.11
〃	공도운	2020.05.11
〃	안주원	2020.05.11
〃	이상혁	2018.02.05
〃	이유현	2019.02.11
〃	남수연	2019.02.11
〃	고은별	2016.01.27
〃	최용락	2020.09.03
〃	정영서	2018.02.05
〃	김정환	2019.02.11
〃	윤국권	2019.02.11
〃	곽금희	2017.08.17
〃	임풍성	2019.02.11
〃	김경목	2019.02.11
〃	서혜선	2019.02.11
〃	박영식	2019.02.11
〃	이재원	2019.02.11
〃	김대현	2019.02.11
〃	현동길	2019.02.11
〃	석수민	2020.09.03
〃	강현욱	2019.02.11
〃	신병우	2019.02.11
〃	송민주	2019.02.11
〃	김윤진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윤기형	2020.02.03
〃	강현호	2020.02.03
〃	임성수	2020.02.03
〃	박광호	2020.02.03
〃	송현탁	2019.02.11
〃	김지수	2019.02.11
〃	조재익	2019.02.11
〃	류수헌	2019.02.11
〃	김인선	2020.02.03
〃	민경재	2020.02.03
〃	윤오연	2020.02.03
〃	남도현	2019.04.01
〃	문성은	2020.04.01
〃	박상우	2019.02.11
〃	허정훈	2020.02.03
사무국장	강성식	2020.08.21
총무과장	백상홍	2020.08.21
사건과장	조병민	2020.08.21
집행과장	현 임	2020.02.10
조사과장	김한영	2020.08.21
수사과장	이기우	2020.08.21
공판송무과장	윤재원	2020.02.10
검사직무대리	김성곤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최원서	2020.08.21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2020.09.03
차장검사	강지성	2020.09.03
인권감독관	장성철	2020.09.03
형사제1부장	허 정	2020.02.03
형사제2부장	이성식	2020.02.03
형사제3부장	이종민	2020.09.03
공판부장	유지연	2020.02.03
(부부장) 검사	서지현	2018.07.19

직 위	성명	발령일
〃	장윤영	2019.08.06
〃	임유경	2020.09.03
〃	박성민	2020.09.03
검사	이호재	2019.02.11
〃	정민희	2018.02.05
〃	최지은	2019.02.11
〃	김민아	2018.02.05
〃	박진덕	2019.02.11
〃	문동기	2019.02.11
〃	김현경	2020.02.03
〃	홍등불	2020.02.03
〃	유승진	2020.02.03
〃	김지혜	2020.02.03
〃	김다현	2019.02.11
〃	김용석	2020.03.01
〃	탁광진	2019.03.01
〃	서지혜	2019.03.01
〃	정세연	2019.03.01
〃	김의회	2020.03.01
〃	김태훈	2020.03.01
〃	정수진	2019.05.08
〃	이섬연	2020.03.01
〃	김현지	2020.05.11
〃	김지훈	2020.05.11
〃	박소영	2020.05.11
〃	윤나라	2017.02.20
〃	여경진	2017.02.20
〃	최지현	2018.02.05
〃	정미란	2019.02.11
〃	손아지	2019.02.11
〃	김민정	2019.02.11
〃	김지훈	2019.02.11
〃	김광락	2020.02.03
〃	엄현재	2020.02.03

직위	성명	발령일
〃	여재영	2019.02.11
〃	이영호	2019.04.01
〃	김홍도	2019.02.11
사무국장	이홍룡	2020.02.10
총무과장	김권태	2020.08.21
사건과장	남기주	2020.08.21
집행과장	정석현	2020.02.10
수사과장	김용관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이후석	2019.09.30
(여주지청)		
지청장	송경호	2020.02.03
부장검사	김용식	2020.09.03
검사	권다송이	2019.02.11
〃	이명희	2020.02.03
〃	우만우	2020.02.03
〃	문호섭	2019.02.11
〃	구자원	2020.02.03
〃	이휘소	2018.02.05
〃	곽병수	2019.02.11
〃	서하나	2019.02.11
〃	김재현	2020.02.03
사무과장	최수종	2020.02.10
수사과장	오홍석	2019.09.30
(평택지청)		
지청장	신봉수	2020.02.03
형사제1부장검사	이혜은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임세진	2020.09.03
검사	김세현	2020.02.03
〃	임재웅	2019.02.11
〃	이동원	2020.02.03
〃	허성호	2019.02.11
〃	오정은	2019.02.11
〃	김도희	2019.02.11
〃	정성욱	2020.02.03

직위	성명	발령일
〃	조하림	2020.02.03
〃	이영훈	2020.02.03
〃	김형섭	2019.02.11
〃	이정아	2020.02.03
〃	김동직	2018.02.05
〃	박병인	2019.02.11
〃	권영우	2019.02.11
〃	최민혁	2020.02.03
〃	신지원	2019.02.11
〃	박선영	2020.02.03
사무과장	전효수	2020.02.10
수사과장	김선조	2019.09.30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2020.09.03
차장검사	최재민	2020.09.03
인권감독관	김지연	2020.09.03
형사1부장검사	이준식	2020.09.03
형사2부장검사	안동완	2020.09.03
형사3부장검사	이곤형	2020.09.03
공판부장	민영현	2020.09.03
(부부장) 검사	나의엽	2020.09.03
〃	문지선	2020.09.03
〃	오기찬	2020.09.03
〃	민병권	2020.09.03
〃	최재준	2020.09.03
〃	노선균	2020.09.03
검사	이정환	2019.02.11
〃	성인욱	2019.02.11
〃	오광일	2020.02.03
〃	최예원	2020.02.03
〃	김찬우	2019.03.01
〃	윤상훈	2020.03.01
〃	고승우	2020.08.01
〃	송미루	2020.08.01

직 위	성명	발령일
〃	심요한	2020.08.01
〃	김시현	2019.03.01
〃	박수영	2019.03.01
〃	박성환	2020.03.01
〃	김한민	2020.03.01
〃	안수진	2020.03.01
〃	류범선	2020.05.11
〃	이혜진	2020.05.11
〃	최근영	2020.09.03
〃	김형아	2018.02.05
〃	진경섭	2019.02.11
〃	박일규	2019.02.11
〃	이상미	2020.02.03
〃	송수연	2017.02.20
〃	유제민	2019.02.11
〃	송선민	2018.02.05
〃	이경선	2020.02.03
〃	이라영	2019.02.11
〃	오보미	2020.02.03
〃	서소희	2020.02.03
〃	정정화	2020.02.03
〃	장 진	2019.02.11
〃	이소현	2019.02.11
〃	박경남	2020.02.03
〃	이동우	2019.02.11
〃	김예은	2019.02.11
〃	최정훈	2020.02.03
〃	박승균	2020.02.03
〃	박동준	2020.02.03
〃	강인선	2020.02.03
〃	김선태	2019.04.01
〃	조한이	2019.02.11
〃	서민욱	2020.02.03
사무국장	노희동	2020.01.01

직 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김규하	2020.02.10
사건과장	이동진	2019.09.30
집행과장	장지섭	2019.09.30
수사과장	유재완	2020.02.10
검사직무대리	서상국	2020.08.21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2020.09.03
차장검사	박진원	2020.09.03
인권감독관	권기대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김재하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강석철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김제성	2020.02.03
(부부장)검사	임삼빈	2020.09.03
〃	손정숙	2020.09.03
검사	박민희	2020.02.03
〃	원세정	2019.02.11
〃	정세연	2018.02.05
〃	이형우	2019.03.01
〃	가혜리	2019.03.01
〃	조예림	2019.03.01
〃	조진희	2020.05.11
〃	채원재	2020.05.11
〃	이윤희	2019.02.11
〃	정영주	2018.07.19
〃	윤원일	2019.02.11
〃	김재성	2020.02.03
〃	손명지	2019.02.11
〃	서정화	2020.02.03
〃	최수경	2018.02.05
〃	최우혁	2019.02.11
〃	김현수	2018.02.05
〃	이주연	2020.02.03
〃	박지영	2020.02.03
〃	최영준	2020.02.03

직위	성명	발령일
〃	정윤정	2018.02.05
〃	유지혜	2020.02.03
〃	이충용	2019.02.11
〃	전진표	2020.02.03
사무국장	박귀원	2020.02.10
총무과장	조민호	2020.08.21
사건과장	김현호	2019.01.28
집행과장	이재성	2020.02.10
수사과장	최용호	2020.08.21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종태	2020.01.13
차장검사	정영학	2020.09.03
인권감독관	김경우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서창원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이유진	2020.09.03
(부부장)검사	신혜진	2020.09.03
〃	박은혜	2020.09.03
〃	추의정	2020.09.03
검사	김상순	2019.03.01
〃	현승학	2020.03.01
〃	백지은	2019.03.01
〃	안창보	2020.03.01
〃	최희정	2017.02.20
〃	이승학	2019.02.11
〃	최재만	2020.09.03
〃	한상윤	2019.08.06
〃	이자경	2018.02.05
〃	허용준	2020.02.03
〃	황나영	2019.02.11
〃	전혜현	2020.02.03
〃	문정신	2019.02.11
〃	장유나	2017.02.20
사무국장	권태균	2020.02.10
총무과장	전병후	2020.02.10

직위	성명	발령일
사건과장	김창옥	2020.08.21
수사과장	홍승모	2020.02.10
집행과장	이승호	2019.09.30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2020.09.03
형사부장검사	조아라	2020.09.03
검사	이윤석	2020.02.03
〃	안세영	2020.02.03
〃	주은혜	2020.02.03
〃	민경원	2018.02.05
〃	박재성	2018.02.05
〃	장태원	2019.02.11
〃	최완영	2019.02.11
〃	최정수	2020.02.03
〃	김지혜	2020.02.03
사무과장	이창환	2019.09.30
수사과장	이상민	2020.02.10
(원주지청)		
지청장	김유철	2020.02.03
형사제1부장검사	신대경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최재훈	2020.09.03
검사	전성환	2019.02.11
〃	손재용	2020.02.03
〃	황익진	2020.02.03
〃	최혜진	2019.02.11
〃	장혜수	2020.02.03
〃	이가은	2020.02.03
〃	최명수	2020.02.03
〃	권준택	2019.02.11
〃	한윤석	2020.02.03
〃	신가현	2020.02.03
〃	안덕중	2020.02.03
사무과장	전명관	2019.09.30
수사과장	이경태	2020.08.21

직 위	성명	발령일
(속 초 지 청)		
지 청 장	고진원	2020.09.03
검 사	하언욱	2020.02.03
〃	김규완	2019.02.11
〃	김진호	2020.02.03
사 무 과 장	김재주	2020.08.21
(영 월 지 청)		
지 청 장	유태석	2020.09.03
검 사	박형철	2019.02.11
〃	이재연	2020.02.03
〃	김지웅	2019.02.11
〃	김연재	2020.02.03
사 무 과 장	이태영	2020.08.21
(대 전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강남일	2020.01.13
검 사	정병대	2020.09.03
〃	송승섭	2020.09.03
〃	이승영	2020.09.03
〃	윤영준	2019.08.06
〃	김석우	2020.09.03
〃	김재호	2020.09.03
〃	최용규	2020.09.03
〃	양석조	2020.02.03
〃	이영림	2020.09.03
사 무 국 장	유승준	2020.02.10
총 무 과 장	박영서	2020.02.10
사 건 과 장	이동근	2019.09.30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두봉	2020.01.13
차 장 검 사	박지영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김명수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양보승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종구	2019.08.06
〃	김종칠	2018.07.19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영의	2020.09.03
〃	이영재	2020.09.03
형 사 제 1 부 장	김호삼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김향연	2020.09.03
형 사 제 3 부 장	이복현	2020.09.03
형 사 제 4 부 장	김종우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2020.09.03
형 사 제 5 부 장	이상현	2020.09.03
특 허 범 죄 조 사 부 장	김윤희	2020.02.03
공 판 부 장	민경호	2020.09.03
(부 부 장) 검 사	유정호	2020.09.03
〃	박성민	2020.09.03
〃	손상욱	2020.09.03
〃	최재아	2020.09.03
〃	주혜진	2020.09.03
〃	안창주	2020.09.03
검 사	이승우	2019.02.11
〃	홍동기	2020.02.03
〃	고려진	2020.02.03
〃	정종헌	2019.02.11
〃	박정선	2020.02.03
〃	안화연	2019.02.11
〃	서민우	2020.02.03
〃	전원영	2020.03.01
〃	신종화	2019.03.01
〃	원현호	2019.05.08
〃	박자영	2020.05.11
〃	정희선	2019.08.06
〃	박건영	2020.02.03
〃	조영성	2020.02.03
〃	이정화	2020.02.03
〃	박향철	2020.02.03
〃	김형원	2019.02.11
〃	이규원	2018.02.05

직위	성명	발령일
〃	배철성	2019.02.11
〃	용태호	2020.02.03
〃	김진혁	2020.09.03
〃	호승진	2017.02.20
〃	최재순	2019.02.11
〃	이원모	2020.09.03
〃	송민경	2019.02.11
〃	김수민	2019.02.11
〃	정우준	2020.02.03
〃	이세원	2020.09.03
〃	조아라	2019.02.11
〃	조수영	2020.02.03
〃	이주훈	2018.02.05
〃	이수현	2020.02.03
〃	김지은	2019.02.11
〃	송명진	2020.02.03
〃	임은정	2017.02.20
〃	우옥영	2020.02.03
〃	강화연	2020.02.03
〃	김세관	2020.02.03
〃	박재훈	2018.02.05
〃	윤기선	2020.02.03
〃	최은미	2020.02.03
〃	이성화	2020.02.03
〃	김승곤	2020.02.03
〃	김봉수	2019.04.01
〃	김종원	2020.04.01
〃	오영민	2019.02.11
〃	정초롱	2020.02.03
사무국장	정동진	2020.02.10
총무과장	이규승	2020.02.10
사건과장	김용대	2019.01.28
집행과장	김봉석	2020.02.10
조사과장	윤병득	2018.07.09

직위	성명	발령일
수사과장	이승재	2020.02.10
검사직무대리	김재영	2018.07.09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2020.09.03
형사부장검사	이찬규	2020.09.03
검사	고기철	2020.02.03
〃	심기하	2019.02.11
〃	함덕훈	2019.02.11
〃	최지윤	2019.02.11
〃	공소정	2020.02.03
〃	안동찬	2020.02.03
〃	성혜진	2020.02.03
사무과장	이종학	2020.02.10
수사과장	이전철	2020.08.21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2020.09.03
검사	이재영	2020.02.03
〃	홍석원	2019.02.11
〃	신충섭	2020.02.03
사무과장	배의봉	2020.02.10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2020.09.03
검사	이성직	2019.02.11
〃	손현진	2020.02.03
〃	이종민	2019.02.11
〃	김가연	2020.02.03
사무과장	최봉진	2020.08.21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2020.09.03
형사부장검사	이상록	2020.02.03
검사	양효승	2019.02.11
〃	오슬기	2019.02.11
〃	이혜원	2019.02.11
〃	박지향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성두	2017.02.20
〃	김민수	2019.02.11
〃	이정우	2019.02.11
〃	손성민	2020.02.03
사무과장	정태운	2020.08.21
수사과장	임영필	2020.02.10
(천안지청)		
지청장	홍승욱	2020.02.03
차장검사	김선화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이영남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최인상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김병문	2020.09.03
(부부장)검사	서효원	2020.09.03
〃	김지혜	2020.09.03
검사	류정인	2019.02.11
〃	정혜라	2019.02.11
〃	심동선	2018.03.02
〃	이대희	2019.03.01
〃	김민영	2019.03.01
〃	양경문	2020.03.01
〃	홍준현	2020.05.11
〃	임지혜	2020.05.11
〃	박소미	2020.05.11
〃	안도은	2020.05.11
〃	박보경	2020.05.11
〃	박종선	2019.02.11
〃	장진영	2020.02.03
〃	조정호	2020.02.03
〃	이대성	2020.02.03
〃	유종건	2019.02.11
〃	김민정	2019.02.11
〃	강현정	2018.02.05
〃	김유나	2019.02.11
〃	김미경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노경은	2020.02.03
〃	신지나	2019.02.11
〃	김우중	2019.02.11
〃	이병래	2019.02.11
〃	온정훈	2019.02.11
〃	김한나	2019.02.11
사무국장	김태경1	2020.02.10
총무과장	임승철	2020.02.10
사건과장	민종원	2020.08.21
집행과장	진성창	2020.02.10
수사과장	조형식	2020.02.10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환	2020.08.11
차장검사	이진수	2020.09.03
인권감독관	신은선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영운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배창대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정희도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배문기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곽영환	2020.09.03
(부부장)검사	김호준	2020.09.03
〃	권현유	2020.09.03
〃	김도연	2019.08.06
검사	최세윤	2019.02.11
〃	최희선	2018.02.05
〃	고영인	2020.03.01
〃	정한균	2020.05.11
〃	김동욱	2020.05.11
〃	신혜원	2020.05.11
〃	기노성	2019.02.11
〃	정가진	2018.02.05
〃	장영일	2018.02.05
〃	김정훈	2019.02.11
〃	박순애	2020.02.03

직위	성명	발령일
〃	김정옥	2019.08.06
〃	정선제	2020.02.03
〃	김창섭	2019.02.11
〃	김가람	2019.02.11
〃	최용보	2019.02.11
〃	김지숙	2019.02.11
〃	최혜경	2020.02.03
〃	최하연	2017.02.20
〃	탁동완	2019.02.11
〃	신기창	2020.02.03
〃	신주희	2019.02.11
〃	강민정	2020.02.03
〃	설제민	2019.02.11
〃	박진현	2020.02.03
사무국장	윤진웅	2020.02.10
총무과장	이창희	2020.02.10
사건과장	홍흥표	2020.02.10
집행과장	배은호	2020.02.10
수사과장	김득호	2020.02.10
검사직무대리	신익수	2020.08.21
(충주지청)		
지청장	임용규	2020.02.03
형사부장검사	김민아	2020.09.03
검사	김정윤	2020.02.03
〃	전화정	2019.02.11
〃	김진영	2019.02.11
〃	이경환	2019.02.11
〃	박종현	2020.02.03
〃	박현우	2020.02.03
사무과장	조현곤	2020.08.21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2020.09.03
검사	박대한	2019.02.11
〃	김기왕	2019.02.11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노진철	2020.02.10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2020.09.03
검사	이동형	2019.02.11
〃	김원재	2020.02.03
사무과장	편영길	2020.08.2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2020.08.11
검사	이재구	2020.09.03
〃	고병민	2019.08.06
〃	양요안	2019.08.06
〃	신응석	2020.09.03
〃	배성효	2020.02.03
〃	김영현	2020.09.03
〃	서성호	2020.09.03
〃	최성완	2020.09.03
사무국장	김정옥	2020.08.21
총무과장	오만옥	2020.02.10
사건과장	박무선	2019.09.3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2020.08.11
제1차장검사	이정환	2020.09.03
제2차장검사	박영빈	2020.09.03
인권감독관	정효삼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여찬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채석현	2020.02.03
〃	이지윤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김태은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하신욱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이주영	2020.09.03
형사제4부장검사	김정환	2020.02.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장혜영	2020.09.03
형사제5부장검사	김창수	2020.09.03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정헌	2020.09.03
공판제1부장	강세현	2020.09.03
공판제2부장	정일균	2020.02.03
(부부장)검사	김승호	2018.07.19
〃	황보현희	2019.08.06
〃	박지용	2020.09.03
〃	강선주	2020.09.03
〃	황수연	2020.09.03
〃	정명원	2020.09.03
〃	신재홍	2020.09.03
〃	강정영	2020.09.03
검사	장준혁	2017.02.20
〃	김영석	2017.02.20
〃	이현진	2020.02.03
〃	이준석	2020.02.03
〃	배석희	2018.02.05
〃	김슬아	2018.02.05
〃	이경아	2019.02.11
〃	구재연	2019.02.11
〃	하용만	2020.02.03
〃	최혜민	2020.02.03
〃	김정화	2020.02.03
〃	박상환	2019.03.01
〃	김시한	2020.03.01
〃	황성규	2019.03.01
〃	하연지	2019.03.01
〃	김대성	2020.03.01
〃	이인원	2020.03.01
〃	이상목	2019.02.11
〃	조윤철	2020.02.03
〃	정현주	2017.08.17
〃	인 훈	2019.02.11
〃	신기련	2019.08.06
〃	곽계령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강용묵	2019.02.11
〃	이동근	2018.02.05
〃	남철우	2020.09.03
〃	이경석	2018.02.05
〃	황진아	2017.02.20
〃	차호동	2020.02.03
〃	권영필	2018.02.05
〃	김민정	2018.02.05
〃	유시동	2019.02.11
〃	김도형	2019.02.11
〃	허정은	2017.02.20
〃	최여련	2020.09.03
〃	이진희	2017.02.20
〃	이건웅	2020.02.03
〃	권경호	2019.02.11
〃	이현석	2020.02.03
〃	이나경	2019.02.11
〃	차병곤	2020.02.03
〃	김한준	2020.02.03
〃	권오장	2020.02.03
〃	김서영	2019.02.11
〃	김상이	2020.02.03
〃	나혜윤	2019.02.11
〃	김승미	2020.02.03
〃	김동휘	2020.02.03
〃	김다락	2020.02.03
〃	이상윤	2019.04.01
〃	이형철	2020.04.01
〃	이승재	2020.02.03
〃	전여민	2020.02.03
사무국장	김묵진	2020.02.10
총무과장	구영한	2019.09.30
사건과장	강태수	2019.01.28
집행과장	금광식	2020.02.10

직위	성명	발령일
수사과장	김재복	2020.08.21
조사과장	김명규	2020.08.21
공판과장	이태득	2019.01.28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2020.08.21
검사직무대리	노한열	2020.08.21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석리	2020.02.03
차장검사	김도형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박성민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홍성준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이준호	2020.09.03
(부부장)검사	김공주	2020.09.03
검사	서강원	2019.02.11
〃	남지민	2017.02.20
〃	한승훈	2019.02.11
〃	최민준	2018.02.05
〃	원상환	2020.02.03
〃	주용하	2020.08.01
〃	공현진	2020.08.01
〃	정은경	2019.03.01
〃	우희준	2020.03.01
〃	정민섭	2019.05.08
〃	우승민	2020.03.01
〃	윤지훈	2020.05.11
〃	김도환	2020.05.11
〃	김소연	2020.05.11
〃	이하은	2020.05.11
〃	이수진	2018.02.05
〃	김미은	2019.02.11
〃	김준호	2017.02.20
〃	박은혜	2019.02.11
〃	신영삼	2020.02.03
〃	이한종	2019.02.11
〃	오재준	2020.02.03
〃	박노산	2020.02.03
〃	박철량	2018.02.05
〃	문지원	2019.02.11
〃	안희경	2019.02.11
〃	김소영	2020.09.03
〃	유소영	2020.02.03
〃	윤지언	2019.02.11
사무국장	신범수	2020.08.21
총무과장	이창우	2020.08.21
사건과장	도손철	2020.08.21
집행과장	정재기	2019.09.30
수사과장	황재화	2020.02.10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2020.09.03
검사	김정현	2019.02.11
〃	이상범	2020.02.03
〃	박종호	2019.02.11
〃	박기태	2019.02.11
〃	장현구	2020.02.03
사무과장	김종기	2020.02.10
수사과장	권기창	2020.08.21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2020.09.03
형사부장검사	조만래	2020.09.03
검사	이자희	2018.02.05
〃	안제홍	2020.02.03
〃	정인혜	2019.02.11
〃	이영주	2020.02.03
〃	홍영기	2020.02.03
〃	이종원	2017.02.20
사무과장	권재영	2020.08.21
수사과장	김상학	2020.08.21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김영오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김 중	2020.09.03
검사	이웅희	2019.02.11
〃	최진우	2020.02.03
〃	김범준	2019.02.11
〃	장우혁	2019.02.11
〃	김나연	2020.02.03
〃	이아람	2020.02.03
〃	정다미	2020.02.03
〃	최종윤	2020.02.03
〃	윤장훈	2020.02.03
〃	최정훈	2020.02.03
〃	권예리	2020.02.03
사무과장	김진룡	2020.08.21
집행과장	박용석	2020.02.10
수사과장	김경희	2020.08.21
(김 천 지 청)		
지청장	권기환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이용균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박준영	2020.09.03
검사	박성현	2019.02.11
〃	최자윤	2019.02.11
〃	김종민	2019.02.11
〃	김소영	2020.02.03
〃	정수희	2019.02.11
〃	차민형	2019.02.11
〃	오승식	2020.02.03
〃	허강녕	2020.02.03
〃	왕은진	2020.02.03
〃	양준열	2019.02.11
〃	정고운	2020.02.03
사무과장	이태언	2019.09.30
수사과장	김익근	2019.09.30
(상 주 지 청)		
지청장	이장우	2020.09.03
검사	이수영	2020.02.03
〃	김정원	2019.02.11
〃	정주미	2020.02.03
사무과장	김정연	2020.02.10
(의 성 지 청)		
지청장	박현규	2020.09.03
검사	안창인	2020.02.03
〃	이동훈	2019.02.11
사무과장	권오성	2020.08.21
(영 덕 지 청)		
지청장	백승주	2020.09.03
검사	김필수	2020.02.03
〃	임성환	2019.02.11
사무과장	이범재	2020.02.10
(부 산 고 등 검 찰 청)		
검사장	박성진	2020.08.11
검사	정의식	2020.09.03
〃	서정식	2020.09.03
〃	김용주	2019.08.06
〃	이용민	2020.09.03
〃	손준호	2020.09.03
〃	심재계	2020.02.03
〃	최인호	2018.07.19
〃	박승환	2020.09.03
〃	강종헌	2020.09.03
〃	신교임	2018.07.19
사무국장	박천홍	2020.08.21
총무과장	박원길	2020.08.21
사건과장	남대우	2020.02.10
(부 산 지 방 검 찰 청)		
검사장	권순범	2020.01.13
제1차장검사	조재빈	2020.09.03
제2차장검사	성상헌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감독관	유천열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제관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노상길	2019.08.06
〃	홍보가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유현정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임세호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조홍용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은미	2020.09.03
공공수사부장검사	조광환	2020.09.03
강력부장검사	김연실	2020.09.03
외사부장검사	신동원	2020.09.03
공판제1부장검사	권유식	2020.09.03
공판제2부장검사	위수현	2020.02.03
(부부장)검사	류장만	2013.04.23
〃	윤경원	2019.08.06
〃	하재무	2020.09.03
〃	김일권	2020.09.03
〃	윤동환	2020.09.03
〃	최우균	2020.09.03
〃	신승희	2020.09.03
〃	김태훈	2020.09.03
검사	박찬영	2019.02.11
〃	이형석	2020.02.03
〃	문민영	2015.02.25
〃	손유빈	2020.02.03
〃	김나영	2017.03.01
〃	신건수	2020.03.01
〃	이선균	2020.08.01
〃	최형욱	2019.03.01
〃	최진석	2020.03.01
〃	하경준	2020.05.11
〃	문승기	2020.05.11
〃	정아름	2020.05.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우경진	2020.05.11
〃	김창희	2018.07.19
〃	이재만	2020.02.03
〃	손은영	2020.02.03
〃	유정현	2020.02.03
〃	한상형	2019.02.11
〃	심형석	2020.02.03
〃	정일권	2019.02.11
〃	송인호	2020.02.03
〃	박인우	2019.02.11
〃	김용제	2019.02.11
〃	신미량	2018.02.05
〃	진을종	2020.02.03
〃	한지혁	2020.09.03
〃	이지영	2019.02.11
〃	김민정	2019.02.11
〃	김은정	2020.02.03
〃	이경민	2019.02.11
〃	엄영욱	2020.02.03
〃	이창희	2018.02.05
〃	김세희	2019.02.11
〃	오지석	2019.02.11
〃	이승현	2020.02.03
〃	이자영	2018.02.05
〃	김영식	2018.02.05
〃	정선철	2020.02.03
〃	김정연	2017.02.20
〃	이주형	2019.02.11
〃	차동호	2019.02.11
〃	조현웅	2019.02.11
〃	변준석	2019.02.11
〃	최지예	2019.02.11
〃	송형진	2020.02.03
〃	박건태	2020.02.03

직 위	성명	발령일
〃	안홍균	2020.02.03
〃	조재학	2020.02.03
〃	김수지	2020.02.03
〃	박가희	2020.02.03
〃	박종환	2019.04.01
〃	신승헌	2020.04.01
〃	김태헌	2019.02.11
〃	정유정	2020.02.03
사무국장	백운기	2020.01.01
총무과장	서맹웅	2020.02.10
사건과장	정상훈	2019.09.30
집행과장	안문용	2020.02.10
조사과장	강철중	2020.02.10
수사과장	신창우	2020.08.21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재섭	2020.02.10
마약수사과장	신동일	2019.09.30
공판과장	장문옥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2020.02.10
〃	정민수	2020.02.10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신자용	2020.02.03
차장검사	조용한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김창진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김상현	2020.02.03
형사제3부장검사	이승형	2020.09.03
(부부장)검사	박봉희	2019.08.06
〃	허지훈	2020.09.03
〃	엄재상	2020.09.03
검사	김현곤	2019.02.11
〃	이용정	2018.02.05
〃	김필수	2020.02.03
〃	고형근	2020.03.01
〃	구지훈	2020.08.01
〃	안태민	2020.08.01

직 위	성명	발령일
〃	홍철의	2019.03.01
〃	박슬기	2019.03.01
〃	이가희	2020.03.01
〃	강상혁	2020.05.11
〃	황수이	2020.05.11
〃	권은비	2020.05.11
〃	이동원	2020.09.03
〃	이대헌	2020.02.03
〃	최유리	2018.02.05
〃	장려미	2020.02.03
〃	정정욱	2020.02.03
〃	권영주	2020.02.03
〃	이수진	2018.07.19
〃	김봉경	2015.02.25
〃	한주동	2020.02.03
〃	홍해숙	2019.02.11
〃	박중화	2020.02.03
〃	길선미	2019.02.11
〃	김지원	2019.02.11
〃	이종옥	2020.02.03
사무국장	곽명규	2020.02.10
총무과장	이종흔	2020.08.21
사건과장	조용욱	2020.08.21
집행과장	권경원	2020.08.21
수사과장	송난화	2020.02.10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2020.09.03
차장검사	우남준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김윤후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이영화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국상우	2020.09.03
(부부장)검사	김영남	2020.09.03
〃	정지은	2019.08.06
〃	서영배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수홍	2020.09.03
검 사	박민경	2019.02.11
〃	임성열	2020.03.01
〃	이창헌	2020.08.01
〃	강정은	2019.03.01
〃	김규현	2020.03.01
〃	김은영	2020.03.01
〃	김다혜	2019.05.08
〃	박세미	2020.05.11
〃	이정훈	2020.09.03
〃	조미경	2019.02.11
〃	김지아	2020.02.03
〃	김태희	2020.09.03
〃	김성현	2019.02.11
〃	양진선	2019.02.11
〃	황호석	2020.02.03
〃	문선주	2019.02.11
〃	나상돈	2019.02.11
〃	이은우	2018.02.05
〃	전종택	2019.02.11
〃	김해슬	2020.02.03
〃	김민주	2019.02.11
〃	조경민	2019.02.11
사 무 과 장	최정철	2019.09.30
수 사 과 장	김두원	2019.09.30
집 행 과 장	정인석	2019.09.30
(울 산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수권	2020.08.11
차 장 검 사	박상진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김은심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 신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황성연	2020.09.03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이현정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박영진	2020.09.03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임창국	2020.09.03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정성현	2020.09.03
형 사 제 5 부 장 검 사	임대혁	2020.02.03
공 판 송 무 부 장 검 사	정원두	2020.09.03
(부 부 장) 검 사	이광우	2020.09.03
검 사	최갑진	2018.02.05
〃	박지연	2019.02.11
〃	양재헌	2019.02.11
〃	신의호	2020.02.03
〃	어원중	2020.03.01
〃	김태완	2019.03.01
〃	박효정	2020.03.01
〃	박준웅	2020.05.11
〃	김명옥	2020.02.03
〃	박윤희	2020.02.03
〃	김희영	2019.02.11
〃	김미수	2019.02.11
〃	이정호	2020.02.03
〃	신상우	2019.02.11
〃	이주희	2019.02.11
〃	윤효선	2020.02.03
〃	장송이	2019.02.11
〃	김소현	2017.02.20
〃	김미지	2020.02.03
〃	하일수	2019.02.11
〃	임아랑	2018.02.05
〃	김현우	2020.02.03
〃	이선화	2017.02.20
〃	허태훈	2020.02.03
〃	임기웅	2019.02.11
〃	김영민	2019.02.11
〃	진세언	2019.02.11
〃	김준엽	2019.02.11
〃	김대근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보경	2017.02.20
〃	장영롱	2019.02.11
〃	김희진	2019.02.11
〃	임정빈	2019.02.11
〃	이안나	2019.02.11
〃	김민희	2019.02.11
〃	박진형	2019.04.01
〃	이광세	2020.02.03
〃	이희진	2020.02.03
사무국장	김종일	2020.02.10
총무과장	김대윤	2020.08.21
사건과장	김붕배	2019.09.30
집행과장	정해영	2020.02.10
공공수사지원과장	이동희	2020.02.10
수사과장	남우채	2020.02.10
검사직무대리	윤두한	2020.02.1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2020.08.11
차장검사	김종근	2020.09.03
인권감독관	이계한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충한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영준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나창수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김원지	2020.02.03
형사제3부장검사	엄희준	2020.09.03
형사제4부장검사	유광렬	2020.09.03
공판송무부장검사	양동우	2020.09.03
(부부장)검사	조영찬	2020.09.03
〃	류남경	2020.09.03
〃	최미화	2020.09.03
검사	김경완	2017.02.20
〃	노영진	2020.02.03
〃	김동욱	2019.03.01
〃	박은석	2020.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수현	2019.03.01
〃	염준범	2020.03.01
〃	이윤정	2020.03.01
〃	오혜림	2020.03.01
〃	공민진	2020.05.11
〃	정하은	2020.05.11
〃	한연규	2018.02.05
〃	이주현	2020.02.03
〃	배상윤	2020.02.03
〃	김희영	2016.01.27
〃	김동율	2020.02.03
〃	김성훈	2019.02.11
〃	김희연	2019.02.11
〃	유병국	2019.02.11
〃	장아량	2020.02.03
〃	조정복	2019.02.11
〃	함재원	2019.02.11
〃	김경년	2020.02.03
〃	김태엽	2019.02.11
〃	김수겸	2019.02.11
〃	이홍열	2019.02.11
〃	도용민	2019.02.11
〃	정일두	2019.02.11
〃	김용휘	2019.04.01
사무국장	박상욱	2020.02.10
총무과장	나성훈	2020.02.10
사건과장	김천교	2019.09.30
집행과장	성원석	2020.08.21
조사과장	하재근	2020.02.10
수사과장	김호성	2020.08.21
검사직무대리	장종효	2020.08.21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신태훈	2020.09.03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2부장검사	이일규	2020.09.03
검사	이한별	2019.02.11
〃	정재연	2018.02.05
〃	강지원	2020.02.03
〃	박대웅	2019.02.11
〃	장성훈	2019.02.11
〃	최인성	2019.02.11
〃	김청아	2019.02.11
〃	김문주	2020.02.03
사무과장	안병훈	2020.08.21
수사과장	성주경	2019.09.30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박홍규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임길섭	2020.09.03
검사	고병무	2019.02.11
〃	정거장	2019.02.11
〃	정지희	2019.02.11
〃	박원영	2019.02.11
〃	박선하	2019.02.11
〃	박혜진	2019.02.11
〃	김용선	2020.02.03
〃	이승철	2020.02.03
〃	박원석	2019.02.11
〃	이재원	2019.02.11
사무과장	이승열	2020.08.21
집행과장	강정봉	2019.09.30
수사과장	동 훈	2019.09.30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강백신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박명희	2020.09.03
검사	오정헌	2020.02.03
〃	이혜진	2019.02.11
〃	박상희	2020.02.03
〃	성진영	2020.02.03
〃	박준석	2019.02.11
〃	정성욱	2019.02.11
〃	임명환	2019.02.11
〃	강민욱	2019.02.11
〃	조윤영	2019.02.11
사무과장	정의곤	2020.02.10
수사과장	고성준	2020.08.21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2020.09.03
검사	이동욱	2020.02.03
〃	조범진	2017.02.20
〃	김미선	2019.02.11
사무과장	박준형	2019.09.30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2020.09.03
검사	이희욱	2020.02.03
〃	김남용	2019.02.11
사무과장	노희창	2020.08.21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2020.08.11
검사	백순현	2019.08.06
〃	방봉혁	2020.09.03
〃	안성수	2020.09.03
〃	김동주	2019.08.06
〃	김 환	2019.08.06
〃	박소영	2020.09.03
〃	신현성	2019.08.06
〃	박영준	2019.08.06
사무국장	박공우	2020.08.21
총무과장	이영철	2020.08.21
사건과장	김희곤	2020.02.10
(광주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여환섭	2020.08.11
차 장 검 사	정진웅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이진호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종철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이은강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우기열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홍석기	2020.09.0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유선	2020.09.03
형사제4부장검사	오종렬	2020.09.03
반부패수사부장검사	김형록	2020.02.03
강력부장검사	홍완희	2020.09.03
공판부장검사	김경근	2020.09.03
(부부장)검사	서정식	2020.09.03
〃	김기윤	2020.09.03
〃	강상묵	2019.08.06
〃	김보성	2020.09.03
〃	최태은	2020.09.03
〃	이진용	2020.09.03
〃	김윤용	2020.09.03
〃	황성민	2020.09.03
검 사	조정연	2020.03.01
〃	이성호	2019.02.11
〃	김정화	2020.02.03
〃	최윤미	2019.03.01
〃	주재현	2020.03.01
〃	이준명	2020.03.01
〃	박연주	2020.03.01
〃	김힘찬	2020.05.11
〃	서세영	2020.05.11
〃	장정윤	2020.05.11
〃	송혜경	2020.05.11
〃	국 원	2020.02.03
〃	김은미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주현	2019.02.11
〃	최종혁	2020.02.03
〃	김상문	2019.02.11
〃	김형걸	2018.02.05
〃	최소연	2019.02.11
〃	박선민	2019.02.11
〃	장유강	2020.02.03
〃	반 지	2020.02.03
〃	전수진	2020.02.03
〃	권재호	2020.02.03
〃	방지형	2019.02.11
〃	박상희	2020.02.03
〃	이주현	2020.02.03
〃	홍희영	2020.09.03
〃	박현규	2020.02.03
〃	이선기	2019.02.11
〃	김 건	2019.02.11
〃	최은영	2017.02.20
〃	문지연	2019.02.11
〃	이진순	2015.02.25
〃	김태호	2020.02.03
〃	이승주	2020.02.03
〃	정종원	2020.02.03
〃	오승환	2019.02.11
〃	안지영	2020.02.03
〃	장재정	2015.02.25
〃	오연택	2018.02.05
〃	김지혜	2019.02.11
〃	전우진	2019.02.11
〃	김연수	2019.02.11
〃	이정훈	2019.04.01
〃	전종현	2020.08.01
〃	황지홍	2020.02.03
사 무 국 장	윤권호	2020.08.21

직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김중근	2020.02.10
사건과장	설우용	2020.02.10
집행과장	명관호	2020.02.10
조사과장	이정배	2020.08.21
수사과장	주기환	2019.01.28
공판과장	박성재	2020.02.10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2019.01.28
(목포지청)		
지청장	유종완	2020.02.03
형사제1부장검사	신승우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임선화	2020.09.03
검사	봉진수	2020.02.03
〃	정재훈	2020.02.03
〃	신명은	2020.02.03
〃	이부용	2020.02.03
〃	박상훈	2019.02.11
〃	박세혁	2019.02.11
〃	이거량	2020.02.03
〃	한두현	2019.02.11
〃	윤지윤	2019.02.11
〃	김신혜	2019.02.11
사무과장	최이석	2020.08.21
수사과장	박석일	2020.08.21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2020.09.03
검사	허창환	2019.02.11
〃	김마로	2020.02.03
사무과장	임을빈	2020.08.21
(순천지청)		
지청장	임 현	2020.09.03
차장검사	한제희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이성일	2020.02.03
형사제2부장검사	김준섭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황현아	2020.09.03

직위	성명	발령일
(부부장)검사	유일석	2019.08.06
검사	이수행	2020.02.03
〃	안인수	2019.02.11
〃	하보람	2020.02.03
〃	천안문	2018.08.01
〃	류광환	2020.03.01
〃	전정우	2020.03.01
〃	송동민	2020.03.01
〃	정지선	2020.03.01
〃	전인수	2020.05.11
〃	천대원	2018.07.19
〃	남대주	2020.02.03
〃	허윤희	2020.09.03
〃	고영하	2020.02.03
〃	양재영	2020.02.03
〃	박경화	2020.02.03
〃	고명아	2020.02.03
〃	오흥세	2016.01.27
〃	은종욱	2020.02.03
〃	오신환	2020.02.03
〃	김상범	2018.02.05
〃	김남엽	2019.02.11
〃	최선희	2020.02.03
〃	김병희	2019.04.01
사무국장	정병옥	2020.02.10
총무과장	김영한	2020.02.10
사건과장	김영석	2019.09.30
집행과장	강병철	2020.08.21
수사과장	김재정	2019.09.30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2020.09.03
검사	김경회	2020.02.03
〃	김주현	2020.02.03
〃	양세동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서영욱	2019.09.30
(전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배용원	2020.08.11
차 장 검 사	권순정	2020.09.03
인 권 감 독 관	한윤경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종혁	2020.09.0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전계광	2020.09.03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박주현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김선문	2020.02.03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임일수	2020.09.03
(부 부 장) 검 사	조석규	2020.09.03
〃	진호식	2020.09.03
검 사	박동주	2019.02.11
〃	용성호	2020.03.01
〃	천대우	2019.03.01
〃	민경찬	2020.03.01
〃	이인영	2020.03.01
〃	장대규	2019.02.11
〃	정지영	2017.02.20
〃	김현우	2019.02.11
〃	서성광	2019.02.11
〃	안미현	2020.02.03
〃	김춘성	2020.02.03
〃	김은정	2020.02.03
〃	김벼리	2018.02.05
〃	최준환	2018.02.05
〃	정다은	2019.02.11
〃	오흥식	2019.02.11
〃	신재성	2019.04.01
〃	장민수	2019.02.11
사 무 국 장	이영호	2020.08.21
총 무 과 장	김승호	2020.02.10
사 건 과 장	양헌규	2019.09.30
집 행 과 장	정택율	2020.02.10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김동현	2020.02.10
검 사 직 무 대 리	정근휘	2020.08.21
(군 산 지 청)		
지 청 장	신형식	2020.09.03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김기룡	2020.09.03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김해경	2020.09.03
검 사	김동현	2019.02.11
〃	조 혁	2020.02.03
〃	강병하	2020.02.03
〃	이지은	2019.02.11
〃	황종현	2020.02.03
〃	김지혜	2020.02.03
〃	임현철	2018.02.05
〃	강정욱	2018.02.05
〃	나광윤	2019.02.11
〃	장기영	2020.02.03
〃	강재하	2019.02.11
〃	조윤정	2020.02.03
〃	김연중	2020.02.03
사 무 과 장	고재훈	2020.08.21
집 행 과 장	이영천	2019.09.30
수 사 과 장	유청수	2020.02.10
(정 읍 지 청)		
지 청 장	조주연	2020.09.03
검 사	나상현	2019.02.11
〃	박혜진	2020.02.03
〃	조수연	2020.02.03
〃	김태영	2020.02.03
사 무 과 장	서문윤	2020.02.10
(남 원 지 청)		
지 청 장	최대건	2020.09.03
검 사	김유완	2020.02.03
〃	김준영	2019.02.11
사 무 과 장	채진수	2019.09.30

직위	성명	발령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찬호	2020.01.13
차장검사	정대정	2020.09.03
인권감독관	김수현	2020.09.03
형사제1부장검사	김영일	2020.09.03
형사제2부장검사	박주성	2020.09.03
형사제3부장검사	윤재슬	2020.09.03
(부부장)검사	최선경	2020.09.03
〃	김익수	2020.09.03
〃	정혁준	2020.09.03
〃	김지용	2020.09.03
검사	이경문	2020.03.01
〃	박동진	2019.03.01
〃	반동호	2020.03.01
〃	박지현	2020.05.11
〃	박종선	2020.02.03
〃	이호석	2018.02.05
〃	이태협	2020.09.03
〃	정수정	2018.02.05
〃	이준희	2019.02.11
〃	김지은	2020.02.03
〃	이환우	2019.02.11
〃	박채원	2019.02.11
〃	조동훈	2020.02.03
〃	박금빛	2018.02.05
〃	한승진	2019.02.11
〃	허 정	2020.02.03
〃	김수민	2018.02.05
〃	원경희	2020.02.03
〃	금성호	2019.04.01
사무국장	이연성	2020.02.10
총무과장	오영준	2020.02.10
사건과장	이원형	2019.01.28
집행과장	오장수	2019.09.30

직위	성명	발령일
수사과장	송재영	2020.08.21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영주	2019.07.31
교수	전윤경	2017.08.17
〃	정재신	2019.08.06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이형재	2019. 11. 13.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배종상	2019. 1. 21.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허명금	2020. 2. 3.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노일석	2020. 7. 6.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종말	2020. 1. 13.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	2020. 1. 13.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황진규	2020. 1. 13.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	2020. 1. 13.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영갑	2020. 1. 13.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	2019. 7. 22.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경렬	2020. 7. 6.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	2020. 7. 20.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태원 조성민 변병귀	2019. 7. 22. 2020. 7. 1. 2020. 7. 6.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최우철 이용호 박동식	2020. 1. 13. 2020. 7. 6. 2020. 7. 6.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	2019. 10. 2.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시종	2020. 1. 1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상록	2020. 7. 6.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손세헌 홍정원 황철주	2020. 2. 3. 2020. 7. 6. 2020. 7. 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안병경 공석 김송수	2019. 7. 22. 2020. 7. 6.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이두관	2020. 7 . 6.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기한	2020. 7. 6.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이승욱	2020. 7. 6.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	2019. 1. 2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이국희	2020. 7. 6.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동환 김양곤 유주숙	2019. 7. 22. 2020. 8. 18. 2019. 7. 22.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정성수	2020. 7. 6.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	2020. 8. 18.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배점호	2020. 7. 6.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세훈	2020. 1. 13.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0. 1. 1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심선옥	2020. 1. 13.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천원기	2020. 1. 13.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황남례	2020. 7. 6.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정렬	2020. 1. 13.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김용수	2020. 1. 13.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신원식	2020. 1. 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성우제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이천재	2020. 8. 25.
교무과장	김택수	2019. 4. 15.
분류보호과장	정태근	2020. 7. 13.
호송과장	이재완	2020. 7. 13.
의무과장	이민재	2020. 10. 26.
부산소년원		
원장	권을식	2020. 7. 6.
행정지원과장	구영립	2020. 1. 13.
교무과장	김용현	2019. 1. 21.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2020. 7. 6.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이성칠	2020. 7. 6.
행정지원과장	김대요	2020. 1. 13.
교무과장	권혁귀	2020. 1. 13.
분류보호과장	김달곤	2020. 7. 6.
의무과장	조태욱	2018. 1. 1.
광주소년원		
원장	김태섭	2020. 1. 13.
행정지원과장	이양근	2020. 7. 13.
교무과장	김선규	2020. 7. 6.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2020. 7. 6.
의무과장	정길영	2001. 2. 28.
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최봉범	2020. 1. 13.
교무과장	오상섭	2020. 7. 6.
분류보호과장	파견	2020. 1. 13.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윤일중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손성진	2020. 1. 13.
교무과장	유정호	2020. 7. 6.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2020. 7. 6.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청주소년원		
원장	장재원	2020. 7. 6.
행정지원과장	송명호	2020. 1. 13.
교무과장	김종준	2020. 7. 13.
의무과장	전승화	2005. 10. 26.
안양소년원		
원장	이영호	2020. 7. 6.
행정지원과장	최오수	2019. 1. 28.
교무과장	차영환	2020. 7. 13.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권영효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신정모	2019. 7. 22.
교무과장	안덕배	2020. 7. 13.
분류보호과장	최철환	2020. 7. 13.
의무과장		공석
제주소년원		
원장	민근기	2020. 1. 13.
행정지원과장	남병우	2020. 7. 13.
교무과장	김원수	2020. 7. 13.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고영종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천영민	2019. 8. 13.
교무과장	전상호	2020. 7. 6.
분류심사과장		공석
호송과장	정석철	2020. 1. 13.
의무과장	박정환	2011. 4. 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안 흡	2019. 1. 21.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강종모	2020. 1. 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영미	2019. 7. 22.
치료감호소		
소장	조성남	2019. 2. 11.
의료부장	장소영	2019. 4. 1.
행정지원과장	윤웅장	2020. 1. 13.
감호과장	유상운	2019. 7. 22.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심 경 보	2020. 07. 0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홍 석 표	2020. 02. 10.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김명철	2020. 9. 21.
총무과장	박수연	2020. 9. 21.
보안과장	이홍연	2020. 9. 21.
사회복귀과장	박경선	2020. 2. 10.
분류센터장	이언담	2020. 9. 21.
대구지방교정청		
청장	이경식	2020. 2. 10.
총무과장	양동석	2020. 9. 21.
보안과장	최철경	2020. 9. 21.
사회복귀과장	정재열	2020. 2. 10.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홍순철	2020. 2. 10.
총무과장	백금태	2020. 9. 21.
보안과장	김진석	2020. 2. 10.
사회복귀과장	서보균	2020. 5. 18.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유승만	2020. 9. 21.
총무과장	박원흠	2020. 9. 21.
보안과장	한성주	2020. 2. 10.
사회복귀과장	손용대	2020. 11. 5.
서울구치소		
소장	신용해	2020. 2. 10.
부소장	박동수	2020. 2 .10.
총무과장	박대철	2020. 9. 21.
보안과장	정 진	2020. 9. 21.
의료과장	이병연	2019. 8. 1.
분류심사과장	배경석	2020. 9. 21.
시설과장	정병택	2018.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전교도소		
소장	최제영	2020. 1. 1.
부소장	박종관	2020. 5. 18.
총무과장	차광식	2020. 9. 21.
보안과장	고상길	2020. 9. 21.
의료과장	이준호	2009. 2. 17.
분류심사과장	이종호	2019. 1. 28.
논산지소장	유기용	2020. 9. 21.
대구교도소		
소장	김승만	2020. 2. 10
부소장	장원재	2020. 9. 21
총무과장	윤영주	2020. 2. 10
보안과장	이민열	2020. 2. 10
의료과장	공석	
분류심사과장	강군오	2020. 2. 10
광주교도소		
소장	유태오	2020. 9. 21.
부소장	이효선	2020. 5. 18.
총무과장	김종곤	2020. 9. 21.
보안과장	김병호	2020. 9. 21.
의료과장	박일웅	2006. 8. 16.
안양교도소		
소장	김진구	2020. 2. 10.
부소장	김현우	2020. 2. 10.
총무과장	김수철	2020. 11. 7.
보안과장	허만혁	2020. 9. 21.
의료과장	최광섭	2005. 11. 7.
부산구치소		
소장	우희경	2020. 9. 21.
부소장	주정민	2020. 2. 10.
총무과장	최재우	2020. 9. 21.
보안과장	최병태	2020. 9. 21.
의료과장	안재진	2019. 9. 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장	정병헌	2020. 2. 10.
부소장	최찬희	2020. 9. 21.
총무과장	오우정	2020. 5. 18.
보안과장	윤대하	2020. 2. 10.
의료과장	조재관	2020. 2. 24.
평택지소장	박진성	2020. 9. 21.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박호서	2020. 9. 21.
부소장	박상용	2020. 2. 10.
총무과장	제환국	2020. 9. 21.
보안과장	허덕환	2020. 12. 25.
의료과장	윤재영	2019. 7. 1.
인천구치소		
소장	구지서	2019. 12. 12.
부소장	남상오	2020. 11. 5.
총무과장	정원수	2020. 9. 21.
보안과장	이남구	2020. 2. 10.
의료과장	강희원	2020. 12. 22.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김정선	2020. 7. 30.
부소장	김경화	2020. 5. 18.
총무과장	박석규	2020. 5. 18.
보안과장	육근우	2020. 2. 10.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김응분	2020. 9. 21.
의료과장	윤완중	2019.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서호영	2020. 2. 10.
의료과장	곽연우	2016.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김동환	2020. 5. 18.
부소장	김영광	2020. 9. 21.
총무과장	임정인	2020. 5. 18.
보안과장	장승구	2020. 9. 21.
의료과장	한주섭	2002. 1. 21.
시설과장	강동헌	2019. 7. 1.
전주교도소		
소장	최병록	2020. 2. 10.
총무과장	김용국	2020. 12. 25.
보안과장	박기주	2020. 2. 10.
의료과장	공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주교도소		
소장	남준락	2020. 9. 21.
의료과장	공석	
부산교도소		
소장	김영식	2020. 2. 10.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하영훈	2020. 9. 21.
의료과장	주재호	2001. 5. 21.
창원교도소		
소장	오세홍	2020. 9. 21.
의료과장	이승기	2006. 8. 16.
순천교도소		
소장	박병일	2020. 9. 21.
의료과장	박경철	1996. 9. 1.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김도형	2020. 9. 21.
의료과장	공석	
포항교도소		
소장	김태수	2020. 9. 21.
의료과장	우재택	2019. 8. 7.
진주교도소		
소장	도재덕	2020. 2. 10.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정봉수	2020. 9. 21.
의료과장	강 철	1990. 6. 26.
대구구치소		
소장	김태수	2019. 7. 15.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신동윤	2020. 2. 10.
의료과장	장성용	2006. 4. 17.
청주교도소		
소장	김재익	2020. 9. 21.
의료과장	박현우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윤창식	2020. 9. 21.
의 료 과 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류동수	2020. 2. 10.
의 료 과 장	최창학	2011. 1. 1.
춘 천 교 도 소		
소 장	장종선	2020. 2. 10
의 료 과 장	이중구	2007. 5. 28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양원동	2020. 2. 10.
의 료 과 장	김영진	2015. 6. 18.
안 동 교 도 소		
소 장	금용명	2020. 9. 21.
의 료 과 장	이석균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최진규	2020. 2. 10.
의 료 과 장	계영남	2019. 7. 22.
청주여자교도소		
소 장	윤순풍	2020. 2. 10
의 료 과 장	박병철	2018. 3. 13.
김천소년교도소		
소 장	차재성	2020. 9. 21.
의 료 과 장	최인환	2008. 1. 24.
공 주 교 도 소		
소 장	김문태	2020 9. 21.
의 료 과 장	공석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김성호	2020. 9. 21.
의 료 과 장	정만진	2011. 12. 5.
울 산 구 치 소		
소 장	한천용	2020. 2. 10.
의 료 과 장	서보균	2020. 3. 9.
정 읍 교 도 소		
소 장	홍정기	2018. 12. 17.
의 료 과 장	공석	공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 주 교 도 소		
소 장	김춘오	2020. 9. 21.
의 료 과 장	박재홍	2018. 8. 20.
홍 성 교 도 소		
소 장	박융우	2020. 9. 21.
의 료 과 장	윤성로	1994. 11. 12.
서 산 지 소 장	유철흠	2020. 2. 10.
경 주 교 도 소		
소 장	최종수	2020. 9. 21.
의 료 과 장	조윤철	2013. 12. 12.
통 영 구 치 소		
소 장	김철민	2020. 9. 21.
의 료 과 장	정원석	2017. 2. 6.
밀 양 구 치 소		
소 장	채완식	2020. 2. 10.
의 료 과 장	전윤식	2014. 5. 12.
상 주 교 도 소		
소 장	황의호	2020 2. 10.
의 료 과 장	박순록	2017. 8. 21.
강 릉 교 도 소		
소 장	김일환	2020. 2. 10.
의 료 과 장	김일환	2017. 1. 1.
영 월 교 도 소		
소 장	이승철	2020. 9. 21.
의 료 과 장	김건도	2015. 6. 23.
장 흥 교 도 소		
소 장	박진홍	2020. 9. 21.
의 료 과 장	김규정	2020. 2. 17.
해 남 교 도 소		
소 장	한성주	2019. 4. 15.
의 료 과 장	최영기	2017. 4. 10.
충 주 구 치 소		
소 장	송상기	2020. 9. 21.
의 료 과 장	한윤석	2020. 1. 20.
강원북부교도소		
소 장	김학봉	2020. 5. 18.
의 료 과 장	공석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장세근	2018. 8. 6.
지원국장	안동관	2020. 7. 20.
심사1국장	이기흠	2020. 1. 1.
심사2국장	김기영	2020. 1. 1.
총무과장	길강묵	2020. 9. 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공 석	
총무과장	강성환	2019. 1. 7.
관리과장	이승현	2020. 8. 27.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병철	2020. 7. 20.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진우석	2020. 1.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안규석	2019. 10. 7.
관리과장	공 석	
이민특수조사대장	김무진	2020. 7. 2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재유	2019.10. 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육승훈	2020. 1.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공 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상달	2020. 2. 21.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수근	2019. 1. 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춘용	2020. 1.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박재완	2020. 7. 20.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호원	2020. 7.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황택환	2020. 7. 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문한	2020. 1.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덕룡	2019. 7. 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영	2019. 2. 2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장희정	2020. 8. 3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정성경	2020. 7. 2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윤상용	2020. 7. 20.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심준섭	2019. 1. 7.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윤종석	2019.10. 10.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김진성	2020. 7. 2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인숙	2019. 1. 28.

제6절 인사

•총 괄

(2020.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5,316	3,674	9,429	1,310	903
검 사		1,651	0	1,421	132	98
일반직	소 계	13,665	3,674	8,008	1,178	805
	본부 (연수원)	433 (53)	77 (5)	275 (40)	50 (3)	31 (5)
	검찰청	3,788	737	2,502	314	235
	보호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2,001	468	1,244	248	41
	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6,051	1,824	3,446	373	408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339	563	501	190	85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0. 1 ~ 12월)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78	56	12	10
검 찰 총 장	-	-	-	-
검 사	78	56	12	10

• 일반직

(2020. 1 ~ 12월)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48	8	0	40
본 부	8	0	0	8
검 찰 청	20	2	0	18
교 정 기 관	2	1	0	1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	1	0	0
출입국·외국인기관	14	4	0	10
법 무 연 수 원	3	-	-	3

제8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0. 1. 1.~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 21.	일본	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장	사사키 쇼코 등 5명	•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회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5.	카자흐스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아스카 아슬란등 4명	• 출입국분야 협력을 위한 MOU 초안 전달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12.	중국	주한 중국대사	싱 하오밍 등 6명	• 신임 대사 부임에 따른 장관님 예방 및 코로나19 관련 협조 요청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25.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참사관	롬보 하쉬에르덴 등 2명	• 코로나19 확산 자국민 체류연장 관련 협조 요청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6.	태국	주한 태국대사	롬마니 카누락 등 5명	• 코로나19 확산관련 자국민 귀국시 협조 요청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10.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토루등 2명	• 한-일본 고위급회담 이후 본청의 감사장 전달 및 출입국관련 협력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11.	태국	주한 태국대사	롬마니 카누락 등 5명	• 태국 정부의 자국민 입국거부 사태에 대한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31.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토루등 2명	• 영사 귀임에 따른 외국인본부장 면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31.	몽골	주한 몽골 대리대사	남스라이 에르덴 투야 등 2명	• 몽골 정부의 자국민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논의 및 보호외국인 지원 방안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4. 14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왕루신 등 3명	• 공사참사관 전근에 따른 예방. 보호 중인 중국인 관련 협조 요청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7.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와타나베 켄타로 등 3명	• 신임영사 부임에 따른 부임인사 및 협력관계 구축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0.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	덩 총 등 5명	• 보호 중인 중국인 송환위한 업무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6.	싱가포르	대사	에릭 테오	•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 비준 논의 • 법무부-싱가포르 대검찰청 MOU 체결 관련 협의	법 무 실
6. 11.	EU 대표부	EU 대표부 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등 5명	• 등록외국인 대상 재입국허가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및 협력관계 구축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7. 28.	미국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넬슨 우 등 3명	•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관련 면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3.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	필립 르포르 등 4명	• 한국의 이민정책관련 및 사회통합정책 등 정보 교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0	러시아	주한 러시아대사관 총영사	데니스 압드라시코브 등 3명	• 러시아 국적법관련 질의 및 협력 관계 구축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2.	미국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모스 탠	• ICC 입장 관련 논의	검 찰 국
11. 18.	베트남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사참사관	뜨란 뚜엉 뚜이 등 2명	• 보호 중인 베트남인 송환위한 업무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8.	영국	주한 영국대사관 참사관	넬슨 그라함 등 3명	• 외교관의 사실혼관계의 파트너에 대한 지위 부여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0.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15. ~ 1. 19.	프랑스	• OECD 고위급 포럼 참석	유복근 국적통합단장 등 4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 19. ~ 1. 26.	에콰도르	• GFMD 회의	김민경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0. ~ 1.24.	오스트리아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38차 회의	전문위원 김아주 외 1명	법 무 실
2. 2. ~ 2. 6.	말레이시아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1차)	손가희 출입국관리주사보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3. ~ 2. 7.	미국 (화상회의)	• UNCITRAL 제2실무작업반(신속중재) 제72차 회의 참석	사무관 최승은 외 1명	법 무 실
2. 9. ~ 2. 14.	미국	• IGC 워크샵 참석	김기현 출입국관리주사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9. ~ 2. 16.	우루과이	• 한-메르코수르 5차 협상	김명훈 출입국관리사무관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16. ~ 2. 21.	프랑스 파리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이동언 국제형사과장 외 1명	검 찰 국
3. 18.	화상회의	•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구본준 출입국심사과장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29.	화상회의	• 한-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 회의	박재완 서기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0.	전화회의	• ICSID 중재규칙 개정 관련 회원국 회의	법무관 우한얼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 3.	화상회의	•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및 기술 공유를 위한 특별 웹세미나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5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10. ~ 6.16.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133차 회의 참석	사무관 김예지 외 1명	법 무 실
6. 23. ~ 6. 26.	프랑스 파리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6. 29. ~ 7. 1.	화상회의	• UNCAC 제11차 이행점검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7. 27. ~ 7. 29.	화상회의	• UNODC 주관 제6차 사이버범죄 전문가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8. 26.	화상회의	•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2차)	손가희 출입국관리주사보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8. 31. ~ 9. 2.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9.14. ~ 9.18.	미국 (화상회의)	• UNCITRAL 제53차 본회의 참석	사무관 최승은 외 4명	법 무 실
9. 14. ~ 9. 16.	화상회의	• ICN(국제경쟁네트워크) 연례총회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9. 15. ~ 9. 16.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9.28. ~ 10.2.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CITRAL 제1실무작업반 제34차 회의 참석	사무관 최승은 외 2명	법 무 실
10.5. ~ 10.9.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39차 회의	검사 유새롬 외 2명	법 무 실
10. 6. ~ 10. 8.	화상회의	• PC-OC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담당자 화상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0. 12 ~ 10. 16.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협약 3분기 화상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19. ~ 10. 23.	오스트리아 (현장·온라인 병행)	• UNCITRAL 제4실무 작업반 제60차 회의	서기관 이규철	법 무 실
10. 29.	화상회의	• IGC 고위급회의 참석	강성환 서기관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16. ~ 11. 18.	화상회의	• UNCAC 이행점검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1.16. ~11.19.	화상회의	• HCCH 제4차 관할권 관련 전문가 그룹회의 참석	사무관 최승은 외 1명	법 무 실
11. 16. ~ 11. 20.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11. 19. ~ 11. 20.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 반부패특별총회 대비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1. 23.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TOC 초국가조직범죄협약 이행점검 영상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1.27. ~11.30.	영국 (화상회의)	• IMO 제107회 법률위원회 회의 참석	전문위원 임세영 외 1명	법 무 실
12.1. ~ 12.3.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134차 회의 참석	사무관 최승은 외 2명	법 무 실
12. 3. ~ 12. 4.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 화상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2. 4.	화상회의	• 한-UNHCR 정책협의회	김민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7. ~ 12.11.	오스트리아 (온라인)	• UNCITRAL 제5실무작업반 제57차 회의	사무관 김효선 외 2명	법 무 실
12. 8. ~ 12. 11.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4분기 화상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12.14. ~12.18.	오스트리아 (현장·온라인 병행)	• UNCITRAL 제6실무작업반 제37차 회의	사무관 이경미 외 2명	법 무 실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0. 1 ~ 12월)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943	-	73	13	25	80	193	539	782	223	15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2	-	2	-	-	-	-	-	-	-	-
홍조근정훈장	30	-	6	7	17	-	-	-	-	-	-
녹조근정훈장	113	-	-	-	-	33	80	-	-	-	-
옥조근정훈장	170	-	-	-	-	-	-	140	30	-	-
근 정 포 장	135	-	3	5	5	13	53	45	10	1	-
대 통 령 표 창	57	-	6	-	2	12	19	9	9	-	-
국무총리표창	48	-	8	-	-	5	19	6	9	1	-
모 범 공 무 원	185	-	-	-	-	-	-	171	13	1	-
법무부장관표창	1,163	-	48	1	1	15	21	159	690	215	13
유관기관표창	40	-	-	-	-	2	1	9	21	5	2

• 기 관

(2020. 1 ~ 12월)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 호 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64	4	17	15	5	14	9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0.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법무연수원	검사	박균택	2020. 1. 31.	검찰업무 수행 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문찬석	〃	〃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의식	2020. 1. 31.	검찰업무 수행 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신자용	〃	〃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윤영준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성수	〃	〃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황은영	〃	〃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오홍균	2020.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법무부	부이사관	문권점	2020. 6. 30.	상반기 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부이사관	한상익	〃	〃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재흥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이사관	양승권	〃	〃
	대전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권민석	〃	〃
	법무부	부이사관	조록환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하영식	〃	〃
	대전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동휘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시중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위형량	〃	〃
	부산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현성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유동호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동완	〃	〃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강주	2020. 12. 31.	하반기 퇴직자유공
	대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문명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임무영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상식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병인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손동섭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전덕진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부이사관	김상철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경구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원용주	〃	〃
	수원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범	〃	〃
녹조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이문호	2020. 6. 30.	상반기 퇴직자유공
	전주소년원	서기관	오연호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최인식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안호근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유제경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서형기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기철	〃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김상진	〃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우석환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이봉규	〃	〃
	춘천소년원	서기관	김정식	〃	〃
	강릉교도소	교정관	김영출	〃	〃
	여주교도소	교정관	김재일	〃	〃
	여주교도소	교정관	남중희	〃	〃
	영월교도소	교정관	최중호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옥남	〃	〃
	경주교도소	교정관	이상만	〃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관	김승현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정성태	〃	〃
	광주교도소	서기관	김영대	〃	〃
	안동교도소	공업사무관	조혁해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정관	박석수	〃	〃
	서울구치소	교정관	신종훈	〃	〃
	천안교도소	교정관	최만승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장명주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윤태경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김종원	〃	〃
	법무부	기술서기관	이형섭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한성근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임상훈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최철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최희주	〃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준	〃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재호	〃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찰수사서기관	노행수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사무관	류재공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방송통신사무관	여경진	〃	〃
	대검찰청	전산사무관	이봉준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전귀현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정해영	〃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최동완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서희석	〃	〃
	법무연수원	서기관	오성근	2020. 12. 31.	하반기 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유애숙	〃	〃
	법무부 부산소년원	보호사무관	김규창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방대완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최남일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양수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백석현	〃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고동기	〃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조성봉	〃	〃
	안양교도소	교정관	금병조	〃	〃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장술	〃	〃
	춘천교도소	교정관	곽성란	〃	〃
	원주교도소	서기관	여운철	〃	〃
	인천구치소	교정관	김명일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고황봉	〃	〃
	서울남부구치소	공업사무관	홍정표	〃	〃
	통영구치소	교정관	천덕수	〃	〃
	통영구치소	교정관	박준형	〃	〃
	포항교도소	교정관	조이원	〃	〃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기관	류동백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양승룡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조익재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윤현기	〃	〃
	공주교도소	교정관	문태성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권범주	〃	〃
	제주교도소	교정관	김경남	〃	〃
	장흥교도소	농업사무관	이제석	〃	〃
	대구구치소	교정관	임동현	〃	〃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상영	〃	〃
	경주교도소	교정관	강윤덕	〃	〃
	경주교도소	교정관	임해석	〃	〃
	경주교도소	교정관	김승수	〃	〃
	부산구치소	교정관	지용하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공겸	〃	〃
	수원구치소	공업사무관	김식	〃	〃
	강릉교도소	교정관	김학균	〃	〃
	영월교도소	교정관	이용희	〃	〃
	영월교도소	교정관	이병기	〃	〃
	천안교도소	교정관	허대열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임재철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박택진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지태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송영섭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종환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윤형탁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신종현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진용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박동철	〃	〃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박용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서덕화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진호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기덕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양동형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유재영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문규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붕배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남우채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정권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주기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오윤대	〃	〃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박균식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사무관	박노중	〃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서문윤	〃	〃
	대검찰청	기술서기관	고성순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정찬훈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의열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기용도	〃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김대연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영기	〃	〃
	대구소년원	서기관	이성칠	2020. 12. 31.	우수공무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승현	〃	〃
옥조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업주사보	김성률	2020. 6. 30.	상반기 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김경운	〃	〃
	안양교도소	교감	김희억	〃	〃
	안양교도소	교감	장길종	〃	〃
	강릉교도소	교감	이정호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신의철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학만	〃	〃
	영월교도소	교감	전영덕	〃	〃
	영월교도소	교감	김희열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헌봉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남기운	〃	〃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김명우	〃	〃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김동구	〃	〃
	제주교도소	교감	김경한	〃	〃
	대구교도소	교감	임지재	〃	〃
	대구교도소	교감	정정표	〃	〃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교감	허정호	〃	〃
	대전교도소	교감	백종수	〃	〃
	대전교도소	교감	장순오	〃	〃
	대전교도소	교감	최관규	〃	〃
	광주교도소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신기자	〃	〃
	광주교도소	교감	정태평	〃	〃
	광주교도소	교감	조두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전주교도소	교감	정동희	〃	〃
	전주교도소	공업주사	김흥영	〃	〃
	부산교도소	교감	조충훈	〃	〃
	부산교도소	교감	최병수	〃	〃
	부산교도소	교감	김경일	〃	〃
	청주교도소	교감	이창희	〃	〃
	청주교도소	교감	윤재영	〃	〃
	대구구치소	교감	김이중	〃	〃
	진주교도소	교감	김성진	〃	〃
	군산교도소	교감	손재식	〃	〃
	군산교도소	교감	변명완	〃	〃
	공주교도소	교감	강해용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이상덕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신동유	〃	〃
	홍성교도소	교감	신세엽	〃	〃
	서울구치소	교감	천성규	〃	〃
	부산구치소	교감	김주수	〃	〃
	수원구치소	교감	박지환	〃	〃
	수원구치소	교감	성인규	〃	〃
	수원구치소	교감	유병덕	〃	〃
	수원구치소	교감	이영택	〃	〃
	수원구치소	교감	지복녀	〃	〃
	수원구치소	교감	유지용	〃	〃
	수원구치소	교감	한상범	〃	〃
	수원구치소	교감	방민경	〃	〃
	수원구치소	교감	최교환	〃	〃
	의정부교도소	교감	손양환	〃	〃
	의정부교도소	교감	조한우	〃	〃
	원주교도소	교위	남원섭	〃	〃
	인천구치소	교감	박석태	〃	〃
	통영구치소	교감	신차식	〃	〃
	통영구치소	교감	성철기	〃	〃
	통영구치소	교감	방규용	〃	〃
	영월교도소	교감	유청균	〃	〃
	밀양구치소	교감	정병직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밀양구치소	교감	하명수	〃	〃
	밀양구치소	교감	채대균	〃	〃
	천안교도소	교감	김홍용	〃	〃
	천안교도소	교위	양분엽	〃	〃
	천안교도소	건축운영주사보	김강희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이일천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신기필	〃	〃
	창원교도소	교감	안경숙	〃	〃
	창원교도소	교감	김원곤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임택수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장병천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송이숙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이혜복	〃	〃
	대검찰청	방호주사	유한순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최성윤	〃	〃
	대전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정용철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조명식	〃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이현태	〃	〃
	창원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방학권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주사	정영택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공업주사보	조태중	〃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방송통신주사	김종문	〃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여신규	〃	〃
	전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계영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진규동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방정섭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경숙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심승보	〃	〃
	대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길광희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권기봉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순자	〃	〃
	법무연수원	기능7급 운전원	최병채	2020. 12. 31.	하반기 퇴직자유공
	광주소년원	보호주사	김진수	〃	〃
	법무부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주사	이덕신	〃	〃
	청주소년원	보호주사	이한모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소년원	건축운영주사보	이종억	〃	〃
	법무부	사무운영주사보	안복영	〃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운전주사보	길장근	〃	〃
	대구소년원	보호주사	김종열	〃	〃
	안양교도소	교감	김건민	〃	〃
	안양교도소	교감	김연화	〃	〃
	안양교도소	교감	김종일	〃	〃
	인천구치소	교감	최영환	〃	〃
	부산교도소	교감	최갑세	〃	〃
	부산교도소	교위	손경호	〃	〃
	포항교도소	교감	김학용	〃	〃
	대전교도소	교감	이원표	〃	〃
	대전교도소	교감	이충우	〃	〃
	홍성교도소	교감	이주형	〃	〃
	천안교도소	교감	이상헌	〃	〃
	광주교도소	교감	최은자	〃	〃
	광주교도소	교감	한상한	〃	〃
	제주교도소	교감	김정의	〃	〃
	제주교도소	교감	김군식	〃	〃
	제주교도소	교위	강석봉	〃	〃
	장흥교도소	교감	이돈선	〃	〃
	정읍교도소	교감	김대진	〃	〃
	대구교도소	교감	배재림	〃	〃
	대구교도소	교감	송석근	〃	〃
	대구구치소	교감	이쌍용	〃	〃
	대구구치소	교감	이춘희	〃	〃
	대구구치소	교감	조영제	〃	〃
	대구구치소	교감	전재일	〃	〃
	군산교도소	교감	고부근	〃	〃
	순천교도소	교감	최낙문	〃	〃
	경주교도소	교감	김재종	〃	〃
	서울구치소	교감	도윤성	〃	〃
	서울구치소	교감	손순배	〃	〃
	서울구치소	교감	장성관	〃	〃
	서울구치소	교감	김경희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구치소	열관리운영주사보	김종열	〃	〃
	부산구치소	간호주사	정경희	〃	〃
	수원구치소	교감	노정수	〃	〃
	강릉교도소	교감	민경권	〃	〃
	강릉교도소	교감	최임영	〃	〃
	강릉교도소	기계운영주사보	김영남	〃	〃
	여주교도소	교감	이성호	〃	〃
	여주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원일상	〃	〃
	충주구치소	교감	한승호	〃	〃
	충주구치소	교감	강월수	〃	〃
	법무부	사무운영주사보	송필숙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영곤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정종학	〃	〃
	영월교도소	교감	황웅진	〃	〃
	밀양구치소	교감	김일명	〃	〃
	밀양구치소	교감	오광호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박호근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안현식	〃	〃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기술주사	박영우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김태수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김명환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안진삼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서동원	〃	〃
	창원교도소	교위	정정윤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범남	〃	〃
	서울동부구치소	전화상담운영주사	차윤옥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박종용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여규진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강신수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박면오	〃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최희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순옥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박춘옥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근식	〃	〃
	광주고등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김은숙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서정현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주사	이평구	〃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방송통신주사	김기형	〃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이영란	〃	〃
	대검찰청	사서주사	이인옥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무운영주사	이성종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주사	김학정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20.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김주덕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모란장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양창수	2020. 7. 22.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황조근정훈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용상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동백장	법사랑위원 장흥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오선옥	2020. 7. 22.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위원	이정희	2020.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수근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태성	〃	〃
국민훈장목련장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이재환	2020.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고문	오흥배	2020. 11. 4.	갱생보호 지원 유공
국민포장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박순애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법사랑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민경준	2020. 7. 22.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오옥근	〃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전상중	2020. 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김태산	〃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김수원	2020.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조영옥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위원	권태건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고문	조인순	2020. 11. 4	갱생보호 지원 유공
	(사)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송홍구	2020. 11. 27.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대통령표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급	권태현	2020. 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	김근식	202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사업가	영거 수산나 메리	2020.5.20.	외국인정착지원 유공
	(사)충남다문화가정협회	회장	박인규	〃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	〃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윤선근	2020. 7. 22.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김영길	〃	〃
	법사랑위원 대구서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김기석	〃	〃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오한식	〃	〃
	법사랑위원 군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김정훈	〃	〃
	법사랑위원 창원지역협의회	법사랑위원	이경숙	〃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법무보호위원	이현녕	2020. 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박준수	〃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재개발처장	이수정	2020. 7. 1.	법질서 확립 지원 유공
	주식회사 에스원사회공헌단			〃	〃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전성룡	2020.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유재호	〃	〃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이갑순	〃	〃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박철웅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위원장	박헌택	2020. 11. 4.	갱생보호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고문	김수원	〃	〃
	(사)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낙헌	2020. 11. 27.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사)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박춘근	〃	〃
국무총리표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수진	2020. 4. 25.	법의 날 기념 유공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대표	심은자	2020. 5. 20	외국인정착지원 유공
	서울시립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학교	교장	이성균	〃	〃
	유니버설문화원	대표	바수무쿨	〃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최영일	〃	〃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	〃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법사랑위원 의왕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	송영자	2020. 7. 22.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차숙자	〃	〃
	법사랑위원 거창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정태영	〃	〃
	법사랑위원 부산동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태희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김광열	〃	〃
	법사랑위원 김천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황요한	〃	〃
	법사랑위원 강릉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라영진	〃	〃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이성운	2020. 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성윤아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형민	2020. 7. 1.	법질서 확립 지원 유공
	SK텔레콤	상무	신용식	〃	〃
	(사)전국자원봉사연맹			〃	〃
	(사)청소년교육전략 21			〃	〃
	(사) 대한결핵협회			〃	〃
	공주교도소	교정위원	조동헌	2020.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전주교도소	교정위원	오성택	〃	〃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이미성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성엄제	〃	〃
	인천구치소	교정위원	차준철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회장	이상훈	2020. 11. 4.	갱생보호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위원장	이우열	〃	〃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문승현	2020. 11. 27.	범죄피해자보호지원유공
	(사)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강명옥	〃	〃
	(사)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한승윤	〃	〃
	(사)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김종식	〃	〃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0. 12월 현재)

소 관 별	계	장관실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 실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68	2	19	8	13	4	1	6	3	8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84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공석	14명	정책 기획단	장관실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 (훈령 제1114호)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	공석	17명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3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기획조정실
4	법무부 예산집행심의 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096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5	법무부 정책연구심의 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249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5명	기획 재정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9명	혁신행정	기획조정실
7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8	법무부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 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9	법무부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인사과장	9명		
10	법무부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1	법무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2	법무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3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324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14	법무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10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법무부 차관, 최정진(변호사)	10명~14명	행복민원	
15	법무부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정정화(교수)	12명		
16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연구위원)	24명	정책성과	
17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18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훈령 1275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7명	정보화	
19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훈령 1275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20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1221호)제14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2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훈령 1288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차관, 김엘림(교수) 공동위원장	15명		
22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집단소송제개선, 채무자회생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엄동섭(교수)	15명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3	주택임대차위원회(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0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차관	9명		
24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장관	8명	법무과	
25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6명		
26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장관	8명	국제법무과	
27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차관	6명	국가소송과	
28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	박준(교수)	6명	상사법무과	
29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차관	14명	법조인력과	
30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장관	6명	검찰과	검찰국
31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32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33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차관	4명		
34	검사파견심사위원회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1238호)	검사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심사 승인	법무부차관	6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5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국장	4명	형사기획과	
36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장관	8명		
37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제1257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차관	10명		
38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국장	6명	공공형사과	
39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6명	공공형사과	
40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0명		
4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4명		
42	범죄수익 환수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국장	4명	국제형사과	
43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차장검사	각 9명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4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재황(교수)	14명	보호정책과	
45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차관	8명	치료처우과	
46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규정 (훈령 1289호)	법무행정 분야의 소년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권고	서보학(교수)	23명	소년보호과	
47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강동범(교수)	11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8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7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49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국장(주재)	29명		
50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8명	인권구조과	
5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52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53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공석	14명	여성아동인권과	
54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법무부 차관	8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55	교화방송 자문위원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예규 1208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강재형(방송인)	8명	사회복귀과	
56	교정개혁위원회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1307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하태훈(교수)	15명	교정혁신추진단	
57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훈령 제896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8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규정(훈령 제1068호) 제1조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김동욱(교수)	14명	외국인정책과	
59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8명		
60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원회 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법무부 차관	28명		
61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1명	국적과	
62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63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심의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4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284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65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훈령 제1223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8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6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관한규정(산자부 고시 제2020-197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 차관	5명		
67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68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10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0.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69개 기관(본부 1, 소속 268)	33,741
법무부	2실 3국 2본부	752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10,774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1	13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3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9, 위치추적관제센터 2	1,732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43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74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9, 지소 3	16,338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출장소 24,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2,551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0.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158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1, 지소 74, 법문화교육센터 1	78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9, 지소 7, 교육원 1	268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4

法務年鑑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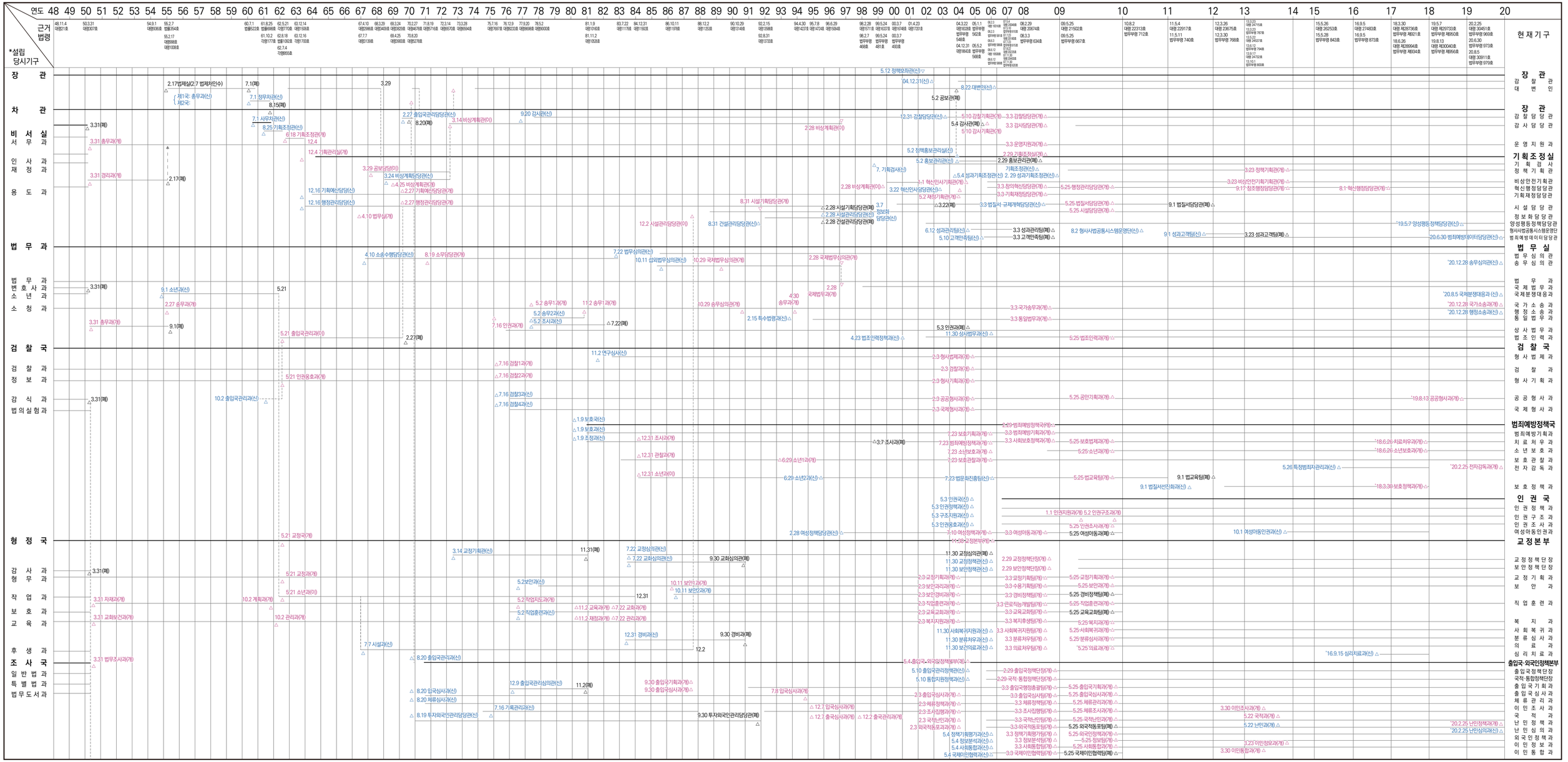
연도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근거 법령
*설립 당시기구
장 관
차 관
비 서 실
서 무 과
인 사 과
재 정 과
옹 도 과
법 무 과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소 년 과
소 청 과
검 찰 국
검 찰 과
정 보 과
감 식 과
법의실험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치료처우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보호정책과
인 권 국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형 정 국
감 사 과
형 무 과
작 업 과
보 호 과
교 육 과
후 생 과
조 사 국
일 반 법 과
특 별 법 과
법무도서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외국인정책과
이민정보과
이민통합과
현재기구
장관
감찰관
대변인
장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책임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법무실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찰국
형사법제과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치료처우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전자감독과
보호정책과
인권국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정기획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복지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국적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외국인정책과
이민정보과
이민통합과
48.11.4 대한21호
50.3.31 대한307호
54.9.1 대한306호
55.2.7 법률354호
55.2.17 대한398호
대한1008호
60.7.1 법률523호
61.8.25 법률698호
61.10.2 각령1778호
62.5.21 대한778호
62.8.18 법률1302호
62.7.4 각령855호
63.12.14 대한1508호
63.12.16 대한1700호
67.4.10 대한2868호
67.7.7 대한3139호
68.3.29 대한3439호
69.3.24 대한3620호
69.4.25 대한3900호
70.2.27 대한4078호
70.8.20 대한5278호
71.8.19 대한5716호
72.3.14 대한6570호
73.3.28 대한6948호
75.7.16 대한7697호
76.12.9 대한8233호
77.9.20 대한8698호
78.5.2 대한9200호
81.1.9 대한10168호
81.11.2 대한10526호
83.7.22 대한11756호
84.12.31 대한13028호
86.10.11 대한13788호
88.12.2 대한13528호
90.10.29 대한14048호
92.2.15 대한15368호
92.8.31 대한15728호
94.4.30 대한16378호
95.7.8 대한16724호
96.6.29 대한17065호
98.2.28 대한17577호
98.2.7 법무부령 468호
99.5.24 대한18320호
99.5.24 법무부령 481호
00.3.7 법무부령 493호
01.4.23 대한17201호
04.3.22 대한20338호
법무부령 502호
04.12.31 대한18643호
04.5.1 법무부령 508호
05.2.3 대한19316호
05.2.4 법무부령 512호
05.2.5 법무부령 513호
05.3.3 법무부령 519호
05.4.1 법무부령 524호
05.6.12 법무부령 535호
05.6.13 대한19868호
05.6.14 법무부령 537호
05.6.15 대한19935호
05.6.16 법무부령 538호
05.6.17 법무부령 539호
08.2.29 대한20674호
08.3.3 법무부령 634호
09.5.25 대한21502호
09.5.25 법무부령 657호
10.8.2 대한22313호
법무부령 712호
11.5.4 대한22917호
11.5.11 법무부령 740호
12.3.26 대한23675호
12.3.30 법무부령 768호
13.3.23 대한24715호
13.3.23 대한24787호
13.6.12 법무부령 794호
13.9.17 대한24732호
13.10.1 법무부령 800호
15.5.26 대한26253호
15.5.28 법무부령 843호
16.9.5 대한27483호
16.9.5 법무부령 873호
18.3.30 대한28276호
법무부령 제821호
18.6.26 대한28994호
법무부령 제834호
19.5.7 대한29732호
법무부령 제850호
19.8.13 대한29740호
법무부령 제856호
20.2.25 대한30451호
법무부령 969호
20.6.30 법무부령 973호
20.8.5 대한30911호
법무부령 979호
5.12 정책보좌관(신)
04.12.31(신)
8.22 대변인(신)
5.2 공보관(폐)
12.31 감찰담당관(신)
5.10 감찰기획관(개)
3.3 감찰담당관(개)
5.4 감사관(폐)
3.3 감사담당관(개)
5.10 감사기획관(개)
2.28 비상계획관(이)
3.3 운영지원과(개)
5.2 정책홍보관리실(신)
2.29 기획조정실(개)
5.2 홍보관리관(신)
2.29 홍보관리관(폐)
기획조정관(신)
7. 기획검사(신)
5.4 성과기획조정관(신)
2. 29 성과기획조정관(신)
3.23 정책기획관(개)
3.23 비상안전기획관(개)
9.17 청조행정담당관(개)
8.1 혁신행정담당관(개)
2.28 비상계획관(이)
1.1 혁신인사기획관(개)
3.3 창의혁신담당관(개)
5.25 행정관리담당관(개)
3.3 기획재정담당관(개)
5.2 재정기획관(개)
3.22(폐)
3.3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신)
5.25 법질서담당관(개)
5.25 시설담당관(개)
9.1 법질서담당관(폐)
2.28 시설기획담당관(폐)
2.28 시설관리담당관(신)
2.28 건설관리담당관(폐)
8.31 시설기획담당관(개)
8.31 건설관리담당관(신)
12.2 시설관리담당관(이)
6.12 성과관리팀(신)
5.10 고객만족팀(신)
3.3 성과관리팀(폐)
3.3 고객만족팀(폐)
8.2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신)
9.1 성과고객팀(신)
3.23 성과고객팀(폐)
19.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신)
20.6.30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신)
2.17(폐)
3.29
3.29 공보담당(이)
3.24 비상계획담당관(신)
4.25 비상계획관(개)
2.27 기획예산담당관(개)
2.27 행정관리담당관(개)
12.16 기획예산담당관(신)
12.16 행정관리담당관(신)
4.10 법무실(개)
12.4 기획관리실(개)
2.17법제실(2.7 법제처인수)
제1국: 총무과(신)
제2국:
7.1(폐)
7.1 정무차관(신)
8.15(폐)
7.1 사무차관(신)
8.25 기획조정관(신)
6.18 기획조정관(개)
12.4
8.20(폐)
2.27 출입국관리담당관(신)
3.14 비상계획관(이)
9.20 감사관(신)
3.31(폐)
3.31 총무과(개)
3.31 경리과(개)
3.31(폐)
3.31 총무과(개)
3.31(폐)
9.1 소년과(신)
2.27 송무과(개)
9.1(폐)
5.21
5.21 출입국관리과(이)
2.27(폐)
4.10 소송수행담당관(신)
8.19 소무담당관(개)
7.22 법무심의관(신)
10.11 섭외법무심의관(신)
10.29 국제법무심의관(개)
2.28 국제법무과(개)
2.28 국제법무과(개)
4.30 송무과(개)
10.29 송무심의관(개)
2.15 특수법령과(신)
△ 5.2 송무1과(개)
11.2 송무1과(개)
5.2 송무2과(신)
5.2 조사과(신)
7.16 인권과(개)
7.22(폐)
5.3 인권과(폐)
11.30 상사법무과(신)
4.23 법조인력정책과(신)
5.25 법조인력과(개)
5.21 인권옹호과(개)
10.2 출입국관리과(신)
11.2 연구심사(신)
7.16 검찰1과(개)
7.16 검찰2과(개)
7.16 검찰3과(신)
7.16 검찰4과(신)
2.3 형사법제과(개)
2.3 검찰과(개)
2.3 형사기획과(개)
2.3 공공형사과(개)
2.3 국제형사과(개)
5.25 공안2획과(개)
19.8.13 공공형사과(개)
1.9 보호국(신)
1.9 보호과(신)
1.9 조정과(신)
12.31 조사과(개)
12.31 관찰과(개)
12.31 소년과(이)
6.29 소년1과(개)
6.29 소년2과(신)
3.7 조사과(폐)
2.29 범죄예방정책국(이)
7.23 보호기획과(개)
7.23 범죄예방정책과(개)
7.23 소년보호과(개)
7.23 보호관찰과(개)
7.23 법문화진흥팀(신)
3.3 범죄예방기획과(개)
3.3 사회보호정책과(개)
5.25 보호법제과(개)
5.25 소년과(개)
5.25 법교육팀(개)
9.1 법교육팀(폐)
9.1 법질서선진화과(신)
18.6.26 치료처우과(개)
18.6.26 소년보호과(개)
5.26 특정범죄자관리과(신)
18.3.30 보호정책과(개)
20.2.25 전자감독과(개)
5.3 인권국(신)
5.3 인권정책과(신)
5.3 구조지원과(신)
5.3 인권조사과(신)
1.1 인권지원과(개) 5.2 인권구조과(개)
5.25 인권조사과(개)
5.25 여성아동과(폐)
7.10 여성정책과(개)
3.3 여성아동과(개)
2.28 여성정책담당관(신)
10.1 여성아동인권과(신)
<39> 교정본부(이)
3.14 교정기획관(신)
11.31(폐)
7.22 교정심의관(신)
7.22 교화심의관(신)
9.30 교화심의관(폐)
11.30 교정심의관(폐)
11.30 교정정책관(신)
11.30 보안정책관(신)
2.29 교정정책단장(개)
2.29 보안정책단장(개)
5.21 교정과(개)
5.21 소년과(이)
5.2 보안과(신)
10.11 보안1과(개)
10.11 보안2과(개)
12.31
2.3 교정기획과(이)
2.3 보안관리과(이)
2.3 보안관리과(이)
2.3 직업훈련과(이)
2.3 교육교화과(이)
2.3 복지과(이)
3.3 교정기획과(개)
3.3 수용기획팀(개)
3.3 경비정책팀(개)
3.3 근로직능개발팀(개)
3.3 교육교화팀(개)
3.3 복지후생팀(개)
5.25 교정기획과(개)
5.25 보안과(개)
5.25 경비정책팀(폐)
5.25 직업훈련과(개)
5.25 교육교화팀(폐)
5.25 복지과(개)
3.10.2 계획과(개)
10.2 관리과(개)
3.31 자재과(개)
3.31 교화보건과(개)
5.2 작업지도과(개)
5.2 직업훈련과(신)
△11.2 교육과(개) △7.22 교화과(개)
△11.2 재정과(이) △7.22 관리과(개)
12.31 경비과(신)
9.30 경비과(폐)
12.2
7.7 시설과(신)
8.20 출입국관리과(신)
3.31 법무조사과(개)
5.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개)
5.10 출입국관리정책관(신)
5.10 통합지원정책과(신)
2.29 출입국정책단장(개)
2.29 국적·통합정책단장(개)
3.3 출입국정책총괄팀(개)
3.3 출입국기획과(개)
3.3 출입국심사팀(개)
3.3 체류정책팀(개)
3.3 조사지원팀(개)
3.3 국적·인권팀(개)
3.3 외국적동포팀(개)
3.3 정착기획팀가팀(개)
3.3 정보분석팀(개)
3.3 사회통합팀(개)
3.3 국제이민협력팀(개)
5.25 출입국기획과(개)
5.25 출입국심사과(개)
5.25 체류관리과(개)
5.25 조사과(개)
5.25 국적과(개)
5.25 외국적동포과(폐)
5.25 외국인정책과(개)
5.25 정보팀(개)
5.25 사회통합과(개)
5.25 국제이민협력과(폐)
3.30 이민조사과(개)
5.22 국적과(개)
5.22 난민과(폐)
3.23 이민정보과(개)
3.30 이민통합과(개)
20.2.25 난민정책과(개)
20.2.25 난민심의과(신)
8.20 입국심사과(신)
8.20 체류심사과(신)
8.19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신)
7.16 기록관리과(신)
12.9 출입국관리심의관(신)
11.2(폐)
9.30 출입국기획과(개)
9.30 출입국심사과(개)
7.8 입국심사과(개)
12.7 입국심사과(개)
12.7 출국심사과(개)
12.2 출국관리과(개)
9.30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폐)
16.9.15 심리치료과(신)
범례: △ 靑(신설) △ 赤(개편, 이관) △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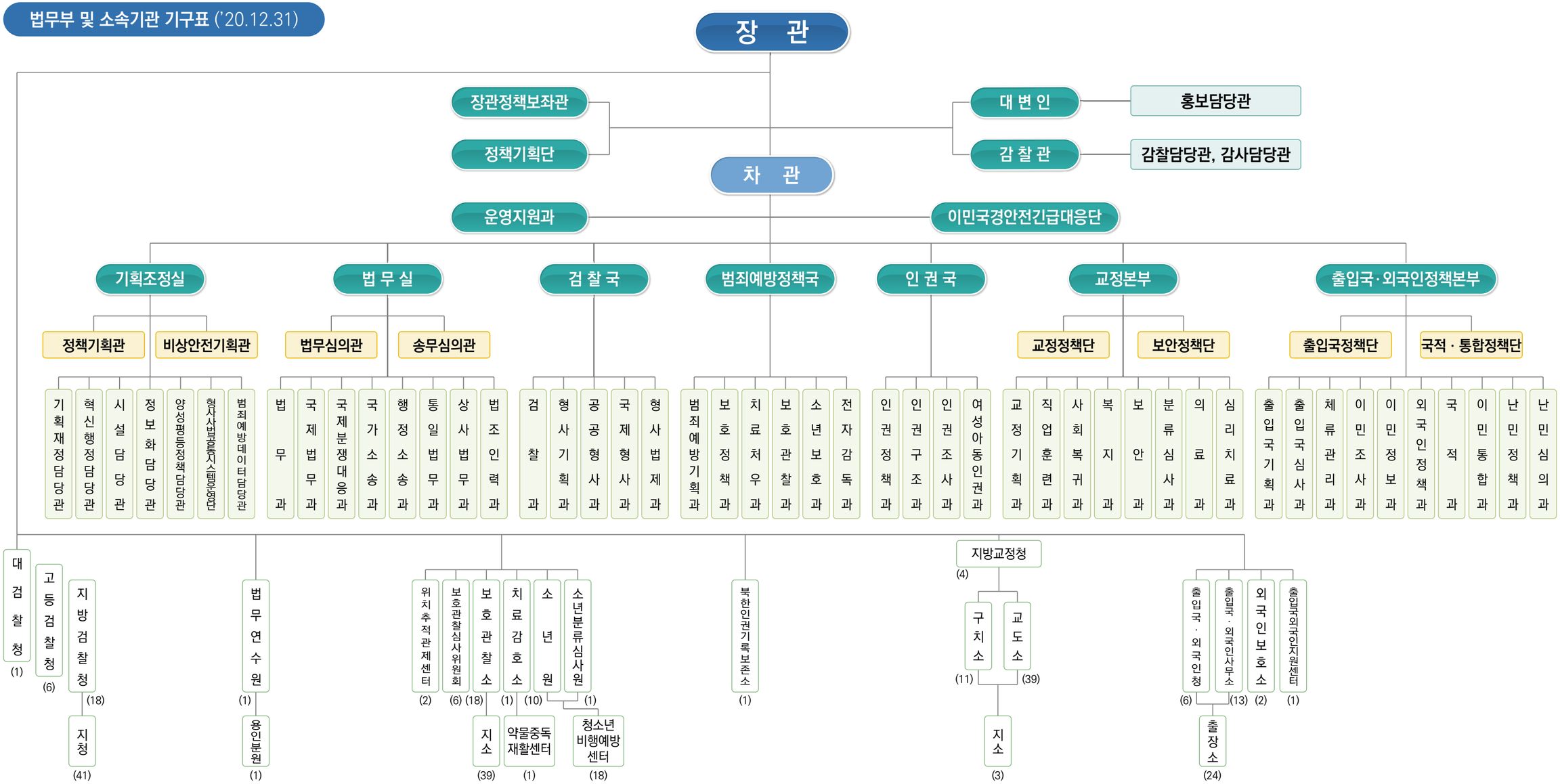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심우정

편집위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천정훈
법무실	검사	정지영
검찰국	검사	오상연
범죄예방정책국	부이사관	이형섭
감찰관실	검사	장형수
인권국	부이사관	김수아
교정본부	부이사관	최규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이진곤
장관정책보좌관	검사	조두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김정열
법무연수원	검사	신지선

편집실무위원

기획조정실	사무관	김용갑
법무실	사무관	이윤정
검찰국	사무관	허종욱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김영배
감찰관실	사무관	이기용
인권국	서기관	김에오
교정본부	교정관	이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박주현
대변인실	서기관	최성우
법무연수원	사무관	차유진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1년 6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 786-2999

〈비매품〉